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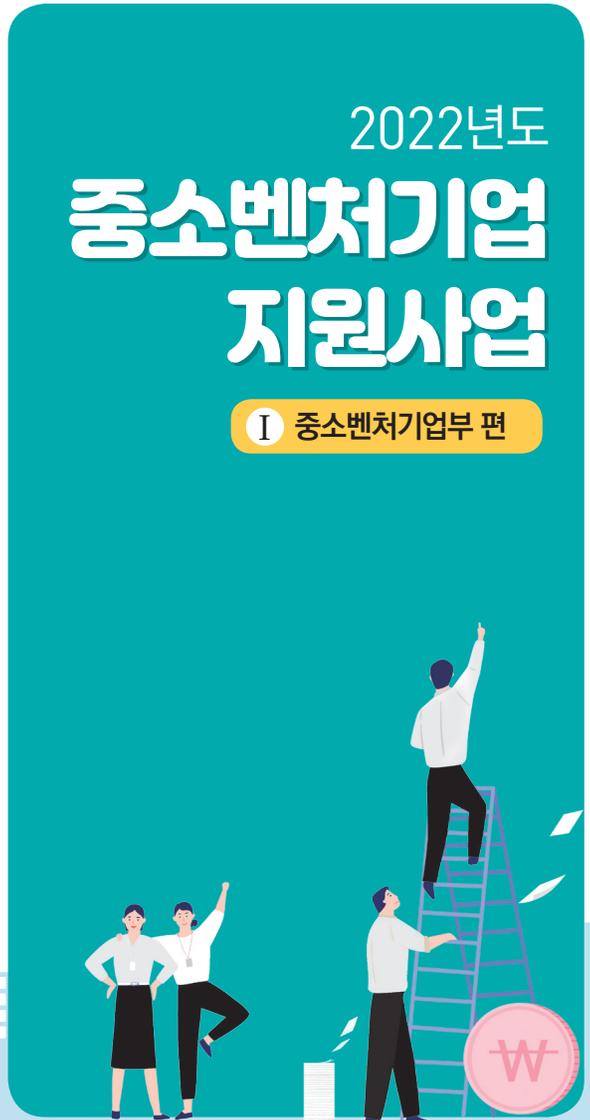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42100-000001-10

www.mss.go.kr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기업부 편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CONTENTS

제1편

중소기업

제1부 금융 지원

제1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7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8
1-2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7
1-3 투융자복합금융	21
1-4 신성장기반자금	23
1-5 긴급경영안정자금	26
1-6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9
1-7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31

제2장 신용보증 지원	33
2-1 신용보증기금	34
2-2 기술보증기금	38
2-3 지역신용보증재단	41
2-4 매출채권보험	44

제2부 기술개발 지원

제3장 기술개발자금 지원	53
3-1 창업성장기술개발	54
3-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57
3-3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60
3-4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63
3-5 산학연 Collabo R&D	66
3-6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69
3-7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72
3-8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74
3-9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사업	76

3-10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78
3-11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R&D	80
3-12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83
3-13 연구기반활용플러스	86
3-14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88
3-15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지원사업	90
3-16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92
3-17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94
3-18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96
3-19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99
3-20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R&D)	101
3-21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R&D)	103
3-22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	105
3-23 성과공유형 공동기술 R&D	108
3-24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110
3-25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	112
3-26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115

제4장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119

4-1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120
4-2 뿌리기업 혁신역량강화	125
4-3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130

제5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133

5-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134
5-2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136
5-3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139
5-4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141
5-5 스마트공장 AS 지원사업	143
5-6 데이터 인프라 구축(정보화)	145
5-7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148
5-8 기술보호 역량강화	150
5-9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154

CONTENTS

제3부 인력 지원

제6장 인력 양성	169
6-1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170
6-2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기술사관 육성)	173
6-3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176
6-4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178

제7장 인력유입 촉진	181
7-1 내일채움공제	182
7-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84
7-3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186
7-4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188
7-5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	190
7-6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	192
7-7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194
7-8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196
7-9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198
7-10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200
7-11 중소기업 복지플래툰	202

제4부 판로 지원

제8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205
8-1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206
8-2 직접생산확인제도	209
8-3 계약이행능력심사	211
8-4 적격조합 확인제도	213
8-5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215
8-6 공공구매론(loan)	216
8-7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	218

제9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221
9-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222
9-2 성능인증제도	225
9-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227

	제10장 마케팅, 홍보 지원 231
	10-1 유통망진출 지원 232
	10-2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235
	10-3 중소 소모성자재(MRO) 납품기업 지원 237
	10-4 대한민국 동행세일 240
제5부 수출 지원	제11장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243
	11-1 수출바우처 244
	11-2 수출컨소시엄 248
	11-3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250
	11-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252
	11-5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54
	11-6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257
	11-7 K-스타트업센터 259
	11-8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261
	11-9 브랜드K 육성관리 263
제6부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지원	제12장 여성기업 지원 267
	12-1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268
	12-2 여성창업경진대회 271
	12-3 W-창업패키지 273
	12-4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275
	12-5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278
	12-6 W-디지털판로지원 280
	12-7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282
	12-8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지원 284
	12-9 여성경제인 DESK 운영 286
	12-10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288
	12-11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290
	제13장 장애인기업 육성 291
	13-1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292
	13-2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294
	13-3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296

CONTENTS

13-4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298
13-5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300
13-6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302
13-7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지원 사업 ...	303
13-8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305
13-9 장애인기업 MAS 컨설팅 및 등록 지원	307
13-10 장애인기업 국제 전시회 참가지원	309
13-11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311
13-12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313
13-13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316
13-14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317
제14장 지역기업 지원	319
14-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320
14-2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323
14-3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325
14-4 지역특화산업육성	328
14-5 지역특화산업육성+(R&D)	333
14-6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	336
14-7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338
14-8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340

제2편

창업, 재도전기업

제1부 창업기업 지원

제1장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349
1-1 예비창업패키지	350
1-2 청년창업사관학교	352
1-3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355
1-4 스타트업 시기술인력 양성	357
1-5 초기창업패키지	359
1-6 창업도약패키지	361
1-7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364
1-8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366
1-9 팁스(TIPS)	368
1-10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372
1-11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374
1-12 혁신분야 창업패키지(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	375
1-13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377
1-14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378
1-15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379
제2장 창업저변 확대	381
2-1 청소년 비즈쿨	382
2-2 창업에듀	384
2-3 실전창업교육	385
2-4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387
2-5 도전! K-스타트업	389
2-6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390
2-7 창업지원포털(K-Startup)	393
2-8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394

CONTENTS

	제3장 창업지원 인프라 397
	3-1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398
	3-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400
	3-3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402
	3-4 창조경제혁신센터 404
	3-5 창업존 운영 406
	3-6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408
제2부 재도전기업 지원	제4장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413
	4-1 재도약지원자금 414
	4-2 진로제시 컨설팅 418
	4-3 회생 컨설팅 420
	4-4 중소기업 선제적 구조개선 지원 423
	4-5 재도전성공패키지 426
	4-6 구조혁신지원사업 428

제3편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1부 소상공인

제1장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437
1-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438
1-2 상권정보시스템	441
1-3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444
1-4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446
제2장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447
2-1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舊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이버평생교육원)	448
2-2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450
2-3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452
2-4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454
2-5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	456
2-6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458
2-7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460
2-8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462
2-9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465
2-10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467
2-11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469
2-12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471
2-13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473
2-14 온라인 판로지원	474
2-15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476
2-16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479
2-17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481
2-18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483
제3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485
3-1 희망리턴패키지	486
3-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488
3-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490

CONTENTS

	제4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493
	4-1 소공인특화자금	494
	4-2 성장촉진자금	496
	4-3 일반경영안정자금	498
	4-4 청년고용연계자금	500
	4-5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502
제2부 전통시장	제5장 전통시장 지원	507
	5-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508
	5-2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511
	5-3 시장경영패키지지원	513
	5-4 온누리상품권 발행	516
	5-5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518
	5-6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522
	5-7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526
	5-8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529
	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532
	5-10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534
제3부 보증지원 제도	제6장 보증지원 제도	539
	6-1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540
	6-2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543
	6-3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545
	6-4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547
	6-5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550
	6-6 스마트 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553
	6-7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556
	6-8 온[溫, ON]택트 특례보증	558
	6-9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560
부 록	참고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 (소상공인정책자금 상담 등)	564
	참고 2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569

제4편 공통사항

제1부 기 타	제1장 규제애로 개선·해결 575
	1-1 중소기업 옴부즈만 576
	제2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 579
	2-1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580
	제3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583
	3-1 거래 공정화 584
	3-2 성과공유제 588
	3-3 협력이익공유제 590
	3-4 상생누리 플랫폼 592
	3-5 상생결제제도 595
	제4장 중소기업 원격근무 활성화 지원 599
	4-1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600
제2부 도움이 되는 제도	제5장 알아두면 좋은 제도 605
	5-1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606
	5-2 벤처기업 확인제도 607
	5-3 이노비즈 확인제도 610
	5-4 메인비즈 확인제도 613
	5-5 명문(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616
	5-6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619
부 록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624
	2. 중소기업 조세 지원 627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632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1편

중소기업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1부
금융 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Q&A



함께 알아보는 금융지원

Q.질의 2019년 6월 창업하여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창업하신지 7년 미만이라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시설자금을 신청하세요. 연간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질의 올해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FDA로부터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A.답변 특허가 있으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세요. 개발제품 사업화에 소요되는 설비구입 용도의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마케팅비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Q.질의 지난 1995년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A.답변 7년 이상 된 기업이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입니다.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

Q.질의 고해상도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여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 들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업체와 수출거래 중 추가로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A.답변 수출실적이 있으나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함께 알아보는 금융지원

Q.질의 2009년부터 컴퓨터 프레스와 판금 사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2013년 이후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여 전기은풍기 업종 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답변 기술발전 등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업종추가, 업종전환 등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사업전환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Q.질의 지난해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답변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질의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 네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기업 당 지원횟수를 최근 5년 내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보증,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누적 100억원을 초과한다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Q.질의 신청 및 평가절차가 궁금합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용자를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중소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 본·지부로 신청을 하시면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 후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진공 직접대출 외에도 자금종류에 따라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도 가능합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1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8
1-2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7
1-3 투융자복합금융	21
1-4 신성장기반자금	23
1-5 긴급경영안정자금	26
1-6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9
1-7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31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정책자금지원 공통사항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기업, 용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중점지원분야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그린분야, 비대면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의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용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용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용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용자한도

- 개별기업당 용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용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정책자금 대출업체 중 대출전월 대비,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한 인원에 대해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 1인당 최대 0.2%p

- * 12개월 유지시 1인당 0.1%p, 24개월 유지시 인당 0.1%p 추가환급
-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대출전월 대비 6개월 후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 시 고용 실적 인정 가능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업체 중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3%p
 -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10만불 이상 달성
 -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단, 브랜드K인증기업은 수출성공 및 향상기업 기준 50% 완화
- 금리우대(고용, 수출)는 1년간 한시적용(고용은 최대 2년)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중진공 수납 기준) 범위 이내 지원
 - * 투융자복합금융 및 고정금리 자금, 금리우대 자금, 연체, 휴·폐업 업체 등은 이자환급 불가

용자방식

- 중진공에서 용자신청·접수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용자절차

- 용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용자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자금상담→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예약 및 자금상담(신청서 제출 포함)이 필요
 -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 (온라인신청예약)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 및 비대면 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고용창출, 수출 및 시설투자 기업 등은 우선 지원)
 -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용자신청
 -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표준진단, 종합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용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용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용자약정 체결 후 대출
 -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 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 대출자금의 용도와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용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 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용자제한기업

- ① 휴·폐업중인 기업
-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④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용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차·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작·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 ⑤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용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 ⑥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⑧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인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 ⑩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에서 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⑪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은 적용 예외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 ⑫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및 실적산정 예외)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규지원 및 실적산정 예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용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 ⑬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기에 한하여 적용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 ⑭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및 실적산정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BIG3 혁신성장 지원기업
- (신규지원 예외)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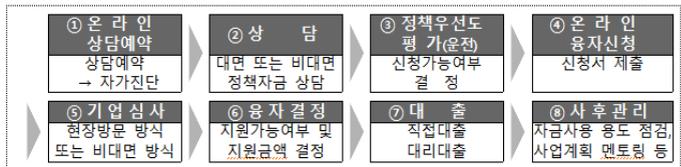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용자 절차 운영

- ① 온라인 상담예약 : 신청 희망기업은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신청대상 여부 등을 자가진단
 - * 신청 희망기업은 사전에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상담예약 생략 가능
 - * 자가진단을 하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 ② 상담 :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지역본(지)부와 용자신청 가능성 등을 상담
 - * 대면상담은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며, 비대면 상담 대상기업은 유무선 통화로 상담
- ③ 정책우선도 평가 : 중진공은 상담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 평가'(운전자금)를 통해 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 정책우선도 평가는 그린분야, 혁신성장분야, 지역주력산업,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등을 고려하여 평가
- ④ 온라인 용자신청 :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제출
 -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은 보증서 취급 가능)
- ⑤ 기업심사 :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

-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필요 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 * (기업진단) 기업어로 분석 및 해법을 제시하고 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상황 등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수행 여부 결정

- ⑥ 용자결정 :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 여부를 결정
 - o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 ⑦ 대출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용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용자하는 방식
 - * 대리대출 가능 기관(16개)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⑧ 사후관리 :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용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지원규모

- 중소기업 정책자금 : 5조 600억원
 -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3,0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1,2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4,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6,2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4,2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2,000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 Q. 2019년 6월 창업하여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요?**
- A. 창업하신지 7년 미만이라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시설자금을 신청하세요. 연간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올해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FDA로부터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A. 특허가 있으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세요. 개발제품 사업화에 소요되는 설비구입 용도의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마케팅비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Q. 지난 1995년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 A. 7년 이상 된 기업이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은 '신성장 기반자금'입니다.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
- Q. 고해상도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여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업체와 수출거래 중 추가로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 A. 수출실적이 있으나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Q. 지난해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 A.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Q.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기업 당 지원횟수를 최근 5년 내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보증,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누적 100억원을 초과한다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Q. 신청 및 평가절차가 궁금합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용자를 받을 수 있나요?**
- A. 중소기업집업진흥공단 관할 지역 본·지부로 신청을 하시면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 후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진공 직접대출 외에도 자금종류에 따라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도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자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자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자금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자금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화의 :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것

기업회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융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서 최근연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중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진공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진공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지역 조례·규칙, 부처별 지침),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수출향상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한 기업

1-2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업력 7년미만 창업 중소기업 지원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대상

-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청년전용창업자금 >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

- 대표자가 대기업·중견기업·정부출연연구소 경력보유자,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비대면분야창업자금 >

- 비대면 분야를 영위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일자리창출촉진)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기업

■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인재육성**

-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 근로시간 단축기업
-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 시·도교육청 추천 우수 선도기업

- (개발기술사업화)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
-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용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 범위 : 사업장(공장) 内の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및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 하는데 필요한 비용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청년전용창업자금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연간 30억원 이내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연간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융자방식

-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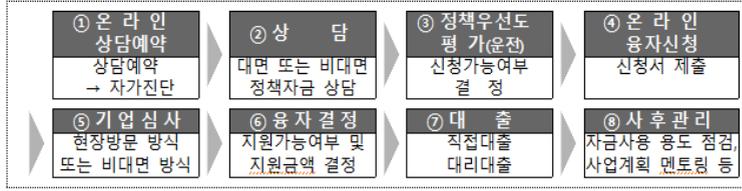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지원규모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2조 3,000억원
*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13,251개사 중 11,296개사 2조 5,500억원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3

투자자복합금융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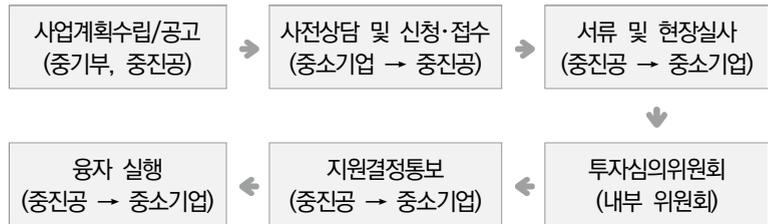
-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크고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직접 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방식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진공이 주식 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스케일업금융) : 3년 이내(회사채 종류, 기업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금리, 한도 차등)
 - * 융자조건, 신청·접수, 처리절차 등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 참고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 혁신형기업 소재·부품 영위기업 등은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지원규모

- 투융자복합금융 : 1,200억원
 - *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296개사 중 164개사 1,400억원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 :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상환전환우선주(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 인수합병 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

1-4

신성장기반자금

업력 7년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지원대상

-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협동화 >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 ‘용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 ‘용자제한기업’ ⑧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산업경쟁력강화 >

- 한중FTA 지원업종(참고15)을 영위하는 업력 7년 이상인 중소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물·대기 관리, 환경정화 등 그린분야(참고2)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국내 복귀기업은 ‘용자제한기업’ ⑧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물·대기 관리, 환경정화 등 그린분야(참고2)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응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 범위 : 사업장(공장) 内の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협동화자금은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및 부지 조성공사 용도 지원 가능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및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서비스산업(참고7) ■ 사회적경제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

* 혁신성장지원자금(산업경쟁력강화)은 운전자금 별도 지원 불가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 단,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협동화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협동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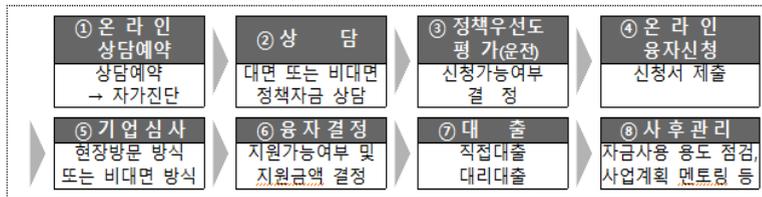
- 응답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신성장기반자금 : 1조 6,200억원
*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2,869개사 중 2,622개사 1조 7,675억원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5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 지원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대상

● 재해중소기업지원 및 일시적경영애로지원으로 구분

- (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 ‘용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부채비율초과 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다음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 ‘용자제한기업’ ③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은 ‘용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④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① 경영애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피해 ■ 대형사고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보호무역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 ■ 일본수출규제 관련 피해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관세제재 피해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 애로기업으로 6개월 내 원자재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 ■ 물류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비 상승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직접 수출(계약)중소기업(최근 1년 내 직수출 실적 또는 6개월 내 체결한 수출계약서 보유) 및 국제물류주선업 영위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 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 對이란제재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용자범위

- 운전자금
 - (재해중소기업지원)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 (원자재 수급안정자금) 사지원금액의 50%이상 원자재 구매(6개월 후 세금계산서, 수입신고 필증 등 제출 필요)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 재해중소기업지원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 물류비 안정지원 자금 : 연간 3억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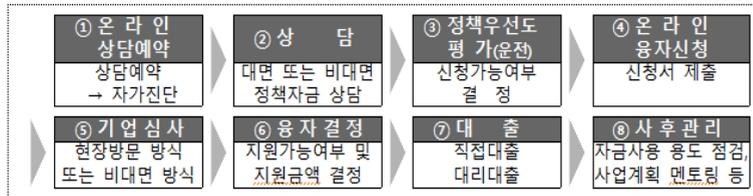
- 응답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 지원규모**
- 긴급경영안정자금 : 2,000억원
*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5,276개사 중 5,007개사 8,000억원 지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6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글로벌 기업화 촉진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 설비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 초보기업 : 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상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실적 보유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 (수출글로벌기업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최근 1년) 중소기업

- 수출 유망기업 :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신산업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BIG3 신산업분야 영위기업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지원 내용

- 용자범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 용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 해외진출 스타트업은 5천만원 이내
 - * 브랜드K 선정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예약 → 자금 상담 → 용자 신청서 제출 → 신청결과 통보 및 접수 → 기업 평가 → 용자결정 → 대출실행

지원규모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4,000억원
 - *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2,514개사 중 2,380개사 5,000억원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이 지원가능하며,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수출실적 확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1년간 직접·간접 수출실적 합계로 판단하며,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 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에서 수출실적 증명원 발급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간접수출 : 제조업자가 자국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

1-7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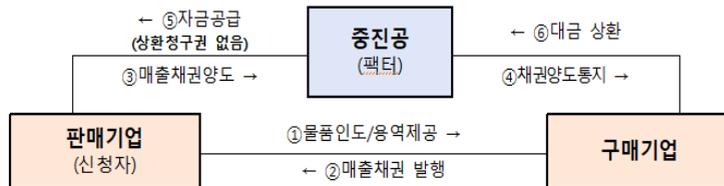
매출채권 활용 유동성 공급 지원

중소기업의 보유자산인 매출채권을 인수하여 판매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상환 청구를 구매기업에게만 실시하여 연쇄부도 방지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 양수 및 회수
- 지원기간 : 60~90일
 - * 상품 판매기업이 받은 지급기일 60~90일 내외의 매출채권 양수 후 구매기업에 대금 회수
-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기준 10억원
- 처리절차



신청·접수 ● 추후 별도 공고 예정('22년 3월 중)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2장

신용보증 지원

2-1 신용보증기금	34
2-2 기술보증기금	38
2-3 지역신용보증재단	41
2-4 매출채권보험	44

2-1

신용보증기금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 대출보증, 상거래 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보증종류	주요내용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용 등
제2금융보증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농수협,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상거래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보증 ▶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납세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보증한도 : 30억원
 -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50억원까지 지원가능

자 금 종 류	보증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장 혁신기업 - 혁신아이콘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 모델 기업 	15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 	1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자금용,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 ■ 지식기반기업, 녹색성장산업·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70억원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신청·접수

-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구 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 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 동의 시 전산으로 수집
고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 주주명부 • 기업개요표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시 제출

처리절차

단 계 별	처 리 내 용
신청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 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	
자료수집 및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신보 직접 수집하며, 일부자료는 기업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약정 및 보증서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지원규모

- 보증잔액 58.5조원으로 운용예정
- * '21년 지원현황(11월말) : 59.3조원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해 유형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고용창출기업 보증	·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유망서비스기업 보증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특별보증
시설자금특례보증	· 사업장 신축·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뉴딜기업 특화지원 프로그램	· 한국판 뉴딜 관련 산업 영위기업 지원
문화산업 정책보증	· 문화관련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제작, 유통 등)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사회적경제기업에 특화된 보증 상품 지원**
기타	· 신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등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 종류 : 고용창출 특례보증,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보증, 고용의질 우수기업 우대보증 등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종류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마을기업 두레보증, 자활기업 초록보증

Q. 보증료는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증료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납하며, 보증료율은 보증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운용합니다.

2-2

기술보증기금

기술력 보유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지원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대출보증 : 금융기관 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 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용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신청·접수

- '22.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서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을 통해 간편하게 서류 제출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도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or 스크 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 (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 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 동의 필요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 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 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서
	금융 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필요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 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 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 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 '22년 기술보증 잔액 26.3조원으로 운용(유동화회사보증 0.2조원 별도)
* '21년 10월말 현재 기술보증 잔액 : 26.6조원 (유동화회사보증 0.2조원 제외)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기보에서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A. 기보에서 직접 수집하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2-3

지역신용보증재단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채무관계자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대출 보증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신보 및 기보의 기 보증금액 포함)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8억원 이내
시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처리절차



지원규모

- 24.8조원 보증공급(보증잔액 47.8조원)
* 햇살론사업자 포함(공급 0.3조원, 잔액 0.6조원)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www.koreg.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햇살론 신용보증의 지원절차는?

A.



2-4

매출채권보험

납품대금 때일 염려 없는 거래안전망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어음보험			(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지원 제한 사항

-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결제 지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 보험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음
예)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어음보험 포함)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0.1% ~ 5.0%

상품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 보험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15일	다수의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B2B PLUS+보험	8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된 매출채권 *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B2B+보험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심사·평가내용

-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구매자확정, 인수여부 등 결정

제출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관련자료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처리절차

보험가입절차	세 부 내 용
보험상담	보험가입요건, 금액 등에 대해 상담
↓	
청약접수	보험가입 청약서 접수
↓	
신용조사	신청기업 및 구매자 신용조사
↓	
보험심사	인수의 적정성 심사, 구매자별 가입금액 사정
↓	
보험료납부	보험료 납부 (일시납 또는 분납)
↓	
보험증권발급	보험증권 발급

- 지원규모**
- '22년 보험인수 21조원으로 운용
 - * '21년 지원현황 : 20조원 전망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매출채권보험과 신용보증의 차이점은?

A.

구 분	매출채권보험(신용보험)	신용보증
특 징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금융안전망	신용보완을 통한 추가적 신용창출
계약성격	자기를 위하여 계약자가 체결	채권자를 위한 피보증인이 체결
수수료성격	예상손실에 대한 분담금	보증에 따른 대가

Q.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는?

A.

-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
 - 당좌부도(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치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때
- 보험금 청구시기
 - 상기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A.

- 보험금지급 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인수증 또는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어음 사본
(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용어설명

매출채권 :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2부

기술개발 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함께 알아보는 금융지원

Q질의 LED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휴대폰용 LED 부품 개발 의뢰를 받아서 판매처는 확보되었는데, 저희 회사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A답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수요처(정부,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로부터 자발적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을 발급받으신 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참조)

Q질의 산업용 케이블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제품 신뢰성에 자주 문제가 발생해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답변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첫걸음기술개발의 경우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며 1억원 한도 내에서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약기술 개발은 혁신역량 부족, 성장 정체 기업 등에 대해 1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구개발비의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참조)

Q질의 자동차, 선박부품 등의 주철을 제조하는 소기업입니다, 주문물량은 느는데 계속 사람을 뽑자니 애로가 많아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인력문제를 해소하고 싶습니다,

A답변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 사업은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를 과제당 5천만원을 한도로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참조)

Q질의 3년 전부터 난연 플라스틱 제조 및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험 장비가 고가이다보니 자체 해결이 어려워 연구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A답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비사용료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를 먼저 구매한 후 장비를 이용하시는 방식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조)



함께 알아보는 금융지원

Q.질의 중소기업이 R&D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기획 지원 프로그램은 없는지요?

A.답변 R&D 기획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 및 기술에 기업이 보유한 R&D 자금, 인력 등 기술개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의 R&D 기획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사업 참조)

Q.질의 냉장고나 세탁기의 PC기판 사출성형 업체입니다. 공장에서의 생산관리를 자동화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을 지원받아 생산시점관리 (POP)를 구축하시면 됩니다. 작업 지시서에 제품명, 납기일, 생산수량, 작업자 등의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붙여서 생산관리를 하게 되면 생산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참조)

Q.질의 산업용 잉크 제조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이직이 잦아 기술유출 우려가 늘 존재하는데 자체적으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A.답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상담과 보안시스템을 구축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보호 상담의 경우 사전진단(3일)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심화자문은 일정 비용 부담), 보안시스템 구축은 총비용의 50% 이내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유출 방지사업 참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3장

기술개발자금 지원

3-1 창업성장기술개발	54
3-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57
3-3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60
3-4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63
3-5 산학연 Collabo R&D	66
3-6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69
3-7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72
3-8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74
3-9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사업	76
3-10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78
3-11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R&D	80
3-12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83
3-13 연구기반활용플랫폼	86
3-14 소상공인지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88
3-15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지원사업	90
3-16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92
3-17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94
3-18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96
3-19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99
3-20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R&D)	101
3-21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R&D)	103
3-22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	105
3-23 성과공유형 공동기술 R&D	108
3-24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110
3-25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	112
3-26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115

3-1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내용**
- 디딤돌(신규 810억원) : R&D저변 확대를 위해 R&D 첫수행, 유관기관 추천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R&D지원(1년, 1.2억원 이내)
 - 전략형(신규 533억원) : 디지털, BIG3, 백신 원부자재, 그린 분야, 소부장 등 고기술·유망기술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2년, 3억원 이내)
 - TIPS(신규 738억원) : 창업기획자 등 팀스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기술 창업기업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지원(2년, 5억원 이내)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년, 1.2억 원	90% 이내	자유공모
전략형	최대 2년, 3억 원		품목지정
TIPS	최대 2년, 5억 원		자유공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디딤돌(첫걸음) 과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추천받아 지원하며, 지역별 균등 배분하는 지역별 쿼터제 도입(하반기)
- 전략형 과제는 디지털 분야와 BIG3, 백신원부자재,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지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제별 공고 참조, '21.12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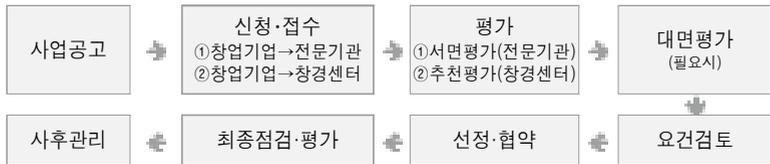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창업기업확인서 등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절차

< 디딤돌(안) >



< 전략형(안) >



< TIPS(안) >



* 세부 처리절차는 공고문 참조

지원규모

- 4,437억원(신규 2,082억원, 계속 2,355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541, 0543~4, 0546~7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A

Q. 지원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A. 직전년도(2021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중기부 내 다른 R&D사업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단독형 사업으로 단독형에 해당하는 사업과 동시수행이 불가하며, 협력형 사업은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최대 2개)

Q. 창업기업의 입력 선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력을 선정합니다.

Q. 디딤들의 R&D첫걸음 기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중소벤처기업부의 R&D사업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의미 합니다.

3-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의 Scale-up 성장 촉진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기술개발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지향형(130억원) :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761억원) : 디지털·그린, BIG3분야 등의 기술 및 민간투자 유치실적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534억원)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강소기업100(85억원) : 소재·부품·장비 강소100 선정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전략(116억원) : 소부장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소부장 전문 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일반(95억)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혁신역량 수준별 3개 내역으로 구분하여 최대 2~4년, 5~20억원 지원
 - 수출지향형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 중견 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 : 민간투자 유치실적 보유기업 또는 BIG3 등 중점전략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강소기업100 : 강소기업100 선정기업의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전략 : 소부장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일반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일반 회계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80% 이내*	자유응모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		자유응모(품목지정)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자유응모(품목지정)
소특 회계	강소100	최대 4년, 20억		자유응모
	소부장 전략	최대 2년, 6억		자유응모(품목지정)
	소부장 일반	최대 2년, 5억		자유응모(품목지정)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상향조정 유지(65→80%)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중점분야 신설) BIG3 및 비대면과제 등 중점 지원기술을 지정하여 우선지원
- (자격요건 강화) 민간투자연계과제 민간투자 최소금액 상향(5억→10억)
- (지원시기) 신속한 과제지원을 위해 지원시기 조정(6월→4월, 9월→7월)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서류 등
- * 자세한 사항은 향후 공고문 확인요망

처리절차



지원규모

- 4,277억원(신규 1,721억원, 계속 2,556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520~0537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지원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A. 직전년도(2020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중기부 內 다른 R&D사업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단독형 사업으로 단독형에 해당하는 사업과 동시수행이 불가하며, 협력형 사업은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3-3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기반 상용화 R&D 지원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 해외기업 등의 구매 및 투자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 계약서’ (투자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지정공모) 정부에서 수요처(투자기업)가 구매(투자)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 수행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자유응모) 중소기업이 수요처(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투자)를 약속 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구매연계형(조달혁신) : (‘21년) 5억원 한도 → (‘22년) 10억원 한도
 - 수요처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구매연계형(조달혁신) 과제의 경우 최대 10억원 한도로 확대 지원 가능

신청·접수

- 과제별 공고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사업계획서, 구매동의서(또는 구매계약서)·투자동의서, 기타 서류 등

제출서류

처리절차

- (지정공모과제)



- (자유응모과제)



구 분	지원규모 (정부 출연금)	개발비 비중			공고방식
		정 부	주관연구 개발기관	수요처 (투자기업)	
구매연계형 (구매의무O)	구매동의서 최대 2년, 5억원	80% 이내	10% 이상	10% 이상	자유공모 지정공모
	구매계약서 (조달혁신 10억원)	80% 이내	20% 이상	-	
공동투자형 (구매의무X)	최대 3년, 12억원	80% 이내	20%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대기업 1:1, 중견기업 3:2)	자유공모 지정공모

- 지원규모**
- 총 2,340억원(신규 759억원, 계속 1,581억원)
* '21년 지원현황 : 총 2,009억원(신규 421억원, 계속 1,588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51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A

Q. 구매연계형과 공동투자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구매연계형은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여 구매 의무가 있고, 공동투자형은 투자기업의 투자의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매 의무가 면제됩니다.

Q. 해외수요처의 신용조사 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해외수요처의 경우 과제 신청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한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는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해외신용조사보고서는 발급시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용어설명

수요처 : (국내) 정부, 지자체,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해외)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E등급 이상)

투자기업 :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투자기업 출연금 : 총 사업비와 별도로 투자기업이 정부출연금에 대응하여 투자하는 금액으로 주관기관이 개발 및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 가능

조달혁신 : 구매연계형 중 수요처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과제

BIG3 : 공동투자형 중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 과제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과제(국내 수요처에 한함)

3-4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협력체의 공동기술개발

3개이상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시장주도형 R&BD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협력체*(3개 기업 이상)
 - * 개발기업, 생산기업, 유통 및 판매기업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 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1단계 : 네트워크 기획지원)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을 위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탐색, 매칭을 지원하고,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BD기획 상세화, 상호협력계약 체결 지원
- (2단계: R&BD) 사업계획,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BD 자금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네트워크 기획 사업계획서 개선으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 네트워크 기획 사업계획서에 최소 필요 사항만 작성 및 30페이지로 제한

신청·접수

- 과제별 공고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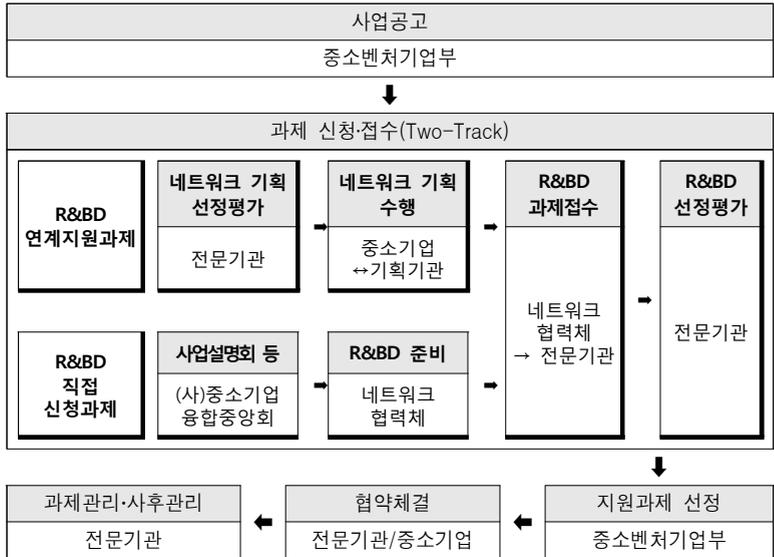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 (네트워크 기획지원) 제출된 개념요약서(기술개발 주제, 구현방법, 네트워크 구성계획 등)를 기준으로 기획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 (R&BD) 사업계획서(네트워크 벨류체인 등),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 구성의 적정성 및 우수성 등을 평가

제출서류

- (네트워크 기획지원) 사업계획서, 매칭요구서, 기타 서류
- (R&BD) 사업계획서, 상호협력계약서, 기타 서류

처리절차



지원규모

- 총 242억원(신규 105억원, 계속 137억원)
- * '21년 지원현황 : 총 219억원(신규 60억원, 계속 159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51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A

Q.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A. 네트워크 협력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1개), 공동연구개발기관(2개 이상) 등 총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됩니다.

Q. 네트워크 기획(1단계) 신청 시 3개 이상의 기업이 다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은 2단계 R&D 신청 전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1단계 네트워크 기획지원 신청 시에는 주관기관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며, 기획 진행 중에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용어설명

기획 운영기관 : 네트워크 기획을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여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하는 기관

상호협력 표준계약서 : 네트워크 구성 기업들의 수행역할 및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구성 기관별 의무사항, 성과배분 방식 등을 정의하고, 변호사 공증을 진행하여 공신력 및 구속력을 확보한 계약서

사업화 부속계약서 : 상용화를 통한 사업성과 창출 및 지속가능한 상호 신뢰형성을 위해 R&BD 완료 후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역할, 비용 부담 내용 등을 포함하고, 변호사 공증을 진행하여 공신력 및 구속력을 확보한 계약서

기획연계과제 : 당해 연도 네트워크 기획을 수행하고 R&BD 과제에 신청한 과제

3-5

산학연 Collabo R&D

산학연 협력R&D를 통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확대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
 - 2단계 사업화 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비영리 연구기관

지원제외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유의사항 : 예비연구 신청 시,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와 주관기관 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및 위탁연구 실적이 없어야 함

- 지원내용**
- ①예비연구(PoC) → ②사업화R&D
 - 산학협력 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를 지원
 - 산연협력 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 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지원내용 및 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산학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4억원		
산연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4억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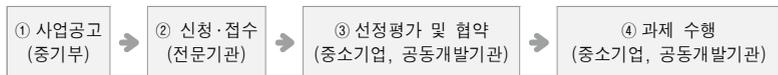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예비연구)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고용 친화도, 예비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예비 연구방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기간 단축을 위해 평가단계 조정 가능
- (사업화 R&D)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예비연구 목표달성도, 사업화 기술개발계획, 사업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474억원(신규 257억원, 계속 217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4-204-7769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76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A

Q. 1단계 예비연구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사업화 R&D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 예비연구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50% 내외의 과제만 2단계 사업화 R&D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1단계 신청없이 바로 2단계(사업화R&D)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예비연구) 수행 과제만 2단계 신청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예비연구(PoC, Proof of Concept) : R&D를 통한 기술 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사업화 아이템·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3-6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 및 현장형R&D 지원

국내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원가 절감 등)을 위해 제조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혁신형 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 (현장형 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자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등

- 지원내용**
- 혁신형 R&D_일반과제(신규 48.75억원) :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 2억원 한도(연 1억원, 총 사업비의 65% 이내), 2년
 - 혁신형 R&D_고도화과제(신규 37.5억원) : 국내 높은 생산비용으로 이미 해외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적·고위험 공정을 자동화·지능화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 지원
 - * 10억원 한도(연 5억원, 총 사업비의 65% 이내), 2년
 - 현장형 R&D(신규 121.25억원) :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과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1년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추진일정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혁신형 R&D	일반 고도화	'21년 12월 '22년 1월	'21년12월~'22년1월 '22년 2월	'22년 2월 '22년 3월	'21년 4월 '22년 4월
현장형R&D		'21년 12월	'22년 1월, 4월 (2회 신청·접수 예정)	'22년 2월,5월	'22년 3월,7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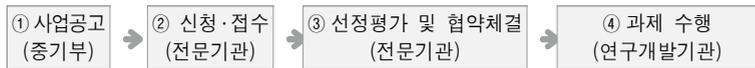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 공정기술개발의 필요성, 제조공정의 원가절감, 불량률 개선 등 생산성 향상 목표, 제조공정의 자동화·지능화·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성, 실현가능성, 기술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 (혁신형R&D_고도화과제) 지정공모 방식으로 품목에 대한 적합성, 리쇼어링 또는 오프쇼어링 방지, 수입대체 가능 여부 등
- (우대사항) 개발한 공정기술을 다른 기업에 확산·적용할 수 있는 공정 개선 특화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제출서류

- 중소기업 연구개발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총 427.05억원(신규 207.5억원, 계속 219.55억원)

* 혁신형R&D(신규 75개, 계속 278개), 현장형R&D(신규 320개, 종료 140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지원과: 044-204-726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협력사업실: 044-3000-671,678,687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탈락기업(후보기업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원 제외되는 사항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Q. 자동화 장비 구매 및 설치하는 것도 본 사업으로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공정품질은 R&D사업으로 단순 장비구매, 조립은 불가능하며, 공정개선을 위한 연구개발행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3-7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공공기술 이전을 통한 수입대체 기술 조기확보

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후속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최대 2년, 8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80% 이내)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 * 기술이전 +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 금융지원을 패키지로 하여 일괄지원

-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처리절차



지원규모

- 350억원(신규 40개 과제 내외)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60, 0650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테크브릿지(Tech-Bridge)란?

A.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공공기술(35만건)과 기술보증기금의 67개 영업점을 통해 발굴한 수요기술을 매칭 지원하는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입니다.

Q. 테크브릿지 플랫폼에 등록된 공공기술이면 모두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동 사업은 소재·부품·장비의 조속한 국산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재·부품·장비 전용예산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만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KTRS 평가 : 기보의 대표 기술평가모형(특허권 보유)으로 '경영주역량',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33개 소항목으로 구성

3-8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신북방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원천기술 상용화로 중소기업 핵심기술 역량강화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따라 해외의 높은 원천·혁신기술과 우리의 ICT·생산기술을 결합하여 후속 상용화 제품개발 및 신북방 新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수요·공급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공공기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의향서 또는 제품개발 협약서 등 기술협력의향서를 확보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술협력 수요·공급기술 품목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보유 핵심 기술 도입을 통한 후속 기술개발 및 현지 수요기술에 대한 판로개척 기술개발 지원

구분	지원기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상용화기술개발	2년 이내	4억원 이내	80%이내	품목지정

- 신청·접수**
- (상용화기술개발) '21. 1월 중 사업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양식은 사업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기술성(창의·도전성, 국제협력 기술개발방법 구체성,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사업성(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고용친화도), 정책부합성 등에 대한 평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술협력의향서, 기타 구비서류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41.9억원(신규18.9억원)
* (상용화기술개발) 신규 R&D 10개 과제 내외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12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기술협력의향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현지기관과 주관기관의 기술협력을 위한 사전협의 여부 등의 증빙으로 활용되므로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Q. 러시아, 우크라이나 기업과의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주관기관과 현지기관 간의 기술협상, 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 애로 사항 해결 등을 위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상용화지원기관을 별도로 지정 하였습니다.

3-9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사업

현장맞춤형 방역물품·기기 R&D 지원

의료기관 방역현장 애로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방역 물품 R&D를 통해 방역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K-방역의 성과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방역물품·기기 분야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최대 2년, 6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80% 이내)
- (의료기관 수요발굴) 방역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 봉사자 등의 방역물품 애로사항을 반영한 현장맞춤형 방역물품·기기 R&D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중소기업 적합품목) 중소기업 적합 방역물품·기기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처리절차

- (지정공모과제)



- (자유응모과제)



지원규모

- 151.25억원(신규 30.38억원) / (감액 시 105.87억원(신규 없음))
 * '22년 신규, 15개 지원목표(감액 시 신규과제 없음)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61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A

Q. 중소기업에 적합한 품목이란 무엇인가요?

A. 방역물품 중 중소기업에게 경쟁력이 있고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한 품목으로 이런 제품을 발굴·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Q. 의료기관 수요발굴 R&D 지원은 무엇인가요?

A. 현장 의료진, 봉사자들이 착용 또는 사용한 방역물품 애로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R&D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10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시장성이 유망한 해외인증 선별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가의 인증/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스펙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예정)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타겟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R&D 지원
 - 해외 시장규모, 진입 가능성, 중소기업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해외인증 및 규격을 선정
 - 선정된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 과제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 한도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비중	지원 방식
해외인증 규격 적합제품 R&D	최대 1년, 1.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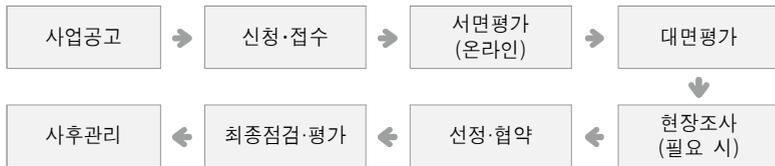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R&D 선정평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인증획득의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재무제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76.5억원(신규 51개 과제 내외)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63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Q&A

Q. 수출시 해외인증규격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예,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수출시 CE, UL 등 다수의 국가에서 환경, 안전, 위생 등 분야별로 다양한 기술 인증제도(국가인증, 강제인증 등)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Q. 해외규격인증의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A.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 전 해외인증/규격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D 사업입니다.

3-11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R&D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인프라·인력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플랫폼화)하여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개발 촉진

지원대상

- (운영기관/ 주관기관)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관으로 과제발굴, 공동R&D 수행 및 기술, 인력, 인프라 제공이 가능한 기관
 - * 운영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공동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전략품목 內 요소기술관련 연구개발 수행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제외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운영기관에서 발굴·기획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할 중소기업 매칭, 과제기획 및 기술개발 등 단계별 지원
- 1단계 : 운영기관에서 발굴한 RFP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중소기업과 사전연구 등 과제기획 지원
- 2단계 : 1단계 지원기업 중 과제기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필요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협력R&D 지원

〈지원내용 및 한도〉

내역사업	단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과제	1단계 과제기획	최대 2개월, 15백만원 이내	100%	지정공모
	2단계 협력R&D	최대 2년, 8억원 이내	75% 이내	지정공모
	운영기관 운영비	기관당 1.5억원	100%	-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예산 및 지원과제 수에 따라 조정 가능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1단계(과제기획) 요건검토 → 운영기관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개발방법 구체성,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운영기관의 RFP 적합성 검토를 통한 추천과제에 한하여 1단계 신청 가능

- 2단계(전략협력R&D) 대면평가 → 최종선정
 - 기술개발의 적정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48억원(1단계 1.5억, 2단계 69억(신규:18억, 계속: 51억), 운영기관 3억)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4-204-7769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75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A

Q. 1단계 과제기획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전략협력 R&D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 과제기획 결과를 평가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20개 내외 과제가 2단계 전략협력 R&D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1단계 신청없이 바로 2단계(전략협력R&D)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과제기획) 수행 과제만 2단계 신청 가능합니다.

3-12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제조현장에서 다수 사용 가능한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 지원

제조현장에서 다수 사용가능한 인공지능 표준모델* 확보를 위해 연구소·대학의 전문 인력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추진

* 인공지능 표준모델(예시) : 수요공급예측, 시뮬레이션, 디지털트윈, 머신비전, 예지보전 등

지원대상

- 플랫폼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교와 데이터 활용 및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재(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Korea 구현을 위해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플랫폼*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

* 공동활용플랫폼 : AI 솔루션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동·공용의 표준화를 주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틀이 되는 기술

- (플랫폼 기술개발) 제조 중소기업 플랫폼 기준 모델을 구축하여 제조 데이터의 빅데이터화, AI공동활용모델 등 플랫폼* 개발 지원

* 플랫폼 특징

- 범용·응용성 :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또는 응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
- 공용성 : 한 기업에 전유되지 않으며 여러 기업이 공용으로 활용 가능 기술
- 통합·파생성 : 단위요소 기술이 아닌 요소 기술의 통합된 형태로서 추가적인 맞춤형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되거나 파생될 수 있는 기술

- (솔루션 기술개발) 플랫폼 연계형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다수지원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최대 2년, 21억원	80% 이내*	품목지정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으로 75%→80% 추가 지원 가능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추진일정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22년.3월	'22년.3월	'22년.4월	'22년.4월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청렴서약서, 개인 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경상 기술료 납부 계획, 중소기업 확인서, 컨소시엄 협약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 기타 세부사업별 구비서류(우대사항 포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 참고

처리절차



지원규모

- 112.76억원(신규과제 53.41억원, 계속과제 59.35억원)
- * '21년 지원현황 : 6개 과제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00-0943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13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

중소기업의 효율적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 공유·확대 촉진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제외 기업

-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 ▶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또는 총괄 책임자
- ▶ 전년도 동 사업 구매 바우처 50%이상 환불한 기업
- ▶ 기타 사업공고문에 명시한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봉한 연구시설장비 및 종합서비스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 지원

- (기업선도형)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지원
-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

● 지원 방식(자유응모)

내역사업명	지원비율	지원한도(정부지원) (A)	기업부담금 (B)	바우처 발행한도 (A+B)
기업선도형	70%	10,000천원	4,285천원	14,285천원
기반플러스형	70%	50,000천원	21,428천원	71,428천원

* 지원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금액이며, 예산 소진 시 바우처 발행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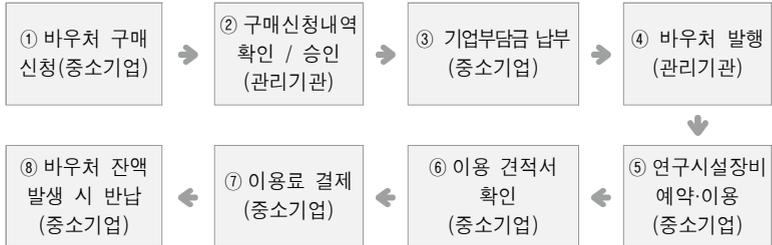
신청·접수 ●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연구시설장비활용계획서 등

처리절차 ● 사업 신청·선정



● 바우처 이용



지원규모 ● 83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 044-300-0690
 - 한국산학연합회(관리기관) : 044-410-3321, 3322
 - 전용정보사이트 : rss.auri.go.kr(연구기반공유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기업선도형과 기반플러스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기업선도형은 시험·분석서비스 등 단순 목적의 연구시설·장비이용을 지원 하지만 기반플러스형은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종합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 운영기관의 종합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동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연구시설장비 이용과 관련된 교육, 자문, 연구·분석지원 및 컨설팅 등 운영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 하여 자체적으로 구축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3-14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의 성장과 제품·공정·서비스 등 혁신이 가능한 비즈니스모델 및 소상공인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문에 명시

- 지원내용**
- (BM개발과제) BM기획(3개월) + BM개발(2년)
 -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 업종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또는 개선이 가능한 BM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생활혁신개발과제) 진단·컨설팅(2개월) + 기술개발(6개월)
 - 자체 기술개발 수행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및 판로 확보를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BM개발	BM기획	3개월, 14.5백만원	90% 이내	자유응모
	BM개발	2년, 4억원		
생활혁신 기술개발	진단기획	2개월, 5백만원	90% 이내	
	기술개발	6개월, 30백만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추후 공고 참조)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등

처리절차 < BM개발과제 >



< 생활혁신개발과제 >



지원규모 ● 41개 과제 내외, 19.6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044-204-7872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549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15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지원사업

중소기업 R&D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을 통한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 지원대상**
- (혁신제품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성공(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혁신제품 시범구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혁신제품

지원제의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지원사업 성공(완료) 판정 이력이 없는 기업
- ▶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 ▶ 성공(완료)판정 받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기술적 연관성이 없는 제품을 신청한 기업

- 지원내용**
-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기술 혁신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평가·심사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 *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3년간)
 - (혁신제품 시범구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시범 활용을 위한 구매 지원

- 신청·접수**
-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22.2월 중 공고 예정)

평가·심사 주요내용

-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및 심사
- 시범구매 적합성, 파급효과 등 수요매칭심사 및 시범구매 적정성 검토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제품소개서, 생산설비소개서, 제품규격서, 기타 관련 서류

처리절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시범구매>



지원규모

- 10억원 (혁신제품 지정 4억원, 혁신제품 시범구매 6억 원)
- *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100개 내외 지정 예정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국번없이 1357, 044-300-0751, 0756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A

Q.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이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공고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나라장터를 통해 해당 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은 후,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16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스마트화를 위한 ICT솔루션 개발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 서비스 고도화,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 기반 구축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ICT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또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기 지원된 경우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 등 지원(2년간, 최대 5억원, 총 사업비의 75% 이내)
 - * (예시) 자연어 처리(챗봇), Wifi6(고속영상통신 솔루션), 기계학습(업무 자동화), 가상·증강현실(재택근무·온라인 서비스), 컴퓨터 비전(OCR), 블록체인(거래) 등

- 신청·접수**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목적과 내용, 기술 분야 등과의 부합성,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1년 이상 과제외의 경우, 사업수행 1년 후에 진도점검 실시

지원규모

- 30개 과제(상반기) 내외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수도권업무지원실) : 02-3787-0502~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상,하반기 모집공고 중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탈락기업(후보기업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17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솔루션 도입 지원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 등 서비스 혁신 도모

지원대상

- 국내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유희·향락업
- ▶ 담배중개업, 주류 및 담배도매업
- ▶ 숙박업 및 주점업

지원내용

- (신규) 기업혁신,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등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신규 구축 지원(50% 이내, 최대 6천만원)
 - AI, 빅데이터, IoT,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솔루션 구축
 - *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
 - * 인공지능(AI) 초입 단계인 자동화 기술
 - *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데이터마닝
- (고도화) 기존 솔루션 구축기업 중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 구축된 솔루션의 성능 개선,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50% 이내, 최대 1억원)

신청·접수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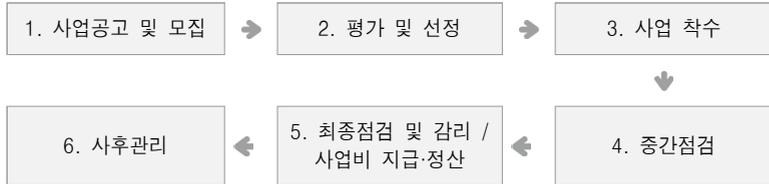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현장실사, 대면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 현장실사를 통한 점검 및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 전문가평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신규 150개사 내외(예산 90억원), 고도화 15개사 내외(15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수도권업무지원실) : 02-3787-0506~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18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지원 및 기능개선(R&D) 등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하는 사업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 ①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로 확인* 가능한 경우.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정부지원 R&D 성공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 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
 - *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 개인기업은 대표,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 보유 필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 ▶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과제에 대한 사업화 추진 유형 및 연계지원 방안 도출(80개사 내외)
- 사업화 지원
 - 개발기술의 시장성 보안을 위해 기획지원,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등 분야별 2개 이상 항목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32개사 내외)

분야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대분류	중분류	
기획 지원 (3개)	사업화 기획	기술컨설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 해결 등을 위한 컨설팅
		경영컨설팅	경영전략, 운영, 인사, 재무, 조직 등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사업화 전략 수립, 시장 규모·경쟁사 조사, 제품화·양산, 판로개척,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기술 지원 (2개)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금형 및 시제품 제작(제품개선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 포함)
	성능테스트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성능인증, 검증, 평가 * (예시)고객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 신뢰성 평가 등
마케팅 지원 (3개)	시장 테스트	시장조사	고객검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시장조사 * (예시)시장시물레이션, 고객패널조사, 시장조사·분석 등
		마케팅 전략 수립	광고·판매 전략, 가격전략, 고객관리, 매장구성전략, 소비자전략, 유통전략, 제품전략 등 수립
		전시회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홍보 및 시장(반응)조사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상용화를 위한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 (최대 1억원, 20개사 내외)
 -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기술이전
 - 기술완성도 및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의 NTB(기술은행)에 등록하여 이전기술에 대한 홍보 추진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평가 → 기술사업화 진단* → 발표평가
 - * T(Technology) : 기술완성도, M(Marketability) : 시장성, C(Capability) : 사업화역량 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사업화 지원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규모 ● 39.2억원 (기술사업화 진단 100개사, 1.8억원, 사업화 지원 30개사, 18.6억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18개사, 17.2억원)

* '21년 지원현황 : 기술사업화 진단(85개사, 1.2억원), 사업화 지원(32개사, 20억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20개사, 20억원), (총예산 43.5억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 : 055-751-98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Q&A

Q. 정부 R&D성공판정기술과 특허등록 모두 보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정부R&D성공 판정 기술 또는 특허 등록 둘 중 하나의 자격 요건만 만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화(양산화, 매출)가 진행되지 않은 기술만 신청 가능합니다.

Q. 특허 출원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사업신청기간 내 특허등록을 완료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통상실시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19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및 감축설비 보조 패키지 지원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탄소관리 강화에 따라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

지원대상

- 감축 규제대상이 아니나,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
 -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 수출기업,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협력사, 탄소다배출업종* 영위기업 등 우대 지원
 - *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제지업, 금속가공업 등
 - ** 감축 규제 대상 : (배출권거래제) 12.5만톤 이상 업체, 2.5만톤 이상 사업장의 업체 (목표관리제) 5만~12.5만톤 업체, 1.5만톤~2.5만톤 사업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목표관리제 참여업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해당 중소기업
-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 공고에 명시되어있는 지원제외 기업

지원내용

- 탄소중립 설비도입 실시·설계 및 도입비용 지원(보조율 50%)
 - (실시·설계지원) 탄소중립수준진단을 토대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도입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설비도입지원)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등 지원

신청·접수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회원가입&로그인 → 과제신청 → 우편 서류제출
 - ** 세부신청접수 방법은 모집공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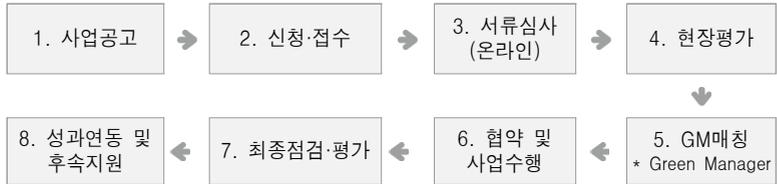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목적과 내용 등의 부합성, 탄소저감 효과에 기반한 설비,설계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 세부내용은 모집공고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예산 52.5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 : 055-751-952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목표관리제 참여업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나요?

A. 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이 중복되어 제외됩니다.

3-20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R&D)

중소기업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지원

중소기업 탄소다배출업종을 중심으로 동일·유사업종 중소기업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보급하여 탄소중립형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지원대상

- 중소기업 탄소 다배출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중소기업)과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기술개발기관(중소기업 포함)의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 (공동연구기관 ①) 선도모델 개발을 공동 수행할 기관(산·학·연)
 - (공동연구기관 ②)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선도모델을 적용할 수요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또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기 지원된 경우

지원내용

-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동일·유사업종 내 중소기업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지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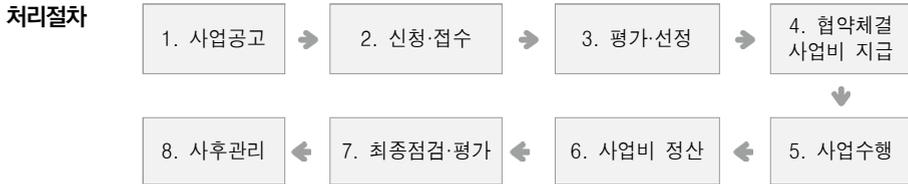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세부내용은 모집공고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목적과 내용 등의 부합성, 탄소저감 효과에 기반한 설비, 설계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 세부내용은 모집공고 참조



- 지원규모**
- 10개 과제(하반기) 내외(예산 50억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컨소시엄의 구성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R&D를 주관할 중소기업이 선도모델을 적용할 수요기업(중소기업) 및 공동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합니다.

3-21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R&D)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확보

저탄소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중소형 사업장에 적합한 탄소중립 기술 확보 및 친환경·저탄소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대상

- 중소기업을 주관연구기관으로하고, 공공연구기관을 공동연구기관으로 하는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저탄소 신유망 분야 중소·벤처기업으로 미래유망 기술 개발 주도
 - (공동연구기관) 기술이전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공공연구기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기관
 - * 기술이전법 제2조제6호 : "공공연구기관이라함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것"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또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기 지원된 경우

지원내용

-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저탄소·신유망 분야 중소기업과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신청·접수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세부내용은 모집공고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목적과 내용 등의 부합성, 탄소저감 효과에 기반한 설비, 설계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세부내용은 모집공고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8개 과제(상반기, 품목지정형) 내외(예산 30억원)
- 8개 과제(하반기, 지정공모형) 내외(예산 40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22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

“기획 → 개발 → 실증 → 확산” 전 단계에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리빙랩을 활용하여 R&D를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성과 촉진

- 지원대상**
- 리빙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컨소시엄
 - 리빙랩활용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내용**
- 리빙랩 플랫폼 구축 및 운영(10억원) : 리빙랩 플랫폼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사용자 패널 모집 및 관리, 아이디어 발굴, 사용자 실증, 성과 확산 등 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 리빙랩활용R&D(17.5억원) :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R&D에 적용하는 R&D 계획 고도화와 시제품 실증과 검증 중심의 R&D 지원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리빙랩플랫폼 구축 및 운영	10억 원	100%	자유공모, 지정공모
리빙랩활용R&D	최대 2년, 5억 원	75%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제별 공고 참조, '21.12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절차

〈 리빙랩 플랫폼 구축운영 〉



〈 리빙랩활용R&D 〉



지원규모

- 27.5억원(리빙랩플랫폼 구성·운영 : 10억원, 리빙랩활용R&D : 17.5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548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A

Q. 리빙랩과 리빙랩활용R&D란 무엇인가요?

A. 리빙랩은 ‘살아있는 실험실’,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이라는 뜻으로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을 시도하는 방법론입니다.

리빙랩활용R&D는 사용자와 연구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고도화(기획)하고 제품·서비스의 실증을 반복하는 리빙랩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말합니다.

Q. 리빙랩 운영기관 주요역할은 무엇인가요?

A. 온·오프라인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용자 패널 구성 및 교육, 사용자 패널과 기업 간의 협업 증대 및 촉진, 사용자 수요의 발굴 및 구체화, 실증 및 개선의견 발굴로 전반적인 R&D계획→실증→사업화 지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Q. 리빙랩R&D 지원분야가 있나요?

A. 소비자·주민 참여의 용이성, 시장 친화적이고 리빙랩 활용성이 높은 ‘친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3-23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

협동조합 등 중간조직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에서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업 간 성과공유·확산 및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설립을 인가 받은 협동(연구)조합

지원이 안되는 조합 (공동, 위탁 포함)

-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설립을 인가 받지 않은 협동(연구)조합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내용

- (1단계, 과제기획) 산업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기술 R&D 및 사업화 방안 기획 구체화 지원
- (2단계, R&D) 공통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
- (3단계, 성과확산) 공통기술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성과공유 확대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구 분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 한도	총사업비 구성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1단계) 과제기획	3개월, 최대 2천만원	100%	-
(2단계) 공통기술R&D	2년, 최대 10억원	75%	25%
(3단계) 성과확산	1년, 최대 1.5억원	75%	25%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22.1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기술의 수요 및 필요성, 보급·성과확산 가능성 및 파급효과, 협동(연구)조합의 개발역량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 중복성, 연구개발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 서류 등 사업 수행 관련 서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처리절차



지원규모

- ('22년) 69.6억원
- (1단계)과제기획 40개과제 내외, (2단계)R&D 30개 과제 내외 지원,
(3단계) 성과확산 30개 과제 내외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국번없이 1357, 044-300-0520~0531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A

Q.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협동조합입니다.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저희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인가를 받은 협동(연구)조합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1단계 과제기획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전략협력 R&D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 과제기획 결과를 평가하여 기술개발 필요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2단계 R&D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Q. 3단계 성과확산에는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개발된 기술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시험·인증, 장비활용, 특허 분석 및 사업화 컨설팅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4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고부가 K-건강식 선도기업 육성

건강기능식품 R&D 전주기 밀착지원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 성공률 제고

지원대상 ● (주관기관) 개별인정형 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제의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①사전검증(PoC) → ②사업화R&D → ③임상지원(Track 1단계의 후속)
 - (1단계) PoC지원 :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지원단(식약처 협업)을 활용한 사전 검증을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획 지원
 - (2단계) R&D지원
 - (Track 1) 새로운 원료 발굴 혹은 기능 개발 R&D 지원(3+2년)
 - (Track 2) 기존 기능성 원료의 흡수율 증진, 추출효율 개선, 제조방법 다양화로 新부가가치 창출하는 연구 수행을 위한 R&D 지원(2년)

〈지원내용 및 한도〉

구 분		지원한도	출연비율	지원방식	예산(백만원)
PoC 지원		최대 8주, 10백만원	100%	자유	400
R&D 지원	Track 1	최대 3년, 연 2억원	75% 이내	자유	1,400
	임상지원	최대 2년, 연 1억원	50% 이내	자유	
	Track 2	최대 2년, 연 2억원	75% 이내	자유	600

-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검증) 핵심 기술력과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지원하기 위해 PoC 단계 도입 (연구개발지원단이 제출된 사업계획서 검증)
- (R&D-2Track)과제특성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세분화 지원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4억원(신규 24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528, 국번없이 1357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중소기업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1단계 PoC가 무엇인가요?

A. PoC는 R&D 초기 기획 단계부터 기술·성능 검증, 규제기준의 적합성, 제품화 가능성을 진단·평가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Q.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지원단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지원단은 식약처 협업으로 구성되어 PoC단계의 사전검증과 R&D수행에서의 전주기 밀착지원을 하며 컨설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3-25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

산학연 플랫폼기반 협력R&D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산학연 플랫폼을 통해 혁신역량 초기 중소기업 발굴 및 협력 R&D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지원 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네트워크)를 통하여 패키지 형태로 제공해주는 대학·연구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혁신역량 초기 중소기업

지원제외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대학, 연구기관을 거점으로 하는 협력 R&D 지원
 - (산학협력 플랫폼 R&D) 대학 보유 기술, 인력, 교육 등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역량 초기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기술개발 지원
 - (산연협력 플랫폼 R&D) 연구기관의 전문기술을 활용, 신기술개발, 사업화 등 혁신역량 초기기업의 신기술 개발 지원
 - 9개 기술분야별 플랫폼 선정(①바이오헬스, ②반도체/센서, ③그린에너지, ④탄소중립, ⑤인공지능/빅데이터, ⑥5G/6G, ⑦실감형콘텐츠(AR/VR/메타버스), ⑧미래교통(자동차, 드론, 선박), ⑨스마트제조)
 - 과제당 최대 2년 4개월, 4.2억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및 한도〉

구 분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지원 연구비 비중	지원 과제수	지원 방식
산학협력 플랫폼	(유형 ①) 협력R&D(2년, 3억원 이내) (유형 ②) R&D기획(4개월, 0.2억원) +협력R&D(2년, 3억원 이내)	기획 : 75% R&D : 75%	유형① 80개 유형② 20개	자유 공모
산연협력 플랫폼	(유형 ①) 협력R&D(2년, 3억원 이내) (유형 ②) R&D기획(4개월, 0.2억원) +협력R&D(2년, 4억원 이내)	기획 : 75% R&D : 75%	유형① 60개 유형② 20개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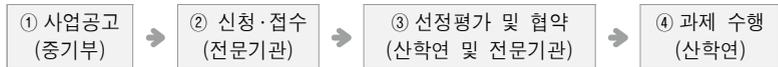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플랫폼 선정) 요건검토→심층평가→최종선정
- 기술분야별 강점을 갖춘 대학·연구기관 중심으로 중소기업 윈스톱 지원 거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적합한 기관을 선발하며, 기술개발 전문성” 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 경험과 역량 및 거점 인프라”등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평가
- 선정된 플랫폼이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공고 및 후보기업 선정
- (유형1 및 유형2) 요건검토 → 선정평가 → 최종선정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76억원(신규 76억원)
- 산학협력 플랫폼 38억원, 산연협력 플랫폼 38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4-204-7769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76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A

Q. 산학연 플랫폼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R&D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선정된 산학연 플랫폼을 주관기관으로 한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유형1과 유형2는 연구자가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과제를 신청시, 유형1과 유형2를 산학연 플랫폼과 중소기업이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3-26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D.N.A 기술기반의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개발

D.N.A(Data, Network, AI) 기술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현장수요 반영 및 기술개발 실증을 위해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필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유희,향락업, 숙박, 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스마트공장 구축이 불가한 기업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스마트 제조 3대 분야의 핵심 공급기술 개발
 - * (첨단제조)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하는 “한국형 미래/첨단 스마트공장 모델”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22~'25, 1,114억원)
 -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 공유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 및 핵심 주력산업 특화 기업 연계 플랫폼 등 개발



- 초연결 협력제조를 위한 가치사슬 통합 플랫폼 기술, 공장 운영 정보를 활용한 유연생산 최적화 기술, 산업용 엣지 기술 등 개발



- * **(현장적용)**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24~'26, 586억원)
- 현장맞춤/안전중심형 설비 적용기술,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사람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등 개발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49개 품목내에서 자유응모)

<지원기간 및 한도>

3대 분야	지원 기간	지원과제수	지원한도	매칭 비율
• 선도기술 (첨단제조, 유연생산)	최대 4년 ('22~'25)	49개(첨단제조 25, 유연생산 24)	총 36억원 이내	국고 75% 이내
• 현장적용	최대 3년 ('24~'26)	195개	총 4.5억원 이내	

* 현장적용 분야(195개 과제)는 '24년부터 모집 예정

신청·접수

- 추진일정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21.12월말	1월	2~3월	4월

* 향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공장등록확인서(수요기업)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절차



지원규모

- '22년 331억원(신규 49개 과제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혁신지원과 : 044-204-7262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71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으로 등록되어야만 참여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스마트제조 공급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동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정 품목의 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면 주관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요기업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을 의미하나요?

A. 아닙니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지 않았더라도 주관기관과 함께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기술개발 결과물을 실증할 수 있는 제조기업(공장 보유)이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4장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4-1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120
4-2 뿌리기업 혁신역량강화	125
4-3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130

4-1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사업화 성공을 위한 R&D기획 지원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지원 및 기술애로 해결, Scale-up R&D 지원을 통해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R&D 기획지원사업
 - 중기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학컨설팅센터) 대학 및 출연연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위기지역 소재 시도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내용**
- (R&D기획지원) R&D사업계획서 작성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R&D기획전문가를 매칭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 기획 지원

- (R&D기획역량강화 교육) R&D 소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R&D기획역량 내재화와 자발적 R&D 기획 촉진
- (맞춤형기술파트너)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공학컨설팅 센터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위기지역 중소기업 R&D지원) 위기지역·위기업종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진단과 R&D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R&D 기획지원	R&D 기획	최대 3개월, 8.5백만원	80% 이내	자유응모
	R&D기획역량강화교육	-	100%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최대 9개월, 30백만원	80% 이내	자유응모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Scale-up R&D지원	최대 1년, 100백만원	80% 이내	자유응모
	현장수요형 R&D	최대 2개월, 4백만원	80% 이내	자유응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공고횟수 ('21)2회→('22)1회로 집중지원
- (R&D기획지원) 實 활용도가 높은 사업계획서 제공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여 신규 지원과제수 대폭 확대(130 → 390개)

신청·접수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iris.go.kr>에 로그인 → 시스템 입력 후 제출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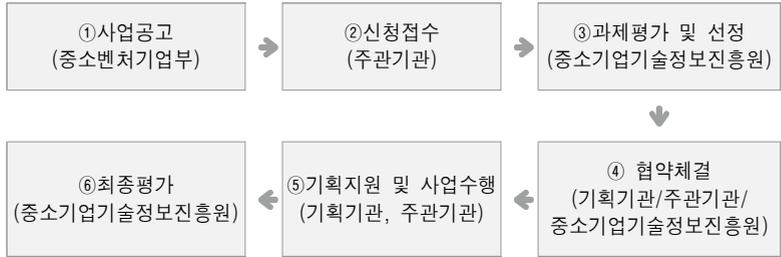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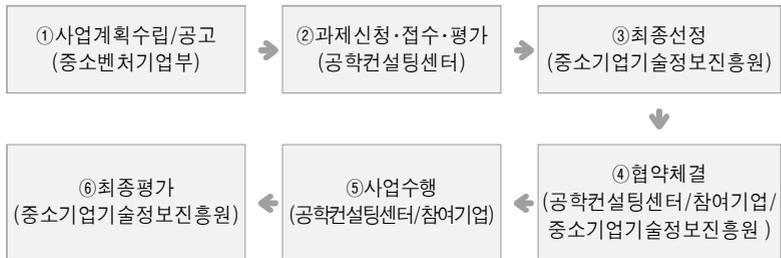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

처리절차 ● 추진절차

- R&D기획지원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공모차수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R&D 기획 지원	첫걸음 기획	1차/ 2차	'21.12월/3월	1월/4월	2월/5월	3/6월
	기획역량 강화교육·코칭	1차	'21.1	수시	-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1차/2차	'22.1 / 4	2~3 / 5~6	4~5/ 7~8	5 / 8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지원		1차	'22.1월	2월	3월	4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 142.8억원
- R&D기획지원(38.8억원) : 390개 과제 내외 / 2,300명 교육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50억원) : 167개 과제 내외
- 위기지역 Scale-up R&D 지원(54억원) : 150개 과제 내외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545, 0683, 0685, 0686
- 홈페이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www.iri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877-2041,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Q&A

Q. R&D기획지원의 기획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A. 기획기관은 기업이 신청한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 내용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성공가능성, 개발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서를 과제 수행 기업에게 제공합니다.

Q.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에서 공학컨설팅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공학컨설팅센터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권역별로 선정된 대학으로 과제 신청·접수·추천 및 과제관리 등의 역할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Q.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A.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지역입니다.
위기업종은 위기지역 소재 시·도 내 조선·자동차 업종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R&D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R&D기획이란?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기술개발 3단계(기획→R&D→사업화) 중 성과제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핵심단계

기술애로란? : 기업이 가진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 본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기반을 중심으로 사업화 자문, 기술교육, 특수감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

Scale-up이란? : 사전적으로는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뜻하며, 기술, 제품, 서비스, 생산, 기업 등의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

4-2

부리기업 혁신역량강화

부리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업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

부리기술의 육성과 발전 촉진을 위해 전문기업 지정, 부리기술 전문 인력 양성, 자동화 첨단화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1. 부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지원대상

- 「부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부리기업 중 아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지정요건
 - ① 핵심부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 ② 총 매출액 중 부리기술을 이용한 제품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 ③ 상호 출자 제한 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④ 부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89호, 2021.12.16.)

- ▶ 기술역량 : 핵심부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 ▶ 기술역량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가 140점 이상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부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14대 부리기술 활용 업종으로 확대하고, 이에 해당하는 중소 부리기업과 재직자 지원
 - * 부리기술 범위 : 구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설계 (확대 부리기술분야)

지원내용

- 핵심 부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부리기업을 부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인력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부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육성

- 신청·접수**
- 연중 상시
 - 뿌리기술 전문기업 홈페이지(www.root-tech.org)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뿌리산업매출액확인서, 품목기술 설명서 등



-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기확단 제조혁신지원과 (044-204-7263),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3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 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현장중심형 뿌리기술 Academy〉

- 지원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재직자
- 지원내용**
- 현장의 니즈, 기업별 업무환경, 개별 수행직무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뿌리기술, 설비운영, 공정개선, 기술보호 등) 제공
 - 세부사업 내역

구 분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방법
기능·기술	뿌리기술	• 초·중급 기술이론, 디지털기술, 기술트렌드 분석, 현장 애로사항 해결 및 개선 등
	기타	• 장비활용, 품질관리, 생산관리, 에너지관리, 표준화 등

- 신청·접수**
- '22년 3월 접수 예정
 - * 신청접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www.root-tech.org)를 통해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기확단 제조혁신지원과 (044-204-7263),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4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뿌리기술 코칭〉

- 지원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재직자
- 지원내용**
- 뿌리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분야별 전문가(뿌리기술 명장, 교수, 연구원 등)의 맞춤형 코칭을 통해 문제해결과 노하우 전수 등 현장역량 강화
 - 세부사업 내역

구 분	지원내용
기본형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칭전문가(뿌리기술, 스마트공장, 안전·환경, 에너지, 인증 등)가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문제해결 및 기술 노하우 전수 지원 * 최대 35시간 이내, 1~2개 아이템 대상
심화형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칭팀을 구성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하우 전수, 중장기 성장 로드맵 구축 등 심화 지원 * 최대 100시간 이내, 3~4개 아이템 대상 ** 구성 : 기술코칭전문가(뿌리기술, 스마트공장)+기술컨설팅 전문가(연구원, 컨설턴트)

심사·평가 주요내용

- 코칭 신청내용의 필요성 및 타당성, 기술파급효과, 신청기업의 추진의지 등을 평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본형 코칭과정 운영 → 현장애로사항의 수준별 구분을 통한 기본형 (35h, 전문가1인), 심화형(최대100h, 팀코칭) 코칭과정 세분화 실시

- 신청·접수**
- '22년 4월 접수 예정,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제출서류**
- 뿌리기업확인서(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증), 뿌리기술코칭 신청서
 - * 신청접수 : 뿌리기술 온라인도서관 홈페이지(<http://ppuriinfo.kpic.re.kr/>)

처리절차



지원규모

-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업무환경, 고도화기술, 수행직무 등)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의 맞춤형 코칭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제조혁신지원과 (044-204-7263),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2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현장중심형 Academys는 무엇인가요?

A. 현장중심형 기술·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민간주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Q. 뿌리기술 코칭은 어떤 전문가가 오시나요?

A. 현장니즈, 기업별업무환경, 개별수행직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코칭을 위해 교수, 연구원, 뿌리기술명장, 설비운영 전문가 등 이 함께 지도합니다.

3.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지원

지원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지원내용

- 수작업 공정과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기업 전반의 연속 공정 자동화 구축에 따른 설비 도입 및 설치 등 지원
 - * 지원제외 : 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공간, 수작업기계류, 시험·검사 비용, 재료비, 인건비
- 지원금액 : 기업당 1억원 한도(정부지원 50%, 자부담 50%)
- 지원기간 : 8개월 내외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계획의 구체성, 자동화 설비에 대한 적절성, 공정개선 기대효과, 성과목표, 사업비 집행, 보급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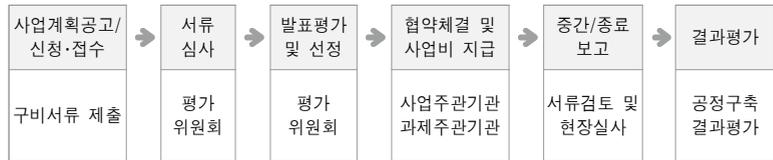
신청·접수

- '22년 3월 접수 예정
 - * 국가부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또는 www.root-tech.org)를 통해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신청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
- 뿌리기업 확인서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 기업의 3년간 재무제표
- 중소기업확인서
- 수출 실적 명세서 (직·간접 수출 확인)

처리절차



지원규모

- 뿌리기업, 20개사 내외
 - * '21년 지원 : 22개사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제조혁신지원과 (044-204-7263), 국가부리산업진흥센터(02-2183-162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A. 「뿌리법」제2조에 근거하여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참여가능하며, 확인을 위해 ‘뿌리기업확인서’를 발급한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국가부리산업진흥센터(http://www.kpic.re.kr)를 통해 뿌리기업 확인서 신청 및 발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3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급-중개-수요」 거래환경 전방위적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니즈 적극 지원

지원대상

-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 기술보증기금의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확보된 공급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 (공급기술 DB 고도화) 보유기술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공급기술정보를 기술보증기금의 테크브릿지 플랫폼에 탑재하고자 하는 기술보유자 (대학·공공연·중소기업 등)
-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
-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 보유 기술의 거래를 목적으로 기술 가치평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 중소기업이 원하는 기술수요정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술수요 작성 시 전문가 참여를 지원
 - * (주요내용) 전문 참여기관이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제안서를 대행 작성 지원
- (공급기술 DB 고도화) 텍스트 중심의 정보를 스마트화하여 중소기업 기술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직관성 제고
 - * (주요내용) 기술보유자와 전문 참여기관을 매칭하여 공급기술정보를 표준화된 기술 마케팅 키트 (SMK) 양식으로 제작지원
-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 * (주요내용) 기술이전 성사 후 중소기업이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 지원
-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 중소기업이 기업간 기술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보유한 민간기술의 가치평가 지원
 - *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이전용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경우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

도입기술의 상용화 로드맵 설정을 위한 사업화 기획지원 후 제반비용 등의 통합 지원으로 상용화 간극(도입기술 ↔ 최종제품) 해소

지원대상

-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기술이전 기업을 통한 개방형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 (제외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용요령 제8조제3항(사업계획서의 검토·확인을 적용하여 결격사항이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요건검토 사항

-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② 기개발/지원여부, ③ 채무불이행 여부, ④ 국제·지방세 체납여부 ⑤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 ⑥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 3차심사 이후 상위 20개 기업은 대면 발표 예정

지원내용

- (사업화 기획지원사업) 이전기술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밸류-업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 (주요내용) 기술사업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역량,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매칭을 통해 기업·기술진단 및 전략 컨설팅 지원

- (상용화 로드맵 지원사업) 사업화 기획지원사업에서 작성된 사업화 로드맵에 따라 이전기술의 상용화 비용 지원

* (주요내용) 협약기간 냉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시제품제작비, 기술검증·실증비, 시험·인증비, 신뢰성평가비, 지적권취득비 지원

- (이차보전 지원사업) 지식재산 인수보증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으로 자금 유통에 대한 비용 부담 절감

*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 인수보증에 따른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044-204-7785
- 기술보증기금 전국 8개 기술혁신센터
- 테크브릿지 플랫폼(<https://tb.kibo.or.kr>) 참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5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5-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134
5-2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136
5-3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139
5-4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141
5-5 스마트공장 AS 지원사업	143
5-6 데이터 인프라 구축(정보화)	145
5-7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148
5-8 기술보호 역량강화	150
5-9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154

5-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및 ICT를 접목한 생산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조선기자재 업체, 유턴기업, 광주형 일자리기업, 부리기업, 위기지역 소재기업, 일자리 안정 자금 수혜 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 청년 친화형 산단,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지구 입주기업, 소비자 수출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관련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 기업,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기업, 여성기업, 군수품 제조기업은 선정시 가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기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구축을 지원하여 목표수준 기초 달성을 위한 구축지원
고도화1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 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을 지원하여 목표수준 중간1 달성을 위한 구축지원
고도화2	지능화 솔루션(AI, CPS 등), 센서, 로봇 등을 통해 공정 최적화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수준의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목표수준 중간2이상 달성을 위한 구축지원

●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정부지원	기초	기업당 최대 0.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고도화1	기업당 최대 2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고도화2	기업당 최대 4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상생형	유형1	기초	기업당 최대 0.42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정부) * 대기업 등 30%이상, 도입기업 40%이하 부담
		고도화 1	기업당 최대 1.2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정부) * 대기업 등 30%이상, 도입기업 40%이하 부담
		고도화 2	기업당 최대 2.4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정부) * 대기업 등 30%이상, 도입기업 40%이하 부담
	유형2	기업당 최대 0.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정부) * 소기업 전용(자부담 없음), 대기업 등 50%부담	

신청 접수

- 신청기간 '22.01.(예정)부터 '22.06.(예정)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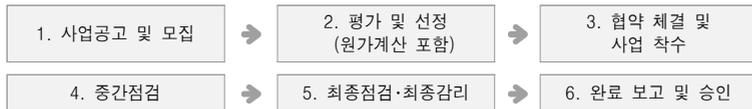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공고 첨부양식 활용)
 - * 신청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처리절차



지원규모

- '22년 3,193억원

문의처

- 상담센터 : 1644-1736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 참조

5-2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제조기업 공장 로봇자동화 지원

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제조기업들에게 필요한 '로봇엔지니어링 컨설팅', '로봇도입 지원', '로봇 활용교육' 등 후속지원까지 패키지지식 지원을 통해 제조기업들의 생산공정 스마트화를 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월말 공고예정)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지원제의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우선 지원 제조 분야

- ① 세계적으로 로봇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제조 분야
- ② 기업체 수는 많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로봇활용이 시급한 제조 분야
- ③ 로봇적용으로 생산성·매출(수출) 증대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 분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유희·향락업, 숙박·음식점

지원내용

●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안전검사까지 일괄지원

〈지원내용 상세〉

지원 분야	내 용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톨 및 전기장비 등 로봇시스템 설계 * 공정을 고려한 로봇 시스템 선정 및 설계(로봇엔지니어링)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 자동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로봇 설치 및 시운전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지원	○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 * 위험성 평가 보고서 지원 등 안전검사 지원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하고 로봇공급기업 (SI기업 등) 1곳 이상이 공급기업으로 참여

- 신청·접수**
- (신청기간) 사업공고기간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심사 → 발표평가 → 현장평가 → 사업비 심의
- 도입 공정 로봇시스템 구현의 적정성, 사업 목표의 적절성,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도입 및 공급기업 역량 등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로봇자동화 시스템 비교 견적서, 로봇자동화 시스템 사양서, 현금출자 협약서 등



- 지원규모**
- 예산 181억원(60개사 내외)
 - * '21년 지원현황 : 전국 64개 제조기업 지원(예산 181억원)
 - * 기업당 최대 3억원 지원

- 문의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성장지원사업단 : 053-210-9552~4(www.kiria.org)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A

Q. 수요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요기업(또는 공급기업)이 '사전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한 곳의 로봇공급기업이 다수 수요기업과 함께 사업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참여기업(로봇공급기업)은 복수 사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한 곳의 수요 기업에서 다수의 로봇공급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Q.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등 현재 유사 사업에 참여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현재 지원 받는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사업 내용 중복 불가)

용어설명

로봇공급기업 : 로봇을 직접 제조하는 로봇기업 또는 로봇을 공정별로 설치하는 기술을 보유한 SI (System Integration)기업이 해당되며, 수요기업에게 직접 로봇시스템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5-3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구축효과 제고를 위한 대기업 퇴직전문가 파견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쏠과정(계획-실행-운영)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21년 사업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 마이스터 사업 참여기업은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적용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 향락업, 숙박, 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등 부적합 업종

지원내용

- (지원내용)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기업에 파견(2,500개사 내외)
 - 기본 :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및 로드맵 수립 등 노하우 전수
 - 심화 : 현장제조, IT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팀을 구성해 스마트공장
 맞춤형 애로 해결

구분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기본	마이스터 1인 x 8회 (약 3개월), 252만원	90%
심화	마이스터팀(3인) x 12회 (약 6개월), 1,134만원 * 처음과 마지막 방문은 3인 필수 참여, 나머지 방문은 마이스터별 개별 방문 가능(1인당 12회 방문 필수)	

* 현장제조전문가, IT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최대 3인 1팀 기준 8일 이내 지원

신청·접수

- 기간 : '22.01.(예정)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구분	제출 서류
1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4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

처리절차



* 운영기관 별도 공고

지원규모

- '22년 약 90억원(2,500개사 내외)

문의처

- 상담센터 : 1644-1736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 참조

5-4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중견·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수준확인 지원

중견·중소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고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제도 운영

- 지원대상**
-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미참여)
 - 정부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후 추가 정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수준 상승이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참여가능)

- 지원내용**
-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지원,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

- 지원조건**
- 수준확인 비용 전액 지원

- 신청·접수**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자가진단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 제출서류 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절차



지원규모

- 15억원(1,500개사 수준확인 지원)

문의처

- 상담센터 : 1644-1736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 참조

5-5

스마트공장 AS 지원사업

스마트공장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을 통한 활용촉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효율성 향상 지원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통해 기초단계 이상으로 판정받은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기업

지원내용

- (긴급복구형)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지원
- (성장연계형*)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개선, 생산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지원
 - * 성장연계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지원결정 포함)받은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한정
- (구독형AS) 지속적인 설비관리, S/W등의 장기간 업그레이드, 공급기업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비율
긴급복구형	최대 6개월, 5백만원	50%이내
성장연계형	최대 6개월, 20백만원	
구독형AS	최대 12개월, 7백만원	

신청·접수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신청기업 아이디로 신청)

제출서류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신청서(사후관리),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 개인),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발급번호(신청서에 기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완료보고서,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수준확인서 및 도입한 솔루션, S/W, H/W 등 상세 구축 내용

* 제출서류 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절차



지원규모

- '22년 70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292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 참조

5-6

데이터 인프라 구축(정보화)

AI로 제조업 전반의 제조혁신 지원

전문가, 기업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연결하여 스마트공장의 AI 활용을 가속하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AI 제조 플랫폼(KAMP*) 구축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지원대상

- AI를 활용한 공정개선 의지가 강하고 컨설팅 및 실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 제조 공장(현장) 및 제조데이터(Raw data) 보유 필수

** 제조 Raw data는 PLC, 센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저장된 데이터를 의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이 불가능한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조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AI 컨설팅
 - AI 기술 도입으로 공장 또는 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데이터·AI 분석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현장 밀착 컨설팅·멘토링 지원
- AI솔루션 실증지원
 - 공정 및 품질개선을 목적으로 AI 기술 및 솔루션을 제조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기술 및 솔루션에 대한 실증 지원
-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클라우드 스토리지 지원
 - AI솔루션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과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지원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고성능 컴퓨팅 자원					클라우드 스토리지
GPU	CPU	메모리	스토리지	회선	스토리지
20TFLOPS 이상	2.1GHz, 16Core이상	128GB 이상	10TB 이상	1Gbps 이상	최대 2TB

신청·접수

- AI 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지원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클라우드 스토리지 지원
 - KAMP 홈페이지(www.kamp-ai.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AI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지원) 솔루션 도입 가능 여부, 사업 추진배경과 도입 필요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이해도와 추진방안, 기대효과 등 종합 평가
-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스토리지 지원) 필요서류 제출 여부 검토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AI 컨설팅 수요기업 신청서 및 붙임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절차

- (AI 컨설팅)



- (AI 솔루션 실증지원)



지원규모

- 출연

구분	규모	지원기간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비율
AI컨설팅지원	100개사	최대 2개월	기업당 20백만원	90%이내
AI 솔루션 실증지원	100개사	최대 4개월	기업당 50백만원	80%이내

문의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KAMP 홈페이지(www.kamp-ai.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41, 943~944

5-7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지역 특화 지원을 통해 지역의 인공지능 활용 제조혁신 촉진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화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제조혁신 고도화

지원대상

- (수행기관) KAMP* 기반 지역특화 플랫폼 운영, AI 학습 데이터셋·솔루션 구축, 센서클라우드 등 제조현장 적용 역량을 보유한 수행기관
 -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자격요건) 지자체가 포함된 산·학·연 등 컨소시엄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이 불가한 기업
 - 유희·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조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지역 특화 플랫폼(KAMP연계)·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 및 센서·클라우드 등 제조 현장(지역기업)의 데이터·인공지능 활용지원을 위한 지역특화 센터 구축 지원
- 참여기업 대상 지역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 솔루션 개발·실증·지원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신청·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4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각 1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처리절차



지원규모

- 출연, 1개 지역 최대 20억원(국비 50%, 지방비·민간 50%)

구분	지원 수	지원기간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비율
지역 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1개	3년	20억원(연간)	50%이내

문의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KAMP 홈페이지(www.kamp-ai.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41, 944

5-8

기술보호 역량강화

기술보호 기반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지킴서비스(보안관제, 악성코드 탐지 등 24시×365일 모니터링)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지원내용

-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 *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신청·접수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별도 공고
-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https://www.ultar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https://www.ultari.go.kr>)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및 신청양식 작성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 공지사항 게시판 內 제출서류 양식 첨부파일(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 다운로드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2	가격제안서(공급기업 작성) 1부

처리절차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 해외연계 과제 포함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 * '20년 지원현황 : 56개사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762
- 기술보호 율타리 : www.ultari.go.kr

2. 기술지킴서비스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희·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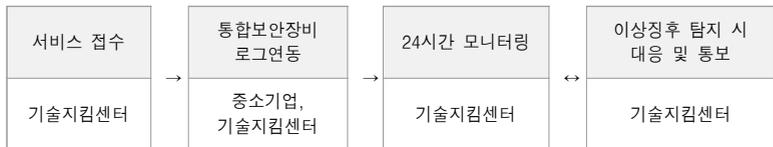
지원내용

- 보안관제서비스
 -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이상징후 모니터링 및 대응, 웹 취약점 분석, 보안사고 상황 전파 및 대응
 - 통합보안장비(UTM, IPS, 방화벽 등) 보유 시 서비스 무상제공 가능, 통합보안장비 미 보유 시 임대료(월9~13만원)는 기업부담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기업 내부 자료의 유형별(USB, 메일, 메신저 등) 자료 반출에 대한 탐지 및 분석, 이상징후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대응
 - 기업 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
 - 기업 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PC 내부 중요 자료의 불법 유출 및 암호화 방지 지원
 - 기업 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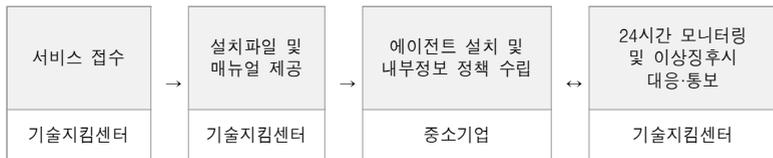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접속 → 주요사업-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 신청서 다운로드 → 내용 작성 후 인쇄 → 인감날인 → 스캔 후 이메일(monitor@kaits-info.or.kr) 전송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처리절차**
- 보안관제서비스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



- 지원규모**
- 무료(최대 5년간 지원)

* '20년 지원현황 : 10,036건(11월말 기준)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산업기술보호협회) : 02-3489-7050, monitor@kaits-info.or.kr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 www.kaits.or.kr

5-9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기술보호로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기술보호 상담, 기술자료 임치, 법무지원단, 기술보호지원반을 지원하며 기술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지원합니다.

1. 기술보호 현장자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지원내용**
- (기초자문) 기술보호 전문가가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제시
 - 보안전략 : 임직원 보안교육, 보안지침 및 절차 수립, 자산보호 관리 체계 마련
 - 보안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구축, 사이버 공격 관련 피해 복구 방안 마련
 -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 수준에 따른 보안수준 진단, 보안정책 수립 등
 - 법률자문 : 기술거래,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 유출 피해기업 분쟁 대응 지원
 - 해외진출 기술보호 : 해외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해외 기술유출 사전예방
 - (심화자문) 심각한 보안문제 해결, 기술유출 피해 대응방안 마련 등 사전 진단 결과를 기초로 심화자문 지원(소요비용의 75%, 최대 7일)

- 신청·접수**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접수로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음

처리절차



지원규모 ● 1,00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0일
 (사전진단 무료(3일 이내), 심화자문 75% 지원(7일 이내))
 * '20년 지원현황 : 875건(11월 기준)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Q&A

Q. 보안자문과 법률자문이 둘다 상담이 필요한데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연 1회 보안, 법률 자문을 각각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전략과 시스템, 스마트공장은 같은 보안분야로 분야로 분류되어 중복지원이 어렵습니다

Q. 자문신청 시, 전문가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신청 시 전문가님들의 프로필을 살펴보신 후 희망전문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신청분야 및 지역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배정해 드립니다.

2.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대상

- 타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지원내용

- 핵심기술 정보를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한 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추정력을 부여

수수료

- 신규 30만원/년(최초 임치계약), 갱신 15만원/년
 - *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 기업인 기업은 임치수수료를 1/3 감면, 5년이상 장기임치시 임치수수료를 1/2 감면
 -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거래예정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 온라인 신청 500MB 이내 임치가능 / '22.10.29일까지 시범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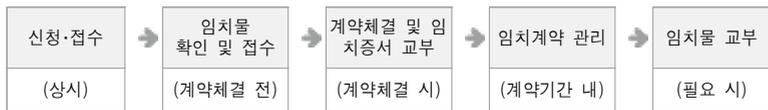
신청·접수

- 온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www.kescrow.or.kr)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s.kibo.or.kr)로 접속
- 오프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기술보증기금(대전, 인천)으로 직접 방문(방문 전 문의처로 유선 연락 필요)

제출서류

- 임치신청서, 임치하고자 하는 기술자료,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3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자료 임치센터 : 02-368-8484, www.kescrow.or.kr
테크세이프 : 1544-1120, ts.kibo.or.kr

3.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

개요

-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지원내용

-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불공정행위 입증자료로 활용
 -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 자료, 대기업 담당자의 근무부서·이름, 자료 피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지원조건

- (신청대상)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및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온라인(ts.kibo.or.kr, 기보 Tech Safe시스템)
- (수수료) 신규 55,000원/6개월, 갱신 33,000원/6개월(부가세 포함)
 -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시 신규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2개, 갱신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1개 부여(임치계약 기간 내 사용 가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3
-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 : 1544-1120, ts.kibo.or.kr

Q&A

Q.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요?

A. 기술임치제도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영업비밀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기술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는 뭔가요?

A.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술임치 제도는 맡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말긴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희·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 조정이 불성립 또는 중단되었으나, 상대기업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를 통해 소송비용 지원(최대 2,000만원)
- 조정 중 제기된 특허심판에 대해 심사를 거쳐 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신청·접수

- 유선상담 후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상시 접수)

제출서류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 등 (www.ultari.go.kr에서 서식 제공)

처리절차

- 조정·중재부 구성일로부터 3~5개월 소요



지원규모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및 관련 소요비용 지원
-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
(조정은 최대 55천원, 중재는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 기술분쟁 조정 신청현황 : 127건('20.11월 기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2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 02-368-8768, 8769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Q&A

Q.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여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Q.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분쟁사건 및 법원의 소송 중인 분쟁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의 경우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 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5.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휴·폐업중인 기업은 제외)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 (법무지원) 중소기업 대상 기술유출·탈취 등 기술분쟁 관련 법적대응 및 기술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자문
- (피해구제)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침해구제지원팀'의 소송대리 및 비용 지원
 - *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최대 4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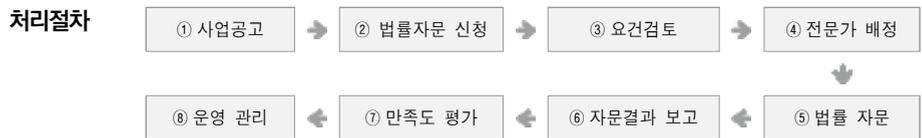
- 기술보호 관련 각종 계약서 및 약정서(수출계약서, 국내 기술공급 지원 계약서, NDA계약서, 해외 기술이전 계약서, 해외 JV 계약서, 사내 임직원 비밀보호 약정서 등) 작성, 검토 등 기업의 기술보호 관련 법무 지원
- 기술유출탈취 피해발생 시 경고장 발송, 민·형사상 소송을 위한 대응 논리 개발 등 법률지원

신청·접수

- 이메일 상시 접수(ultari@win-win.or.kr)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지원규모

- 중소기업 150개사 내외
- 변호사·변리사 자문 최대 30시간(무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6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6. 기술보호지원반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휴·폐업중인 기업은 제외)
 - * 유희·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지원내용**
- (사전예방) 기술보호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방문교육을 통해 기술보호 진단 등 사전예방 컨설팅
 - (사후구제) 지역별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대응방향 설정, 지원사업 연계 등 초동 지원

- 신청·접수**
- 이메일 상시 접수(ultari@win-win.or.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 지원규모**
- 중소기업 150개사 내외
 - 변호사·변리사·보안전문가 자문 최대 2일(무료)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6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7.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프로그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등 제외
 - * 우대지원 : 기술유출·침해 등 피해경험기업, 국가핵심기술/소부장 등 혁신·전략성장분야 중소기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단계별 지원
 - ① 기본역량강화(관리적보안) :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조직·교육·인력관리에 대한 자문비용 지원, 기술자료 임치수수료 지원
 - ② 고도화(기술적·물리적보안) : 기업의 기술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비, 암호화, 접근통제, 시설보안비용의 일부 지원

기본역량 강화	고도화
① 현장자문(최대 10일 무료)	④ 기술지킴서비스(5년 무료)
② 기술자료임치(최대3건, 90만원 한도)	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③ 법무지원단(30시간 무료(최대 7.5백만원))	(최대 50% 이내, 4천만원 한도)

- * 기업의 필요성과 보안역량, 참여이력에 따라 차등 지원
- ** 지원방법 : 간접지원(전문가 또는 전문공급기업을 통한 자문·서비스 지원)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ultari@win-win.or.kr) <’21년 2월경 공고 예정>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개인·기업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중소기업 25개사 내외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8. 디지털포렌식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휴·폐업중인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내부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피해기업 대상으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신청·접수 ● 이메일 상시 접수(forensic@win-win.or.kr)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연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 추가비용 자부담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7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9.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시범)

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분쟁 대응 유도 및 재정부담 완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술(특허, 임차기술)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정책보험에 가입 시 소요되는 비용의 70% 지원
 ● 기술보호 정책보험 상품 구성

구분	피 소 대 응(기본)	소 제 기(특약선택)
내용	•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기술, 권리)에 대해 타인(타사)로부터 제기된 법률분쟁 대응 - 경고장, 침해소송, 권리 무효소송 대응 등	• 보험가입자의 보험목적물(기술,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 협상, 침해소송 등
보장기간	단기(1년) 또는 장기(3년)	좌동
보상금액	최대 5천만원	좌동
보험효력	가입 즉시	(1년)3개월 이후, (3년)6개월 이후

* 세부 보험료와 참여 보험사는 '22년 사업공고시 게재 예정

신청·접수 ● 이메일 상시 접수(ultari@win-win.or.kr) <'22년 3월 공고 예정>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지원규모 ● 중소기업 50개사(예산 소진 시 까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204-7786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10.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증제(시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제외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수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자발적인 기술보호 역량제고 노력을 유도
 - (지원내용) 사전 컨설팅, 인증심사비용 지원 (무료)
 - (인증기준) 국내외 보안인증 지표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5개 대분류 20개 항목으로 구성
 - (인증특전)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참여시 가점, 기술보호 정책 지원 등 우대
- 신청·접수**
- 이메일 상시 접수(ultari@win-win.or.kr) <'22년 3~4월 공고 예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 처리절차**
- 
- ```
graph LR; A[① 사업공고
(중기부)] --> B[② 신청·
접수/ 선정]; B --> C[③ 사전
컨설팅]; C --> D[④ 인증심사]; D --> E[⑤ 인증심의]; E --> F[⑥ 사후관리
(협력제단)];
```
- 지원규모**
- 중소기업 30개사 내외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제3부  
인력 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제6장

# 인력 양성

|                                   |     |
|-----------------------------------|-----|
| 6-1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         | 170 |
| 6-2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기술사관 육성) .....   | 173 |
| 6-3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 | 176 |
| 6-4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            | 178 |

6-1

##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현장중심 직업교육 및 취업 연계

특성화고 학생 대상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으로 취업연계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 지원내용**
- (교육지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형 수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맞춤형 지원
  - (취업지원) 중소기업 채용 협약방식의「취업맞춤반」운영
  - (산학협력) 기업체 CEO, 해당분야 기능장 등 외부 전문강사 활용 등을 통해 직무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참여방법**
- (사업공고) '22년 1월
  - (학교)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평가항목) 사업목표의 명확성, 추진계획 및 체계의 합리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 (기업) 참여 희망 기업은 특성화고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 및 졸업 예정자 채용협약 가능(<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신청)

- 참여기업혜택**
- 참여학생과 채용조건 3자 협약(학교-학생-기업)을 맺은 후 참여기업 근무시 병역지정업체 신규지정(가점7)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자격요건 부여
  - \*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신청은 매년 6월 가능

**추진절차**

| 절차                                 | 내 용                                                                                                                          | 일정        |
|------------------------------------|------------------------------------------------------------------------------------------------------------------------------|-----------|
| 사업공고<br>(중소벤처기업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공고</li> <li>사전설명회 개최</li> </ul>                                        | 1월        |
| ↓                                  |                                                                                                                              |           |
| 사업신청<br>(학교→중진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학교) 당해연도 신규 참여학교 서류 신청·접수</li> <li>(기존학교) 완료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접수</li> </ul>           | 1~2월      |
| ↓                                  |                                                                                                                              |           |
| 선정 및 성과평가<br>(평가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학교)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발표 평가 및 선정</li> <li>(기존학교) 완료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발표 평가 및 선정</li> </ul> | 2~3월      |
| ↓                                  |                                                                                                                              |           |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br>및 사업착수<br>(참여학교↔중진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별 사업비 확정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li> </ul>                                             | 4~5월      |
| ↓                                  |                                                                                                                              |           |
| 사업비 교부<br>(중진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별 총 사업비 교부</li> </ul>                                                               | 4~5월      |
| ↓                                  |                                                                                                                              |           |
| 중간점검<br>(지방중기청→참여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학교 사업 운영현황 중간점검 실시<br/>(지방중소벤처기업청)</li> </ul>                                       | 9~10월     |
| ↓                                  |                                                                                                                              |           |
| 사업비 정산<br>(중진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정산기관 선정 및 참여학교 사업비 정산 실시</li> </ul>                                                 | 차년도<br>3월 |
| ↓                                  |                                                                                                                              |           |
| 결과보고<br>(중진공→중기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연도 특성화고인력양성 사업 결과보고</li> </ul>                                                      | 차년도<br>4월 |

**지원규모**

- 230개 특성화고('22년 예산 : 345 억원)
- \* '21년 지원 : 215개 특성화고, 341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4-204-779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65, 9822, 9862~63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참고

Q&A

**Q.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취업 예정기업의 맞춤 교육을 수행하고 취업을 확약하는 취업맞춤반, 기업의 애로과제를 학생의 과제 능력 향상에 중심을 둔 1팀-1기업 프로젝트, 산학연계 전공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Q. 취업맞춤반에 참여할 시 중소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A. 채용 이후 추가 교육비용 없이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병역 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시 우선선정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 선정평가지 가점이 부여 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용어설명

※ 취업맞춤반

- 특성화고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생, 특성화고가 취업확정 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

| 구분 | 내 용                                                         |
|----|-------------------------------------------------------------|
| 학교 | 협약체결 중소기업의 요구기술을 정밀 분석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협약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
| 학생 | 기업 맞춤형 교육 이수 이후 졸업과 동시에 해당 중소기업 취업                          |
| 기업 | 학교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무 분석시 참여하고 참여학생이 취업 맞춤반 수료 후 채용 |

\* 3자협약 : 학교-학생-중소기업이 취업약정 3자협약을 맺고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현장맞춤 교육 실시 이후 채용 연계되는 프로그램(선매칭-후교육-취업)

\* 2자협약 : 학교-중소기업이 취업약정을 통해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맞춤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에서 채용연계(선교육-후매칭-취업)

6-2

##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기술사관 육성)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교육과정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교육과정(2+2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

### 지원대상

- 사업단 : 전문대(1개) + 직업계고(N개) 컨소시엄사업단
- 중소기업 :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중소기업
- 학생 : 사업단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지원내용

- 사업단(전문대 - 직업계고)이 현장 맞춤형 연계교육과정을 정규과정과 별개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 지원
- 참여학생은 직업계고 2~3학년 진학 시 선발하여 대학 졸업시까지 최대 4년간 교육을 받은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하게 되며, 산업기사 취득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대체복무 가능(협약기업이 병역지정업체인 경우)
- 중소기업은 사업단 운영 전문대와 협의하여 기술사관 프로그램(교육과정 설계, 현장체험, CEO강의, 인력 채용)에 참여 가능

| 대 상  | 지 원 내 용                                  |
|------|------------------------------------------|
| 사업단  | · 교육연수비, 교육과정 개발비, 강사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 |
| 참여학생 | · 직업교육, 연계대학 진학,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 등          |
| 협약기업 | · 우수 기술인력 확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등             |

### 기업참여 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 사업단 중 양성 분야가 일치하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 및 졸업예정자 채용 협약 가능

\* 사업단 현황 :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http://www.smes.go.kr/sanhakin))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기술사관육성사업 사업단 정보'에서 최신정보 확인 가능

**참여기업  
혜택**

-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학생과 채용조건 3자 협약(학교-학생-기업)을 맺은 후 참여기업 근무시 병역지정업체 신규지정(가점 7+3)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자격요건 부여

\*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신청은 매년 6월 가능

**지원규모**

- 10개 사업단('22년 예산 32억원)

\* '21년 지원 : 9개 사업단, 17개 직업계고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육성과 : 044-204-7792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8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기술사관육성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어떠한 정부 지원 혜택이 있나요?**

- A. 기술사관육성사업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1순위 배정 혜택이 있습니다.

**Q. 중소기업에서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기술사관육성사업단을 운영중인 전국 사업단 중 집중 양성 분야를 확인하고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단과 채용조건 3자협약을 한 후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맞춤형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참여학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A. 기술사관육성사업 졸업자가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약기업으로 취업할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보충역은 산업기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음)

## 〈 기술사관 운영 현황 (2021년 기준) 〉

| 구분   | 전문대학      |         | 특성화고                    |
|------|-----------|---------|-------------------------|
|      | 대학명       | 양성분야    |                         |
| 서울   | 삼육보건대학교   | 의료정보시스템 | 은평메디텍고, 경민IT고           |
| 부산울산 | 동의과학대학교   | 컴퓨터응용기계 | 동의공고, 해운대공고, 부산공고, 경남공고 |
|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 전자통신    | 울산공고, 서부산공고             |
| 대구경북 | 영남이공대학교   | 기계      | 영남공고                    |
| 경기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 금형디자인   | 평촌공고, 산본공고              |
|      | 두원공과대학교   | 기계      | 두원공고, 삼일공고, 이천제일고       |
|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 이동통신    | 양영디지털고, 상일미디어고          |
| 충남대전 | 대덕대학교     | 정밀기계공학  | 충남기계공고                  |
| 제주   | 제주관광대학교   | 메카트로닉스  | 한림공고                    |

9개 사업단(전문대 9개 + 특성화고 17개)

## 6-3

##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전문학사~박사)을 설치하고, 협약 기업의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가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등록금 등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직무역량 향상 및 장기재직 유도

## 지원대상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 단,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정' 대학은 제외
-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단, 일반유형주점업, 무도 유형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학생) 현 근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중견기업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

## 학생 요건

- ▶ (재교육형) 해당기업 6개월 이상(박사과정은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 ▶ (재교육형 동시채용) 입학당시 해당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  
단, 학기개시일 기준, 해당기업에 취업해야 함
- ▶ (채용조건형) 해당기업에 재직할 경력이 없어야 함. 단, 졸업수료일 기준 취업해야 함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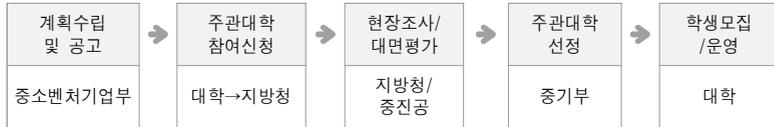
- (학생)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지원
  - 재교육형 : 전문학사·학사과정은 기준등록금의 85%, 석·박사 과정은 65% 이내
  -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동시채용 : 기준등록금 전액 지원
- (대학) 학과운영비로 학기당 3500만원 지원
- (기업) 근로자 역량 향상, 장기재직(졸업후 의무근무 1~2년) 등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 인재육성형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 정책자금 신청시 금리우대(1인 0.1%)
- 성과공유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신청·접수**

- (대학) 신규 주관대학 모집공고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 (학생 및 기업) 봄 학기 모집기간 11~2월, 가을학기 모집기간 6~8월에 전국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주관대학에 신청서 제출
- 세부 학사일정은 학교별(학과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학과로 문의

**추진절차**



**지원규모**

- 전국 78개 계약학과('22년 예산: 133억원)
- \* '21년 지원 : 49개 대학, 70개 학과, 참여학생 2,065명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044-204-7792)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055-751-9818)
- 전국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현황
- \* (<https://www.smes.go.kr/sanhakin>) → 정보마당 → 참여학과현황 → 계약학과

6-4

##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기업의 의사결정자와 데이터 과학자 간 소통을 위한 촉진자 양성

중소 제조기업의 현장 인력(재직자) 대상으로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제조데이터 촉진자로 육성, 현장의 스마트화 촉진

### 지원대상

- (교육기관) 제조데이터 인공지능 기초, 문제해결 사례 및 실습 등 교육 과정을 운영할 역량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 비영리기관 : 학교, 연구기관, 협단체, 지역테크노파크 등
- (교육생) 스마트공장 고도화 또는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AI 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을 구축수행중인 중소기업 재직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이 불가능한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조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내용

- (교육지원) 생산공정 최적화 품질예측, 설비고장 사전진단(예지보전) 등 제조현장 적용 중심의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교육 지원
  - (비대면교육, 2개월) 인공지능 기초, 문제유형별 분석방법론, 문제해결 사례학습 및 실습 등 교육과정 운영
  - (현장실습, 6개월) 스마트공장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교육 내용을 자사 현장에 직접 적용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신청·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
| 1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서류  |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 4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각 1부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처리절차**



**지원규모**

- 중소기업 재직자 100명

**문의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KAMP 홈페이지(www.kamp-ai.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41,942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제7장

# 인력유입 촉진

|                                          |     |
|------------------------------------------|-----|
| 7-1 내일채움공제 .....                         | 182 |
| 7-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 184 |
| 7-3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                   | 186 |
| 7-4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                  | 188 |
| 7-5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 .....    | 190 |
| 7-6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지역 중소기업 R&D산업인턴지원) .... | 192 |
| 7-7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 194 |
| 7-8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 196 |
| 7-9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      | 198 |
| 7-10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             | 200 |
| 7-11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                    | 202 |

7-1

##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5년 재직한 핵심인력(근로자)에게 2천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 지급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 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가입요건

- 가입 기간 : 5년 이상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최소 가입금액 : 5년간 2,000만원이상
- 공제 금리 : 변동금리 적용

### 가입혜택

- 중소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급(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
- 핵심인력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중견기업30%)

**가입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4-204-779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A. 핵심인력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상시 근로자로서 학력, 연령, 자격, 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자, 실질 경영주, 일용직 근로자 제외)

**Q.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 및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 방문 가입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가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 방문 → 청약서 작성·접수

\* 온라인 가입 : 홈페이지(www.sbcplan.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서 작성·접수

7-2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상의 목돈마련 지원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15세 ~ 34세 이하) 근로자
  - 군 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최대 39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가입요건

- 가입 기간 : 5년
- 공제 납입금
  - (청년) 5년간 72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12만원 x 60개월)
  - (기업) 5년간 1,20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20만원 x 60개월)
  - (정부) 3년간 최대 1,080만원(정액)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신청·접수

- 중소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급(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납입금액의 25%)
- 핵심인력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중견기업 30%)

**가입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육성과 : 044-204-7791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 7-3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에게 1천만원 이상의 목돈마련 지원

재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3년)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1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자를 지원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중이며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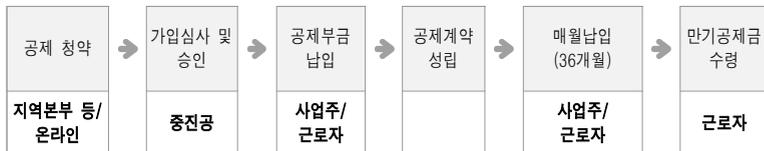
## 가입요건

- 가입 기간 : 3년
- 공제 납입금
  - (근로자)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 (기업)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 가입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육성과 : 044-204-7791, 7796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 Q&amp;A

**Q.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만 가입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해당 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자 지원 기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7-4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 지정 및 혜택부여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지정

### 지정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일반유희 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블링 및 베틱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 지정혜택

- 창업기업지원자금(일자리창출촉진) 신청자격 부여
- 중진공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의 50% 감면
-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부여
- 인재육성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등

### 지정절차



### 지정기준

- 서면·현장평가(100점 만점)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지정
- \* 평가 지표는 공고문에 공지 예정

###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후 신청 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신청 접수

지원규모

- '22년 280개사 내외
  - \* '21년 지원현황 : 280개사 지정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044-204-744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 055-751-9867

## 7-5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

중소기업 현장중심 고급연구인력 양성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장중심의 석박사 연구인력양성 모델 구축

## 지원대상

- 대학원(학과)-기업(기업부설연구소) 간 컨소시엄
  - (컨소시엄) 중소 + 대학원으로 하고, 컨소시엄에 대한 총괄책임(주관 기관)은 대학원에 부여
  - (연구인력) 최소 10명 이상의 대학원생 참여 조건(산학 공동 선발)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원내용**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장중심의 석박사 연구인력양성 모델 구축
    - 산학 프로젝트 수행,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전 과정에 기업 참여를 보장
    - 기업수요에 따른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으로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참여학생의 실무 능력 향상 유도
    - 논문 부담 없이 기업이 제시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학위 부여(프로젝트 학위제 운영)
    - 컨소시엄당 연간 3억원 내외 최대 5년 이내 지원

- 참여기업혜택**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참여학생이 사업 종료 후 참여기업 근무 시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우선지원 자격 부여

- 지원규모**
- 전국 10개 컨소시엄(중소기업-대학원 컨소시엄) (예산 30억원)
    - '21년 지원 : 전국 10개 컨소시엄(예산 30억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4-204-779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411, 0431
  - 한국산학연합회 : 044-410-3340, 3343

Q&A

**Q. 사업에는 학부생도 참여가능한가요?**

A. 동 사업은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부생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Q.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되나요?**

A.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학원과 공동으로 산학공동프로젝트, 현장실습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7-6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지역 중소기업 R&D산업인턴지원)

수요자 기반의 산학협력 활성화

지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대학간 교육 및 취업을 상호연계하여 산학협력 연구인력 양성

**지원대상**

- 컨소시엄 : 광역권역별 2개 이상의 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TP, 협·단체 등 기업 모집기관 참여가능)
- 참여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또는 정부 R&D사업 수행 중인 중소·벤처기업으로 인턴에게 R&D 직무 부여가 가능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15인 이상
  - 기업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
- 학생 : 공과대학 4학년생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공대 재학생의 기업현장 기반 R&D 실무역량 향상과 지역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R&D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지원기준 : 인턴 교육비 지원(150만원×4개월),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료시 전공학점 12학점 내외 제공 (학교 내부기준에 따름)

**기업모집**

- 기업모집은 권역별 주관 대학교에서 별도 공지하며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처리절차



지원규모

- 대학 컨소시엄 6개(예산 18.3억)  
\* '21년 지원현황 : 대학 TP-컨소시엄 등, 총 6개 과제(예산 18.3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육성과 : 044-204-779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411, 0431
- 한국산학연합회 : 044-410-3340, 3343

Q&A

Q. 산업인턴 참여학생 전공 제한이 있나요?

A. 네, 공대소속 4학년생 및 졸업예정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산업인턴 현장실습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해당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서 R&D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7-7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

공공연구기관(출연연, 전문연)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여 기술개발 지원 및 연구 노하우 전수

- 지원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 (인력)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파견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의 부도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 추후 변동 가능, '21년 공고문 확인 필요

**유의사항 등**

-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 종료된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 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 지원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연장), 기업별 1명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추가연장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 신청·접수**
- 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22년 공고문 확인 필요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 기업의 재무상태 및 R&D 투자, 연구인력 활용계획, 고용영향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선정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업현황자료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연구인력 120여명 내외(예산 82.8억원)
  - \* '21년 지원 : 110여명(예산 71.7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팀 : 044-300-0411, 0431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 044-287-7385, 7465

**Q&A**

**Q.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인력을 곧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파견가능한 적정 연구인력이 없는 경우 또는 정부지원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에도 신청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는 경우 지원자격을 유지합니다.

7-8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

신진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강화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만 39세 이하) 채용지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의 부도 또는 국제·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 추후 변동 가능, '21년 공고문 확인 필요

### 유의사항 등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기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동 사업 지원인력은 타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최대 3년, 2명이내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 기준연봉(정부지원액) : 학사 3,000만원(1,500만원), 석사 4,000만원(2,000만원), 박사 5,000만원(2,500만원)
  - (변동가능, 자세한 사항은 '22년 공고문 참조)

-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공지 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자세한 사항은 `22년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서류 서면평가
  - \* 기업의 재무상태 및 R&D 투자, 연구인력 활용계획, 고용영향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선정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업현황자료 등

**추진절차**



- 지원규모**
- 연구인력 580명 내외(예산 126.4억원)

\* `21년 지원 : 690여명(예산 139.2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력팀 : 044-300-0411, 0431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 02-3460-9130, 9082, 9090, 9124, 9171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채용지원을 받은 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후, 타회사에 입사하여 채용지원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인력의 경우 한 번 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지원받는 인력이 타 정부사업 R&D에 참여가 불가능한지?**

A. 참여 가능하며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인력의 인건비 중 기업부담비율만큼 참여율 신청이 가능합니다.

7-9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

중소기업에서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경력을 보유한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확대

### 지원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이공계 출신,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5년 이상 경력자 채용지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의 부도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 추후 변동 가능, '21년 공고문 확인 필요

### 유의사항 등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기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동 사업 지원인력은 타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최대 3년, 기업별 1명, 기업 계약연봉의 50% 지원(5,000만원 한도)

###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에서 공지 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자세한 사항은 '22년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서류 서면평가
  - \* 기업의 재무상태 및 R&D 투자, 연구인력 활용계획, 고용영향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선정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업현황자료 등

**추진절차**



**지원규모**

- 연구인력 270명 내외('22년 예산 102.9억원)
- \* '21년 지원 : 연구인력 270여명(예산 102.9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411, 0431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 02-3460-9123, 9167, 9172, 908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채용지원을 받은 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후, 타회사에 입사하여 채용지원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인력의 경우 한 번 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지원받는 인력이 타 정부사업 R&D에 참여가 불가능한지?**

A. 참여 가능하며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인력의 인건비 중 기업부담 비율만큼 참여율 신청이 가능합니다.

## 7-10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주택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됨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유희주점업, 무도 유희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부동산업의 경우 '21.6.9부터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신청·접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mss>) 온라인 신청·접수

## 확인·추천기준

- (확인)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 여부 등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 (추천)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기간·수상 경력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추천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산하인 홈페이지 참조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044-204-7448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특별공급 대상 모집공고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A. 주택건설지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에서는 전 지역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11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 자기계발 등 복지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운영

### 지원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 유의사항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발급

### 지원내용

- 휴양·여행,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 상품물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가입비 및 이용료 없음)

### 신청·접수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welfare.korcham.net)에서 온라인 가입 신청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내 이용안내 참조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 처리절차

가입 신청



가입 승인



전체 임직원 정보 등록



서비스 이용

- 중소기업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기업에서 임직원 정보를 등록하면 임직원별로 개별 아이디를 발급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044-204-7448
- 대한상공회의소 회원협력팀 중소기업복지센터 : 02-6050-3881, 3873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welfare.korcham.net) 참조

제4부

**판로 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함께 알아보는 금융지원

**Q질의** LED 조명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A답변** LED조명은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해 보십시오.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참조)

**Q질의**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직접생산 확인 현장 실태조사에 번거로움이 있는데 매년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A답변** 과거에는 1년 단위로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매년 현장 실사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생산 확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Q질의** LCD TV를 생산해 판매하는데 최근 판매가 늘면서 AS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A답변** 중소기업의 공동 AS센터를 통해 AS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시면 전국 AS 지점망을 통해 AS콜센터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질의**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성능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구매담당자가 꺼려하네요.

**A답변** 공공기관에 납품된 중소기업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성능보증제도가 있습니다. EPC(성능인증), NEP, NET, GS, 우수조달 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 가입대상입니다. 성능인증을 받으셨으니 가입하실 수 있고, 보험료율은보증보험 형식이어서 제품가격의 0.1~0.5% 정도로 저렴합니다.

**Q질의** 퓨전소스를 개발해 프랜차이즈 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려니 인력이 부족한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답변** 언론매체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수 제품을 선정해 TV, 신문 등의 언론매체 프로그램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매년 1,000여개 제품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참조)

## 제8장

#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                                |     |
|--------------------------------|-----|
| 8-1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 206 |
| 8-2 직접생산확인제도 .....             | 209 |
| 8-3 계약이행능력심사 .....             | 211 |
| 8-4 적격조합 확인제도 .....            | 213 |
| 8-5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         | 215 |
| 8-6 공공구매론(loan) .....          | 216 |
| 8-7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 .....        | 218 |

## 8-1

##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만 수주하는 공공구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대상’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공공기관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 3년('22.1.1~'24.12.31)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차년도 적용 경쟁제품 신청·접수 및 지정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 방식은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 \* 대상제품 지정 현황('22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세부품목 632개
-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 직접구매 제외경우

-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기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 ②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 ③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 도서, 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특정 공사용 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 지연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 턴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수준의 자재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신청·접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단체 또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 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공지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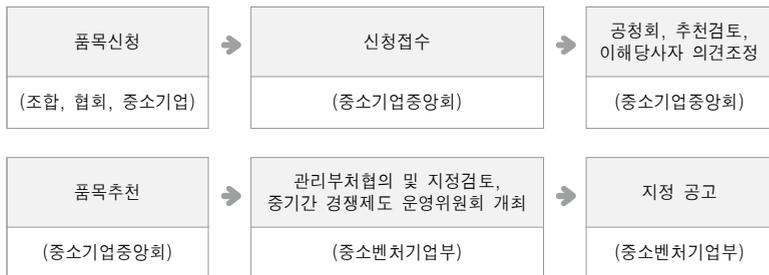
**유의사항 등**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 평가등급, 직접생산확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미리 받아야함

**제출서류**

- 지정추천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사본),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생산업체별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예상물량 관련 증빙서), 직접 생산 확인기준 등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494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2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http://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Q&A

Q.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A.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대기업과 수입 유통업체를 제외한 국내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경쟁 입찰로 하여 중소기업자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8-2

## 직접생산확인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참여자격을 부여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경쟁입찰로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경쟁입찰로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 수의 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 직접생산확인 위반으로 취소되어 신청제한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증명서 발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업체에 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등 참여 가능

- 신청·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 처리기간 :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제품별 생산공장·시설·인력·공정 등

- 제출서류**
-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생산공장 관련서류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 계약서 등 (임차시)
  - 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가입자명 명기)

- 특정자격증 보유여부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
- 생산설비 증빙서류 : 필수장비의 경우 재무제표 상 감가상각명세서, 매입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19) 28,492개사, ('20) 32,283개사, ('21.11) 28,880개사

**문의처**

- 중소기업본부 판로정책과 : 044-204-7495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51~9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http://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Q&A**

**Q. 직접생산 확인시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현장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대부분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 완비 후 약 1~2주 가량 소요되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세요.

8-3

## 계약이행능력심사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납품가격을 보장(낙찰 하한율 88%)하기 위한 제도로써, 적정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품질관리 우수 및 정부정책 호응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 심사내용

- 최저가로 응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심사기준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로 구성)
  - 10억원 이상 : 입찰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 10억원 미만 고시금액(2억원) 이상 : 입찰가격 60점, 납품이행능력 40점(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5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 고시금액 미만 : 입찰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신용평가등급) 30점 비율로 평가
    - \* 신인도(+3~-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 기재부장관 고시금액(현행 2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7년 이내)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신용등급평가에 관계없이 만점으로 평가

### 제출서류

-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 이행능력심사 자기 평가 및 심사표
- 이행능력심사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처리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49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소기업, 소상공인과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을 받지 않아도 신용평가 부분에 대하여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현행 2억원) 미만의 입찰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7년 이내 창업기업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등급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용평가 부분의 만점(30점)을 부여합니다.

## 8-4

**적격조합 확인제도**

## 조합을 통한 영세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입찰참여

적격조합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인요건**

- 해당 조합 조합원이 1/2 이상이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일 것
-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허가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중소기업벤처부가 인정하는 공공구매 업무 관련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 해당 조합원사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50% 이하

**유의사항**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중투찰 금지)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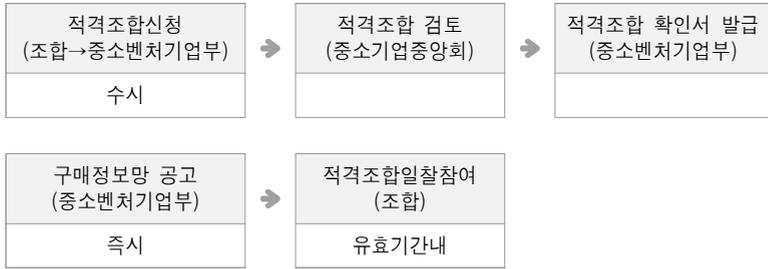
-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부여
- 조합은 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소속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중소기업벤처부 판로정책과에 접수(수시)

\* 신청양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http://www.smpp.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지원규모

- 적격조합(‘20.11) 150개 조합, 120개 제품(세부품명기준, 중복 제외)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494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6
- 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http://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Q&A

Q. 적격조합제도는 왜 시행하나요?

- A. 독자적으로는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기 힘든 영세·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해 해당 기업이 관련조합을 통해 공공시장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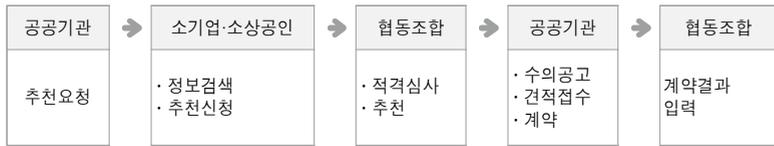
##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 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기회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제품을 구매할 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품목**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품목(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상시 공고)
- 신청·접수** ●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소액수의 계약 시스템'에 신청

**처리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495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2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은 조합원사만 참여가능한가요?**

A.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관련 조합은 비조합원사를 최소한 1개 이상 포함하여 총 5개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시 비조합원사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비조합원사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 8-6

## 공공구매론(loan)

중소기업 생산, 운영자금 지원 금융서비스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 조건 : 금리 및 조건은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
  - \* 은행의 대출심사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 공공구매론 대출 후 본 계약과 관련된 선금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대금을 은행이 지정한 별도의 계좌로 지급 받아야 함
- ▶ 채권양도 및 하도급 계약 체결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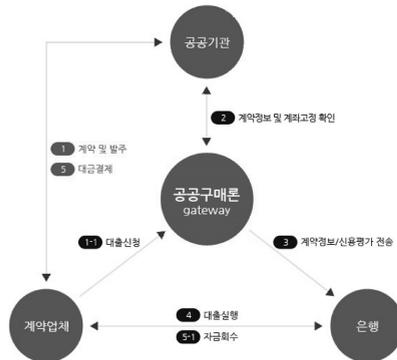
## 지원내용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약 및 은행심사를 근거로 신용대출
- 선금수령액을 제외한 계약금액에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80% 까지 대출
  - \*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의 경우 선금수령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신청·접수

- 연중 수시, 온라인(www.smpp.go.kr 접속)으로 신청

## 처리절차



문의처

- 공공구매종합정보콜센터 02-2656-9991
- 공공구매론 운영(중소기업유통센터) : 044-204-7545

Q&A

Q. 공공구매론은 시중의 모든 은행에서 이용가능한가요 ?

A. 공공구매론은 현재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총 6개 은행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향후 참여은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8-7

##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조달시장 진출 지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시행계획 공고상 과제별 신청 자격에 적합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대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미대상 기업

-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시행계획 공고상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 대기업

## 지원내용

- (혁신성장형) 멘토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 \* 기술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설비, 공장 등을 보유한 멘토기업(중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 (소재부품과제)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제품의 혁신성 및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
  - \*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최종 원제품 조립을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 (역량강화형)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시공 등의 역량 제고를 지원
  - \* 공사 분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 계약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에게 기술, 시공 능력에 대해 멘토링을 실시하는 방식
- (기술융합과제) 서로 다른 기술·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협력을 통해 생산된 융합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21년 신설)
  - \* 주관이 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서로 다른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 신 융합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 지원하는 방식

- (가치창출과제) 사회적·경제적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기술·서비스 또는 품목으로 상생협력하는 제품을 지원하는 과제 ('21년 신설)
  - \* 정부 정책에 부합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업 간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만들어진 상생협력제품에 대해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방식

**신청·접수**

- 수시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면평가) 상생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발표평가 수행
- (현장평가) 협약 이행 가능성, 신청기업의 현황 및 생산설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방문 평가
- (심의위원회) 대면평가, 현장보고서 결과 및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 확정을 위한 심의·의결

**제출서류**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주관기업-협력기업간 상생협약서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사업계획서 및 제품규격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구매수요에 따른 지원규모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 : 042-712-5631 ~ 6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544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Q&A

**Q.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신청일로부터 최종선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신청접수를 마감한 후 서류검토, 대면평가,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선정되므로 약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상생협력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기간은?**

A. 최초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총 6년).  
단, 지원대상 선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합니다.

## 제9장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     |
|-------------------------|-----|
| 9-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 222 |
| 9-2 성능인증제도 .....        | 225 |
| 9-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 227 |

## 9-1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 등 13종)을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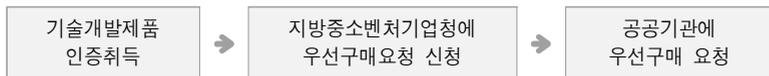
##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13종
- 성능인증,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S,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지정물품,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녹색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적합성인증제품, 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 혁신제품, 재난안전인증제품

## 지원내용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NEP, NET, GS,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9종)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 가능
- 지원대상 13종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선구매요청을 할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요청한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

## 처리절차



▶ 우선구매요청은 공공구매정보망 이용([www.smpp.go.kr](http://www.smpp.go.kr))

## 지원규모

-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하며, 해당 기관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 하도록 규정
  - \* ('16) 3.70조원, ('17) 4.50조원, ('18) 4.52조원, ('19) 5.35조원, ('20) 5.63조원

문의처

● 관할지역 중소벤처기업청

| 소 속   | 연락처          | 소 속 | 연락처          |
|-------|--------------|-----|--------------|
| 서울    | 02-2110-6323 | 울산  | 052-210-0012 |
| 부산    | 051-601-5128 | 강원  | 033-260-1671 |
| 대구·경북 | 053-659-2236 | 충북  | 043-230-5388 |
| 광주·전남 | 062-360-9147 | 충남  | 041-415-0605 |
| 경기    | 031-201-6936 | 전북  | 063-210-6483 |
| 인천    | 032-450-1134 | 경남  | 055-268-2542 |
| 대전·세종 | 042-865-6157 | -   | -            |

● 기술개발제품 인증기관

|                        |                      |                              |                                   |                 |               |
|------------------------|----------------------|------------------------------|-----------------------------------|-----------------|---------------|
| NEP, NET<br>(과학기술)     | 한국산업기술<br>진흥협회       | 02-3460-9185<br>02-3460-9023 | 우수조달물품,<br>우수조달<br>공동상표<br>지정물품   | 조달청             | 070-4056-7525 |
| NET<br>(건설, 교통)        | 국토교통과학<br>기술진흥원      | 031-389-6485                 | NET(환경)                           | 한국환경산업<br>기술원   | 02-2284-1642  |
| NET<br>(보건의료)          | 한국보건산업<br>진흥원        | 044-202-2971                 | NET(방재)                           | 한국방재협회          | 02-3472-8072  |
| 성능인증                   | 중소기업<br>유통센터         | 042-712-5641~7               | 녹색기술                              | 한국산업기술<br>진흥원   | 02-6009-4436  |
| GS                     | 한국산업기술<br>시험원        | 02-860-1568                  | 구매조건부<br>신기술,<br>민관공동<br>투자기술     | 중소기업기술<br>정보진흥원 | 042-388-0100  |
| 성과공유기술<br>개발과제<br>성공제품 | 대중소기업<br>농어업<br>협력재단 | 02-368-8972                  | 산업융합품목<br>산업융합,<br>신제품적합성<br>인증제품 | 국가산업융합<br>지원센터  | 031-8040-6832 |
| 우수R&D혁신<br>제품          | 한국산업기술<br>진흥협회       | 02-3460-9025                 | 물산업우수<br>기자재<br>지정제품              | 상하수도협회          | 02-3156-7843  |
| 혁신시제품                  | 혁신시제품<br>선정위원회       | 070-4056-7664                | 재난안전<br>인증제품                      | 행정안전부           | 044-205-4188  |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http://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Q&A

**Q. 성능인증(EPC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A.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구매 가능하도록 인증하는 제도

**Q. GS(Good Software / 우수소프트웨어)**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수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써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됨

**Q. 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인증)**

A. 기술표준원이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Q.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

A. 기술표준원이 제품기술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Q. 우수조달물품**

A.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신기술, 우수품질 제품을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이 해당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가능함

**Q.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A. 5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우수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되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함

**Q. 구매조건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제품**

A. 제품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R&D 사업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임. 공공기관이 구입할 수 있는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임

**Q. 녹색인증대상제품**

A.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증해주는 제도로써 산업부 산하 녹색인증사무국에서 인증 및 관리 추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됨

\*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http://www.greencertif.or.kr))

9-2

## 성능인증제도

###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합니다.

(성능인증 취득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13종
    -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판정 제품, NET 적용제품, NEP, 특허 및 실용신안제품, 우수조달물품 등이며 대상품목의 상세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

- 지원내용**
- 공공기관은 성능인증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신청·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성능인증 전문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 제출서류**
- 필수 첨부서류 : 성능인증 제품 규격서, 신청근거서류(특허증 등), 시험성적서

**처리절차**



- 지원규모**
- 발급건수 : ('19) 366건 → ('20) 394건 → ('21) 357건 (10월기준)
    - \* 성능인증 발급은 신규, 연장신청 건수를 포함 (발급년도 기준)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042-712-5643~7)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Q&A

**Q.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성능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A. 성능인증은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3개월(적합성심사, 성능검사 기간 포함) 정도 소요됩니다.

**Q. 성능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VAT를 포함하여 77만원의 심사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하나, 창업기업(7년 이내)이면서 소기업인 경우 20~3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9-3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강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활성화와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구분   | 기업                                                            | 제품                                                           |
|------|---------------------------------------------------------------|--------------------------------------------------------------|
| 창업과제 | 중소기업자(조합제외)로<br>설립7년 이하 창업기업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br>수의계약이 가능한 9종                              |
| 일반과제 | 중소기업자(조합제외)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br>수의계약이 가능한 9종, 제품별<br>공공조달 계약실적 최대 20억원 이하 |
| 소액과제 | 중소기업자(조합제외), 설립 7년 이하<br>창업기업 또는 기업 공공조달<br>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기업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br>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우수발명품,<br>상생협력제품          |

### 지원내용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되면, 제도 참여 구매기관의 제품 수요 발생 시 각종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품 구매를 지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신청·접수

- 공고를 통해 일정기간 제품 모집
- 공고확인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mss.go.kr)접속 - 사업공고
- 제도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 접속  
제도신청 - 시범구매 - 시범구매신청

### 제출서류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온라인작성)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제품설명서, 규격서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등

**참여구매기관** ● 489개 기관 참여 (수시모집)

〈 시범구매제도 참여 구매기관 현황('21.10월)〉

(단위 : 개)

| 행정기관(264) |     |        |        | 공공기관(225) |        |          |        |        | 합계  |
|-----------|-----|--------|--------|-----------|--------|----------|--------|--------|-----|
| 국가 기관     | 지자체 | 국가 의료원 | 시도 교육청 | 공기업       | 준정부 기관 | 기타 공공 기관 | 지방 공기업 | 지방 의료원 |     |
| 17        | 245 | 1      | 1      | 36        | 83     | 12       | 93     | 1      | 489 |

**처리절차**



**운영실적**

- ~'21.10, 누적
- 선정제품 수 : 819개 제품
- 구매제품 수 : 860개 제품
- 구매금액 : 6,518 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판로정책과, 044-204-7547)
- 중소기업유통센터(시범구매팀, 042-712-5622~6)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제도신청-시범구매)

## Q&amp;A

**Q. 시범구매에 신청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뭔가요?**

A.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 ② 조달청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 ③ 특허청 우수발명품
- ④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제품

**Q. 시범구매제품 지원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인증(지정)기간이 없는 경우 인증(지정)일로부터 3년)
-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빠른 날

**Q. 시범구매 신청일로부터 최종 선정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신청 마감일로부터 제도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최종 선정까지는 약 2개월~2.5개월이 소요됩니다.

**Q.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 선정 시, 구매기관과 100%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구매기관의 상황 또는 협상과정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매 계약 전 참여기업이 납품을 포기하거나 구매기관이 시장 환경이나 조직상황으로 해당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제10장

# 마케팅, 홍보 지원

|                                  |     |
|----------------------------------|-----|
| 10-1 유통망진출 지원 .....              | 232 |
| 10-2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        | 235 |
| 10-3 중소 소모성자재(MRO) 납품기업 지원 ..... | 237 |
| 10-4 대한민국 동행세일 .....             | 240 |

## 10-1

## 유통망진출 지원

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민간 유통사와 연계한 기획전, 전용 판매장 입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와 홍보 강화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온라인) B2B 제품, 수입품, 건설자재 제품 등 취급 기업
-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건강보조/기능식품,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등
- ▶ (오프라인) 대기업, 단순수입제품, 1차식품, 냉장냉동을 필요로 하는 식품 등 제외
- \* 단, 선정심사 시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점 가능

**지원내용** ● (온라인) 우수 제품 발굴·검색,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TV홈쇼핑 방송, T 커머스 방송, V커머스 홍보·판매 등

● (오프라인)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 증기제품 전용판매장 운영하여 판매 공간, 인력, 홍보, 기획전 등을 지원

- \* 현황(7개소)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3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및 판교점, 부산역, 행복한백화점

**신청·접수** ● 판판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판판대로.kr)

- 판판way(우수제품 지원사업), 판판셀러(쇼핑몰 통합관리)

- \* 세부 일정 및 지원 대상·내용 등은 판판대로(마케팅 지원사업) 사업 공고문 참고

\* 판판대로(www.판판대로.kr)는 '22년 3월 이후 활용 가능.

이전에는 기존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를 통한 신청·접수(사전 문의 필수)

**필요서류** ● 상품 기술서, 제품 카달로그(이미지), 기타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절차** ● 온라인 (우수 제품 발굴·검색)



● 온라인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지원 등)



● 오프라인 (매월 입점기업 선정)



지원규모

- 14,778백만원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유통센터
  - (온라인) 02-6678-9343, 9344  
02-6678-9811, 9812, 9814, 9712, 9724, 9323, 9325
  - (오프라인) 02-6678-9721~9725
- 중소기업부(www.mss.go.kr)
- 판판대로(www.판판대로.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판판대로'는 무엇인가요?**

A. '판판대로'는 판로지원 종합 포털입니다.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마케팅 트렌드, 콘텐츠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판대로는 2022년 3월 중 오픈 예정입니다. 판판대로 오픈 전에는 기존 유통플랫폼인 아이스타즈 ([www.imstars.or.kr](http://www.imstars.or.kr))에서 마케팅 지원사업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Q. 판판way(우수제품 지원사업)에 가입조건이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후 원하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종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V커머스가 무엇인가요?**

A. 비디오(Video)와 커머스(Commerce)의 합성어로,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모든 상거래행위를 포괄합니다.

최근 온라인시장 성장세에 맞추어 인터넷방송, 동영상광고 등의 영상제작 및 온라인쇼핑몰·SNS 등과 연계한 홍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0-2

##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A/S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공동 A/S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객 신뢰도 향상 등 판로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공장에서 일반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 ▶ 단순 유통 기업(렌탈전문 기업 등)
- ▶ 국내 제조 없이 해외 생산만 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해외 생산은 해외 자사 공장 및 OEM만 인정, 단순 수입 제품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A/S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여 제품 구매, 사용법, 수리·접수 등 고객상담 서비스와 자사 제품 품질관리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 (3년) 자부담 30% / (2년 연장 시) 자부담 50%

### 신청·접수

- 판판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판판대로.kr)
  - 판판way(우수제품 지원사업)
  - 증빙서류와 기업 현황(사무실, 공장) 등을 방문 확인하고,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외부평가위원)를 통해 기업 선정
    - \* 세부 일정 및 지원 대상·내용 등은 판판대로(마케팅 지원사업) 사업 공고문 참고
    - \* 판판대로(www.판판대로.kr)는 '22년 3월 이후 활용 가능, 이전에는 기존 ایم스타즈(www.imstars.or.kr)를 통한 신청·접수(사전 문의 필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OEM계약서(국내 외주 생산만 해당),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재무제표(최근 2년), 카탈로그, 기타 인증 등

**처리절차**

- 지원규모**
- 6,230백만원 (550개사 예정)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24~5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판판대로(www.판판대로.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Q.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사업의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3년간 참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A/S 인프라 및 운영을 위해 3년 후 2년 유예 심의를 거쳐 최장 5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A. 17개 품목(완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가전, 주방가전, AV기기, PC기기, 멀티미디어, 차량제품, 조명기기, 가구, 의료기기, 유아용품, 스포츠제품, 소프트웨어, 산업용기기, 생활용품, 패션잡화, 뷰티, 홈인테리어·홈데코 품목

**Q. 판판대로를 통한 사업 신청 후 절차는 무엇인가요?**

A. 제품 품목 등을 검토하고, 3~4일 내에 전화 회신드리며, 기업 방문 일정과 서류 제출 등 이후 단계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0-3

## 중소 소모성자재(MRO) 납품기업 지원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기업 판로지원

중소 소모성자재(MRO) 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소모성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및 판로확대를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내 소모성자재 납품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업자

**지원내용** ●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판로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코칭, 입찰정보제공, 납품관리시스템 제공 등 종합 지원

● 세부지원내용

| 분 야           | 내 용                                                                           |
|---------------|-------------------------------------------------------------------------------|
| 온라인교육         | • 입찰(공공조달, 주한미군 등 해외전자입찰), 마케팅 전략(물류, 상품기획 등) 등 중소기업 취약분야별 콘텐츠를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제공 |
| 입찰정보 제공 및 컨설팅 | • 조달청 입찰정보 분석(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MRO 입찰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입찰컨설팅 연계          |
| 현장코칭          | • 1:1 현장방문을 통해 취급 품목, 목표시장 등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입찰수주, 마케팅 등) 제시               |
| MRO 납품관리 시스템  | • 납품 중소기업이 입찰 또는 계약시 제품 주문·발주·납품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토록 제공                     |

**신청·접수**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http://www.imstar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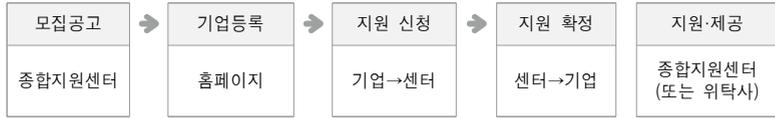
● 세부 사업별로 신청·접수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사전 문의 필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

- \* 신청양식은 지원사업별로 상이함에 따라 중소기업 판로지원 포털사이트인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에 게재된 세부 공지사항 참고

**처리절차**



-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에 게재된 세부 공지사항 참고

**지원규모**

● '22년도 6억원 이내(1,170개사 예정)

- \* 지원내용 별 지원규모, 지원금액, 보조율 등은 사업별 공고에 따름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26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 044-204-791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 Q&amp;A

**Q. 중소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존 중소기업자는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A.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라 해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 계열회사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Q. 구매대행기업은 납품기업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A. 구매대행기업이란 구매시스템 및 물류/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거나 계약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소모성자재 납품기업입니다.

※ 구매시스템 : 계약을 통한 B2B 구매대행을 영위할수 있도록 구축된 내부 온라인 시스템으로 각종 소모성자재의 상품소싱, 주문, 배송, 정산, 거래처관리, 실적관리 등의 기능을 보유

※ 물류/배송 체계 : 구매시스템을 통해 주문된 상품을 주문사에 전달하는 수송 및 보관체계

**Q. 비소모성자재로 분류되는 물품은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A.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원자재(건축 철강, 목재, 시멘트, 모래, 석유, 석탄 등) 및 식자재, 간행물(신문, 잡지 등), 유형고정자산(선박, 차량, 전동차, 기계설비 등)

▶ 용어설명

**소모성자재(Maintenance Repair & Operation: MRO)** : 기관 운영 및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

## 10-4

## 대한민국 동행세일

대규모 상생 행사를 통한 내수 활성화

내수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생 및 할인 행사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B2C 제품 취급 중소기업·소상공인(必 온라인 상세페이지 보유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수입제품, 주류(전통주 제외),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소프트웨어, 산업재, 원·부·중간자재류 등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비대면·온라인 판매전, 대형 유통·제조기업과 연계한 상생 특별전, 지자체 연계 할인 행사 등 내수 활성화 캠페인

## 신청·접수

- 판판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판판대로.kr)
  - 판판way(우수제품 지원사업)
    - \* 세부 일정 및 지원 대상·내용 등은 판판대로(마케팅 지원사업) 사업 공고문 참고
    - \* 판판대로(www.판판대로.kr)는 '22년 3월 이후 활용 가능, 이전에는 기존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를 통한 신청·접수(사전 문의 필수)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표준재무제표 증명, 국제·지방세 완납증명서, 제품 카탈로그, 지적재산권(해당 시)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500백만원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23, 9325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판판대로(www.판판대로.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5부  
수출 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제11장

###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                          |     |
|--------------------------|-----|
| 11-1 수출바우처 .....         | 244 |
| 11-2 수출컨소시엄 .....        | 248 |
| 11-3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   | 250 |
| 11-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 252 |
| 11-5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 254 |
| 11-6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    | 257 |
| 11-7 K-스타트업센터 .....      | 259 |
| 11-8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 | 261 |
| 11-9 브랜드K 육성관리 .....     | 263 |

11-1

수출바우처

수출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중소기업 수출규모별(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수출 전 과정에 이르는 마케팅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최대 지원금 한도 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매출액 10억원 미만) 70%, (매출액 10~50억원 미만) 60%, (매출액 50억원 이상) 50%, 물류전용바우처는 일괄 70% 보조

| 세부사업명         | 예산<br>(백만원) | 지원규모<br>(개사) | 지원 대상                         | 지원한도<br>(백만원) |
|---------------|-------------|--------------|-------------------------------|---------------|
| 내수기업          | 24,670      | 990          | 전년도 직접수출 '0'인 내수 중소기업         | 30            |
| 수출초보기업        | 23,000      | 950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30            |
| 수출유망기업        | 20,000      | 555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50            |
| 수출성장기업        | 17,000      | 330          |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80            |
| 수출강소기업        | 11,000      | 300          |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100           |
| 물류전용<br>수출바우처 | 11,860      | 847          | 국제운송비(해상 및 항공 등) 지원 희망 중소기업   | 20            |

\* 신청수요에 따라 배정예산 및 지원규모 변경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 동일한 수출단계(내수, 초보, 유망, 성장)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법인
- ▶ 사행산업 등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서비스를 패키지(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 지원영역          | 지원항목                                                                                                                                                                                                                                                                           |
|---------------|--------------------------------------------------------------------------------------------------------------------------------------------------------------------------------------------------------------------------------------------------------------------------------|
| 디자인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각종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li> <li>▪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종이/전자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 (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룸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BI·CI 등</li> </ul>                                                                               |
| 홍보동영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li> <li>▪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li> </ul>                                                                                                                                                      |
| 조사/일반 컨설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li> <li>▪ 서비스 주요내용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국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li> </ul> |
| 통번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li> <li>▪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li> </ul>                                                                                                      |
| 역량강화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li> <li>▪ 서비스 주요내용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 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li> </ul>                                |
| 해외규격 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li> <li>▪ 서비스 주요내용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li> </ul>                                                                                |
| 특허/지재권/시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AEO인증 획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li> <li>▪ 서비스 주요내용 :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AEO인증 획득 등</li> </ul>                                                                                   |
|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li> <li>▪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환보험 등</li> </ul>                                      |
| 홍보/광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li> <li>▪ 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및 사후정산,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li> </ul>                                                                                      |

| 지원영역          | 지원항목                                                                                                                                                                                                                                                                     |
|---------------|--------------------------------------------------------------------------------------------------------------------------------------------------------------------------------------------------------------------------------------------------------------------------|
| 브랜드 개발·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li> <li>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 인증, 위변조방지 등</li> </ul>                                                                                                                      |
|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전시회/상담회/세미나/설명회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해외영업 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li> <li>서비스 주요내용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의료기기 제품설명회 등</li> </ul> |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li> <li>서비스 주요내용 :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li> </ul>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성장바우처에 수출강소트랙 신설, 혁신바우처는 폐지하여 수출성장단계로 단일화
  - 혁신바우처 트랙 폐지에 따라 舊 혁신바우처 트랙 대상기업에 가점 신설
  - 중진공과 지방청만 운영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편하여 일원화 관리
- 물류바우처 지원트랙 신설
  -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완화를 위해 국제운송비, 보험료로 사용 가능한 물류전용 바우처(최대 2천만원, 보조율 70%) 지원
- 수출두드림사업 참여기업 우대지원
  - 수출가능성이 높은 수출유망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수출 두드림기업'이 사업신청시 우선선정 우대

신청·접수

- '21.12월, '22.4월(예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현장평가(글로벌 역량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글로벌 역량평가 :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공통역량 등 5개 분야 등을 평가 (고용영향평가 반영)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공고문 참고)

**처리절차**



**지원규모** ● 3,972여개사(전체 예산 1,075억원)

\* '21년 지원현황(12월 기준) : 총 3,941개사 내외(본예산 1,063억원, 추경 109억원)

**문의처**

-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나요?**

A.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Q. 동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내용을 어떻게 활용가능한가요?**

A. 동 사업 선정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전략컨설팅,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통번역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서비스를 수행기관을 통해 활용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여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내용 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Q. 수출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진행할 때,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외에 참여기업에서 원하는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A. 해외전시회, 해외규격인증, 해외홍보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수행기관 등록은 수시로 이루어 지므로 기업이 원하는 수행기관이 있을 경우 등록된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11-2

## 수출컨소시엄

품목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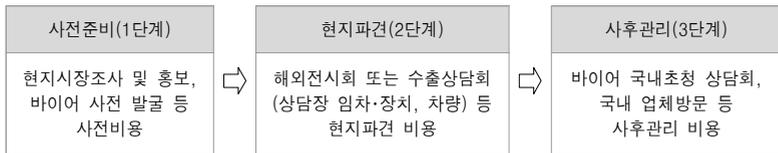
동일·유사업종 중소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체결까지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수출유관기관 등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자원이 안되는 기업**

- ▶ 세금(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 지원내용**
- 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비율 : 사업단계별 공통비용의 70%



- 신청·접수**
- (온라인)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smes-expo.go.kr/sme-expo](http://www.smes-expo.go.kr/sme-expo))에서 신청
    - 주관단체 :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지원사업 → 주관단체 → 참가신청”
    - 참여기업 :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사업정보 → 수출컨소시엄 → 참가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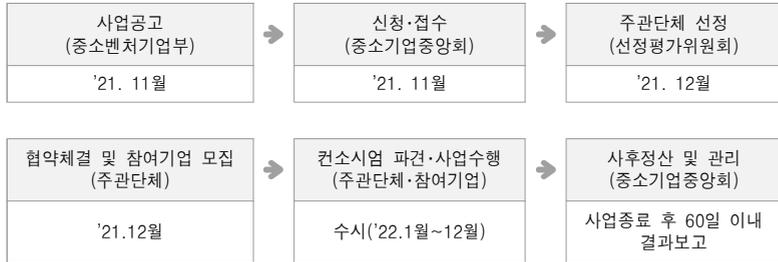
- (오프라인) 사업모집공고 신청 서식 및 관련 붙임서류 우편 제출
  - 주관단체 :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
  - 참여기업 : 각 세부사업의 주관단체로 제출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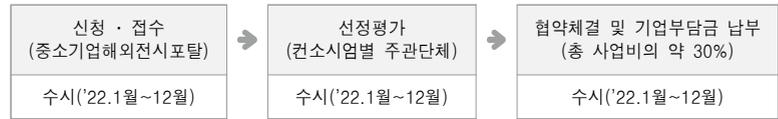
- (주관단체)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영계획서 등 (사업공고 참조)
- (참여기업)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 실적 등 각 주관 단체별 요구 자료

**처리절차**

- 전체일정



- 참여기업



**지원규모**

- 약 120개 컨소시엄 내외, 141.1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 02-2124-3291~6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www.smes-expo.go.kr/sme-expo](http://www.smes-expo.go.kr/sme-expo))

11-3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온라인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및 자사 쇼핑몰을 활용한 판매지원, 공동물류, 온라인전시관 운영 등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온라인수출 활성화 】

- (쇼핑몰 활용 판매)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 판매 촉진을 위한 교육, 입점 지원,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수출지원
- (자사몰 활용 판매)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사 쇼핑몰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기술, 마케팅 등 지원
- (온라인수출 인프라) 온라인 수출 저변확대를 위한 온라인전시회 운영, 규제개선, 동향정보 제공 등 지원

【 물류 및 인프라 지원 】

- (공동물류 지원)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물량(개별·소량 배송)을 공동 집적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 및 풀필먼트 등 물류서비스 지원

**신청·접수**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해 신청 및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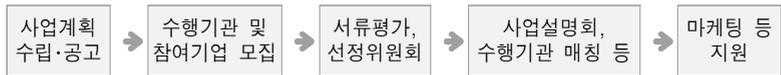
- 공통 : 상품의 시장 경쟁력(수출품목 시장성, 해외배송 적합여부), 수출 준비도(해외규격인증 획득 여부, 현지어 포장) 등

- 공동물류 : 주요 수출국, 역지구 쇼핑몰 사이트 보유 여부, 월평균 배송 물량, 이용희망 물류사 등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5,807개사 내외(367억원)

**문의처**

- 고비즈코리아 (kr.gobizkorea.com)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4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인증·시험비용 지원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NMPA, NRTL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 동 사업에 참여중인 자 또는 기업
-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 동 사업(중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하여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모델, 파생모델 포함)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부터 과제수행 기간(2년)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가능
-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 동 사업(중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10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횟수가 최근 5년간(사업참여 연도 기준) 2회 이상인 기업\*
  - ※ '22년도 1차 지원제외 대상 : '18년~'21년도 사업에 참여하여 모집 차수별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2회 이상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유의사항 등

-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 할 수 있음(www.exportcenter.go.kr-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컨설팅기관)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지원

\* 전년도 매출액기준 30억원 이하 기업 : 70% 지원, 30억원 초과 기업 : 50% 지원

**신청·접수**

| 구분    | 1차      | 2차     |
|-------|---------|--------|
| 신청·접수 | 21년 12월 | 22년 4월 |

- \* 온라인 접수(www.exportcenter.go.kr) 후 지방청 평가, 운영위원회 선정결과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획득 후 완료보고에 따라 지원금 지급
- \* 자세한 일정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주요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조

**제출서류**

- (필수서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전년도 재무제표증명원 등

**처리절차**

|                    |              |                                    |
|--------------------|--------------|------------------------------------|
| 사업계획 공고            | 중기부          | ▶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고                    |
| 신청서 접수             | 지방청          | ▶ 온라인 신청 시 신청기업 본점 소재지 지역을 선택하여 접수 |
| 신청업체 평가            | 지방청          |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 지원대상업체 선정          | 운영위원회        | ▶ 지원대상 업체 선정                       |
| 협약체결               | 관리기관         | ▶ 관리기관 ↔ 참여기업 협약 체결                |
| 인증획득 추진            | 참여기업 (컨설팅기관) | ▶ 인증신청, 제품시험, 공장심사 실시              |
| 중간보고(필요시)          | 참여기업         | ▶ 과제추진 상황 및 비용지출 등 보고              |
| 완료보고               | 참여기업         | ▶ 인증획득 여부 및 지원성과 등 보고              |
| 인증사실 확인 및 정부지원금 지급 | 관리기관         | ▶ 인증사실확인<br>▶ 정부지원금 정산 지급          |

**지원규모**

- 630여개 사, 전체 예산 153억원
- \* '21년 지원현황 : 520여개사, 총 156억원 지원

**문의처**

- 관리기관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 전화 : 02-2164-0173~8, FAX : 02-507-8118
- \* 사이트 : www.exportcenter.go.kr

## 11-5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자금·보증·해외마케팅 지원시 우대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수출금융·보증 등 우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기업이 참여 할 수 있으며, 중기부,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20개 수출지원유관 기관을 통해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각 500만불 미만인 기업(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없는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휴·폐업중인 업체
-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 ▶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 ▶ 기타 사업공고시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시 우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 (금융 및 보증지원)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 심사 완화
- (기타)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국외 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전자상거래 맞춤형 무료컨설팅, 물류비 할인 및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신청·접수**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심사·평가 주요내용**

- 수출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평가, 혁신성 등
-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을 위한 별도 평가기준 마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평가기준 비교〉**

| 제조업 평가기준        |     | 서비스업 평가기준     |     |
|-----------------|-----|---------------|-----|
| ▶ 수출신장유망성 6개항목  | 45점 | 수출신장유망성 3개항목  | 35점 |
| ▶ 수출활동수행능력 3개항목 | 15점 | 수출활동수행능력 3개항목 | 15점 |
| ▶ 기술성 3개항목      | 15점 | 서비스제공 능력 5개항목 | 25점 |
| ▶ 재무평가 4개항목     | 20점 | 재무평가 4개항목     | 20점 |
| ▶ 혁신성 평가 1개항목   | 5점  | 혁신성 평가 1개항목   | 5점  |

**제출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인터넷 접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인터넷 접수), 전년도 및 신청년도의 수출 실적증명원(현장 확인), 전년도 재무제표(현장 확인)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1,000개사 내외(상·하반기 2회 선정)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044-204-7512
-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좋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사업참여시 가점 또는 우대지원을 받으며,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각종 수수료 및 대출금리 인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출유망중소기업은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A. 지정 후 2년동안 유효하며, 4회에 한합니다. 다만, 수출증가율이 우수한 경우에 한해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Q.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18년 하반기 부터 일부 사행성 업종을 모든 업종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11-6

##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임차료의 80% (2차연도는 50%) 지원

해외 진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조기정착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세계 주요 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지원 및 현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 (업종) 불건전 영상게이미기 제조업, 건설업, 주류·담배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의업 등
- ▶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실질적 기업주 포함)

**지원내용** ● 임차료의 80%(2차연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 현지 시장 정보, 마케팅·법률·회계 등 자문 및 컨설팅
- 공유오피스를 통한 단기출장지원, 현지파견직원의 행정지원

**신청·접수** ● 연중 수시(일부 사업은 공고 예정)

- (입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하고, 제출서류에 대해 우편 접수
  - \*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중진공 글로벌협력처 수출인큐베이터 담당자 앞
- (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접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공고 예정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입주) 경영평가, 진출 준비도, 해외시장성, 일자리창출 등
  - \* (우대사항) 수출유망중소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지사회사업참여기업, 코트라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진공 Family 기업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파견자 재직증명서, 파견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신용정보 제공동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12개국 20개소\*에 독립실 및 공유오피스 운영
- \* ('20년 기준) 총 261 독립실 : 시카고, L.A., 워싱턴 D.C., 뉴욕, 베이징, 상하이, 시안, 충칭, 광저우, 호치민, 하노이, 프랑크푸르트, 도쿄, 방콕, 양곤, 멕시코시티, 산티아고, 두바이, 알마티, 모스크바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685, 9674, 967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이 아니라도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공유오피스는 예비창업자 등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시 사무공간, 상담실 등을 소정의 실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독립실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입주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활동 실적에 따라 최대 4년(연장 2년) 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연장을 신청하시면 입주 활동의 적극성, 입주 후 수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용어설명**

**공유오피스** : 중소기업이 수출 활동을 위하여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지역에 중·단기 출장 시, 수출인큐베이터 내 공용 사무공간 지원

11-7

## K-스타트업센터

글로벌 스케일업을 위한 해외진출 플랫폼

국가별 혁신거점에 설치된 7개국 K-스타트업 센터에서 현지시장 진입과 안착, 스케일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국가** ● 7개국(스웨덴, 핀란드, 미국, 인도, 싱가포르, 이스라엘, 프랑스)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기 투자를 유치한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내용**
  -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지역별 특화업종을 중심으로 현지 시장 태핑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 본격 시장안착을 위한 ‘정규’ 프로그램 지원
    - 단기 프로그램 : 현지 산업관계자 미팅 및 시장조사를 통한 태핑 (Tapping) 기회 및 출장경비 등 제공
    - 정규 프로그램 : 6~10주 간 현지에서 비즈니스 매칭, 현지진출전략 멘토링, 글로벌 대기업과의 밋업 등으로 구성된 현지 프로그램 참가 및 기업지원금 지원
  - 현지 사무공간 입주지원(스웨덴 스톡홀름, 미국 시애틀, 인도 뉴델리, 싱가포르)
  - 비즈니스패키지 지원 : 현지 창업정책 및 투자 동향, 법률/규제, 특화업종의 시장현황, 주요 경쟁사, 비자취득, 법인설립, 생활정보 등 상시 제공
- 신청·접수** ● '22.3월 예정
- 제출서류** ● 국·영문 사업신청서 등
- 처리절차**

|         |   |                    |   |                     |   |               |
|---------|---|--------------------|---|---------------------|---|---------------|
|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요건검토,<br>서류/발표평가    | ➔ | 단기·정규<br>프로그램 |
| 중소벤처기업부 |   | 온라인<br>(K-Startup) |   | 창업진흥원,<br>현지 액셀러레이터 |   | 현지 액셀러레이터     |

\* 위 절차는 변동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센터입주는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지원규모

- 프로그램 지원 120개사 내외

문의처

-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실 : 02-3440-7324, 73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686, 9682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11-8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 활용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공동수주, 법인설립, 해외유통망 입점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참여 중소기업이 5개사 미만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컨소시엄의 경우

### 지원내용

- 해외거점 :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업종·진출지역별 특성을 살린 제품 현지화 및 안정화 등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활동 지원
- 해외홈쇼핑 : 해외홈쇼핑 방송지원, 현지화조사단 파견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 수출상담 및 시장조사 지원
- 한류연계 : 한류(K-POP, K-Food, 드라마/예능, 게임 등) 연계하여 뉴미디어(인플루언서, SNS, V커머스 등) 및 한류스타 IP 활용, 수출전문 기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 〈사업 유형별 업체당 최대지원 한도액 및 주요 지원항목〉

| 사업유형      | 세부내용 및 지원규모                                                                                                                                                                                                                                                                                           | 지원항목                                                                                                                                               |
|-----------|-------------------------------------------------------------------------------------------------------------------------------------------------------------------------------------------------------------------------------------------------------------------------------------------------------|----------------------------------------------------------------------------------------------------------------------------------------------------|
| 해외거점 활용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유형·단계별 중·장기 판로개척 활동 60% 이내 지원<br/>(최대 3년 장기과제 지원 가능, 단 2·3차년도 정부보조를 50% 이내, 연도별 성과평가 후 계속 지원여부 판단)</li> <li>▪ 대·중소기업 1:1 매칭 가능<br/>(공동수주, 시범사업 등)</li> <li>▪ 중소기업 1개사당 2,000만원 한도<br/>(지역별 차등화 적용, 공동수주 또는 시범사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최대 1억원 한도 내 지원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조사비, 교육/컨설팅비, 브랜드/인증비, 현지화 개발비, 공간임차료 및 장치비, 제품운송비, 판촉비, 간담회비, 운영비, 통역·안내원 및 상담 주선용역비, 홍보비 등</li> </ul> |

| 사업유형              | 세부내용 및 지원규모                                                                                                                                                                               | 지원항목                                                                                                                               |
|-------------------|-------------------------------------------------------------------------------------------------------------------------------------------------------------------------------------------|------------------------------------------------------------------------------------------------------------------------------------|
| 해외<br>홍소평<br>방송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홍소평 방송 및 소요비용 70% 이내지원</li> <li>중소기업 1개사 당 최대 2회 지원</li> <li>1회 지원 시 최대 2,000만원 한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영상제작비*, 제품현지화** 등</li> <li>* 인서트 동영상, 현지 라이브 방송 제작</li> <li>** 디자인, 기능 및 성능개선 등</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소평 연계 해외시장 진출 활동 지원</li> <li>1회 지원 시 최대 2,000만원 한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차료, 통역 및 상담주선 용역비, 해외마케팅비, 간담회비 등</li> </ul>                                               |
| 한류연계<br>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사, 콘텐츠 연계 해외 프로모션 등 60% 이내 지원</li> <li>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2,000만원 한도 (B2C, B2B 프로그램 모두 포함, 지역별 차별화 적용)</li> <li>* 스타마케팅은 중소기업당 최대 4,000만원 이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간임차료 및 장치비, 제품운송비, 판촉비, 교육비, 무대행사비(이벤트), 간담회비, 운영비, 통역·안내원 및 상담주선용역비, 홍보비 등</li> </ul>     |

**신청·접수**

- '22.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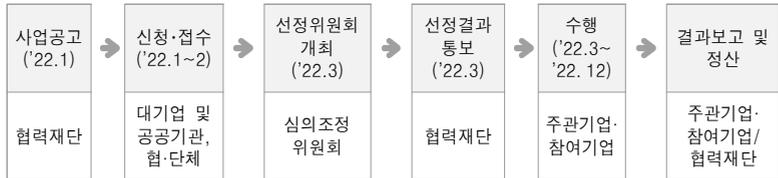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동반진출 계획 타당성, 효율성 및 이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처리절차**



**지원규모**

- 1,200개사 내외 ('22년 : 171.1억원)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글로벌협력부 : 02-368-8752~5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11-9

## 브랜드K 육성관리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 '브랜드K' 통한 해외판로지원

우수한 품질과 혁신성 있는 제품임에도 상표 인지도 부족으로 해외 판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제품을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인 '브랜드K'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국내 생산(Made in Korea) 및 소비재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
- 『Made in Korea』요건 : 본사 및 생산시설 한국 소재, 제조비용 60% 이상(R&D, 고용 등), 한국 발생 핵심 가공공정을 한국에서 진행 등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기업경영 악화 등으로 실질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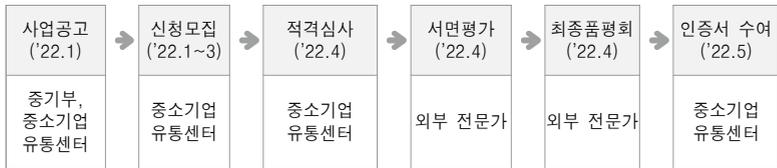
### 지원내용

-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브랜드 K」로고(상표) 사용 권한 부여(2년)
- 홍보마케팅 지원
  - 국내외(코엑스, 베트남 호치민) 브랜드K 전용 홍보관(플래그십 스토어)을 통해 브랜드K 및 제품 홍보 지원
  - 브랜드K 광고영상 및 브랜드드 콘텐츠 송출, 제품 e-카탈로그 배포 등을 통해 홍보 지원
- 연계지원
  - 국내 대규모 판촉 행사(대한민국동행세일, 크리스마스 마켓) 시 홍보 및 판촉 지원
  - 해외인사 국민방문, 국제행사, 한류행사(KCON 등) 시 브랜드K 홍보관 운영 및 판촉 지원
  - 수출바우처, 신시장진출자금,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등 수출사업 참여 시 우대 지원

- 신청·접수**
- '22. 1월 ~
  - 아이스타즈 홈페이지 통해 신청/접수
    - 접속(<https://www.imstars.or.kr/>) → 상단의 『사업안내·신청』 클릭
    - 좌측의 『사업신청-마케팅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진행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OEM 계약서 등), 국세 및 지방세 완납에 관한 증명서 등

- 처리절차**
- 브랜드K 제품 선정(100개사 내외)



- 지원규모**
- 300개사 내외('22년 : 26억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044-204-7505
  - 중소기업유통센터 브랜드K 지원팀 : 02-6678-9311~5
  - 아이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http://www.imstar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Q&A**

**Q. 꼭 국내생산이어야 하나요?(해외 OEM 등은 안되나요?)**

A. 브랜드K 선정제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증하는 “우리나라 제품”이기에 반드시 국내에서(자체공장 등)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제6부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Q&A



함께 알아보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역기업 지원

**Q질의** 가사일을 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 등을 개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답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분야를 단계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 (재)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부터 기술개발, 시제품화, 판로 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센터에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립니다.

**Q질의** 여성기업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A답변** 기업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해드립니다. 여성 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 여성경제인협회 지회에서 7일 이내 현장실사를 통해 여성기업 확인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검토하여 온라인상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여성기업확인서 발급사업설명 참조)

**Q질의** 여성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어도 어디가서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쉽게 물어보고 저의 일 같이 해결해주는 곳은 없나요?

**A답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내에 “여성경제인 DES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의 해결방법을 찾아 낼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가 직접 애로해결을 도와 드릴수도 있습니다.

**Q질의** 후천적 시각장애인입니다. 나이도 젊은데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창업을 해보려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A답변** 안마나 역술, 의류리폼 사업 등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구요. 관련 창업교육이 필요하다면 장애인 창업교육을 신청하셔서 창업기초교육과 기술 특화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장애인 창업교육 사업설명 참조)

**Q질의** 청각장애인인데 작은 국수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규모에 올라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해볼까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우수 장애인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수출마케팅을 지원하여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제12장

# 여성기업 지원

|                                    |     |
|------------------------------------|-----|
| 12-1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 268 |
| 12-2 여성창업경진대회 .....                | 271 |
| 12-3 W-창업패키지 .....                 | 273 |
| 12-4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 275 |
| 12-5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          | 278 |
| 12-6 W-디지털판로지원 .....               | 280 |
| 12-7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 | 282 |
| 12-8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지원 .....     | 284 |
| 12-9 여성경제인 DESK 운영 .....           | 286 |
| 12-10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        | 288 |
| 12-11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          | 290 |

12-1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육성

초기(예비) 여성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보육공간, 분야별 전문상담(컨설팅), 창업정보 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예비 여성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초기 여성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기업
-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 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아이템을 영위 하는 기업
- ▶ 공고일 기준 타 기관에 공간(입주) 지원을 받고있는 기업

### 지원내용

- 창업보육공간
  - 개별시설 : 창업보육실(입주일로부터 1년, 심사 후 2회 연장 가능)
    - \* 입주공간면적 : 33.1㎡ 내외
  - 공동시설 : 코워킹스페이스, 스튜디오, 여성전용휴게실, 공동 사무기기, 초고속인터넷 등
- 분야별 전문상담(컨설팅) 제공
  - 경영, 회계, 법무,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산업디자인 개발,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 판로(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각종 제품판매 플랫폼 입점지원) 등
- 창업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등
  - 여성기업(인), 창업지원기관, 지역단체 등 네트워크 연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중소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지정
  - 전국 18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지정

**신청·접수**

- 전국 18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개별모집)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입주기업 수시모집(창업보육실 공실 발생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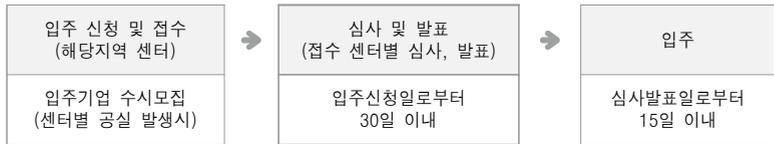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자 역량, 사업계획서 타당성,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2개년 재무제표 (해당자에 한함), 대표자 이력서, 회사소개서 각 1부

**처리절차**



**지원규모**

- 전국 18개 지역센터 238개 창업보육실(개별입주실) 운영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27, 7431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1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지역센터 연락처〉

| 센터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
| 중앙   | (02) 369-0900  | (06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성빌딩 4층              |
| 서울   | (02) 713-0280  | (0417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
| 부산   | (051) 465-1001 |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
| 대구   | (053) 742-5192 | (42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
| 광주   | (062) 527-1612 | (6125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80번길 5, 2층                 |
| 대전   | (042) 526-2862 | (3402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2층     |
| 인천   | (032) 822-9622 | (216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53, JK루체스타 5층           |
| 울산   | (052) 998-8585 | (44677)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20, 3층                     |
| 강원   | (033) 241-3475 | (24234)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
| 경기   | (031) 211-2235 | (16393) 경기도 수원시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5층           |
| 충북   | (043) 236-6561 | (2855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67, 4층                |
| 전북   | (063) 272-9906 | (549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
| 경남   | (055) 294-9608 |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차동로48번길 44, 16층 1601호-1602호    |
| 제주   | (064) 726-4467 | (632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15길 23, 2층              |
| 세종충남 | (041) 569-0572 | (3111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
| 전남   | (061) 284-4343 | (5856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 86, 4층(한양에드거차)        |
| 경기북부 | (031) 868-8316 | (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층               |
| 경북   | (054) 476-3999 | (39370)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18, 스포츠컴플렉스 2동 101동(공단동) |

Q&A

**Q. 입주시 임대보증금, 관리비는 어떻게 산정, 관리되나요?**

A. 전국 18개 지역센터에 238개의 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약 100만원~150만원에 관리비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입주사 사무실 전용면적에 센터별로 책정된 ㎡당 건물관리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입주당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모집 대상에 예비여성창업자도 모집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주신청 입주당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반도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여성창업보육센터가 다른 창업보육센터와 차별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여성기업만 입주를 할 수 있기에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이 쉬우며, 여성기업의 특징을 반영한 자체 육성사업 연계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12-2

##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창업분위기 조성

여성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육성하여 여성의 창업을 촉진합니다.

**지원대상** ● 창업 후 5년 미만 여성기업 창업자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장관상 수상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 동일 또는 유사 아이템으로 최근 3년 이내 타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
- ▶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아이템

**지원내용** ● 시상 및 포상(1인 최대 상금 1,000만원 이내 및 중소기업부장관상)  
 ● 수상자 상위 15팀 이내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권 부여  
 ● 투자유치 연계, 언론홍보, 교육·컨설팅, 마케팅 등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IR 전문가 코칭 및 네트워킹 데이 등 후속지원 강화

**신청·접수** ● 2022년 상반기  
 ● 신청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수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준비도, 기술성 사업성, 경영진, 재무계획성, 경쟁력,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가자 지식재산권 서약서 각 1부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총 32개팀
  - 중기부장관상 : 6팀(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 후원기관장상 : 26팀(장려상 4팀, 특별상 2팀, 입상 20팀)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27, 7431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4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12-3

## W-창업패키지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창업분위기 조성

여성 초기(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아이템 실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창업 후 5년 미만 여성기업 창업자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공고일 기준 타 부처 또는 기관에서 사업화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기업)
- ▶ 지방세, 국세 등 체납 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아이템을 영위 하는 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지원

- 1개사 200~700만원
- 창업 사업화자금 관련 교육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사업화자금 지원금 증액 및 지원 대상자 확대

**신청·접수** ● 2022년 상반기

- 신청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수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준비도, 기술성, 사업화 가능성, 경영진, 재무계획성, 경쟁력, 성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화자금 활용 계획서 각 1부

처리절차



지원규모

- 100개팀 내외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기업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27, 7431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4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12-4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입찰 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기업
  - \* 민법상 법인, 특수법인(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기타법인(영농조합법인, 특허법인 등)
- ▶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협동조합이 아닌 경우
  -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 지원내용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신청·접수

- 연중수시(온라인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중소기업 회원가입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확인 → 신청/발급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자가진단 →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면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해당기업 소유여부 확인 및 직접방문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직접경영여부 확인 (1인기업 등의 경우 비대면 조사)

### 제출서류

- 상법상 회사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필요시)

- 개인사업자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및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공동대표인 경우)
- 협동조합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처리절차**



**지원규모**

- 여성기업 약 35,000개사
  - \* 여성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기업에 한함, 위 지원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신청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을부 정책총괄과 : 044-204-7427, 7431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 지역별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접수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지회)

| 지회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
| 본회   | (02) 369-0932  | 06224)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
| 서울   | (02) 702-4244  | 04174)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
| 부산   | (051) 465-1493 | 48730)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
| 대구   | (053) 756-0006 | 42040)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
| 광주   | (062) 527-6028 | 61250)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                 |
| 대전   | (042) 526-2861 | 34025)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C동 228호 |
| 인천   | (032) 260-3602 | 21633)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1층   |
| 울산   | (052) 998-8585 | 44677)울산시 남구 돌질로 20, 3층                      |
| 강원   | (033) 233-5505 | 24234)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
| 경기   | (031) 211-0292 | 16393) 경기도 수원시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5층          |
| 충북   | (043) 231-7807 | 28558)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67 4층                  |
| 전북   | (063) 272-9906 | 54940)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
| 경남   | (055) 212-1240 | 51391)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1601호          |
| 제주   | (064) 726-6008 | 63277)제주시 관덕로 15길 23 선우빌딩 2층                 |
| 세종충남 | (041) 569-0570 | 31110)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
| 전남   | (061) 281-2612 | 58567)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 한양애드가 4층            |
| 경기북부 | (031) 868-8313 | 11473)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층               |
| 경북   | (054) 475-4563 | 39370)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18, 스포츠컴플렉스 2동 101호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기업을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 Q&amp;A

**Q.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서류를 업로드 하고 신청하시면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저희회사가 다른지역으로 이전했는데 주소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로그인 후 나의 업무→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 확인에서 “확인서 발급정보 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입력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신 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에 연락 하시면 재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용어설명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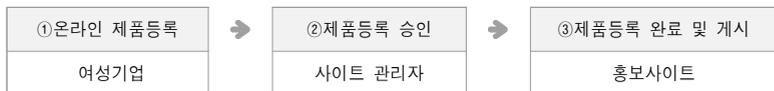
## 12-5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및 입찰정보서비스 제공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홍보사이트를 통해 공공기관에 여성기업제품 정보를 제공하며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및 입찰 참여기회 증대를 위해 업종별 맞춤형 입찰정보와 전자입찰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지원내용**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제품 등록·홍보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 증대
- 여성기업제품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입찰실무교육을 통해 여성기업 판로 확대 지원
- 입찰의 개요 및 절차, 계약방법, 투찰금액 산정 및 적격심사 등 입찰 관련 교육 제공
- 신청·접수**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shopping.wbiz.or.kr) 일반회원가입 (가입시 회사정보입력) → 확인업체 자동인증 → 제품등록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biz.or.kr) 사이트 내 입찰실무교육 공고에 따라 신청
- 제출서류** ● 여성기업 확인서
- 처리절차** ●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운영



지원규모

●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21년 지원현황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운영 (1,984개사, 17,571개 제품 등록)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27, 7431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0920(사이트 운영자)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Q.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는 무엇인가요?**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의 일정비율이상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비율이란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는 3%를 의미합니다.

**Q. 여성기업 제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여성기업 제품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 업체수 : 약 57천개). 사이트 로그인 후 첫 화면의 상단「마이페이지-기업정보조회-여성기업-엑셀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업체명과 품목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shopping.wbiz.or.kr)를 통해서도 여성기업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여성기업 확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에 의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중소기업부 고시(제2016-49호)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2-6

## W-디지털판로지원

여성기업의 TV홈쇼핑 진출지원

국내 판로 개척 및 확대를 희망하는 여성기업제품을 선발하여 교육·멘토링을 통해 TV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방송 등 입점을 지원하고, 입점에 필요한 영상제작 및 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홈쇼핑 및 일반소비자가 구매가능한 B2C 상품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여성기업

**지원내용** ● 교육, 품평회, 방송수수료,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 홈쇼핑 인서트영상 제작비, SNS 광고 홍보영상 제작비, 1:1전문가 멘토링 등

**신청·접수** ● '22.1 ~ 3월(예정)

● 신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종합정보망(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제품소개서, 판로별 입점지원 신청서

**처리절차** ● 홈쇼핑 및 이커머스 입점, 제품기획, 마케팅, 유통 전반 교육



● 판로별 품평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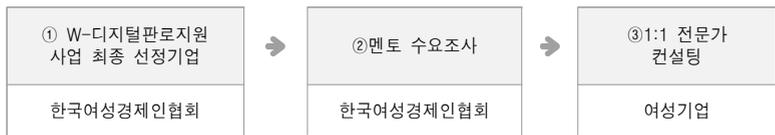
● **홈쇼핑 및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



● **영상 제작비 지원**



● **1:1 전문가 멘토링**



**지원규모**

● **여성기업 500개사**

\* '21년 지원현황 : 교육 570개사, 1:1전문가 멘토링 50개사, 방송 17개사, 라이브커머스 10개사, 홈쇼핑 인서트 영상 제작비 지원 8개사, SNS광고영상 제작비 지원 10개사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27, 7431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58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12-7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여성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여성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하여 수출기업화, 수출유망기업화, 수출교육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수출희망 여성기업

**지원내용**

- 수출기업화, 수출유망기업화, 수출교육 등
- 수출기업화 : 수출여성기업 15개사(내수·수출초보)
  - 수출전문가 1:1 매칭 컨설팅
  - 해외마케팅(수출용 패키지·홍보자료 제작, 현지 이커머스·SNS마케팅 등)
  - 해외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 해외규격인증·해외지식재산권 취득 등
- 수출유망기업화 : 수출희망 여성기업 15개사
  - 해외전시회 참가, 화상상담회 개최 등 바이어 발굴 지원
  - SNS·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현지 마케팅 지원
  - 현지 홍보물 제작 등 콘텐츠 제작 지원
  - 현지 유통채널 입점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등
- 수출교육 : 수출희망 여성기업 대표 및 실무자 250명
  - 수출초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실무·심화교육
  -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품목 및 진출 시장별 전략교육

**신청·접수**

- '22.3 ~ 사업별 수시 모집
- 신청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 사업공고 및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http://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서류**

- (기본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수출활동계획서 및 수출품목 설명서,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정보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추가제출서류) 카다로그 등 제품 소개자료, 재무제표 사본1부(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원 사본 1부(최근 2년), 각종 인증서 및 정부포상 증빙 사본 1부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수출기업화 15개사, 수출유망기업화 15개사, 수출교육 250명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27, 7431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4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 12-8

##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지원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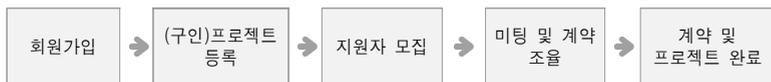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여성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의 구인정보 등록부터 일자리 지원 정책 연계·상담·교육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여성기업 : 여성을 대표로 하는 중소·벤처·초기창업 기업
  - 전문인력 : 분야별 경력자, 프리랜서,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고경력자 등 (남녀 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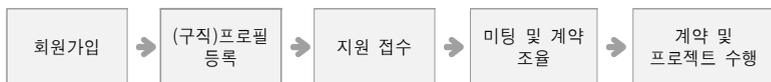
- 지원내용**
- 프로젝트(구인) 등록부터 완료까지 1:1 전담매니저가 관리
  - 일자리지원 제도 발굴 및 매칭·교육·상담 등 구인구직 지원 사업 연계
  - 업무용 소프트웨어(MS오피스, Adobe, CAD 등) 클라우드 방식으로 무상 제공
  - 결제대금 예치제, 보증보험증권 발행 등 안전결제 지원

- 신청·접수**
- PC 및 모바일에서 개인인증을 거친 후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등록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 ([www.iljarahub.or.kr](http://www.iljarahub.or.kr))

- 처리절차**
- (여성기업-전문인력) 매칭 지원 절차



- (전문인력) 매칭 지원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27, 7431
- 전화 상담은 02-369-0963, 이메일 문의는 [iljarahub@wbiz.or.kr](mailto:iljarahub@wbiz.or.kr)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www.iljarahub.or.kr](http://www.iljarahub.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12-9

## 여성경제인 DESK 운영

여성기업인의 경영애로와 정책 아이디어 접수 및 해결 창구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상 애로사항들을 전문 DESK 상담위원들이 수시 상담하여 해소해 드리고, 정책 아이디어 건의도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예비)여성창업자 및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여성기업인

**지원내용** ●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분야별 전문가)또는 여성기업 대사단(선배 여성기업인)이 여성기업의 경영애로를 무료 상담

- 경영, 회계, 세무, 인사, 노무, 생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 상담
- 경영애로 발생 시점부터 해결까지 지속적 관리

● 신청 및 상담분야

| 구 분      | 내 용                                       |
|----------|-------------------------------------------|
| 창업/벤처    |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벤처등록 등        |
| 법무/규제    |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
| 금융/환위험관리 |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안내 등     |
| 인사/노무    | 인사관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노동조합관리 등     |
| 세무/회계    |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등     |
| 경영전략     |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등                           |
| 기술/특허    | 기술자문 및 동향, 지식재산권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등 |
| 정보화/융합기술 |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
| 생산관리     | 기술지도, 작업개선,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
| 마케팅/수출입  | 마케팅/수출입                                   |

**신청·접수** ● 신청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여성경제인 DESK 홈페이지(www.desk.or.kr), 전화 등(별도 신청서류 없음)

**처리절차**



**지원규모**

- 전국 6개 권역(서울/경기/인천/경상/동남/호남, 제주)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27, 7431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02-369-0900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48
- 권역별 연락처

| 센터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
| 중앙  | (02)369-0934  | 06224)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성빌딩 4층             |
| 서울  | (02)702-4247  | 04174)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
| 부산  | (051)465-1431 | 48730)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
| 대구  | (053)742-0552 | 42040)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
| 광주  | (062)527-1615 | 61250) 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               |
| 인천  | (032)260-3603 | 21633)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8층 |
| 경기  | (031)211-2249 | 16393) 경기도 수원시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5층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12-10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여성CEO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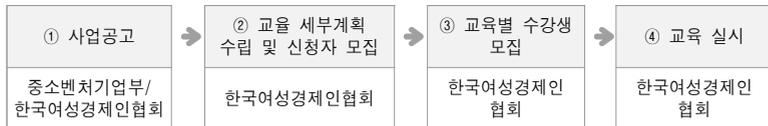
여성 경영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역량강화 및 경영혁신 아이디어 창출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여성 예비창업자, 여성 CEO 및 임원

**지원내용** ● 강사료(교재비), 홍보비 등  
● DT트렌드, 상품 디지털화 등에 대한 강의  
● 디지털전환, 지적재산권 등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대한 교육 지원

**신청·접수** ● '22. 2~12월 중(교육별 개최 일정 상이)  
● 사업 신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 모집공고 → 수강 신청 → 선착순 마감

**제출서류**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 수강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여성CEO 및 임원, 예비창업자

\* '21년 교육 수강생현황 : 693명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27, 7431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Q&A

**Q.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수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교육별 개최 일자가 상이한 관계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여성CEO 및 여성기업 임원, 예비창업자 이시면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12-11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전국 여성경제인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

전국 여성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 업종 및 지역 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전국 여성CEO 누구나 참여가능

**지원내용** ● 전문가 초청강연, 네트워크 프로그램, 여성기업지원사업 홍보, 문화체험 등

**신청·접수** ● '22.9월 ~ 10월, 공고일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가능  
● 신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를 통해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참가 신청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전국 여성CEO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27, 7431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1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kwbiz.or.kr)

## 제13장

# 장애인기업 육성

|                                     |     |
|-------------------------------------|-----|
| 13-1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           | 292 |
| 13-2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              | 294 |
| 13-3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 296 |
| 13-4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 298 |
| 13-5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 300 |
| 13-6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 302 |
| 13-7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지원 사업 ..... | 303 |
| 13-8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           | 305 |
| 13-9 장애인기업 MAS 컨설팅 및 등록 지원 .....    | 307 |
| 13-10 장애인기업 국제 전시회 참가지원 .....       | 309 |
| 13-11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        | 311 |
| 13-12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              | 313 |
| 13-13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           | 316 |
| 13-14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        | 317 |

## 13-1

##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 장애인의 창업촉진 및 장애인기업 경영안정 지원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초기의 장애인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공간 및 사무기기 지원, 기업지원정책 등 창업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사업화 가능한 업종(IT 관련업, 제조업, 디자인업, 서비스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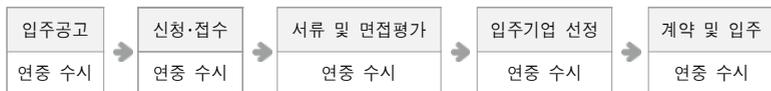
- 지원내용**
- 창업공간 및 사무편의 기자재, IT환경 및 화상회의시스템 제공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판로지원 등 각종 정보제공

- 신청·접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를 통한 연중 수시 신청·접수(공실 발생시)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아이템 사업화) 발표평가
  - \* 창업아이템의 기술성·시장성,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장애인(기업)확인 서류 등
  - \* 신청양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전국 16개 지원센터, 124개 보육실 운영(8억원)
    - \* '22년 보육실 지원현황 : 전국 124개사(8억원)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팀 : 02-2181-6512 및 지역센터

| 구 분 | 주 소                                       | 연 락 처           |
|-----|-------------------------------------------|-----------------|
| 서울  | (0723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당산동) 6층    | T) 02-2181-6500 |
| 대구  | (42709)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신당동) 809~810호  | T) 053-600-8070 |
| 광주  | (62277)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95 (월계동) 5,6층       | T) 062-511-8330 |
| 부산  | (25788)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608호       | T) 051-329-8230 |
| 대전  | (34016)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관평동) 513~514호  | T) 042-932-9077 |
| 경기  | (14548)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52 (중동) 201, 206호 | T) 032-322-1940 |
| 인천  | (21972)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50 (동춘동) 7층        | T) 032-817-1364 |
| 경남  | (52787)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11 (상대동) 1동 2층       | T) 055-763-3556 |
| 울산  | (58260)울산광역시 중구 남외2길 10 (남외동) 501호        | T) 052-294-7230 |
| 강원  | (26392)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5 (무실동, 휴먼시티) 5층     | T) 033-747-6823 |
| 제주  | (6309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남4길 5 (노형동)          | T) 064-749-8234 |
| 전북  | (54966)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49 (효자동2가) 602호  | T) 063-237-5354 |
| 전남  | (58567)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92, 에드가2차 201호  | T) 061-285-7867 |
| 충북  | (28377)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64번길 41-48 201호  | T) 043-238-8243 |
| 충남  | (32429)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4번길 8-6         | T) 041-331-0505 |
| 경북  | (36751)경상북도 안동시 강남2길 60-18 정우빌딩 5층        | T) 054-842-3773 |

Q&A

**Q.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창업보육실에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모집공고가 게시됩니다. 이후 모든 서류가 구비, 제출되면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결과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13-2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의 공공판로 확대 및 우대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 입찰 지원 등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 확인요건

- 장애인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회사로,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에 의한 회사
    - 장애인이 대표인 개인사업체
    - 협동조합법기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협동조합
- ※ 중기업은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고용비율이 30% 이상(소기업에는 미적용)

### 신청·접수

- 연중수시(온라인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진단 →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면조사를 통한 장애인대표의 해당기업 소유여부 확인 및 직접방문조사를 통한 장애인대표의 직접경영여부 확인

### 제출서류

| No | 제 출 서 류                                                                                                                                                                                                                              |
|----|--------------------------------------------------------------------------------------------------------------------------------------------------------------------------------------------------------------------------------------|
|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li> <li>• 사업자등록증</li> <li>•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li> <li>•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li> <li>•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li> </ul> |
| 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법회사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li> <li>•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명부, 출자자명부</li> </ul>                                                                                                               |
| 개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에 해당 하는 경우 제출)</li> </ul>                                                                                                                                             |

**처리절차**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지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구 분 | 주 소                                       | 연 락 처           |
|-----|-------------------------------------------|-----------------|
| 서울  | (0723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당산동) 6층    | T) 02-2181-6500 |
| 대구  | (42709)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신당동) 809~810호  | T) 053-600-8070 |
| 광주  | (62277)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95 (월계동) 5,6층       | T) 062-511-8330 |
| 부산  | (25788)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608호       | T) 051-329-8230 |
| 대전  | (34016)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관평동) 513~514호  | T) 042-932-9077 |
| 경기  | (14548)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52 (중동) 201, 206호 | T) 032-322-1940 |
| 인천  | (21972)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50 (동춘동) 7층        | T) 032-817-1364 |
| 경남  | (52787)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11 (상대동) 1동 2층       | T) 055-763-3556 |
| 울산  | (58260)울산광역시 중구 남외2길 10 (남외동) 501호        | T) 052-294-7230 |
| 강원  | (26392)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5 (무실동, 휴먼시티) 5층     | T) 033-747-6823 |
| 제주  | (6309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남4길 5 (노형동)          | T) 064-749-8234 |
| 전북  | (54966)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49 (효자동2가) 602호  | T) 063-237-5354 |
| 전남  | (58567)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92, 에드가2차 201호  | T) 061-285-7867 |
| 충북  | (28377)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64번길 41-48 201호  | T) 043-238-8243 |
| 충남  | (32429)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4번길 8-6         | T) 041-331-0505 |
| 경북  | (36751)경상북도 안동시 강남2길 60-18 정우빌딩 5층        | T) 054-842-3773 |

**Q&A**

**Q. 조달청(나라장터)입찰 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나요?**

A. 장애인기업으로 확인 받으신 경우 자동으로 조달청(나라장터)에 확인업체로 등록이 됨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장애인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g.go.kr)에서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13-3

## 장애인의 맞춤형 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 기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이론교육, 특화아이템 기술 교육, 전문가 창업멘토링 등을 통해 장애인 창업자를 육성합니다.

**지원대상** ● (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 교육 수료 후 창업 컨설팅, 사업화 지원 선별 지원

**지원내용** ● (창업 교육) 온라인 창업 기초교육, 장애인 특화업종 기술교육 등

● (창업 컨설팅) 아이템 및 입지선정 등을 위한 창업 코칭 및 컨설팅

**신청·접수** ① 온라인 교육 : 연중 수시 ② 창업 컨설팅 : 연 2회(2월, 5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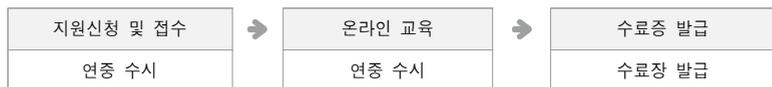
③ 창업특화교육: 3월

● (온라인 교육) 장애인교육지원시스템(<http://start.debc.or.kr/>)

● (창업 컨설팅/특화교육)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① 온라인 교육



② 창업 컨설팅/특화교육



**지원규모** ● 온라인 교육생\* : 1,500명(6.74억원)

\* 컨설팅 250명, 특화교육 100명 포함, ※ '21년 지원현황 : 1,530명

##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 02-2181-6521
- 장애인 창업교육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tart.debc.or.kr>)

## Q&amp;A

**Q. 예전에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수료증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A. 네, 직전년도 이후 창업교육 수료증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하시려면, 2021년~2022년 창업교육 이수 시 가능합니다.

**Q. 교육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는 장애인(등급제한없음) 예비창업자만 신청가능합니다

**Q. 교육을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초교육은 장애인창업교육지원시스템(<http://start.debc.or.kr>)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수강가능합니다.

## 13-4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 기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초기 사업화 지원을 통해 장애인 창업자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 장애인기업

## 지원내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대상 창업사업화 지원범위(매장모델링, 집기구입 등) 내에서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 장애인기업 대상 경영환경개선 지원범위(영업시설, 사무실, 공장 등 개·보수 비용) 내에서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제외

| 구분   | 사업비 지원제외 기준                                                                                                                                                                                                                                                                                                                                                                                                                                                                                                                                                                                                                                                                  |
|------|------------------------------------------------------------------------------------------------------------------------------------------------------------------------------------------------------------------------------------------------------------------------------------------------------------------------------------------------------------------------------------------------------------------------------------------------------------------------------------------------------------------------------------------------------------------------------------------------------------------------------------------------------------------------------|
| 지원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li> <li>○ 인건비(아르바이트, 파견직원 고용 등) 단, 인테리어 및 외부용역(시제품 제작, SW개발 등) 인건비는 각 노임 단가 범위 내에서 인정</li> <li>○ 단순 소모성 경비(문구류 구입, 종량제 봉투 구입 등)</li> <li>○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떡, 주류 등)</li> <li>○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li> <li>○ 임차 보증금</li> <li>○ 월세 및 관리비(원상복구비용)</li> <li>○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 등) 단, 지식재산권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는 지원</li> <li>○ 교육비(수강비, 교재비 등)</li> <li>○ 등기가 필요한 동산(푸드트럭, 배달 오토바이 등)</li> <li>○ 여비교통비(유류비, 통행료, 대중교통 운임, 항공운임, KTX운임, 숙박비 등)</li> <li>○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부가가치세 등)</li> <li>○ 재료비(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li> <li>○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li> </ul> |

**신청·접수** ● 연2회(3월, 7월 예정), 방문 및 우편, 온라인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 창업아이템의 기술성·시장성,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95명(13.15억)

\* '21년 지원현황 : 65개사(13.15억원)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 02-2181-653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창업에 필요한 초기비용(시설 및 인테리어, 물품비, 마케팅 및 홍보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Q. 기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존 보유한 사업자등록을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업공고문 참조)

13-5

## 장애인의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 및 창업 확산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유망 아이디어를 보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발굴·시상하여 장애인의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 지원이 안되는 아이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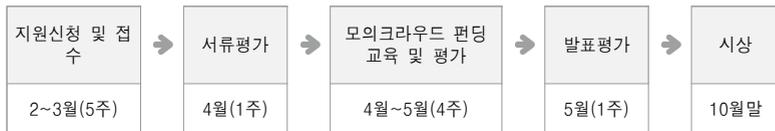
-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 아이템
- ▶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지원내용** ● 시상 및 포상(1인 최대 1,000만원 이내 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지원  
 \* 창업점포지원, 창업사업화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 지원시 가점 부여

**신청·접수** ● 22.2~3월(예정)  
 ● (신청) 우편 및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처리절차



**지원규모** ● 11건(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2, 장려상6)

\* '21년 지원현황 : 11건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 02-2181-6524

Q&A

Q. 모의크라우드펀딩 심사는 어떻게 진행 하나요?

- A.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모의크라우드펀딩 교육 및 아이템 소개 템플릿을 제작하고, 온라인으로 아이템 소개 템플릿을 전문가 심사단(30명 이내)이 투찰한 투자금액 달성률로 평가합니다.(최종 심사의 50% 반영)

13-6

## 장애인의 창업접포 지원사업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 기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를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21년 이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
  - \* 창업교육과정(온라인창업교육, 특화교육 등)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제외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
- 신청·접수**
- 연 2회 접수(3월, 7월 예정), 방문 및 우편, 온라인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지원규모**
- 30명 이내
  - \* '21년 지원현황 : 25명
- 문의처**
- (홈페이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www.debc.or.kr)
  - (유선상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 02-2181-6536

### Q&A

Q. 신청서 상에 창업예정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점포를 찾아야 하나요?

A. 아뇨, 전국 어느 지역이든 가능합니다.

Q. 지원금액으로 월세 혹은 관리비로도 사용 가능한가요?

A. 아뇨, 점포보증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7

## 발달장애인의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지원 사업

발달장애인과 가족 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공동창업을 위한 창업 이론 및 기술교육, 보육실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및 가족(보호자)

\* 발달장애인 : 15개 장애 유형 중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이 해당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창업을 위한 훈련 및 실습(1년), 최대 2년간 입주 지원(설비 및 기자재 활용 등)

**신청·접수** ● 22.12~22.2월 예정, 방문 및 우편, 온라인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1개소 구축(교육생 40팀, 창업자 10팀)

\* '21년 지원현황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6개소 구축 중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팀 : 02-2181-6512

Q&A

**Q. 발달장애인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만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Q. 가족(보호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767조 근거한 친족(남녀의 배우자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같이 혈연을 기초로 한 자의 혈연단체 또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서 배우자·혈족·인척)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Q. 장애 등급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A. 장애 등급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습니다.

13-8

##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장애인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시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개발, 시제품 모형 및 금형 제작비용 지원

| 구 분         | 내 용                                                                             | 정부지원한도                        |
|-------------|---------------------------------------------------------------------------------|-------------------------------|
| 시제품<br>제작지원 |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를 준비 중인 금형제작 이전단계의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에게 기술멘토링, 제품디자인개발 및 모형제작비용 지원 | 총사업비의 70~90%<br>최대 15백만원 한도 내 |
|             | IT·SW 융합제품의 초기 상용화에 필요한 제품개발 (회로설계, PCB제조, 부품조립) 비용 지원                          | 총사업비의 70~90%<br>최대 15백만원 한도 내 |
|             |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도면이나 Design Mock-up을 보유한 장애인기업에게 시제품 금형제작비용 지원                  | 총사업비의 70~90%<br>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

**신청·접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통해 공고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 또는 온라인접수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류 등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9.7억원)  
\* '21년 지원현황 : 35개사(5.6억원)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팀 : 02-2181-65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가요?**

A.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90% 이내, 소기업은 80% 이내, 중기업은 70% 이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단, 시제품,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분야는 최대 15백만원, 시제품금형분야는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 지원자 당 1개 과제(코스)만 신청 가능하며, 여러 분야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A코스) 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13-9

## 장애인기업 MAS 컨설팅 및 등록 지원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진출 지원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MAS 활용 컨설팅 및 등록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 지원내용

- MAS 컨설팅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MAS 계약 완료시 까지 전문 컨설팅 지원
- 입찰컨설팅 : 장애인기업의 공공입찰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장애인기업의 공공입찰시장 진출 역량강화 지원

### 신청·접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통해 공고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 또는 온라인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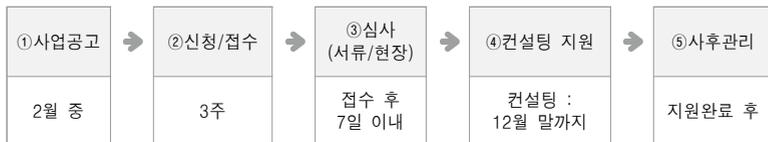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정심사) 서류접수 → 서면평가
  - \* 고용기여도, 기술기반 업종여부, 기업경쟁력, 지원필요성, 기대효과 등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장애인기업 확인 서류 등
  -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96개사 내외(1.3억 원)
  - \* '21년 지원현황 : 96개사(1.3억 원)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팀 : 02-2181-65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입찰컨설팅의 지원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A. 기업지원(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 기업규모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진단), 신용평가(공공조달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방법 지도), 공공입찰(입찰 공고문 분석 및 적격심사항목 예비점검, 공공기관별 예가 기록을 종합 분석 후 최적 낙찰 구간 설정, 주요 발주처 별 특성파악 및 경쟁사의 투찰성향 분석)에 대해 지원해드립니다.

13-10

## 장애인기업 국제 전시회 참가지원

장애인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를 통해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위한 국제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지원내용

- 국내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구 분        | 세부지원내용                                        |
|------------|-----------------------------------------------|
| • 부스임차료    | 전시회 참가를 위해 기본 제공되는 전시공간                       |
| • 장치비      | 회사명 사인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 데스크 및 의자 등 |
| • 홍보물      | 전시회 참가에 사용되는 카탈로그, 포스터, 현수막, 영상물 제작비용         |
| • (국외)통역비  | 현지 통역, 전시회 방문 바이어 상담                          |
| • (국외)번역비  | 수출계약서,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서, 소비자용 매뉴얼 번역비            |
| • 운송료      | 전시회 출품 제품 해상·항공 운송비                           |
| • 활동보조 인력비 | 수화통역비, 활동보조인 인력비                              |

- 온라인 : 전시회 참가비, 샘플운송비, 전자카탈로그(홈페이지/모바일/app), 홍보영상 제작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당 500만원 한도지원  
\* 단, 전자카탈로그 및 홍보영상은 각 20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지원

신청·접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통해 공고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 또는 온라인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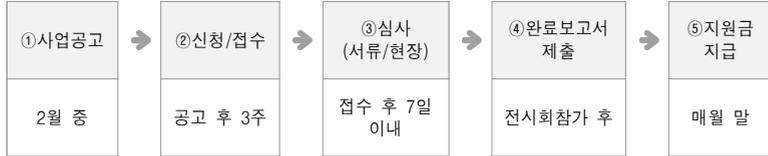
- (선정심사) 서류접수 → 서면평가 → 완료보고서  
\* 고용기여도, 기술기반 업종여부, 기업경쟁력, 지원필요성, 기대효과 등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장애인기업 확인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35개사 내외(1억원)

\* '21년 지원현황 : 20개사(0.5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전시회 취소로 사업규모 축소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팀 : 02-2181-6531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amp;A

## Q. 참가하는 전시회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나요?

- A.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전시(박람회)회는 지원불가하며,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ex:학술세미나) 역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전시회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 및 국제전시연맹(UFI)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전시회 참가 건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3-11

##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진출 지원

국내외 입찰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제품 전시물 운영을 통해 장애인 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 지원내용**
- 입찰정보제공 : 장애인기업의 제품과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및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입찰정보 접근성 제고
    - \* 입찰 전문지식이 없는 학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온라인 입찰강좌 제공
  - 장애인기업제품 온라인 전시물 : 장애인기업들이 직접 회원가입을 통해 제품이미지 및 기업홍보 자료를 업로드 하여, 공공판로 마케팅 기회 제공



- 신청·접수**
- 연중수시
  - 입찰정보시스템(<http://biz.debc.or.kr/bid/>) 접속 후 회원가입
  - 드림365([www.dream365.or.kr](http://www.dream365.or.kr)) 접속 후 회원가입

**제출서류** ●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진행

**처리절차**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팀 : 02-2181-65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입찰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 조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사업 분야 입찰 및 낙찰정보를 제공하여, 입찰참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 검색어 서비스, 내 서류함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기업 맞춤형으로 편리하게 입찰정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초보자를 위한 온라인 입찰실무 강좌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13-12

##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및 해외온라인 마케팅, 수출초보기업 대상 실무교육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지원내용** ● 해외온라인마케팅 : 글로벌 온라인 홍보관 구축, 바이어 타겟마케팅 등을 통한 제품 홍보 및 해외 구매오퍼 대응, 무역상담까지 원스톱 지원

| 지원구분         | 인증마크명                                                                                                                                                      |
|--------------|------------------------------------------------------------------------------------------------------------------------------------------------------------|
| ① 타겟국가 온라인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키워드검색 마케팅을 통한 온라인 홍보관 해외 방문자 유입 지원</li> <li>셀링오퍼 &amp; 인콰이어리 수신지원</li> </ul>                                        |
| ② 타겟 바이어 마케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별 타겟 관심국가 내 현지어 버전 구글 마케팅</li> <li>타겟 바이어 기초시장 조사</li> <li>관심 바이어 상세정보/컨택 보고서 제공</li> <li>온라인 화상 상담 지원</li> </ul> |
| ③ 맞춤형 추가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전시회 참가 시 바이어 정보 제공</li> <li>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 업로드 지원</li> <li>글로벌 SNS 게재</li> </ul>                                    |

● 무역사절단파견 : 수출 타겟국가 시장분석, 사전바이어 발굴 및 검증 후 현지 파견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기회 제공

| 지원내용          | 인증마크명                                                                                                                                                                                                                                                                   |
|---------------|-------------------------------------------------------------------------------------------------------------------------------------------------------------------------------------------------------------------------------------------------------------------------|
| ① 항공·교통·통역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공) 1개사 1인 왕복 항공료 50% 지원(이코노미 기준)</li> <li>(교통) 무역사절단 파견 기간 내 현지 전용 버스 상시대기(50인승 버스), 공항, 호텔 간 전용차량 이용(장애인 지원차량 및 현장 인원 1:1밀착 지원)</li> <li>(통역) 업체와 품목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파악한 통역원 기업 당 1인 밀착 지원하며, 현장에서 바이어 미팅 시 상담일지 작성 지원</li> </ul> |
| ② 바이어 발굴 및 검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 바이어 발굴 및 인터뷰를 통해 참가가 확실 시 되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매출, 수입규모, 홈페이지 및 기타 정보를 통해 미팅 적합성 검증</li> </ul>                                                                                                                                        |
| ③ 수출상담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담장 홍보물 및 테이블 설치, 필요 기자재 비치, 바이어 대기 공간 운영</li> </ul>                                                                                                                                                                             |

\* 단, 코로나 19상황 지속 시 1:1개별화상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수출교육 : 수출을 희망하는 초보기업 대상 무역실무 교육, 수출 애로 사항 해소를 통한 수출시장 진입 지원
  - 수출입 주요 절차 및 각 단계별 주요내용, 주요 무역용어 안내, 무역 계약 대금결제, 무역운송/보험 수출입 통관, 무역 마케팅 사례 소개 등

**신청·접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를 통해 공고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정심사) 서류심사 → 서면평가
  - \* 고용기여도, 수출준비도, 수출경쟁력, 지원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장애인기업 확인 서류 등
  -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270개사 내외(4.2억 원)
  - \* '20년 지원현황 : 294개사(4.2억 원), 코로나19로 무역사절단파견은 화상상담으로 전환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팀 : 02-2181-6531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amp;A

**Q. 무역사절단파견의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A. 센터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수출 유망 국가를 선정 후 해당 국가진출이 유망한 업종 및 품목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후 바이어 발굴 및 검증을 통해 진성바이어를 매칭하고, 현지 전문 마케터를 통한 현지 마케팅을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현지에 파견(4~5일 일정)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며, 파견 시 항공(50%), 교통, 통역을 지원해드립니다. 단, 금년과 같이 코로나19 등 해외입국 제한 시 화상상담으로 전환하여 운영됩니다.

## 13-13

##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 장애인가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장애인가업의 장애인가업의 경쟁력 제고 및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인증획득(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및 마케팅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가업

## 지원내용

- 인증지원 : 장애인가업의 경쟁력 제고 및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인증획득(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비용 지원
- 마케팅지원 : 장애인가업의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장애인가업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홍보 및 광고 관련 지원사업 신설

## 신청·접수

- (재)장애인가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http://www.debc.or.kr))를 통해 공고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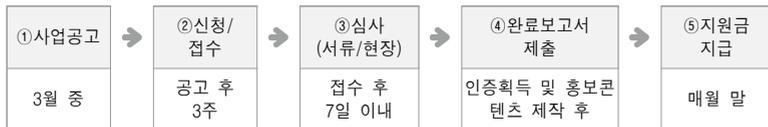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정심사) 서류심사 → 서면평가 → 완료보고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장애인가업 확인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가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http://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4억 원)

## 문의처

- (재)장애인가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팀 : 02-2181-6531
- (재)장애인가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http://www.de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13-14

##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에 대해 보조공학기기를 체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 경영활동과 직업생활을 병행하는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에 대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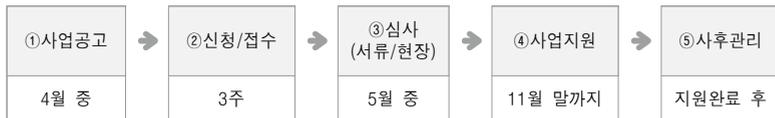
**신청·접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를 통해 공고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정심사) 서류접수 → 서면평가(필요시 현장평가)
  - \* 고용기여도, 기술기반 업종여부, 기업경쟁력, 지원필요성, 기대효과 등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장애인기업 확인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 처리절차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1.5억 원)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팀 : 02-2181-65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제14장

# 지역기업 지원

|                                |     |
|--------------------------------|-----|
| 14-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        | 320 |
| 14-2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       | 323 |
| 14-3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  | 325 |
| 14-4 지역특화산업육성 .....            | 328 |
| 14-5 지역특화산업육성+(R&D) .....      | 333 |
| 14-6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 .....    | 336 |
| 14-7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   | 338 |
| 14-8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 | 340 |

## 14-1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제조 중소기업 집중지원으로 기업혁신 촉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진단을 통한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을 맞춤형 패키지 지원하여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재기 컨설팅은 별도 운영)
  - 13개 지방청별 탄력적 우대 지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 · 폐업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 지원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기타 보조금법 위반 기업 등(상세 내용은 사업공고문 등 참조)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를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소요 경비의 50~90% 차등지원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및 재기컨설팅은 별도 운영

| 매 출 액              | 정부지원 비율 | 최대 지원금   |
|--------------------|---------|----------|
| 3억원이하              | 90%     | 최대 50백만원 |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80%     |          |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70%     |          |
| 5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 50%     |          |

**바우처메뉴판**

| 지원 분야 | 지원 메뉴               | 지원 내용                                                        |
|-------|---------------------|--------------------------------------------------------------|
| 컨설팅   | 경영기술전략              | 생산관리, 기술사업화, 노무, 인사, 회계, 구조개선 등                              |
|       | 스마트공장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
|       | 규제대응                | 최저임금제 대응, 근로시간 대응, 화학물질관리 대응                                 |
|       | 산업안전                |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
|       | 융복합                 |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
|       | (별도트랙)<br>탄소중립 경영혁신 | 공정혁신, 에너지 효율 아이템 발굴, 인식개선 활동 등                               |
|       | (별도트랙)<br>재기컨설팅     |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회생 및 재기지원을 통해 유·무형 자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컨설팅    |
|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 가공, 섬유, 식품)                |
|       | 시스템 및 시설 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 공장 구축 등                      |
|       | 기술지원 및 지적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적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
|       | 규격인증                | 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
|       | 제품시험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
|       | 설 계                 | 시제품 설계, 공정설계 등                                               |
| 마케팅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       | 브랜드 지원              | C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
|       | 홍보지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

\* 최대 3개 분야 패키지 지원 가능(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및 재기컨설팅은 별도 운영)

**사업기간**

- 최대 1년

**신청·접수**

-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면심사 → 현장 진단·평가 → 심의위원회\*

\* 지역별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처리절차**



**지원규모** ● 2,400여개 사(예산 618.05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
  -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 공지사항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A**

**Q. 우리 기업이 제조 소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자료실에 '참여기업 사업 진행 관련 주요 FAQ'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Q.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컨설팅이 필수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필수로 정부지원금 50백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14-2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창의적 특화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드리는 혜택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혜택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여건을 활용, 비교우위의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통해 각종 규제특례 적용

### 지원대상

-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또는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가능

### 선정기준

-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특화 형태든지 지정신청이 가능. 다만,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 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여건의 적합성,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자원 등의 확보,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신청·접수

- 연중상시
  - \* 세부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와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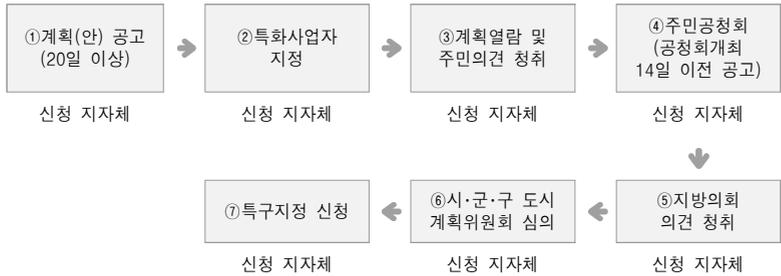
### 제출서류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해제) 신청서
- 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시 고려하여야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자체장의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기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령」에서 정한 서류
  - \* 중소기업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정책-주요정책-분야별-기타-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운영」을 통하여 관련 양식 다운로드·활용

**처리절차**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사후관리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지역특구과 : 044-204-7591

14-3

##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지역기업 위기극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자동차, 조선업 등 주요산업 침체로 인해 지정된 위기대응지역(전북 군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의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지역산업 회복을 위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에서 문제해결 서비스까지 One-stop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위기업종 및 관련 전·후방 연계업종 중소기업 (협력업체 포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등
- ▶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 동일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 ▶ 자본전액 잠식, 부채 1,000% 이상 기업
- ▶ 이외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 그 외 시·도 기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수혜기업 대상 밀착 컨설팅 이후 외부혁신기관 연계 후속 사업화지원
  - (컨설팅지원) 기업이 당면한 중단기 기술애로 해소, 제품개발 지도, 사업다각화 및 기술고도화 등 애로해결을 위한 기업진단 및 지원 전주기 전문가 컨설팅
  - (사업화지원)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문제점 및 수요에 따라 시 제품 제작, 공정개선, 제품디자인, 특허출원, 인증, 바이어 초청 등 기업지원을 실시하여 기업 신규거래선 발굴 또는 제품 다변화 촉진 등 사업(다각)화 지원
  - (컨소시엄지원) 개별기업 이외 기업 간 공동협력 프로그램 지원, 신규 사업기획 지원 등 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예시: 협동조합, 기업 간 연계모델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통영·고성, 창원진해, 거제, 울산동구, 목포·영암·해남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21.5.29.~'23.5.28.)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에 추가

신청·접수

- 시·도별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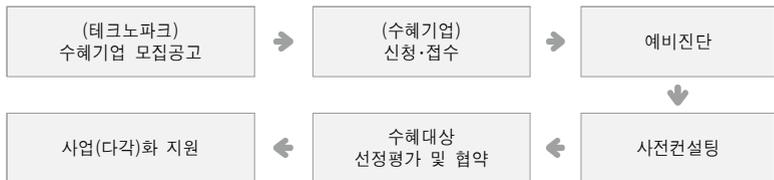
- (주관기관(TP)) 정책지정(사업공고) → 발표평가 → 현장실사(필요시)
- (수혜기업) 지원필요성, 지원내용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

제출서류

-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등,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처리절차

- (위기대응지원)



지원규모

- 산업·고용 위기지역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80개사 내외(예산 54.4억원)

\* '21년 지원현황 : 위기대응 4개 지역 총 100개 기업 지원(본예산 64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044-204-7586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 Q&amp;A

**Q.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A.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위기기업의 사업분야 다각화·판로개척을 위한 컨설팅에서부터 시제품제작, 마케팅, 인증, 특허, 공정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예산은 컨설팅 6백만원, 사업(다각)화지원 5천만원이며 사업(다각)화지원은 기업부담금 10% 이상이 필수조건입니다.

**Q. 기업수요기반으로 진행되는 경우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가능합니다. 기업의 사업다각화 및 新판로개척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성격에 따라 R&D, 장비구축, 인력지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기업 소재지가 위기대응지역에 속한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동 사업은 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검토·심사 단계를 거쳐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기지역에 소재 하였더라도 관련업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4-4

## 지역특화산업육성

### 지역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 기술사업화 지원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에게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지원대상

- (주력산업 기업지원) 주관기관(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에서 해당 지역기업 별도 모집·지원
- (지역혁신 바우처)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해당 지역기업 별도 모집·지원
- (시군구 연고산업) 시군구 혁신기관 선정 후 사업화 지원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해당 지역스타기업 지원
- (수출새싹기업지원)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해당 지역 수출새싹기업 모집·지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등
- ▶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 동일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 ▶ 자본전액 잠식, 부채 1,000% 이상 기업
- ▶ 이외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 그 외 시·도 기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주력산업 기업지원
  - 지역혁신기관의 기술자원, 사업화자원, 마케팅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력산업분야 수혜기업에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수혜기업당 최대 3천만원 내외)

〈사도별 지역주력산업 현황〉

| 시·도 | 주력산업                                    | 시·도 | 주력산업                                 |
|-----|-----------------------------------------|-----|--------------------------------------|
| 부산  |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 대구  |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
| 광주  |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 울산  |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
| 대전  | 차세대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 강원  |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
| 충북  |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 충남  |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 디스플레이         |
| 전북  |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 전남  |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
| 경북  |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 경남  |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향노화메디컬       |
| 제주  |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 세종  |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

● 지역혁신 바우처

-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통해 사업화에 애로를 겪는 지역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 공급기관을 통한 수혜자 맞춤형 상시 지원 (수혜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 600개 기업 내외)

● 시군구연구고산업

- 지역 시·군·구내 연구산업을 활용하여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제품의 사업화 지원 (과제당 최대 5억원, 35개 과제 내외)

● 지역스타기업육성

-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역스타기업을 연간 200개사 선정·지원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수출새싹기업지원
  - 지역주력산업 내수 중심 지역 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해 수출전문 역량을 활용한 밀착형 수출 전주기 지원(수혜기업의 경우 최대 2천만원 내외, 100개 기업 내외)

**신청·접수**

- 주관기관(혁신기관) : SMTECH 홈페이지(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수혜기업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rip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시·도별 주관기관(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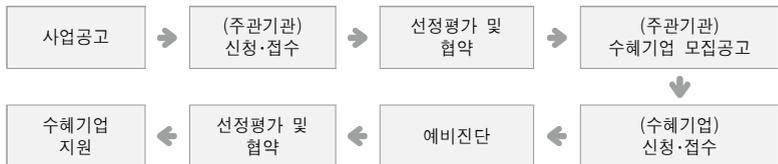
- 주관기관(지역혁신기관)
  - (주력산업기업지원) 사전검토 → 현장실태조사 → 발표평가
    - \* 사업수행 내용, 추진체계, 기업지원역량,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 (지역혁신바우처) 지역별 테크노파크 정책지정
  - (시군구 연고산업) 사전검토 → 현장실태조사 → 발표평가
    - \* 사업수행 내용, 추진체계, 기업지원역량,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역별 테크노파크 정책지정
  - (수출새싹기업지원) 지역별 테크노파크 정책지정
- 수혜기업
  - 지원필요성, 지원내용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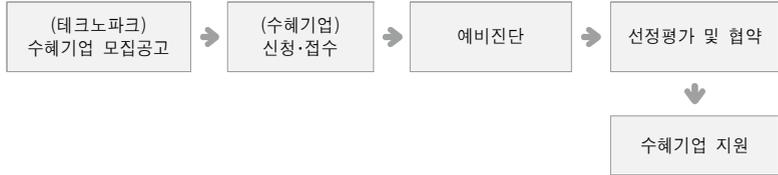
-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등,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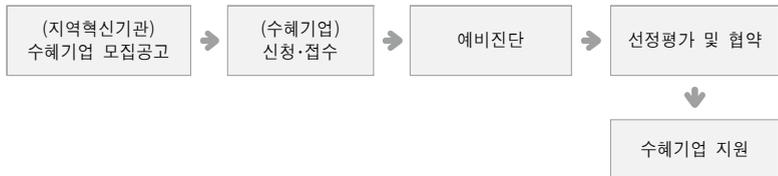
- (주력산업 기업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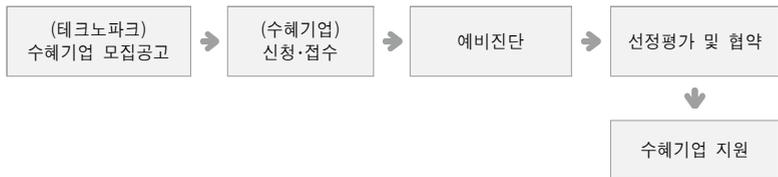
● (지역혁신바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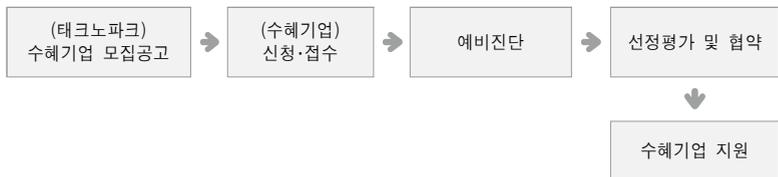
● (시군구 연고산업)



● (지역스타기업육성)



● (수출새싹기업지원)



지원규모

- 비수도권 3,000개 기업 내외(예산 808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044-204-7587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www.rips.or.kr)

Q&A

**Q. 주력산업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주력산업 기업지원의 경우,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특허, 인증 등 기술지원 프로그램과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 및 브랜드 개선, 상품기획, 마케팅 등 사업화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수혜기업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기업지원이 가능한 지역혁신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후, 해당 주관기관에서 수혜기업을 모집하게 되는데, 2월경부터 지역산업종합정보 시스템(www.rips.or.kr)을 통해 지역별로 통합공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시군구 연고산업 기 자원 및 산업도 지원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기존 지원내용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하며, 후속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 구비해야합니다.

**Q. 지역스타기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영위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 내 매출액 50~400억 이면서, 시도별 자체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용어설명

**지역혁신기관이란?**

TP,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출연연 지역 분원 등

14-5

##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중소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상용화R&D 지원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 (지역주력산업육성)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자체에서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지역스타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종인 자 또는 기업(법인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종인 자 등(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
-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지역주력산업육성) 시·도 지역주력산업분야(시·도별 3~4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자유공모, 2년 이내, 연 2억원 내외)
  - (지역스타기업육성) 신규고용, R&D투자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상용화R&D 지원(자유공모, 2년 이내, 연 2억원 내외)

#### 〈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현황 〉

| 시·도 | 주력산업                               | 시·도 | 주력산업                              |
|-----|------------------------------------|-----|-----------------------------------|
| 부산  |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 대구  |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
| 광주  |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 울산  |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

| 시·도 | 주력산업                                    | 시·도 | 주력산업                                 |
|-----|-----------------------------------------|-----|--------------------------------------|
| 대전  | 차세대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 강원  |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
| 충북  |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 충남  |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 디스플레이         |
| 전북  |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 전남  |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
| 경북  |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 경남  |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향노화메디컬       |
| 제주  |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 세종  |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

**신청·접수**

- SMTECH 홈페이지(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검토 → 현장조사 → 발표평가
  -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체계, 사업화계획 및 매출효과, 고용효과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및 지역스타기업 대상 500개 과제 내외 (1,132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044-204-7587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Q&amp;A

**Q. 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해당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해야 하나요?**

A. 주관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등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으로는 타 지역 중소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지역스타기업은 무엇인가요?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은 반드시 지역스타기업만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지역스타기업은 지자체에서 고용 및 매출성장, R&D투자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기업을 의미합니다.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지역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만 주관기관으로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참여기관은 지역스타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4-6

##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산업단지 활성화 유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선정된 5개 거점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으로 선정된 5개 산단(거점·연계산단) 입주 중소기업
  - \* 경북(거점산단: 구미국가산단), 광주(광주 첨단 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등
- ▶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 동일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 ▶ 자본전액 잠식, 부채 1,000% 이상 기업
- ▶ 이외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 그 외 시·도 기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기업진단에서 기술사업화까지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신속 해결지원
  - \* 기업진단 및 성장전략 수립,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제품 고도화, 판로·마케팅

### 신청·접수

- 주관기관(혁신기관) : k-pass 홈페이지(www.k-pass.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수혜기업 : 온라인 신청·접수, 지역별 주관기관(테크노파크, 대학, 지역 혁신기관 등)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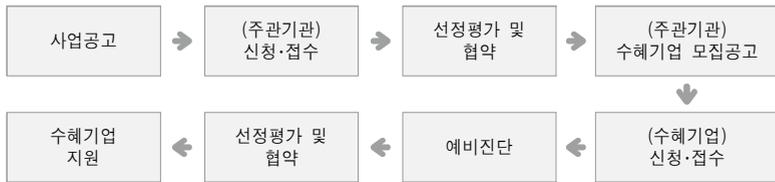
- 주관기관(지역혁신기관)
  - 수행 내용, 산단별 입주기업 현황 및 특성 분석, 추진체계, 기업지원 역량 등 평가

- 수혜기업
  - 지원필요성, 지원내용 타당성, 사업·업종 다각화 계획,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등,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90개 기업 내외(예산 29.4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044-204-7582, 7852

**Q&A**

**Q. 산업단지 입주기업이면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A. 본 사업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선정된 5개 지역 산단(연계산단 포함)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북(거점산단: 구미국가산단), 광주(광주 첨단 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

**용어설명**

**지역혁신기관이란?**

TP,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출연연 지역 분원 등

14-7

##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산업단지 활성화 유도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협업활동 촉진을 위해, 개방형혁신 바우처 R&D, 공동활용R&D, 융복합R&D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으로 선정된 5개 산단(거점·연계산단) 입주 중소기업

\* 산업단지 대개조 5개 지역 : 경북(거점산단: 구미국가산단), 광주(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 국가산단)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인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등(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
-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①(바우처R&D) R&D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R&D 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은 희망하는 혁신기관에 바우처를 근거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제품 상용화 촉진
  - ②(공동활용R&D) 지역대학, 연구소, TP 등이 산업단지 내 동종업종 중소기업간의 공통 기술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신제품 개발 촉진
  - ③(융복합R&D) 스마트 산업단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종업종간 융복합 기술개발 추진

**사업기간** ● 최대 2년

**신청·접수** ● SMTECH 홈페이지(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검토 → 현장조사 → 발표평가
  -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체계, 사업화계획 및 매출효과, 고용효과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35개사 내외(예산 70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044-204-7582, 7852

**Q&A**

**Q. 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해당 산업단지에 사업장을 보유해야 하나요?**

A.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에 본사, 공장 등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타 지역 중소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14-8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

지역특성에 기반한 지역·중앙 협력적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및 위기업업 적시 지원으로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성장 도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밀집지역 및 경영위기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심층 현장조사 결과, stand-up 기업지원 대상으로 추천되지 않은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파산 회생기업 등
- ▶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 동일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 ▶ 자본전액 잠식, 부채 1,000% 이상 기업
- ▶ 이외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내용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 경영위기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신청지역의 조사분석 및 지정지역 사후관리
-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위기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기반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 구축·운영 및 경영위기 기업 stand-up 지원\*

\* 컨설팅, 특허·인증 획득, 시제품 제작 등 산학연 전문가 및 관련 기관(업) 매칭을 통한 위기 중소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
  -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공문 신청
-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stand-up 지원)
  - 시·도별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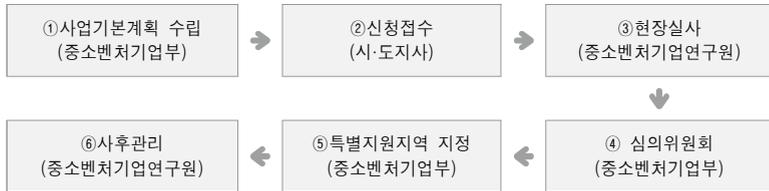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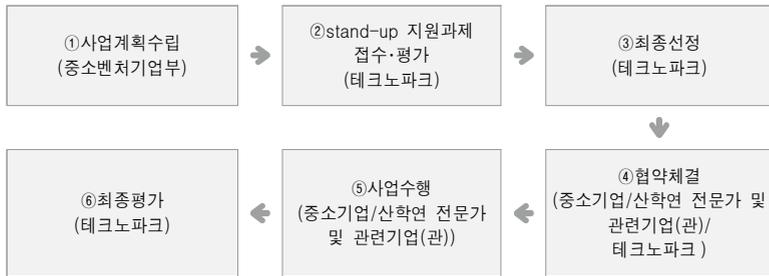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

**처리절차**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



-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stand-up 지원)



**지원규모**

- 총 32.95억원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4.6억원)
-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28.35억원) : 5개 시도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044-204-7586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지역혁신연구실: 02-707-9859
-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사업운영팀 : 02-6009-3809

Q&A

**Q.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제공되나요?**

A.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위기 극복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다각화, 판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제공합니다.

**Q.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stnad-up 지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A. 위기진단 및 전략 로드맵 수립 등 컨설팅, 특허·인증획득, 시제품 제작 등 기술지원, 마케팅, 디자인 개선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 예산은 1.1천만원이며, 기업부담금 10% 이상이 필수조건입니다.

제2편

창업. 재도전기업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1부  
창업기업 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Q&A



### 함께 알아보는 창업

**Q질의** 시제품제작, 사업화자금 등 창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및 경영애로에 대해 도움 받고 싶습니다. 자격조건이 있나요?

**A답변** 자격 조건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1년 ~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사업에 따라 제한조건이 있으니 별도로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질의**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사업 선발과정에서 창업기업의 외국어 역량이 중요한가요?

**A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지진출을 위해서는 팀원 중 최소 1명은 영어 혹은 진출국가 언어에 능통자여야 합니다.

**Q질의**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사업에서 창업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항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답변** 국내 창업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현지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 해외진출 자금, 현지 전문기관 보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Q질의**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연구기술은 모두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그 소유권을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답변** 연구원예비기술 사업에 기술 이전비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비(정부 지원금의 20% 이내)는 연구기관, 대학 등 보유기술을 이전받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권리를 보장받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함께 알아보는 창업



**Q**질의 창업과제 수행 중 사업 아이템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창업과제의 변경은 불가하며, 추가시 고도추가일 경우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질의 사업신청 시 등록된 팀원은 사업수행 중 변경이 불가한가요?

**A**답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팀원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해당 팀원의 인적사항과 사유에 대한 변경신청을 주관기관으로 해주시면 정당한 사유여부를 판단하여 변경 승인이 가능합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제1장

#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                                      |     |
|--------------------------------------|-----|
| 1-1 예비창업패키지 .....                    | 350 |
| 1-2 청년창업사관학교 .....                   | 352 |
| 1-3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                 | 355 |
| 1-4 스타트업 시기술인력 양성 .....              | 357 |
| 1-5 초기창업패키지 .....                    | 359 |
| 1-6 창업도약패키지 .....                    | 361 |
| 1-7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    | 364 |
| 1-8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             | 366 |
| 1-9 팁스(TIPS) .....                   | 368 |
| 1-10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              | 372 |
| 1-11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 374 |
| 1-12 혁신분야 창업패키지(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 | 375 |
| 1-13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         | 377 |
| 1-14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          | 378 |
| 1-15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              | 379 |

## 1-1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도전을 위한 지원사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개발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 공고일 기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자
- ▶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창업 교육) 기업가 정신, 아이디어 보완 및 BM 구체화 등 창업기초 부터 투자, 마케팅 등 성과창출을 제고할 수 있는 실무교육 제공
    - (멘토링 지원) : 창업 경영 전반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매칭하여 사업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주요 사업절차〉



**신청·접수**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k-startup.go.kr>
- (신청기간) 모집공고 확인
- (선정평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심사·평가 주요내용)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가점 증빙서류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 1,500명 내외(988.89억원)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예비창업실) : 044-410-1803~1810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참조

1-2

## 청년창업사관학교

### 청년 CEO의 창업 쏠 단계 패키지 지원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사업화 등 창업 쏠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지원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단,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기업은 제외)
-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창업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역량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 (창업코칭) 전문인력을 1대1 배치하여 창업 쏠 과정 집중지원
  - (사업비지원)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내)
    -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지재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 (기술지원)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기술 및 장비지원
  - (연계지원) 정책자금 연계, 투자 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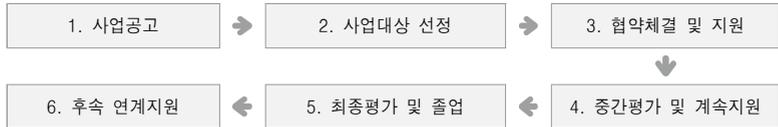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리스쿨 및 추가과정 폐지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22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915명(개사), 예산 844억원

\* '21년 지원현황 : 청년창업사관학교 1,065명(팀)(예산 968억원)

**문의처** ● 주요 연락처

|          | 구 분            | 전화번호                                   |
|----------|----------------|----------------------------------------|
| 수도권 및 강원 | 본교<br>(안산, 구리) | (안산) 031-490-1351, (구리) 031-554-2784~8 |
|          | 서울             | 02-2130-1437                           |
|          | 인천             | 032-858-7860~1                         |
|          | 경기북부(파주)       | 040-4243-0915                          |
|          | 강원(원주)         | 033-748-9266, 9268~9                   |
| 충청권      | 대전             | 042-863-9939                           |
|          | 세종             | 044-850-5631~2                         |
|          | 충남(천안)         | 041-559-9282~9                         |
|          | 충북(청주)         | 043-903-9356~8                         |
| 호남권 및 제주 | 광주             | 062-250-3030~4, 3039, 3042~3, 3069     |
|          | 전북(전주)         | 063-276-8218~20                        |
|          | 전남(나주)         | 061-331-8708                           |
|          | 제주             | 064-759-9649                           |
| 영남권      | 대구             | 053-656-8176~8                         |
|          | 경북(경산)         | 053-819-5053                           |
|          | 부산             | 051-305-9929~31                        |
|          | 울산             | 052-276-8937~9                         |
| 본사       | 경남(창원)         | 055-548-8050~1, 8062, 8064             |
|          | 창업지원처          | 055-751-9835                           |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kosmes.or.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선발은 사관학교별로 진행되나요?**

A. 선발절차는 각 사관학교별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본교(안산)으로 신청하시면 본교(안산)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하고, 서울로 신청하시면 서울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Q. 사관학교에 선정된 후 현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진공에서 안내한 계좌로 현금부담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1-3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글로벌 D.N.A. 분야 혁신창업기업 패키지 지원

D.N.A. 분야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 글로벌 사업화지원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하 D.N.A. 분야 (예비)창업팀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종인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종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동 사업을 통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 등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종인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글로벌 D.N.A. 교육) 우수한 D.N.A.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대상 단계별 · 과제별 혁신교육 제공

- ① D.N.A 특화교육 : 국내 D.N.A 현업전문가 및 대기업 협업교육
    - \* 서울대, 카이스트 AI 대학원 및 NHN 등 대기업 참여('20년)
  - ② 실전 프로젝트교육 : 세계적 AI 경진대회 플랫폼 'Kaggle'의 기출 프로젝트 해결 및 실전대회 참여 지원
  - ③ 글로벌 대기업교육 : D.N.A. 분야 글로벌 대기업\*의 분야별 기술교육
    - \* 글로벌 D.N.A 선도기업(AWS, MS, NVIDIA, Googlecloud 4개사, '21년 기준) 참여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글로벌 탐티어 액셀러레이터\*가 글로벌창업사관 학교에 상주하여 밀착 · 보육 실시

\* Techstars, 500 Startups, SOSV, Startupbootcamp, Plug and Play (5개사, '21년 기준) 참여

- (사업비지원) 최대 50백만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하)  
\* 입교팀 평가(중간·성공)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별도지급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원분야 확대) ('20년) AI 분야 → ('21년) D.N.A 3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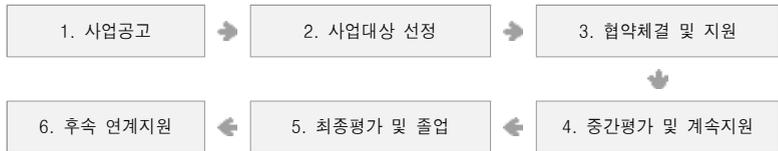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21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60명(개사), 예산 109억원  
\* '21년 지원현황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60명(팀)(예산 109억원)

**문의처**

- 주요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창업팀(02-6735-1333)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kosmes.or.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팀 신청의 경우 전원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팀 신청의 경우, 신청자와 팀원 모두 신청자격 적격여부를 검토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사관학교에 선정된 후 현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진공에서 안내한 계좌로 현금부담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1-4

## 스타트업 시기술인력 양성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

청년을 인공지능 실무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여 청년인재와 혁신 벤처스타트업 간 미스매치 해소 및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학력·전공과 무관, 만 39세 이하의 청년

## 지원이 안 되는 자

- ▶ 교육과정 수료 및 수료 이후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재학생 및 휴학생, 직장인 등은 제외 (단, 전과정 수료 및 즉시 취업이 가능한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인공지능 특화교육) 인공지능 관련 학과의 4년 교육과정 및 실전 프로젝트까지 4단계에 걸쳐 10개월간 집중 운영

- ① 인공지능 초급과정 : 인공지능 활용에 기본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알고리즘 개론 등 기초 공통과정 운영
- ② 데이터 엔지니어링/분석 과정 :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초부터 라이브러리 활용까지 실무업무에 필요한 빅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술과정 운영
- ③ 인공지능 심화 및 백엔드 개발 등 과정 : 백엔드 개발, API, 다양한 인공지능 툴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적 인공 지능 과정 운영
- ④ 산업 융합형 실전 프로젝트 교육 : 캐글(Kaggle) 플랫폼\* 기반 모의·실전 경진대회 참가 및 벤처스타트업 연계 프로젝트 실습

\* 전세계 시개발자 온라인 커뮤니티 및 AI경진대회 플랫폼(190여개국 300만명 참여)

- (스타트업 채용기회 마련) 인공지능 개발자 채용 의사가 있는 스타트업 풀을 구축하여 교육생과의 매칭데이 운영 등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발심사) 서류평가(요건확인) → 적성검사 → 심층면접

\* 적성검사 : 자격검토, 인적성(IT분야 등) 및 인공지능 상식 평가 등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22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200명, 27억원

**문의처**

- 주요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2-6735-1342~3)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kosmes.or.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IT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학력이나 전공과 무관하게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교육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

A. 교육 장소는 서울 홍대 스파크플러스(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86, LC홍대 타워)입니다.

**Q. 사업에 선정되면 교육비는 얼마를 내야하나요?**

A. 교육비는 따로 들지 않습니다. 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교육비용은 내실 필요 없이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5

##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 및 성장 지원사업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 등을 통해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자금과 아이템 실증검증 등으로 구성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의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1억원)

● (특화프로그램) 아이템 시장검증,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 \* 서면 및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등 종합적으로 평가

**처리절차**



**지원규모**

- 910개사 내외(예산 925.4억원)
  - \* '21년 지원현황 : 960개사(최대 1억원 지원)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초기창업실) : 044-410-1834, 1837~9, 1841, 1843~6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사업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거주지역 이외의 주관기관을 선택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의 사업공고에 업로드된 주관기관 자료를 참조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창업 3년 이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다수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초기창업 패키지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6

##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 주관기관의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스케일업 촉진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특화 프로그램(BM 고도화, 협업, 인프라 등) 지원

●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과 대기업의 맞춤형 프로그램(교육·컨설팅, 인프라, 판로, 투자유치, 공동사업 등)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3월(예정)

●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접수(3~4주) → 선정평가 및 협약(2개월) → 자금 및 서비스 지원(10개월 내외)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문제인식 : 제품서비스 해결과제, 경쟁자 대비 개선과제, 고객니즈 개선과제
- 실현가능성 :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고객 요구 대응방안,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 성장전략 :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 팀 구성 : 대표자 및 팀원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기술개발 역량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600개사 내외(예산 900억원)
- \* '21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2,976개사, 선정지원기업 600개사, 평균지원금액 1.3억원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도약실) : 044-410-1860, 1861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참조

Q&A

Q. 중기부 예비창업자 및 지원사업을 기 수혜 받았는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도 참여초기창업자(1~3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대표님께서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지원사업 기 수혜여부와 상관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1-7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비대면 분야 유망 (예비)창업기업 발굴·지원

비대면 분야 유망한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 육성

### 지원대상

-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종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K-유니콘 프로젝트(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18~'21년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화 지원을 받은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비대면 분야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5억원)
- 특화프로그램 :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을 활용한 (예비)창업기업 맞춤형 지원(인증, 기술평가 등) 및 소관부처별 정책 연계 지원

###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 \* 서면 및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 종합 평가

**처리절차**



**지원규모**

- 300개사 내외(예산 450억원)
  - \* '21년 지원현황 : 400개사(최대 1.5억원 지원)

**문의처**

- 홈페이지 [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4-410-1989, 1982, 1991
- 주관기관 : 공고문 참고

**Q&A**

**Q. 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는데, 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A. 비대면 창업아이템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대면 관련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Q. 어떤 주관기관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사업 아이템과 연관성이 높은 세부 분야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고문 붙임자료의 [주관기관 소개자료]를 확인하시어, 귀하가 원하는 특화 프로그램(인증, 시장검증 등)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8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해외 유망 창업기업의 국내유치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유입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

**지원대상** ● 외국 국적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지원내용** ● 상금(최대 1.36억원) 및 국내정착지원금(월 350-500만원/팀), 창업공간 및 헬프데스크 등 보육인프라,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등 후속지원

| 구 분    | 세부내용                                                                                                                                                                  |
|--------|-----------------------------------------------------------------------------------------------------------------------------------------------------------------------|
| 액셀러레이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된 60개 창업팀에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혜택 부여</li> <li>■ 약 3.5개월간 보육(컨설팅, 비즈니스 연계, 교육 등) 및 행정 지원</li> </ul>                               |
| 비자 발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ASIS프로그램을 통해 창업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li> </ul>                                                                                |
| 정착지원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기간 동안 참가팀(60개), 3.5개월(월 350만원/1인팀, 월 500만원/2인팀)</li> <li>■ 데모데이 우수팀(30개), 3.5개월(월 350만원/1인팀, 월 500만원/2인팀)</li> </ul>       |
| 시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모데이 등을 통해 상위팀(10개)에게 상금 지급</li> <li>* '21년의 경우, (1위)12만달러, (2위)7만달러, (3위)4만달러, (4위)2.5만달러, (5위)1.5만달러(6~10위)1만달러</li> </ul>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누리집([www.k-startupgc.org](http://www.k-startupgc.org))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2.4월 ~ 6월 예정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온라인 지원서(행정정보, 팀(기업)정보, 사업내용, 향후계획 등)

\* 지원서 양식은 [www.k-startupgc.org](http://www.k-startupgc.org) 참고

**처리절차**



**지원규모**

- 외국인 참가팀 60개팀  
\* '21년 지원현황 : 외국인 참가팀(54개팀)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 : 031-8016-1771
-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누리집(www.k-startupgc.org) 참조

1-9

## 팁스(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팁스 운영사가(창업기획자 등)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엄선하여 투자·보육하면, 정부가 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매칭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기술창업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 (프리팁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초기 창업기업
  -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팁스 운영사,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 창업지원사업 계획공고 기준, '사업화'분류에 포함된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중인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또는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팁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또는 예비 창업기업\*)
    -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운영사 추천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포스트팁스) 팁스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받은 기업 중 후속 민간 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졸업기업

- \* 아래 6개 기준 중 1개 이상 달성 시, ‘성공’판정
  - ①사업화에 따른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 ②사업화에 따른 연간 수출액 50만달러 이상,
  - ③상시근로자 20인 이상,
  - ④후속투자 유치(최근 3년 벤처캐피탈 평균 투자금 이상),
  - ⑤M&A(10억 이상), ⑥코스닥(코넥스 포함) 등 IPO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TIPS 프로그램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또는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프리팁스)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10개월간 최대 1억 지원
  - \*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
- (팁스)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자금(최대 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해외 마케팅 자금(최대 1억원)을 연계지원
  - \* 필요시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인 밀착 지원

- (포스트팁스) 제품·서비스의 상용화(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판로 확대) 등 사업 고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프리팁스 협약기간 12개월 → 10개월로 축소  
 포스트팁스 협약기간 24개월 → 18개월로 축소

**신청·접수**

- (팁스) 상시 접수 (팁스 홈페이지 [www.jointips.or.kr](http://www.jointips.or.kr) 및 각 팁스 운영사 홈페이지)
- \* (심사평가 주요내용) 각 팁스 운영사별 자체 평가(투자심사) 후 정부 최종 선정평가 (정부 최종 선정평가 주요내용) 기술성, 사업성, 사업수행역량 등
-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프리팁스) 아이템의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사업성, 기술성 등
- (포스트팁스) TIPS 성과,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등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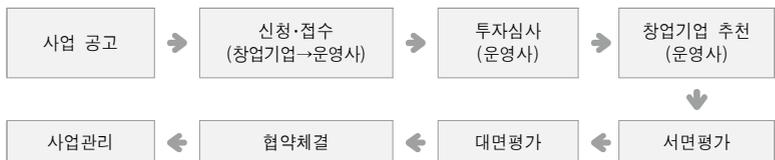
- (팁스) 사업계획서 등(각 팁스 운영사별 별도 양식)
-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통장사본 등

**처리절차**

- (프리팁스 선정절차)



- (팁스 선정절차)



- (포스트팁스 선정절차)



**지원규모**

- (프리팁스, Pre-TIPS) 총 예산 30억원, 30개팀 내외
- (팁스, TIPS) 총 예산 2,683억원, 525개팀 내외
  - \* (R&D) 2,157억 (비R&D) 526억(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포스트팁스, Post-TIPS) 총 예산 180억원, 50개팀 내외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민관협력창업실) : 02-3440-7306
-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사업본부 : 02-3440-7421
- K-Startup ([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또는  
팁스 홈페이지 ([www.jointips.or.kr](http://www.jointips.or.kr))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1-10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유망 사내벤처팀의 아이템 사업화 및 분사창업 지원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팀)의 사업화와 성장 지원을 통해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대상** ● 사내벤처팀 및 창업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 및 후속지원, 액셀러레이터 연계를 통해 사업성공률 제고



\* 정부지원 내용 : 사업화(1억원), 제품화·전략마케팅 등 사업화 후속 실증 지원(최대 1억원), 주관기관(액셀러레이터) 연계 등

\* 세부내용(지원조건, 선정절차 등)은 운영기업 및 지원대상에게 별도 안내

**신청·접수** ● 2022년 1·2·3분기 공고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21년 사업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추천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총 150억원(150개 과제)

**문의처**

- 창업진흥원(혁신창업실) : 044-410-1695, 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1-11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국내 창업자의 해외창업·진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에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진출계획의 구체화를 지원하여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 지원내용** ● 해외시장 검증 프로그램 및 해외시장 실증 테스트 지원 등
- 해외시장검증 : 국가별 현지 액셀러레이터 활용 보육 프로그램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 등
  - 해외실증지원 : 글로벌 대기업과의 기술·사업 모델 검증(PoC)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현지화 및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 신청·접수** ● '22년 3월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후 현지 액셀러레이터 서류·발표 평가 진행
- 제출서류** ● 해외 액셀러레이터별 상이(영문 사업신청서, 영문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에 첨부 예정
- 처리절차**
- |                 |   |              |   |                     |   |                            |
|-----------------|---|--------------|---|---------------------|---|----------------------------|
| 모집공고<br>중소벤처기업부 | ➔ | 신청·접수<br>온라인 | ➔ | 서류/발표평가<br>해외액셀러레이터 | ➔ |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br>해외액셀러레이터 |
|-----------------|---|--------------|---|---------------------|---|----------------------------|
- 위의 절차는 변동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지원규모** ● 140개사 내외
- 문의처** ●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실 : 02-3440-7312, 7327, 7322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2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국내 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창업사업화 지원)와 글로벌 기업(보유인프라 지원)이 협업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입기회 마련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 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 중소벤처기업부 '19~21년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포스트팁스 (POST-TIPS)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신규 콘텐츠 개발, 서비스 기능 개선, 직원 고용, 특허출원 등 사업화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 (기업당 최대 3억원)
-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교육, 전문기술 코칭, 유통망 연계, 마케팅·홍보, 투자유치 기회 등 제공
  -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현황 : ('19년) 구글플레이 → ('20년)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MS, AWS, 다쓰시스템 → ('21년)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MS, 다쓰시스템, 엔시스, 지멘스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3월
-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접수(3~4주) → 선정평가 및 협약(2개월) → 사업화 자금 및 글로벌 기업 서비스 지원(8개월 내외)
  -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문제인식 : 제품서비스 해결과제, 경쟁자 대비 개선과제, 고객니즈 개선과제
- 실현가능성 :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고객 요구 대응방안,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 성장전략 :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 팀 구성 : 대표자 및 팀원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기술개발 역량
-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시너지 : 협업 희망 분야와 계획, 보유역량

처리절차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예산 300억원)
- \* '21년 지원현황 : 창업기업 200개사 선정·운영 중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4-410-1685~7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참조

Q&A

Q. 글로벌 기업에서 창업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항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글로벌 기업에서는 보유한 인프라(전문인력, 플랫폼 등)를 통해 전문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투자유치 연계, 네트워킹 등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 촉진을 지원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1-13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분야 혁신 창업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혁신기술 창업기업을 발굴·육성을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국내 공급역량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지원내용** ● 대중견 수요기업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장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소·부장 유망 창업기업 발굴

● 선정된 창업기업 대상 파트너 수요기업 매칭, 수요기업과 주관기관이 공동으로 멘토링 및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 지원

● 최종 선정기업(20개사)에게 사업고도화를 위한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보증, 기술개발 R&D 가점 등 종합 지원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및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공모

**처리절차**



**지원규모** ● 20개사(50억원)

**문의처** ● 창업진흥원(혁신창업실) : 044-410-1690, 1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1-14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지원내용** ● 로컬크리에이터의 성장단계에 따른 사업화자금 지원 및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안착을 위한 협업 지원

● 사업화지원 : 로컬크리에이터 성장단계에 맞게 예비창업자(최대 1천만원)와 기창업자(최대 3천만원)로 구분하여 BM 구체화, 마케팅 등을 위한 자금 지원

● 협업지원 : 로컬크리에이터 간 아이디어의 교류·융합을 통한 지역 혁신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과제 지원(최대 1억원)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및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공모

**처리절차**



**지원규모** ● 200개사(69억원)

**문의처**

●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 044-410-1883, 1885, 189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1-15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대기업과 창업기업의 상생협력 지원

대기업과 창업기업이 서로 최적의 협업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상호 협업과제를 제안·채택하는 연결 정책으로 창업생태계의 상생협력 인프라 조성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팀) 또는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기술고도화 멘토링 등

**신청·접수** ● 2022년 1·2분기 공고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22년 사업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위의 절차는 변동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규모** ● 60개 내외

**문의처** ● 창업진흥원(창업교류협력실) : 044-410-1715~1718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제2장

# 창업저변 확대

|                             |     |
|-----------------------------|-----|
| 2-1 청소년 비즈쿨 .....           | 382 |
| 2-2 창업에듀 .....              | 384 |
| 2-3 실전창업교육 .....            | 385 |
| 2-4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     | 387 |
| 2-5 도전! K-스타트업 .....        | 389 |
| 2-6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      | 390 |
| 2-7 창업지원포털(K-Startup) ..... | 393 |
| 2-8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   | 394 |

2-1

청소년 비즈쿨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열정, 도전정신 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모의 창업 등을 활용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정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내용** ● 기업가정신 및 체험형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 등을 위한 비즈쿨 지정·운영  
 ●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보급, 담당교사 직무연수 등  
 ● 체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신청·접수** ● 22년은 '21년 청소년 비즈쿨 학교 및 센터 연속 운영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및 사업계획서,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22년 예산 : 63.9억원, 전국 424개 초·중·고등학교 지원

\* '21년 지원현황 : 424개 기관(초등 92개, 중등 72개, 고등 212개, 특수· 31개, 대안 8개, 센터 9개)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 044-410-1951 ~ 4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용어설명

**비즈쿨(Bizcool) :**

Business+School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

2-2

## 창업에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 포털 '창업에듀'를 통해 창업관련 역량강화 교육, 기관 패키지 과정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공 창업을 지원합니다.

-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학생, 일반인 등 일반교육생 및 기관 담당자
- 
- 지원내용**
- 일반 교육생 :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강좌 수강 가능
    - 창업초기부터 재창업까지 단계별, 창업자 역량별 강의 주제 300여개 제공
  - 기관 담당자 : 기관의 요구에 맞춘 '패키지과정'을 구성하여 제공
    - 대학, 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으로 패키지과정 구성 가능
    - 패키지과정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 
- 신청·접수**
- 창업에듀 홈페이지([www.k-startup.go.kr/edu](http://www.k-startup.go.kr/edu))를 통해 연중 수강신청 가능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 044-410-1958, 1959, 1961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2-3

## 실전창업교육

##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등 창업교육 지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최소 요건제품 제작, 고객반응조사 등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및 사업 계획 수립 지원
- 온라인 교육 : 창업 관련 기초 역량 함양 교육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비즈니스모델 수립 지원
  - 오프라인 교육 : 최소요건제품 제작, 고객 및 시장검증,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지원
-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사업계획서 등
- 처리절차**

|      |   |        |   |         |   |        |
|------|---|--------|---|---------|---|--------|
| 사업공고 | ➔ | 온라인 교육 | ➔ | 오프라인 교육 | ➔ | 최종보고 등 |
|------|---|--------|---|---------|---|--------|
- 지원규모** ● 교육생 2,100명 내외, 시장검증 200명 내외(29억원)
- \* '21년 지원현황 : 2,282명 교육, 253명(팀) 시제품 제작 및 시장검증 지원
-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 044-410-1958, 1959, 1961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용어설명

**최소요건제품(MVP) :**

상용화 목적이 아닌 고객반응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한 초기 시제품

## 2-4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세무·회계, 기술보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 처리,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기업)
- ▶ 협약기간 내 휴·폐업 혹은 중단(중단 처분, 중도 포기)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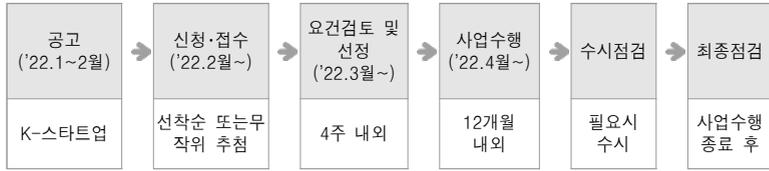
**지원내용** ● ‘세무·회계’, ‘기술보호’ 등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2년간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부문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세무·회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대행 수수료</li> <li>· 결산 및 조정 수수료</li> <li>·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li> </ul> | 연간 최대 100만원 |
| 기술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등</li> </ul>                                              |             |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처리절차**



**지원규모**

-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11,000개사 내외(121억원)  
\* '21년 지원현황 : 16,000개사 내외(예산 173억원)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인프라조성실 : 044-410-1925, 044-410-192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2-5

## 도전! K-스타트업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중기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부처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포상 및 창업 후속지원

### 지원대상

-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팀) 및 창업자(팀)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기수상자 또는 수상 아이템(특별상 제외)
- ▶ 도전! K-스타트업 통합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 금액 50억원 초과 기업
- ▶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다른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팀)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원의 수상내역 포함, 기창업자는 대표자 수상내역만 해당)
-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지원내용

- 상금 (최대 3억원), 상장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예비·초기창업패키지 등) 연계 지원 등

### 신청·접수

- 1~3월 중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통합 공고 후 부처별 예선리그 개별 접수

### 처리절차

- 부처별 예선 → 본선 → 결선 → 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팀 결정



### 지원규모

- (예산) 21.15억원, (규모) 20개팀 내외

###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창업진흥원 창업교류협력실 : 044-410-1711, 1713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2-6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창업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지원대상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

### 지원내용

-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지방세정보망), 국세청(EITC),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4대보험 연계시스템)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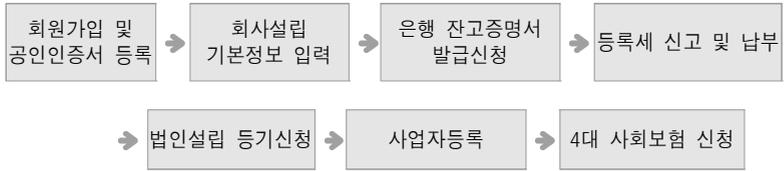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http://www.startbiz.go.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가능

제출서류

| 절 차                  | 관련기관              | 제출서류의 종류                                                                                                          |
|----------------------|-------------------|-------------------------------------------------------------------------------------------------------------------|
| 상호검색                 | 서울지법상업<br>등기소     | -                                                                                                                 |
| ↓                    |                   |                                                                                                                   |
| 공증                   | 공증사무소             |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주주·임원 인감증명서, 진술서, 창립사항보고서                                                     |
| ↓                    |                   |                                                                                                                   |
| 주금납입보관<br>증명서        | 금융결제원             |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의뢰서                                                                                      |
| ↓                    |                   |                                                                                                                   |
| 등록세납부                | 지자체<br>(행안부)      | 법인설립등기신청서,<br>신고서                                                                                                 |
| ↓                    |                   |                                                                                                                   |
| 상업등기                 | 대법원<br>(등기소)      |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증, 채권매입필증,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
| ↓                    |                   |                                                                                                                   |
| 법인설립신고<br>및<br>사업자등록 | 국세청<br>(세무서)      |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br><br>* 해당될 경우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사업허가·등록필증 사본, 현물출자명세서                   |
| ↓                    |                   |                                                                                                                   |
| 4대 사회보험<br>신고        | 사회보험<br>기관        | 사업장적용신고서,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 ↓                    |                   |                                                                                                                   |
| 취업규칙신고               | 고용노동부<br>(고용노동지청) | 취업규칙신고서                                                                                                           |

\* 음영부분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설립 할 경우 중복제출이 불필요

처리절차



문의처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콜센터 : 1577-5475
- 창업진흥원 ICT전략실 : 044-410-165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가능합니까?**

A. 네, 현재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법인전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Q. 외국인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인설립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외국인의 경우 현재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설립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설립과 관련한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법인설립을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1. 자본금을 확인하는 잔액(고)증명 수수료
  2. 법인등록면허세(자본금규모와 지역, 형태에 따라 상이)
  3. 법인등기를 위한 수수료

2-7

## 창업지원포털(K-Startup)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한 곳에! 창업 시작부터 성장 단계별 정보 제공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시설 및 공간 등 창업정보를 종합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사이트주소**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법적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창업 정보의 제공)

**지원내용** ●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성장 단계별로 정보 제공

- ① 창업준비(대국민)
  - ② 예비창업(예비창업자)
  - ③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④ 창업도약(3~7년 기업)
  - ⑤ 재창업(재창업자)에 맞추어 사업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R&D 정보 제공
- 창업사업의 '신청·접수, 협약, 사업비 정산' 등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예비창업, 창업초기, 창업성장, 재도전 창업단계별 온라인 창업 강좌 서비스
  - (예비)창업자 창업역량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 공간정보제공 : 전국 13,000여개여개의 창업공간 정보 제공

**사용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가능

**문의처** ● 창업진흥원(ICT전략실) : 044-410-1652~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8

##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국내 창업자의 해외창업·진출

해외 유명 전시회에 「K-스타트업관」을 구축하여 해외진출 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 \* 전시회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대상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진출 지원 및 사후 홍보 종합 지원
    - 전시지원 : 온·오프라인 통합관 구성, 부스 전시, 투자 상담, 해외 바이어 매칭 및 네트워킹 등 참여 지원 등
    - 홍보지원 : 기업별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수상 실적, 투자 유치 등 참여 성과를 국·내외 언론 대상으로 홍보
- 신청·접수**
- '22년 3월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에 첨부 예정

## 처리절차



- 위의 절차는 변동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
- \* 전시회 종류 및 개최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교류협력실 : 044-410-1720, 1714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제3장

# 창업지원 인프라

|                          |     |
|--------------------------|-----|
| 3-1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 | 398 |
| 3-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 400 |
| 3-3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 402 |
| 3-4 창조경제혁신센터 .....       | 404 |
| 3-5 창업존 운영 .....         | 406 |
| 3-6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 408 |

## 3-1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공간 조성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제조창업 저변 확대 및 시제품제작, 양산 등 제조창업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민간·공공 기관 및 단체

**지원내용** ● 메이커 스페이스 시설 구축, 장비 구입 및 공간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추진역량, 공간 입지·인프라, 사업추진계획 등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메이커 스페이스 전국 누적('21년 기준) 213개 구축

\* 연도별 지원현황 : ('20년) 63개소(누적 192개소), 332억원 → ('21년) 21개소(누적 213개소), 345억원

**문의처**

-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 044-410-1882, 1884, 1886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 Q&amp;A

## Q.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와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적 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고도화 장비를 갖춘 권역별 거점 공간으로 전문 메이커의 고도화된 전문적인 창작활동과 함께 지역 창업지원기관을 연계하여 우수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용어설명

**메이커(Maker)** :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창작·개발하는 자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어보는 창작활동을 하는 대중을 지칭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엔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춘 공간을 의미합니다.

## 3-2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장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One-stop 창업지원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거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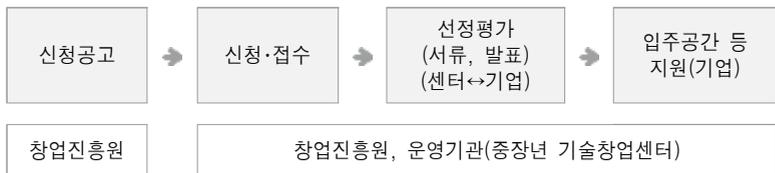
**지원내용** ●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있는 중장년을 발굴하여 교육·창업 공간·보육 등 One-stop 형태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분 야   | 내 용                                                                    |
|-------|------------------------------------------------------------------------|
| 발굴    | • 대기업·공공기관 등 (예비)퇴직자 대상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 기술·경험·직무역량이 있는 중장년을 창업생태계로 유도  |
| 창업교육  | • 사업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 등을 위한 실전창업 교육과정을 각 센터별로 운영하여 창업준비기 중·장년의 창업역량강화 |
| 공간 지원 | •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교류를 통한 중장년 창업분위기 조성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
| 보육 지원 | •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네트워킹 행사, 멘토링, 경영·마케팅,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창업성장 지원         |

**신청·접수** ● '22년 연중 수시\*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직접 방문 또는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 입주기업 모집 기간을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

\* 센터별 모집일정에 따라 교육생, 입주기업 모집기간 상이

**처리절차**



**지원규모**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36개소 내외('22년, 46.08억원)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창업진흥원(창업인프라조성실) : 044-410-1921, 1928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2022년 지원시책」참조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권역    | 지역       | 연락처                | 권역  | 지역            | 연락처            |
|-------|----------|--------------------|-----|---------------|----------------|
| 서울    | 마포구      | 070-7727-4100~4101 | 울산  | 동구            | 052-209-1510   |
|       | 성북구      | 02-941-7257        |     | 울주군           | 052-277-1996   |
| 대구·경북 | 달서구      | 053-589-7558       | 인천  | 남동구           | 032-726-3883   |
|       | 수성구      | 053-784-8261       | 경기  | 성남시           | 031-707-5961~2 |
|       | 칠곡군      | 054-973-9605       |     | 의정부시          | 031-850-5815~6 |
| 광주·전남 | 광주 동구    | 062-610-9520, 9522 |     | 고양시           | 031-936-7485   |
|       | 전남 목포시   | 061-280-7499       | 포천시 | 031-539-2888  |                |
| 충북    | 청주시(상당구) | 043-254-8666       | 안양시 | 031-8045-6715 |                |
|       | 청주시(서원구) | 043-217-1311~2     | 이천시 | 031-639-1442  |                |
| 충남    | 당진시(읍내동) | 041-356-8748       | 경남  | 진주시           | 055-772-3613   |
|       | 서산시(해미면) | 041-660-1327       |     | 양산시           | 055-380-9656   |
|       | 논산시(내동)  | 041-730-5626       |     | 김해시           | 055-310-9260~1 |
| 대전    | 유성구      | 042-939-4741       | 통영시 | 055-649-0216  |                |
| 전북    | 익산시      | 063-851-7480       | 부산  | 금정구           | 051-581-4050   |
|       | 전주시      | 063-711-2141       | 제주  | 서귀포           | 070-7732-0202  |
|       | 군산시      | 063-446-6700       |     |               |                |

3-3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창업보육 인프라 지원

대학·연구소 등을 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하여 초기창업자에게 사업공간, 경영·기술 자문 등 창업기업에 성장기회를 제공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 (예비)창업자

**지원방법**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 초기(예비)창업자 : 창업 사무공간 제공 및 기술·경영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 창업보육센터 :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청·접수** ● 초기(예비)창업자 : 입주기업 모집은 창업보육센터별 상이  
● 창업보육센터 : 신규지정 신청은 해당지역 지방청에서 연중 수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보육센터 : 사업추진계획, 창업기업지원 계획 등

**제출서류** ● 초기(예비)창업자 : 입주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창업보육센터 :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응투자자금 조달 협약서, 창업보육 사업 계획 협약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등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전체예산 119억원
  - \* 전국 263개 창업보육센터

---

**문의처**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 042-346-9606, 9621
-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홈페이지([www.bi.go.kr](http://www.bi.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3-4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창업의 허브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사업화 및 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내용** ● 창업지원\*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회, 창업세미나, 지역 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원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별 기술특화분야 연계

● 원스톱서비스 지원 : 창업 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서비스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서비스 지원내용이 상이

**신청·접수** ● 연중 수시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 방문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https://ccei.creativekorea.or.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접수(프로그램별로 신청 방식 상이)

\* 원스톱서비스(법률, 회계 등)는 지역별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문의 가능

**지원규모** ● 363.68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4-204-7675, 7677, 7607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410-1881, 1887, 1892

● 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역 | 연락처           | 지역 | 연락처            |
|----|---------------|----|----------------|
| 강원 | 033-248-7900  | 세종 | 044-999-0003~5 |
| 경기 | 031-8016-1102 | 울산 | 052-222-9015   |
| 경남 | 055-256-2700  | 인천 | 032-458-5064~7 |
| 경북 | 054-470-2614  | 전남 | 061-661-2002   |
| 광주 | 062-364-9137  | 전북 | 063-220-8900   |
| 대구 | 053-759-8138  | 제주 | 064-710-1900   |
| 대전 | 042-385-0666  | 충남 | 041-536-7888   |
| 부산 | 051-749-8900  | 충북 | 043-710-5900   |
| 서울 | 02-723-9100   |    |                |

●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홈페이지 : <https://ccei.creativekorea.or.kr>

| 지역 | 혁신센터별 홈페이지                                                                                  | 지역 | 혁신센터별 홈페이지                                                                                |
|----|---------------------------------------------------------------------------------------------|----|-------------------------------------------------------------------------------------------|
| 강원 | <a href="https://ccei.creativekorea.or.kr/gangwon">ccei.creativekorea.or.kr/gangwon</a>     | 세종 | <a href="https://ccei.creativekorea.or.kr/sejong">ccei.creativekorea.or.kr/sejong</a>     |
| 경기 | <a href="https://ccei.creativekorea.or.kr/gyeonggi">ccei.creativekorea.or.kr/gyeonggi</a>   | 울산 | <a href="https://ccei.creativekorea.or.kr/ulsan">ccei.creativekorea.or.kr/ulsan</a>       |
| 경남 | <a href="https://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a> | 인천 | <a href="https://ccei.creativekorea.or.kr/incheon">ccei.creativekorea.or.kr/incheon</a>   |
| 경북 | <a href="https://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a> | 전남 | <a href="https://ccei.creativekorea.or.kr/jeonnam">ccei.creativekorea.or.kr/jeonnam</a>   |
| 광주 | <a href="https://ccei.creativekorea.or.kr/gwangju">ccei.creativekorea.or.kr/gwangju</a>     | 전북 | <a href="https://ccei.creativekorea.or.kr/jeonbuk">ccei.creativekorea.or.kr/jeonbuk</a>   |
| 대구 | <a href="https://ccei.creativekorea.or.kr/daegu">ccei.creativekorea.or.kr/daegu</a>         | 제주 | <a href="https://ccei.creativekorea.or.kr/jeju">ccei.creativekorea.or.kr/jeju</a>         |
| 대전 | <a href="https://ccei.creativekorea.or.kr/daejeon">ccei.creativekorea.or.kr/daejeon</a>     | 충남 | <a href="https://ccei.creativekorea.or.kr/chungnam">ccei.creativekorea.or.kr/chungnam</a> |
| 부산 | <a href="https://ccei.creativekorea.or.kr/busan">ccei.creativekorea.or.kr/busan</a>         | 충북 | <a href="https://ccei.creativekorea.or.kr/chungbuk">ccei.creativekorea.or.kr/chungbuk</a> |
| 서울 | <a href="https://ccei.creativekorea.or.kr/seoul">ccei.creativekorea.or.kr/seoul</a>         |    |                                                                                           |

3-5

**창업준 운영**

유망 창업기업 맞춤형 보육지원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및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창업기업 입주공간 및 회의실 등 공용공간 제공  
 ● 보육프로그램 : 교육, 네트워킹, 마케팅, 글로벌 진출

| 구 분    | 주요내용                                   |
|--------|----------------------------------------|
| 교육     | • 최신 선도 기술 세미나, 글로벌 진출 세미나, 실전형 창업교육 등 |
| 네트워킹   | • 내부(입주사), 외부(대기업 연계) 네트워킹 등           |
| 마케팅    | • 각종 홍보물 제작(브로셔, 동영상, CI 등)            |
| 글로벌 지원 | •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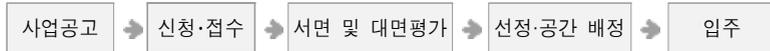
● 인프라지원 : 통·번역센터, 3D제작보육실, 글로벌테스트베드, 비대면회의실, 클라우드 오픈랩

| 구 분       | 지원내용                                    |
|-----------|-----------------------------------------|
| 통·번역센터    | 美, 中, 日 3개국 전문 통번역 서비스 및 교육 제공          |
| 3D 제작보육실  | 디자인·설계 및 3D프린터 등 장비를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
| 글로벌 테스트베드 | 해외 통신환경 구축 및 글로벌 상용망 테스트 서비스 제공 (2G~5G) |
| 비대면 회의실   | 언택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비대면 회의실 공간 운영           |
| 클라우드 오픈랩  | 입주기업 클라우드 기술 컨설팅 및 교육 등 제공              |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예산 62억원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인프라조성실 : 044-410-1925, 1928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 운영팀 : 070-4163-4391, 4392
- 판교 창업존 홈페이지(<http://www.pangyozone.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 3-6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1인 창조기업 안정적 사무공간 지원

사업공간 제공,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밀착상담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예비) 1인 창조기업
- 지원 대상 업종 확인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사업소개-시설·공간·보육-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을 통하여 확인 가능
  - \* 유의사항 : 예비 1인 창조기업자인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함(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지원내용

| 구 분    | 주요내용                                 |
|--------|--------------------------------------|
| 사무공간   | • (예비)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제공          |
| 전문가 자문 | • 세무, 회계, 법률, 창업, 시장조사, 유망산업, 정보제공 등 |
| 교육·멘토링 | • 경영, 마케팅 등 센터별 기본·특화 교육 제공          |
| 사업화    | • 마케팅(광고, 홍보, 디자인 개선 등) 및 판로개척 지원    |
| 네트워킹   | • 동·이종 창업기업 및 투자기관 등 네트워크 활동 지원      |

## 신청·접수

- K-스타트업을 통해 연중 수시 신청·접수
  -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별로 공실 발생 시 지원센터별 수시 모집
  - \* K-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메뉴에서 1인 창조기업 정회원으로 승인 확인된 정회원에 한해 입주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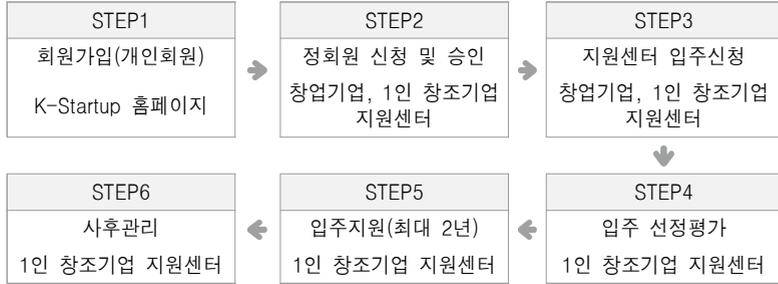
## 정회원 승인 신청시 제출 서류

- (예비창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 \* 정회원 신청(창업기업) → 정회원 자격요건 검토(지원센터) → 정회원 승인(지원센터)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 신청방법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48개소 내외(63억원)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창업진흥원(창업인프라조성실) : 044-410-1926, 1922
- 중소기업창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용어설명**

**1인 창조기업 이란?**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2부

**재도전기업 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제4장

#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                            |     |
|----------------------------|-----|
| 4-1 재도약지원자금 .....          | 414 |
| 4-2 진로제시 컨설팅 .....         | 418 |
| 4-3 회생 컨설팅 .....           | 420 |
| 4-4 중소기업 선제적 구조개선 지원 ..... | 423 |
| 4-5 재도전성공패키지 .....         | 426 |
| 4-6 구조혁신지원사업 .....         | 428 |

## 4-1

## 재도약지원자금

중소기업의 재도약 성공을 지원

신사업 개척을 위한 사업전환자금, 신속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자금 그리고 재창업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지원

**지원대상** ●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 구분             | 지 원 요 건                                                                                                                                                                                                                                                                                                                                                                                                                                                                                                                                                                                                                                                                                                                                                                                                                                                    |
|----------------|------------------------------------------------------------------------------------------------------------------------------------------------------------------------------------------------------------------------------------------------------------------------------------------------------------------------------------------------------------------------------------------------------------------------------------------------------------------------------------------------------------------------------------------------------------------------------------------------------------------------------------------------------------------------------------------------------------------------------------------------------------------------------------------------------------------------------------------------------------|
| 사업<br>전환<br>자금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인수 5인 이상으로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li> <li>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li> <li>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li> </ol>                                                                                                                                                                                                                                                                                                                                                                                                                                                                                                                                                                                                    |
| 구조<br>개선<br>자금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li> <li>•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li> <li>•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li> <li>•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li> <li>•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li> </ul> </li> <li>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부실징후기업</li> <li>③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li> <li>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및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생인가 또는 종결 당시 법원에서 승인한 계획</li> </ul> </li> <li>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li> <li>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li> <li>• Sales &amp; LeaseBack 참여(선정)기업</li> <li>• 국제 물납 법인</li> </ul> </li> <li>⑦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li> </ol> |
| 재창업<br>자금      | <p>재창업 예정이거나 재창업 후 7년 미만인 기업 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업실패로 인한 저신용상태 혹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li> <li>②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자</li> <li>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 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li> <li>④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실패 개인기업의 대표이거나 실패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li> <li>• 협업한 실패기업이 매출실적 보유(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li> </ul> </li> </ol>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승인탈락일 또는 승인취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업체
- ▶ (재창업)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한 기업인 등
- ▶ (구조개선자금) 융자제한조건(10pg) 중 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④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⑤항(한계기업)적용 예외로 하되,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 경우에도 '압류·매각 유예'에 한하며,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적용 예외의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기업'은 융자제한

**지원내용**

| 구분       | 내 용                                                                                                                                                                                                                                                                                                                                               |
|----------|---------------------------------------------------------------------------------------------------------------------------------------------------------------------------------------------------------------------------------------------------------------------------------------------------------------------------------------------------|
| 사업 전환 자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li> <li>•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li> <li>•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br/>※ 무역조정자금 - 2% 고정금리</li> </ul>                                                                                                                                                  |
| 구조 개선 자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한도 : 기업당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br/>*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li> <li>•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li> <li>•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2년 이내<br/>※ 선제적 구조개선<br/>- 2.5% 고정금리, 운전자금(5년 이내, 거치 2년 이내) 포함 및<br/>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 10년, 거치 (담보)4년, 신용(3년) 포함) 지원</li> </ul> |
| 재창업 자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li> <li>•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li> <li>•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li> </ul>                                                                                                                                                                          |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 (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예약, 상담 후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 시장전망, 기술성, 사업성, 상환능력 등을 평가
- (초기재창업자) 재창업준비의 충실성, 재기노력도 등을 심의

**제출서류**

- (공통) 융자신청서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 (재창업) 폐업사실증명원

**처리절차**

- 사업전환자금

전환계획접수

계획심사·승인

자금신청

자금심사·결정

- 구조개선자금

신청접수

자금심사·결정

자금대출

- 재창업자금

신청접수

성실경영평가

자금심사·결정

자금대출

\* 초기재창업자(예비 및 업력 1년미만)는 심의위원회를 통한 별도 절차로 처리

**지원규모**

- 재도약지원자금 총 4,200억원
  - 사업전환 2,500억원, 구조개선자금 700억원, 재창업자금 1,000억원
- \* '21년 지원현황 : 재도약지원자금 2,500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055-751-9624, 9622, 9922)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A**

**Q.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과 사업전환자금 신청은 별개인가요?**

A. 네. 별개입니다. 사업전환자금은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전환계획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창업예정자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인데 지원이 되나요?**

A. 네, 예비재창업자도 신청은 가능하며 심의위원회 평가절차를 통해 지원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출은 사업자등록 후 가능합니다.

## 용어설명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

경영위기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워크아웃제도보다 선제적이고 기업 중심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이 채권은행과 협업하여 '기업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신규자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4-2

## 진로제시 컨설팅

경영위기기업에 대한 진로제시

경영위기 기업을 전문가가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기업회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연계지원

**지원대상** ● 경영위기 또는 재창업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 각 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공고의 용자 제한 업종 참고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 및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지원내용**
- (기초 진로제시) 전문가가 경영위기 기업을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기업회생 가능 여부에 대한 진로를 제공
  - (재창업자 컨설팅) 재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과거 실패분석 등을 통해 성공적 재기를 위한 경영컨설팅 제공
  - (사업정리 지원) 기업유지가 곤란하거나 만성적 적자운영으로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기업의 전문분야별 사업정리 지원
  -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의 90% 지원(기업부담 10%)

| 구 분                       |                                                 | 투입일수 | 보수액                    |
|---------------------------|-------------------------------------------------|------|------------------------|
| 기초 진로제시<br>또는<br>재창업자 컨설팅 | 재무분석                                            | 3MD  | 180만원                  |
|                           | 기술사업성 분석                                        | 2MD  | 60만원                   |
| 사업정리                      | 사업정리에 필요한<br>3가지 전문분야* 중 2가지 분야<br>* 세무/노무/법무분야 | -    | 총 240만원<br>(분야별 120만원) |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mssmiv.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사업공고 후 연중 수시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 \* 홈페이지(www.mssmiv.com) 공고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410여개 기업(예산 약 10억원)
- \* '21년 지원현황 : 230여개 기업 지원, 기업당 평균 2백만원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055-751-9620)
- 홈페이지(www.mssmiv.com)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컨설팅 결과인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4-3

### 회생 컨설팅

회생가능성 높은 기업의 회생지원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 및 절차 대행 등을 지원

지원대상

〈 개인회생(개인) 〉

-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개인회생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

〈 기업회생(개인, 법인) 〉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가능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 협업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 가능’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 ARS 적용 회생신청을 한 중소기업 중, 협업법원이 사전조사가 필요한 기업으로 추천한 기업

\* 협업법원 : 서울회생법원 및 지방법원(인천, 수원, 의정부, 광주, 창원, 대구, 대전, 부산, 청주, 제주, 전주, 청주, 춘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 법원에 의해 조사위원이 별도 선임된 경우
- ▶ 회생컨설팅 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 미경과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 및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지원내용

- 개인회생
  - (기본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구조
    - \* 법률구조 : 법률적,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법률적 지원을 통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 \* 중소기업확인서 상 ‘중기업’ 또는 ‘소기업’ 의 대표자 한정

- (그 외 중소기업인) 재기컨설팅을 통해 법률대리인(변호사) 지원
  - \* 보수한도 : 업체당 240만원 적용(보수한도의 10% 및 재판 소송비용은 기업부담)
- 기업회생 :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대표자심문 답변서, 채권목록 작성
  - 시부인표 작성, 관리인조사보고서 자문, 회생계획안 자문
  - 관계인집회 관련 서류, 회계세무 자문 등
-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구 분 |                        |                 | 지원금액                           |
|-----|------------------------|-----------------|--------------------------------|
| 유형  | 채무액                    | 신청사건            |                                |
| 개인  | 담보채무 15억 및 일반채무 10억 이하 | 개인회생사건          | 240만원<br>(기업부담 10%)            |
|     | 담보채무 15억 및 일반채무 10억 초과 | 기업회생*<br>회생단독사건 | 최대 3,000만원<br>(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 법인  | 무관                     | 회생합의사건          |                                |

\* 간이회생사건(총 채무액 50억 이하) 포함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mssmiv.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평가시 대표이상의 횡령, 배임사유가 확인되면 지원불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 \* 홈페이지(www.mssmiv.com) 공고 참조

**처리절차**

- 개인회생



● 기업회생



지원규모

- 150여개 기업(예산 45억원)

\* '21년 지원현황 : 11월 현재 67개사 지원, 기업당 평균 24백만원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055-751-9620)
- 각 지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 홈페이지(www.mssmiv.com)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기존 컨설턴트(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한 보수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지원대상 선정 후 중진공과 협약이 체결된 컨설턴트에 대한 보수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4-4

## 중소기업 선제적 구조개선 지원

경영위기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을 포함한 구조개선 지원

위기 중소기업의 회생 등 법적 절차 진입 전, 자율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

- 지원대상**
-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금융권(중진공 포함) 신용공여액 총합계 100억원 미만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

| 구 분            | 대 상                                                                                                |
|----------------|----------------------------------------------------------------------------------------------------|
| 업력/업종          | ▶ 설립 3년 이상 법인기업 (제조업 우대)                                                                           |
| 채무현황           | ▶ 전체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합계가 100억원 미만인 기업                                                                   |
| 제한요건           | ▶ 가압류, 세금체납 등 권리침해 및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
| 기업상태           | ▶ 회생절차 신청 전인 기업                                                                                    |
| 신용위험<br>등<br>급 | ▶ (중진공) 조기경보 최종등급기준 “주의” 또는 “예비경보” 기업<br>- 단, 은행이 추천한 경우, “경보”기업도 가능<br>▶ (금융권) 신용위험평가결과 B~C등급인 기업 |
| 외감기업           | ▶ 최근 결산연도 감사의견이 “부적절” 또는 “의견거절”이 아닌 기업                                                             |

- 지원내용**
- 재무실사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 지원 및 구조개선 이행에 필요한 금융 지원(구조개선자금 등)

| 구 분  | 지 원 내 용              | 비 고                    |                 |
|------|----------------------|------------------------|-----------------|
| 규모   | 신규대출                 | 신규자금 신용대출 지원 (시설 및 운전) | 고정금리(2.5%)      |
|      | 만기연장                 |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           | 통상 1년 단위 연장     |
|      | 금리인하                 | 기존 대출금의 금리인하           | 금리 Cap(금리상한) 적용 |
| 경영개선 | 구조개선 계획 수립 시 회계법인 지원 | 회계법인 재무실사 지원           |                 |

- 신청·접수**
- 전국 18개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접수

처리절차



지원규모

- 총 70개사 내외 (총 350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개선센터 : 055-751-9924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붙임)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현황〉

| 센터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서울 동남구<br>재도전종합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br>VR빌딩 1층            | 02-2023-4332 |
| 서울 서부<br>재도전종합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4층                    | 02-2106-7458 |
| 경기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br>경기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 11층 | 031-260-4937 |
| 부산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br>에이동 1층           | 051-630-7414 |
| 대전세종<br>재도전종합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01                | 042-281-3741 |
| 인천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12 갯벌타워 14층                    | 032-837-7033 |
| 대구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10 엑스코 4층                      | 053-606-8433 |
| 경남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br>원이대로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 055-270-9767 |
| 광주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84<br>상무트윈스 B동 6층            | 062-600-3024 |
| 울산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274 W-Center 14층                | 052-703-1139 |
| 전북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67<br>전주상공회의소 4층          | 063-210-9942 |
| 강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54 우리은행빌딩 5층                     | 033-269-6939 |
| 경기북부<br>재도전종합지원센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138일<br>산테크노타운관리동 102호      | 031-920-6714 |
| 충북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50<br>중소벤처종합지원센터 4층         | 043-230-6813 |
| 경북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7<br>경상북도 경제진흥원 5층             | 054-440-5917 |
| 제주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473<br>경제통상진흥원 3층            | 064-754-5153 |
| 전남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br>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061-280-8033 |
| 충남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br>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10층        | 041-589-4586 |

## 4-5

## 재도전성공패키지

성실실패 기업인에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우수한 (예비) 재창업자를 발굴하여 패키지식 사업화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기술기반 재창업 지원

- 지원대상**
- 폐업 이력이 있고 기술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사업공고일 기준)

**지원유형  
및 내용**

| 유형     | 지원내용                                                                                                                                                        |
|--------|-------------------------------------------------------------------------------------------------------------------------------------------------------------|
| 일반형    |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및 재창업교육, 멘토링 등 지원<br>- 사업화 자금 최대 6천만원, 협약기간 8개월                                                                       |
| 채무조정형  | - 채무조정이 필요한 (예비)재창업자 대상 신용회복과 선정평가 동시 진행<br>-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및 재창업교육, 멘토링 등 지원<br>- 사업화 자금 최대 6천만원, 협약기간 8개월                           |
| IP전략형  | - (지식재산 컨설팅) IP전략 수립, 기술적 문제해결을 통한 IP기술 제품화, 특허 권리확보 등 지원(최대 5천만원, 특허청)<br>- (재도전성공패키지)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및 재창업교육, 멘토링 등 지원(최대 6천만원, 중기부) |
| TIPS-R | - 1천만원 이상 민간투자를 유치한 재창업자에 대해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및 집중 엑셀러레이팅 등 지원                                                                                                 |

-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22.1~2월 예정)
    - \* 사업공고 일정은 지원유형별로 상이할 수 있음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폐업증명서 등 (공고문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총 267명 내외 (총 168억원)
- \* '21년 지원현황 : 207명 대상 재창업 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044-204-7483, 7486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 : 044-410-1760~6
-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지원유형별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은 중복하여 가능하지만, 협약은 반드시 선정된 하나의 유형만 체결 가능합니다.

## 4-6

## 구조혁신지원사업

중소기업 신산업 전환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신기술 일자리로의 전환,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진단, 컨설팅, 후속 사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업력 3년 이상,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사업·디지털·노동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진단)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컨설팅 방향 제시
    - \* 진단결과에 따라, 분야별 컨설팅 실시(0-3개 분야)
  - (컨설팅) 회계·노무법인 등 컨설팅사로 등록된 민간 전문법인을 통한 심층 컨설팅 지원(최대 40MD)

| 구분    | 내 용                                    |
|-------|----------------------------------------|
| 사업전환  | • 기업역량, 재무진단, 사업모델 전환, 원가·물류 프로세스 혁신 등 |
| 노동전환  | • 경영 및 생산조직 재설계, 인력 재배치 및 효율화, 노사관계 등  |
| 디지털전환 | • 디지털화 수준, 내부역량, 단계별 개선전략 및 실행과제 등     |

- (연계지원) 중기부, 고용부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고, 해당기업이 원하는 사업의 신청서 작성 지원

| 구분    | 내 용                                                                                            |
|-------|------------------------------------------------------------------------------------------------|
| 사업전환  | • 사업전환자금 등 정책자금 제공,<br>• 우대지원(수출바우처, R&D, 스마트공장, 산업기능요원 등 가점)<br>* 사업전환 승인기업의 혜택은 사업전환 소개자료 참고 |
| 노동전환  | • 노동전환 지원금, 사업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                                                 |
| 디지털전환 | • 중기부 비대면바우처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안내                                                                 |

- 신청·접수**
- 중진공 ([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 및 구조혁신지원 ([3t.kosmes.or.kr](http://3t.kosmes.or.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신청시기 별도공지 예정)

- 제출서류**
-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재무제표 및 기타 증빙서류



- 지원규모**
- 구조혁신진단 : 800건
  - 분야별 컨설팅 : 1,100건(기업부담금 없음)
    - 사업전환 400건, 노동전환 500건, 디지털전환 200건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처 및 각 지역본부(055-751-9298)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 구조혁신지원 홈페이지([3t.kosmes.or.kr](http://3t.kosmes.or.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 3 편

**소상공인, 전통시장**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1부  
소상공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Q&A



### 함께 알아보는 금융지원

**Q.질의** 8년째 동네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100m 이내에 미용실이 10개나 되다보니 단골손님까지 뺏기고 있는데요, 경쟁력 있는 점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A.답변** 업종별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술교육'을 지원합니다.(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사업설명 참조)

**Q.질의** 치킨점을 운영하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와 달리 요즘에는 많이 힘이 듭니다. 만약 문을 닫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답변**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100만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고, 연 복리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공제제도 사업설명 참조)

**Q.질의** 인천 지역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볼까 하는데 상권분석에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자주 가볼 수도 없는 형편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답변**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에 접속하시면 전국 1167개 상권의 상세한 상권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쟁점포, 인구(유동인구 포함), 시설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19여개의 정보가 수록돼있고, 전자지도 형태로 제공돼 원하시는 지역의 상권을 편리하게 분석해보실 수 있습니다.(상권정보시스템 사업설명 참조)

**Q.질의** 장사를 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시설이 너무 낡아 방문객이 점점 줄어듭니다. 시설을 개선하고 싶지만 상인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등에 주차장, 공동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지원 센터 등 고객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케이드 등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0%이내에서 민간이 자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설명 참조)



### 함께 알아보는 금융지원

**Q.질의** 전통시장 상인회입니다. 시장에 입주한 점포의 상인들에게 상인 교육을 할 예정인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인대학, 맞춤형 교육, 전문교육, ICT 교육 등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무료입니다.(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설명 참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제1장

#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                         |     |
|-------------------------|-----|
| 1-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 438 |
| 1-2 상권정보시스템 .....       | 441 |
| 1-3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    | 444 |
| 1-4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 | 446 |

1-1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현장 체험 중심의 창업교육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기초·전문교육, 상품화 지원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실제 창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금 까지 패키지로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 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
  -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불문)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세부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창업자금(융자), 사업화 지원(보조금) 등
  - 창업교육 :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교육 및 제품·서비스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점검하는 업종별 분반 교육 등 지원
  - 점포경영체험교육 :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경영 체험(상품화 지원 교육프로그램 포함)
  - 창업자금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지원(심사를 통해 선발, 총 사업비의 50%이상 자부담조건)
    - \* 세부 지원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접수**

- 온라인접수, '22.1월, 6월 예정(연 2기수 운영)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를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교육)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지역별 교육대상자 선발(15개 지역, 기수 당 250명 내외)
  - \* 아이디어의 참신성, 창업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전문성, 유사경력 등 창업준비도 및 평가

| 사관학교        | 연락처            | 장소                          |
|-------------|----------------|-----------------------------|
| 서울/강원       | ☎ 02-717-9690  |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대시앙루브 7층  |
| 부산/울산/경남    | ☎ 051-463-0212 |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
| 대구/경북       | ☎ 053-353-7667 |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
| 광주/전남/전북/제주 | ☎ 062-367-0135 |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4층 |
| 경기/인천       | ☎ 031-204-3014 | 경기 수원 영통구 반달로 87, 4층        |
| 대전/충북       | ☎ 042-363-7494 | 대전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층     |

- (창업자금)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지원여부 심사
  - \* 사업화 보조금의 경우, 교육이수율, 창업자 역량, 창업준비현황 및 노력도, 성공가능성 등을 심사
  - \* 세부 심사기준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시스템 직접입력)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비 후 제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개인신용평가 확인서(선택) 등

**처리절차**

| 구분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 | 선정결과<br>통보 | → | 창업교육            | → | 점포경영체험<br>(상품화지원) | → | 사업화지원               |
|-----|---------------------|---|------------|---|-----------------|---|-------------------|---|---------------------|
| 15기 | '22.1월중<br>~'22.2월중 |   | '22.2월말    |   | '22.3월초<br>~4월초 |   | '22.4월말<br>~8월말   |   | '22.9월초<br>~12월말    |
| 16기 | '22.5월중<br>~'22.6월말 |   | '22.7월초    |   | '22.7월중<br>~8월말 |   | '22.9월초<br>~12월말  |   | '23.1월초<br>~'23.4월말 |

\* 세부 일정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지원규모**

- 600명 내외(예산 197.5억원)
- \* '21년 지원현황 : 417명(예산 189.5억원)

**문의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newbiz.sbiz.or.kr) ☎ 1357
- 중소기업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54
- 중소기업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Q&A**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유망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학 시 부담금이 있나요?**

A. 네, 교육 수수료 후 사업화 지원(보조금)을 받을 경우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50%)

1-2

## 상권정보시스템

창업의 성공파트너 상권정보시스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역·업종별로 상권·입지·경쟁·수익정보 등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준비된 창업 유도 및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 ● 전국민(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 (상권분석) 선택한 지역에서 관심 업종의 평균 매출액, 유동인구 등 관련 정보 제공

\* 제공업종은 대분류 8종, 세세분류 477개

|    |                                                                       |
|----|-----------------------------------------------------------------------|
| 업종 | 선택상권·행정구역별 선택업종 업소 추이, 업종 생애주기, 업력현황 등                                |
| 매출 | 선택업종 평균매출 및 이용건수 추이, 주중·요일별·시간대별·성별·연령대별 매출 비율 등                      |
| 인구 | 선택영역 성별·연령별 주거/직장인구, 성별·연령별·시간대별·요일별·월별 유동인구 추이, 직업·직종 분포, 주거형태별 분포 등 |
| 지역 | 성별·연령별·행정동별·금액구간별 소득/소비, 주요시설 추이·현황, 학교시설, 교통시설                       |

- (경쟁분석)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안전, 주의, 위험, 고위험 4단계 경고등 형태로 제공
- (입지분석) 특정 입지에 대한 45개 표본업종별 입지가치(예상매출액)의 평균을 종합하여 평가한 입지등급 정보 제공
- (수익분석) 특정 위치·업종의 추정매출액,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현황의 비교분석 정보 제공

|         |                                                                                                                                                       |
|---------|-------------------------------------------------------------------------------------------------------------------------------------------------------|
| 음식(21)  | 아이스크림판매, 제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피자전문, 국수만두칼국수, 도시락전문, 떡볶이전문, 라면김밥분식, 죽전문점, 한식백반한정식, 해장국감자탕, 양식, 일식수산물, 중국음식, 간이주점, 갈비삼겹살, 곱창양구이전문, 족발보쌈전문, 호프맥주, 후라이드양념치킨 |
| 소매(12)  | 건강식품, 슈퍼마켓, 편의점, 신발소매, 안경원, 일반의류, 캐주얼스포츠타의류, 꽃집꽃배달, 화장품판매점, 사무문구용품, 인테리어욕실용품, 일반가구소매                                                                  |
| 서비스(12) | 발네일케어, 비만피부관리, 여성미용실, 노래방, 모델여관여인숙, 실내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어린이영어, 학원(음악미술체육), 학원(입시), 세탁소빨래방, 자동차정비                                                           |

\* 경쟁분석, 입지분석, 수익분석 제공업종 동일

- (경영컨설팅) 15개 업종에 대한 상권유형과 상권의 특징을 제시하고 해당 유형에서 매출 수준이 높은 점포의 운영방법 컨설팅 실시

|        |                                                               |
|--------|---------------------------------------------------------------|
| 음식(15) | 한식/백반/한정식, 커피전문점/카페/다방, 갈비/삼겹살, 후라이드/양념 치킨, 라면/김밥/분식 등 15개 업종 |
|--------|---------------------------------------------------------------|

- (점포이력) 특정 위치의 창업업종 및 영업기간 등 개·폐업 이력 정보 제공
- (업종추천) 7개 광역시의 전 업종에 대해 상권적합도(업종구성, 주요 고객 구성 등) 및 항목별(매출 성장성, 운영 안정성 등) 기준을 고려한 추천업종 제시

\* 7개 광역시 :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인천, 대전

- (창업기상도) 7개 광역시의 5개 업종(커피, 치킨, 한식, 편의점, 미용실)에 대한 유동인구·매출액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창업 예측 정보 제공

**'21년 서비스 개선 내역**

- (업종 확대) 입지 관련 데이터를 통해 출점지 추정 매출 및 소비자 현황 등을 분석하여 '입지분석' 서비스에 매출예측 업종 확대(5개→15개)

\* 제공업종: 한식/백반/한정식, 커피전문점/카페/다방, 편의점, 후라이드/양념치킨, 여성미용실, 등 15개 업종

- (분석서비스 강화) 선택 업종, 지역에 적합한 입지를 예측해 주는 신규 서비스 및 도보거리 등 변수를 활용하여 상권영역 자동 생성 서비스 제공
- (구독서비스 제공) 관심 지역 및 업종 선택 시 정기적으로 모바일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보고서 제공

**이용방법**

- (포털) 검색어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이용
- (인터넷)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g.sbiz.or.kr>) 회원가입 후 이용
- (모바일) 안드로이드마켓·앱스토어에서 ‘소상공인마당’ 앱 설치 후 이용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스템 헬프데스크 : 1644-5302
- 중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분석실 : 042-363-7888, 7881

**Q&A**

**Q.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고 언제 갱신되나요?**

A. 14개 국가·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19여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한 뒤 제공됩니다. 갱신주기는 데이터마다 편차가 있지만, 최소 일단위에서 최대 연단위로 갱신되며, 상세사항은 홈페이지 내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 1-3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는 창업 지원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융자 지원 (성실 실패 판정 시 상환면제로 실패부담 최소화)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사업자 포함)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 정부납품실적 및 모범납세자 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시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최종 선정된 자에게 최대 2천만원 융자 지원

\* 융자 신청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신청·접수** ● 홈페이지(<http://idea.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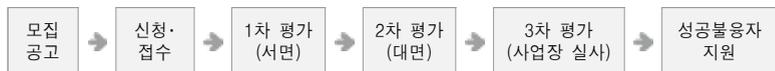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준비도, 창업자 역량, 사업성 등을 서면 및 대면 평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발급)

- 신청서(온라인으로 작성)

**처리절차**



**지원규모** ● 1,000명 내외(발굴 5.18억원, 연계자금 200억원)

\* '20년 지원현황 : 약 1,000명(1인당 최대 2천만원 지원)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생활 혁신형 창업이란?**

A.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소비트렌드 등을 반영, 생활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창업분야입니다.

☞ 용어설명

**성공불 용자** : 해외자원개발 등 성공확률보다 실패확률이 높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기업의 위험을 일부 분담해주는 제도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분야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1-4

##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소상공인 사업 생애주기별 온라인 평생교육

소상공인 교육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평생 학습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면대면 교육을 받기 힘든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교육과 기술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
- \* '21년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예정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접속 후 e-러닝 교육 신청

### 지원규모

- 소상공인 전체
- \* '20년 지원현황 : 183,474명 수료

### 문의처

- 교육신청\_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 자금, 오프라인교육 문의(1357)
- e-러닝 교육 시스템 문의(1644-5302)

## 제2장

#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                                                |     |
|------------------------------------------------|-----|
| 2-1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舊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이버평생교육원) ..... | 448 |
| 2-2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 450 |
| 2-3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                       | 452 |
| 2-4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                       | 454 |
| 2-5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 .....                         | 456 |
| 2-6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                        | 458 |
| 2-7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                           | 460 |
| 2-8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 462 |
| 2-9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                           | 465 |
| 2-10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                          | 467 |
| 2-11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 469 |
| 2-12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                       | 471 |
| 2-13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                  | 473 |
| 2-14 온라인 판로지원 .....                            | 474 |
| 2-15 소상공인가판결제시스템(제로페이) .....                   | 476 |
| 2-16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                   | 479 |
| 2-17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 481 |
| 2-18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                        | 483 |

2-1

##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舊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이버평생교육원)

소상공인의 전문능력 향상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무분별한 창업 방지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업종특화 및 업종공통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 휴·폐업 또는 공단 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지원내용**

- 전문기술교육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 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지원(바우처 형식, 민간교육기관이 수행)  
\* 후속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지원
- 경영개선교육
  -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한 업종별 기술교육, 중장년층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현장교육 등 실습형 교육지원(국비 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수행)
- 전용교육장교육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IT관련 스마트 교육 중점 지원 (5개 전용교육장)
-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 지식배움터 :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배움터, edu.sbiz.or.kr)의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한 업종별·수준별·대상별 매주 정기적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 지원
  - 지식나눔터 :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정보, 노하우, 지식을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eduopen.sbiz.or.kr) 지원

**신청·접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 (edu.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 경영교육 → 교육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교육신청' 클릭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처리절차**

- 전문기술교육



- 경영개선교육



**지원규모**

- 50,000명 내외(예산 107.59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21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edu.sbiz.or.kr)
- 소상공인 지식나눔터 홈페이지(eduopen.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 참조

**Q&A**

**Q. 전문기술교육 교육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교육기관이 등록한 교육과정 중 업종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하신 후 교육비 신청을 해주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교육생 계좌로 교육비의 90%(50만원한도)를 지원 해드립니다.

2-2

##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대상 경영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 제공으로 경영환경 개선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한 예비 창업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승소가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필요에 따라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경영지원 바우처(브랜딩·디자인, 세무, 특허 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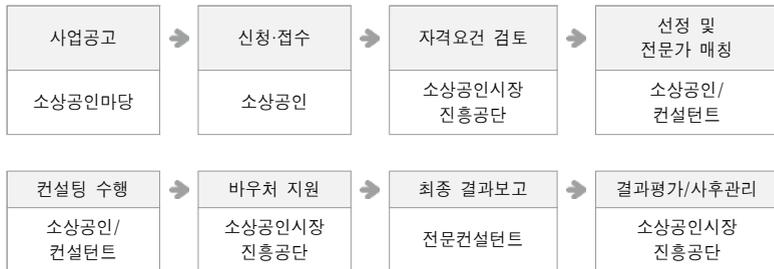
- 신청·접수**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소상공인 여부, 지원제외업종 등 확인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처리절차



**지원규모** ● 5,000개 업체 내외(예산 8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 042-363-7833~4
- 소상공인마당 : [www.sbiz.or.kr](http://www.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Q&A**

**Q. 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http://www.sbiz.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3

##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21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승소가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예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신청·접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여부,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여부 판단

-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연매출액 확인서류 등

**처리절차**



- 지원규모**
- 500개 업체 내외(예산 1억원)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33~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중위소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 생계비를 대체한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상이합니다.

(예) 2인가구 : 3,860,000원, 4인가구 : 6,095,000원 <2021년 기준>

2-4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예비)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50% 이상이 지원제외대상 외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 소상공인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름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 유희·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단, 가맹본부와 상생협력을 위한 구매협동조합은 사업참여 가능)
- ▶ 협동조합 등가입원 중 접수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확인)

#### 지원내용

- 공동사업(5억원 한도 내) : 공동 브랜드·마케팅·장비·R&D·시스템·네트워크 구축 등
  - \* 보조금 지원비율 : 정부(70~80%), 자부담(20~30%, 현금출자 원칙)
- 협업인프라 구축 : 협업전문교육·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지원
- 판로지원 : 소셜커머스, V-커머스, 판매전 등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 신청·접수

-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홈페이지(<http://coop.semas.or.kr/>)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 별도 마감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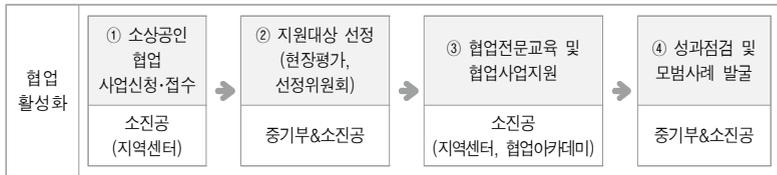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수익 또는 고용창출, 조합규모화, 지역경제활성화 등), 협업성과 등
- (예비)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등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300개 조합(157억원)  
\* 공동사업(150개 내외), 판로사업(150개 내외)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11~4,7720~5),
-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Q&A**

**Q. 협동조합이란?**

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Q. 협동조합 종류는?**

A. 일반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임

2-5

##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

도·소매 점포에 오프라인 경험 요소를 결합

동네 점포가 지역주민에게 업종 융합을 통한 재미적 요소와 지역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색다른 소비경험 제공할 수 있도록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①,②를 모두 충족하는 동네 점포
  - ①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② 소매업(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하는 상점)

### 지원내용

- 경험형 콘텐츠 운영을 위한 인프라 지원
- 출입인증장치, 셀프계산대, CCTV 등 보조기기
- 점포경영 스마트화

###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모집공고(홈페이지 등)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 \*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100여개 동네점포(지원예산 40억원)

### 문의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국번없이 1588-53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실 : (042) 363-7748~9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044) 204-7872

## Q&amp;A

**Q. 경험형 스마트마켓이란 무엇인가요?**

A. 비대면 소비문화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판매중심의 도·소매 점포에 오프라인에 특화된 경험 요소를 결합한 동네 점포로, 예를 들면 일몰 전에는 지역 제철 식료품을 판매하고, 일몰 후에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쿠킹클래스를 운영하는 점포를 말합니다.

2-6

##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가맹점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맹본부 지원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상생협력하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신메뉴 개발, 홍보, 브랜드 개발 등을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가맹점과 상생협력을 추진 중이거나 상생협력 모델 도입을 계획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사업에 중복 신청하는 업체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협동조합은 지원제외

- 지원내용**
-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체계구축, 브랜드디자인, IT환경구축, 마케팅 등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지원
    - (창업단계) BM분석 및 체계구축, 브랜딩·디자인 구축 등 지원
    - (성장단계) 스마트 기술 도입, 모바일 접목, 마케팅·판로, BM 고도화 등 지원
    - (대표단계) 스마트화, DB구축, 규격/인증, 글로벌화 등 지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fc.sbiz.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업체 선정 : 상생협력 계획·실적, 아이템 및 성공가능성 등 사업 계획서 평가(서류 및 발표 평가)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직영점·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사본, 최근 3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처리절차**



- 지원규모**
- 15개 업체 내외(업체당 최대 5천만원 지원)

\* '21년 지원현황 : 14개 프랜차이즈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5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41, 7743, 774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2-7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량 평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자율 신청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량을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관계 등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내용

- 가맹본부·가맹점지원·계약·시스템·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등급    | 지원 내용                                                                                                             | 비고          |
|-------|-------------------------------------------------------------------------------------------------------------------|-------------|
| I 등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li> <li>• 3년 연속 1등급 프랜차이즈 '명예의 전당' 입성</li> </ul> |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 |
| II 등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li> </ul>                                        |             |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가맹본부·계약·가맹점지원·관계·시스템성과 등 5개 영역을 평가하여 4등급(I~IV)으로 등급화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fc.sbiz.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신청접수(평가비용 : 160만원)

## 제출서류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 1부 등  
\* 심사원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확인 가능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업력 최소 1년 이상인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업종에 해당되는 가맹본부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가맹점포 수 10개 미만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본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대기업, 휴·폐업, 세금체납,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 ▶ 정보공개서 미등록한 경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 044-204-785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41, 7743, 774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2-8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집적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현장지원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의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 별로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지원내용** ●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지원

- (교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협업을 통한 공동개발, 집적지 홍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

### 자율사업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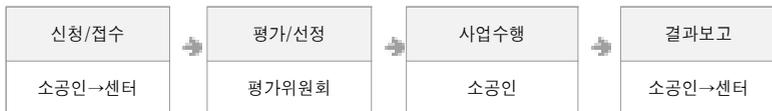
-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 집적지 소상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 기타 집적지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접수** ● 연중 신청·접수 (센터 별 사업 일정에 따라 모집 시기 상이)

\* 센터별 사업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문의

**제출서류** ● 소공인 확인서류, 사업신청서 등

### 처리절차



**지원규모** ● 전국 36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예산 126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6, 792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지원」 참고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현황(21년말 기준) 〉

|    | 시·도 | 시·군·구     | 분 야     | 특화센터명        | 대표전화          |
|----|-----|-----------|---------|--------------|---------------|
| 1  | 서울  | 금천구(독산동)  | 의류봉제    | 서울독산의류봉제센터   | 070-4206-1773 |
| 2  | 서울  | 종로구(봉익동)  | 귀금속     | 서울봉의주얼리센터    | 02-741-8755   |
| 3  | 서울  | 성북구(장위동)  | 의류봉제    | 서울장위의류봉제센터   | 02-919-9623   |
| 4  | 서울  | 종로구(창신동)  | 의류봉제    | 서울창신의류제조센터   | 02-741-5365   |
| 5  | 서울  | 광진구(중곡동)  | 의류봉제    | 서울광진의류제조센터   | 02-467-8251   |
| 6  | 경기  | 포천시(가산면)  | 가구제조    | 포천가구제조센터     | 031-539-5093  |
| 7  | 경기  | 고양시(장항1동) | 인쇄      | 고양장항인쇄센터     | 031-913-9403  |
| 8  | 경기  | 군포시(당정동)  | 금속가공    | 군포당정금속가공센터   | 031-454-4881  |
| 9  | 경기  | 부천시(신흥동)  | 전기장비    | 부천신흥전기장비센터   | 032-234-5910  |
| 10 | 경기  | 성남시(상대원동) | 식료품     | 성남상대원식료제조센터  | 031-750-2870  |
| 11 | 경기  | 시흥시(신천동)  | 기타기계·장비 | 시흥대야기타기계장비센터 | 070-4170-5973 |
| 12 | 경기  | 안양시(관양동)  | 전자부품    | 안양전자부품제조센터   | 031-8045-6711 |
| 13 | 경기  | 용인시(영덕동)  | 전자부품    | 용인영덕전자부품센터   | 031-8067-5041 |
| 14 | 경기  | 화성시(팔탄면)  | 기타기계·장비 | 화성향남기타기계장비센터 | 031-354-3641  |
| 15 | 경기  | 화성시(동탄면)  | 전자부품    | 동탄전자부품센터     | 031-377-4165  |
| 16 | 경기  | 시흥시(정왕동)  | 전기장비    |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 070-7784-8802 |
| 17 | 인천  | 연수구(송도3동) | 기타기계·장비 | 인천송도기타기계장비센터 | 032-723-9983  |
| 18 | 인천  | 동구(송림동)   | 기타기계·장비 | 인천송림기타기계장비센터 | 032-589-4011  |
| 19 | 충남  | 금산군(금산읍)  | 식료품(인삼) | 충남금산인삼센터     | 041-750-1621  |
| 20 | 충북  | 청주시(중앙동)  | 인쇄      | 청주중앙인쇄센터     | 043-299-1081  |
| 21 | 대전  | 대덕구(상서동)  | 금형제조    | 대전상서금속가공센터   | 042-939-4827  |
| 22 | 대전  | 대덕구(오정동)  | 기타기계·장비 | 대전오정기타기계장비센터 | 042-629-7728  |
| 23 | 대전  | 동구(정동)    | 인쇄      | 대전정동인쇄센터     | 042-226-5556  |
| 24 | 전남  | 무안군(청계면)  | 도자기제조   | 전남무안도자기제조센터  | 061-450-6357  |

|    | 시·도 | 시·군·구     | 분 야      | 특화센터명        | 대표전화          |
|----|-----|-----------|----------|--------------|---------------|
| 25 | 전북  | 순창군(순창읍)  | 식료품(장류)  | 전북순창장류제조센터   | 063-652-1034  |
| 26 | 전북  | 전주시(팔복동)  | 금속가공     | 전주팔복금속가공센터   | 063-219-0397  |
| 27 | 광주  | 동구(서남동)   | 인쇄       | 광주서남인쇄센터     | 062-236-5013  |
| 28 | 대구  | 중구(대봉동)   | 의류봉제     | 대구대봉의류봉제센터   | 053-783-3399  |
| 29 | 대구  | 중구(성내동)   | 귀금속      | 대구성내주얼리센터    | 053-219-4422  |
| 30 | 대구  | 북구(노원동)   | 안경제조     | 대구노원안경제조센터   | 053-350-7862  |
| 31 | 부산  | 동구(범일동)   | 의류제조     | 부산범일의류제조센터   | 051-631-7220  |
| 32 | 부산  | 부산진구(범천동) | 가죽,가방,신발 | 부산범천가죽가방신발센터 | 051-890-2128  |
| 33 | 부산  | 부산진구(범천동) | 귀금속      | 부산범천귀금속센터    | 051-636-7510  |
| 34 | 경남  | 김해시(진례면)  | 도자기제조    | 김해진례도자센터     | 070-4903-5545 |

2-9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소공인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자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지원내용** ● 공인이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항목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단위 : 백만원)

| 지원항목      | 지 원 내 용                                                                     | 보조 비율 |
|-----------|-----------------------------------------------------------------------------|-------|
|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차비 등)                                             | 80%   |
| 온라인마케팅    |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br>SNS, V-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       |
| 오프라인 매장입점 |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등) 지원                   |       |
| 미디어콘텐츠 제작 |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 등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비용 지원<br>홍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지원 |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유사항목 통합(9개 항목→4개 항목)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소공인 확인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등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처리절차**



**지원규모**

- 218개사 내외(예산 76.5억원)

\* '20년 지원현황 : 전국 266개사 지원(예산 85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8, 790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2-10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소공인 스마트 기술 보급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공정에 IoT,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화 지원사업 참여 중인 업체

**지원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비용 지원(49백만원, 70% 한도)

### 〈세부지원내용〉

| 지원항목    | 주요내용                                |
|---------|-------------------------------------|
| 스마트 컨설팅 | 스마트 전문가 매칭(기술·공정·시장진단·사업화) 컨설팅 지원   |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시약·재료비, 시제품·시작품 등 제작경비 |
| 위탁개발비   | 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용역비 등      |

### 〈세부지원유형〉

| 지원유형     | 주요내용                                      |
|----------|-------------------------------------------|
| ①공정개선형   | 수작업 공정개선, 기초데이터 관리 등 H/W 중심의 스마트공방 구축     |
| ②생산관리형   | 자재 입고·생산·출고실적 집계, 생산관리 등 S/W 중심의 스마트공방 구축 |
| ③서비스복합형  | 고객 주문·생산·판매 과정을 자동연계 등 복합형 스마트공방 구축(B2C)  |
| ④제품기술혁신형 | 제품기술 개발에 스마트기술 접목 등 제품기술혁신 중심의 스마트공방 구축   |
| ⑤컨소시엄형   | 3개사 이상의 소공인이 데이터 등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스마트공방 구축   |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소공인 확인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등

\*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고문 참고

**처리절차**



**지원규모**

- 1,000개사 내외(예산 490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2-11

##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집적지 혁신성장 기반의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동일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아래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

〈행정구역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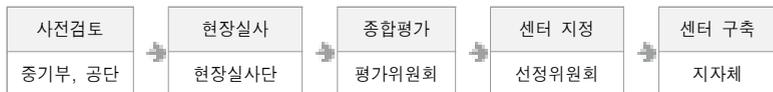
| 행 정 구 역               | 기 준          |
|-----------------------|--------------|
| 특별·광역시 內 읍·면·동        | 50인 이상(업체 수) |
| 시(특별자치시·도 포함) 內 읍·면·동 | 40인 이상(업체 수) |
| 군 內 읍·면               | 20인 이상(업체 수) |

- 지원내용**
- 소공인 집적지에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비용의 50% 이내 지원 (25억원 내외)

- 신청·접수**
- 모집 중(~'22.1.28),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 \*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 상세 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참고

**처리절차**



- 지원규모**
- 복합지원센터 구축 3개 내외(예산 75억원)
- \* '21년 지원현황 : 복합지원센터 구축 3개(예산 75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http://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2-12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국제·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중인 업체(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포함)

**지원내용** ● 작업장 개선 비용 지원(4.2백만원, 70% 한도)

| 지원항목     | 주요내용                                   |
|----------|----------------------------------------|
| 에너지효율 개선 |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 |
| 생산성 향상   |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
| 근로환경 개선  |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  |
| 안 전 조 치  | 재해 예방을 위한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등 안전조치 품목 지원    |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

**처리절차**



**지원규모** ● 2,000개사 내외(예산 84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9,790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http://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2-13

##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무료 상담지원

대기업·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상담하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 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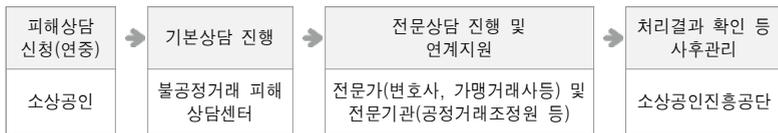
### 지원내용

- (상담지원) 전국 70개 상담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 (전문가 상담) 본부 전문가(변호사 등)의 피해구제 지원
- (교육)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 및 대응 매뉴얼 배포

### 신청·접수

- 전국 70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 홈페이지(<http://www.sbiz.or.kr/unfair/main.do>) 접수
- 전화상담 접수 (1599-0209)

### 처리절차



### 문의처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1599-0209
- 중소기업부 조사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소상공인지원공단 경영지원실 법무지원팀 : 042-363-7615, 7616

2-14

## 온라인 판로지원

온라인 활용 및 판로 지원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을 고려한 온라인 진출 쏠주기를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 테스트베드 (인프라 등) → 민간채널 입점 등 진출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온라인 활용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 대상, 교육과 상품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소상공인과 매칭하여 상품 등록부터 홍보·판매까지 지원
- (채널 진출지원) TV홈쇼핑·T커머스, V-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및 해외 쇼핑몰 입점과 라이브커머스, O2O 플랫폼(배달앱 등) 활용을 지원
- (구독경제) 소상공인의 정기판로와 안정적인 수입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제품 구독서비스 지원 (자사몰 구축, 물류·배송 서비스, 상품 큐레이터 등)
- (기반마련) 라이브커머스 제작·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소상공인에게 대여해주는 등 온라인 진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운영
  - \* 가치샵사다 플랫폼 :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교육·홍보콘텐츠 등을 제공
  -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 콘텐츠 제작, 교육 등에 필요한 장비·시설 구축, 운영
  - 플래그십 스토어 : 콘텐츠 체험과 제품판매를 결합한 소상공인 전용 O2O 매장 운영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온라인 진출 지원 대상 확대 ('21.5.3만개사 내외 → '22.6만개사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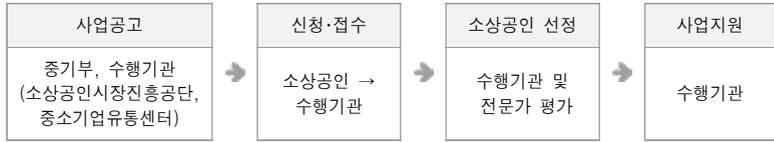
신청·접수

- 상시 모집 ('22.3월(예정) ~ 예산 소진시까지)
  - \* 아임스타즈(<http://www.imstars.or.kr>) 및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에서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상품 정보,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유통센터(02-6678-945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83)
- 중소기업부 온라인경제추진단 : 044-204-7285

## 2-15

## 소상공인가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0%대의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구현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0%대 수수료의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도 가맹 가능)

**지원내용** ● 가맹점  
- 결제수수료율 0%대 적용

| 연매출액 | 8억이하 | 8억~12억 | 12억 초과 |
|------|------|--------|--------|
| 수수료율 | 0%   | 0.3%   | 0.5%   |

※ 소상공인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결제수수료 : 1.2%

- 소상공인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결제수수료 : 1.2%
  - 인프라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구 분    |           | 내 용                   | 비 고    |
|--------|-----------|-----------------------|--------|
| 인프라    | QR키트      | QR세트(키트, 스티커, 설명서) 보급 |        |
|        | POS기기     | 기존 POS기기 업데이트         |        |
|        | QR단말기     | 보급형 단말기 보급            |        |
| 홍보·마케팅 | 지역별홍보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예산      | 지방비 매칭 |
|        | 홍보물제작 등   | 디지털 홍보, 이벤트, 홍보물 제작 등 |        |
|        | 협업공동마케팅 등 | 결제사업자 및 협·단체와공동 마케팅   |        |

- 소비자 : 이용금액의 30%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신청 없이 자동 집계),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소득공제 40%)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경품 및 리워드 이벤트

**신청·접수**

- 연중
  -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
  - 오프라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일부 지자체) 등

**제출서류**

-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
  - \* 1인 기업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맹 신청 가능

**처리절차**

-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비치된 가맹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문의처**

- 중소기업청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044-204-7873, 787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전략실 : 042-363-7736, 7737
-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 02-2095-5957, 5928, 5946
- 콜센터 : 1670-0582
- 홈페이지 (http://www.zeropay.or.kr)

Q&A

**Q. 제로페이는 어떻게 결제하는 건가요?**

- A. 제로페이 결제방식은 아래의 2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첫 번째 방식으로 결제합니다.
1. 매장에 설치(부착)된 QR코드를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 카메라로 촬영하고, 휴대폰에 금액을 입력하여 결제
  2.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으로 QR코드를 생성하면, 매장 직원이 스캐너로 휴대폰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

**Q. 제로페이를 사용하려면 별도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하나요?**

- A. 제로페이는 오픈플랫폼으로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소비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앱(ㅇㅇ페이, 시중 은행앱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 기업은행, 대구은행, 농협(NH 앱캐시, 올원뱅크), 광주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수협, 하나은행, 신용협동조합,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하나카드, 케이뱅크, 핀트, 네이버 페이, 페이코, 티머니, 트립패스, 체크페이, 유비페이, 비플제로페이, 스마일페이, 뱅크페이, 머니트리, 레일플러스, 로드페이, sk페이, SSG페이, 롯데멤버스, 핫플레이스, 택시제로페이 등의 어플에서 사용 가능

**Q. 제로페이 가맹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 A. 플레이스토어에서 지맵(Z-MAP)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면 내 주변, 전국에 있는 가맹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제로페이 가맹시 가맹비는 없나요?**

- A. 제로페이는 가맹비용이 없습니다. 가맹 가입을 할 경우 QR키트, POS기 업데이트, 단말기 등의 인프라와 홍보 마케팅 지원을 받습니다.

**Q. 가맹점주는 결제내역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 A. 제로페이 가맹점용 앱을 설치하시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제로페이 결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페이 결제취소 기능은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직원도 앱을 통해 직원등록을 신청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승인하게 되면, 이후 결제내역 관리, 결제취소, QR코드 관리가 가능합니다.

2-16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100년을 이어갈 우수한 소상공인 발굴 및 성장지원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백년가게)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 (국민추천의 경우, 업력 20년 이상)
- (백년소공인)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우수 소공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유의사항

- 업력산정 : 재창업 및 가업승계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업력 포함 산정(증빙제출 必)
-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 백년소공인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 지원내용

- (홍보) 현판 제공, 방송·신문·민간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 (시설·판로) 노후 환경 개선,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 지원
  - \* '22년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모집공고 시 별도 안내
- (연계지원)
  - (컨설팅)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시 자부담 면제
    -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 마케팅, 경영관리 등 현장방문 맞춤형 컨설팅 제공(자부담 10%)
  - (금융) 혁신형소상공인 융자금리 우대 (공고문 참조)
- (신청우대) 중소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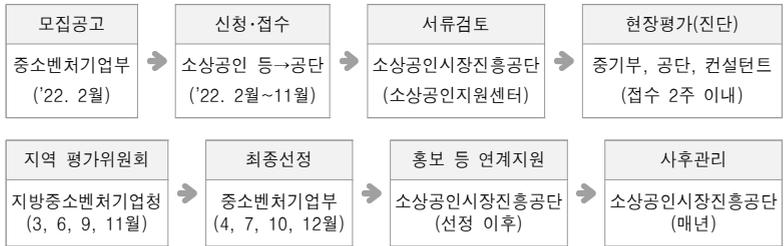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방법)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및 E-mail(100year@semas.or.kr) 접수병행
  -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내 국민추천 페이지를 통해 타인이 추천 가능
- (신청기간) '22.1~(연중 수시신청)
- (평가기준) 경영자 전문성, 제품·서비스 차별성, 마케팅 차별성, 조직관리 수준 및 재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업체 기술서, 매출액 및 고용 관련 증빙자료,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처분 및 포상이력 확인서 등

**처리절차**



**문의처**

-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81/7984/7985), www.semas.or.kr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7), www.mss.go.kr

**Q&A**

**Q. 하나의 업체가 2개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백년가게 신청 시 업종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A. 네, 업종 및 업력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 업력 기준을 적용하며,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 가업승계의 경우 증빙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가업승계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2-17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오더 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점포 내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스마트기술 : 스마트미러 등 VR·AR활용 가상체험, 서빙·조리로봇, AI활용 경영효율화 등 소상공인 업종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술(자부담 20% 예정)

〈스마트기술 예〉



**신청·접수** ● 개별 소상공인, 상점가 및 업종별 협·단체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는 '22.2월 오픈 예정

**제출서류**

- 스마트상가 총괄신청서, 스마트상가 운영 계획서, 예비 스마트상점 명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 상세 내용은 2022년 사업공고(3월 예정)를 통해서 확인 가능

**처리절차**



**지원규모**

- 스마트상점 4,000개
- \* 개별 소상공인 상점 2000개, 업종별 협단체 상점 2000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044-204-7874, 78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전략실 : 042-481-7731, 7732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사업공고 참고

2-18

##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성공CEO의 노하우 전수와 보육을 통해 소상공인별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성공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상생모델 확산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지원내용** ● 소상공인-성공CEO 연계 사업화지원(10백만원, 100%) 후 성과를 사회환원

| 지원항목  | 주요내용                                                                                                    |
|-------|---------------------------------------------------------------------------------------------------------|
| 기본교육  | 경영·서비스 개선, 기업가정신 역량 함양 등으로 구성된 교육 운영                                                                    |
| 사업화지원 | 성공CEO 매칭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해 기존상품개선, 신규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각종 사업화 항목을 지원<br>* 국비 100%, 사업화지원금의 10%와 성과(이익)의 일부는 사회환원 |
| 판로지원  | 선정업체의 우수상품을 온라인몰 입점지원 및 라이브커머스 지원                                                                       |

**신청·접수** ● '22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 상세 내용은 2022년 사업공고(1월 예정)를 통해서 확인 가능

### 처리절차



지원규모

- 70개사 내외(예산 23.2억원 : 혁신형소상공인 관리 포함)
  - \* '21년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88개사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044-204-787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혁신실 : 042-363-7981, 798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http://www.semas.or.kr)), 「지원사업-이익공유형 사업화」 참고

## 제3장

# 소상공인 재기지원

|                               |     |
|-------------------------------|-----|
| 3-1 희망리턴패키지 .....             | 486 |
| 3-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 488 |
| 3-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 490 |

## 3-1

##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 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취업·재창업 등 재기 여건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재도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 임대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지원내용**
- (경영개선지원)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문제를 진단과 피보팅\* 자금(최대 2천만원)지원을 통한 선제적인 경영개선
    - \* 외부 환경에 따라 기존사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사업방향을 다른 쪽으로 전환
  -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 방법, 보증금 보호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 (점포철거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최대 250만원, 부가세 제외)
    - (법률 자문) 폐업과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유권해석, 법률사항에 대해 서면 및 대면 방법 등으로 자문 지원
    - (취업 교육) 취업 희망 소상공인에게 기본교육(면접, 이력서 작성), 취업 정보 및 개인 신용관리 등 지원
  - (전직장려수당)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등을 받고, 폐업 신고 후 구직활동 또는 취업 완료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원(최대 100만원)
    - (재창업 교육) 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 전환 또는 재창업을 위한 실무교육 지원
    - (재창업 멘토링) 마케팅, 경영, 세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멘토링 지원 하여 업종전환·재창업 성공률 등 제고
  -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메뉴 개발,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일부 지원 (민간부담 50% 시 최대 2,000만원)
  - (지난해와 달라진 점) 폐업전 경영위기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문제 진단과 피보팅 자금(최대 2천만원)을 지원('22년)

-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소상공인 여부 등 사업별 공고 참고
-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지원대상 확인

사업지원
- 지원규모 ● 691억원, 37,000건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69, 7823
  -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Q&A**

**Q. 재창업 교육을 이수해야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사업화 지원을 위해선 희망리턴패키지의 재창업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 3-2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소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업체
  - \* 도·소매업 50억원, 숙박·음식업 및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운수업 80억원 등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미만 업체
  -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 가입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 가입방법

- 온라인 가입 :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노란우산 앱
- 방문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시중은행 등 위탁기관
  - \* 가입업무 위탁기관 :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공제금 지급  
지급내용

- 지급 사유 : 폐업, 사망, 퇴임(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법인대표자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이 경과하고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지급 금액 : 적립한 부금(월 5~100만원)에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복리로 적립한 금액
  - \* 기준이자율 : 폐업·사망시 2.7%, 노령·퇴임시 2.4%(‘22.1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
  - \*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 기타 혜택

- 소득공제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 공제
  - \* 소득공제 제외업종 : 부동산임대업
- 공제금 보호 : 공제금 양도·압류·담보 금지, 공제금 수급계좌 압류 금지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홈페이지 : www.8899.or.kr.
- 노란우산 콜센터 국번없이 1666-9988, 전화 02-2124-3343~4

## Q&amp;A

**Q.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은 일반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 A. ‘노란우산’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 운영 중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경우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제제도이며, 폐업이나 사망 등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위기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연 복리로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험과 달리 납입한 부금에 대해서 가입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공제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제공이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제 부금 납입을 연체하지 않으면 무담보·무보증으로 납입부금의 90% 한도 내에서 연이율 2.9%(‘22년 1분기)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3-3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고용보험 가입률제고와 사회안정망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7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월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  
\* 기준보수 1-2등급 50%, 3-4등급 30%, 5-7등급 20%

##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

(단위 : 원)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실업급여 (월)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 지원비율     | 50%       |           | 30%       |           | 20%       |           |           |
|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신청·접수** ● (온라인) go.sbiz.or.kr  
● (팩스) 042-367-7706으로 서류 제출  
● (방문) 전국 66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접수

**처리절차**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가입 및 납부실적 확인 → 보험료 환급

**지원규모** ● 3,629백만원, 18,000명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8, 7867
- 국번없이 1357
- 카카오톡 채널(@gobo1)

## Q&amp;A

**Q.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하고 신청하는 건가요?**

A. 네, 소상공인(사업주)이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신 경우,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언제하고, 필요서류는 뭔가요?**

A. 지원신청은 예산소진을 제외하고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한번만 신청하시면 5년간 보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제4장

# 소상공인 정책자금

|     |                     |     |
|-----|---------------------|-----|
| 4-1 | 소공인특화자금 .....       | 494 |
| 4-2 | 성장촉진자금 .....        | 496 |
| 4-3 | 일반경영안정자금 .....      | 498 |
| 4-4 | 청년고용연계자금 .....      | 500 |
| 4-5 |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 | 502 |

4-1

## 소상공인특화자금

### 숙련기술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숙련기술 기반의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제조업 등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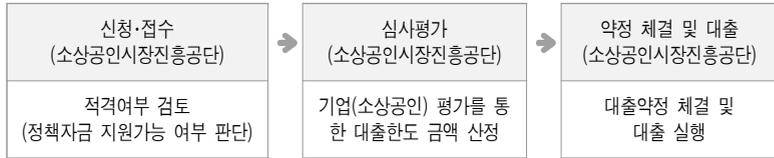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http://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http://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접수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처리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지원규모**

- 2021년 기준 2,50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자금 접수기간은 매월 정해져 있나요?**

A.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매월 마지막주에 3~5일간 기간을 두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공단 직접대출 일체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심사역의 사업장 방문 후 사업성 종합평가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접수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

## 성장촉진자금

장수 소상공인의 재성장 및 재도약 지원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직접대출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지원방법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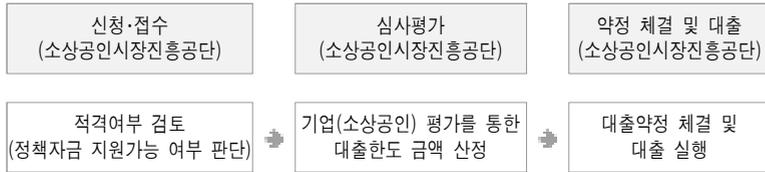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http://www.semas.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ols.sbiz.or.kr](http://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대리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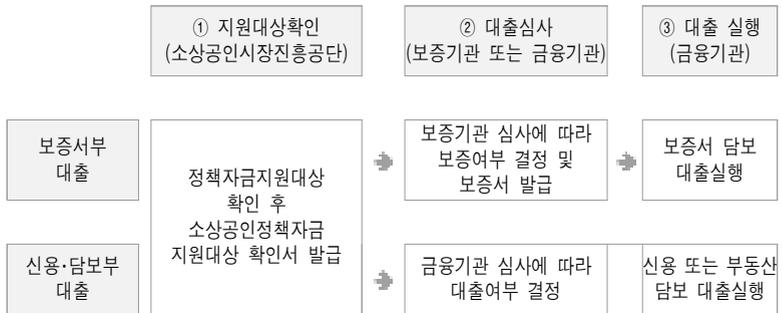
**처리절차**

- 직접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 대리대출



**지원규모**

- 2021년 기준 2,00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4-3

###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점포운영 자금을 지원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 및 영업지속률 제고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판매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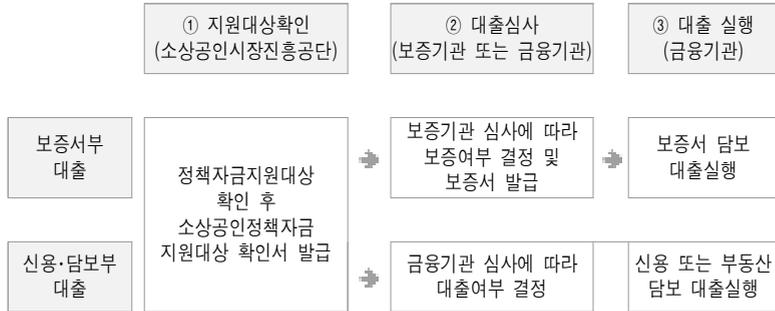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방법 : 대리대출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http://www.semas.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ols.sbiz.or.kr](http://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처리절차**



**지원규모**

- 2021년 기준 11,00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신용보증재단 이외에 다른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정책자금은 특정 보증기관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지원 대상 중첩을 피하기 위해 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하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후 보증을 지원합니다. 이에, 일반 소상공인이 보증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4

## 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또는 50% 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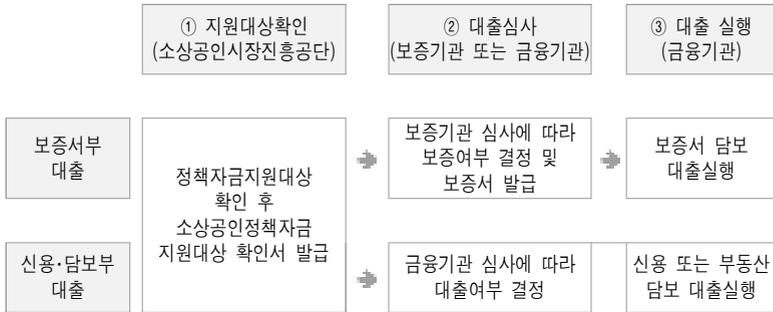
-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3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방법 : 대리대출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http://www.semas.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ols.sbiz.or.kr](http://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처리절차**



**지원규모**

- 2021년 기준 5,50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재외국인, 재외국민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
- 재외국인 :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 재외국민 :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해당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15.1.22부터 발급)

4-5

##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혁신형 또는 사업성 우수 소상공인의 지속성장 마련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혁신형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백년가계,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지원방법 : 직접대출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http://www.semas.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ols.sbiz.or.kr](http://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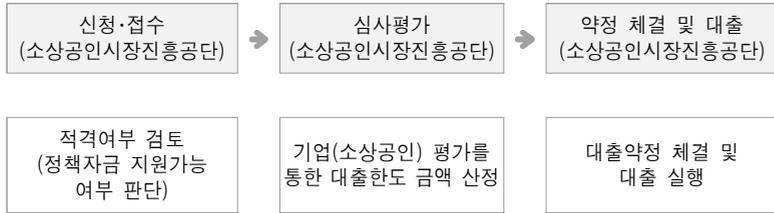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자료 내 공지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처리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지원규모**

- 2021년 기준 50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회생·개인회생·청산절차 진행 등의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경우 기업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자금수급계획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자금의 흐름이 영업활동과 연계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2부  
**전통시장**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제5장

# 전통시장 지원

|                               |     |
|-------------------------------|-----|
| 5-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 508 |
| 5-2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      | 511 |
| 5-3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 513 |
| 5-4 온누리상품권 발행 .....           | 516 |
| 5-5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 518 |
| 5-6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   | 522 |
| 5-7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 | 526 |
| 5-8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         | 529 |
| 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   | 532 |
| 5-10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 534 |

5-1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개량·보수 및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개량·보수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을 보조합니다.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6조 각호
  - \*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쇼핑센터, 아파트 단지내 상점가, 부정행위시장 등
-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 지원우대

- 주차장 미보유시장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장
- 임대료 동결·조정 자율합의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 대상부지 확보 등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높은 시장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 지원내용

- 공영 주차장 건립 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시 국비 보조
    - \* 주차장 부지매입, 노외/지하 주차장·주차빌딩·복합화 주차장 설치 지원
- 공영 주차장 개량·보수 지원
  - 전통시장 고객전용 공영주차장의 개량 및 보수 시 국비 보조
    - \* 주차장 노후시설 개보수, 차단기·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CCTV 등 설치 지원

- 공공·시설 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부지확보 등으로 주차장 건립 곤란 시 전통시장 인근 공공·시설주차장 이용 보조
    - \* 주차 쿠폰 발행비용, 주차장 임대계약, 주차요원 인건비 등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실집행률 50%미만인 시·군·구는 다음연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접수완료('23년도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22년 5월 경 예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광역 시·도에 신청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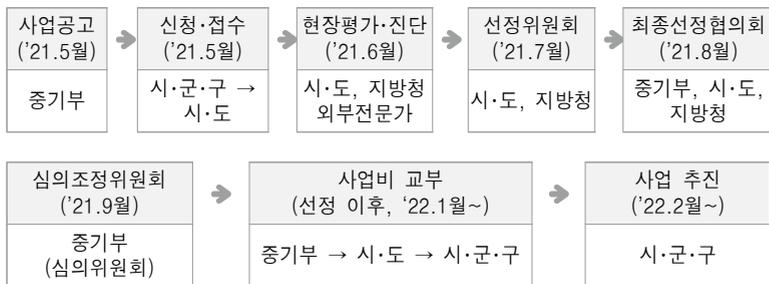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의 효율성,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 시장활성화 등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 매매 사전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동의서, 시장자문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지방비 투·융자 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연도 심사계획서 (실시한 경우에 한함)
  -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90곳 시장(752억원)
  - \* '20년 지원현황(1,424억원) : 88곳(주차장 건립 지원), 20곳(주차장 개보수 지원), 27곳(공공·시설주차장 이용보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92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비율은 국비(60%), 지방비(40%)이며, 시설현대화와는 달리 시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Q. 지하 주차장 건립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시장건물 지하공간 매입 등을 통해 지하 주차장 건립 지원이 가능하지만,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5-2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영업점포의 30% 미만이 신청한 시장
- ▶ 민간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
- ▶ 동일한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포기한 지 3년 미만인 곳

## 지원우대

- 화재위험이 높은시장(C등급 이하 우대지원)
- 화재공제 가입률이 50% 이상인 시장
- 화재감지시설 및 공용구간 노후전선정비사업(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높은 곳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지자체 부담가능)
  - 개별점포 국비 기준 125만원 이내(시장규모 당 최대 5억원 이내)

- 지원내용**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배관, 전등 및 콘센트 등)

- 신청·접수**
- 접수완료('23년도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22년 5월 경 예정)
    - 전통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시·도)를 경유하여 지방중기청에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전통시장 40곳 내외(60억원)
- \* '21년 지원현황 : 60개 시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92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5-3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자율적 사업설계를 통한 자생력 강화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마케팅·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등의 정책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의 시·도 지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22년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
  -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지원 대상은 제외
- ▶ 최근 3년 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자)

**지원내용**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선정 등급별 예산 지원 한도〉**

| 패키지 등급   | 가     | 나     | 다     |
|----------|-------|-------|-------|
| 예산 지원 한도 | 60백만원 | 40백만원 | 30백만원 |

\* 상인연합회 예산 지원 한도는 별도 운영

- 패키지 활용 범위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시장경영혁신사업을 자유롭게 선택·추진 가능

| 구분       | 분야      | 패키지 활용 범위                                                                                                                                                                                                                                                                                                            |
|----------|---------|----------------------------------------------------------------------------------------------------------------------------------------------------------------------------------------------------------------------------------------------------------------------------------------------------------------------|
| 사업지원 패키지 | 공동 마케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시장 진출 : 상권분석, 품목 개발,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등</li> <li>▶ 체험교실 : 유아·청소년 장보기 체험, 문화교실 운영 등</li> <li>▶ 행사 :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등</li> <li>▶ 콘텐츠 제작 : 시장지도, 스토리북, 리플렛, 브랜드(BI, CI, 마스코트) 개발 등</li> <li>▶ 미디어·인터넷 홍보 : TV, 신문, 잡지, SNS, 포털 등</li> <li>▶ 기타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활동</li> </ul> |
|          | 상인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li> <li>▶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li> </ul>                                                                                                                                                                                     |
|          | 경영 자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li> <li>▶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li> </ul>                                                                                                                                                                                                           |
|          | 온라인 플랫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권·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민간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에서 이미 서비스 중인 플랫폼에 한함(자체 쇼핑몰·앱 구축 불가)</li> <li>- 도입, 구축, 운영, 프로모션(배송비 무료, 할인 쿠폰, 광고 등) 등</li> </ul> </li> </ul>                                                       |
| 인력지원 패키지 | 시장 매니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인회 일반행정사무 수행</li> <li>▶ 이벤트·축제·행사 지원, 정부지원사업 신청·관리·정산 등</li> </ul>                                                                                                                                                                                                         |
|          | 배송 매니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리, 택배, 온라인 배송서비스 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센터 직원, 배송기사 등</li> </ul> </li> </ul>                                                                                                                                       |

\* 각 분야별 사용 조건 및 사업기간 등은 별도 안내

신청·접수

- 사업부문별 상이

| 지원분야    | 사업부문                     | 사업비 매칭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지원    |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온라인 플랫폼 | ▶ 국비 90%, 지방비·자부담 10%                                                                                                                                                                                                                                                                                                                                                                            |      |          |          |          |    |         |      |          |          |          |    |     |     |     |     |         |     |     |     |     |
| 인력지원    |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 시장 규모에 따라 국비 90~30%, 지방비·자부담 10~70%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소형</th> <th>중형</th> <th>중대형</th> <th>대형</th> </tr> </thead> <tbody> <tr> <td>영업 점포 수</td> <td>~99개</td> <td>100~499개</td> <td>500~999개</td> <td>1000개 이상</td> </tr> <tr> <td>국비</td> <td>90%</td> <td>70%</td> <td>50%</td> <td>30%</td> </tr> <tr> <td>지방비·자부담</td> <td>10%</td> <td>30%</td> <td>50%</td> <td>70%</td> </tr> </tbody> </table> | 구분   | 소형       | 중형       | 중대형      | 대형 | 영업 점포 수 | ~99개 | 100~499개 | 500~999개 | 1000개 이상 | 국비 | 90% | 70% | 50% | 30% | 지방비·자부담 | 10% | 30% | 50% | 70% |
|         |                          | 구분                                                                                                                                                                                                                                                                                                                                                                                               | 소형   | 중형       | 중대형      | 대형       |    |         |      |          |          |          |    |     |     |     |     |         |     |     |     |     |
|         |                          | 영업 점포 수                                                                                                                                                                                                                                                                                                                                                                                          | ~99개 | 100~499개 | 500~999개 | 1000개 이상 |    |         |      |          |          |          |    |     |     |     |     |         |     |     |     |     |
| 국비      | 90%                      | 70%                                                                                                                                                                                                                                                                                                                                                                                              | 50%  | 30%      |          |          |    |         |      |          |          |          |    |     |     |     |     |         |     |     |     |     |
| 지방비·자부담 | 10%                      | 30%                                                                                                                                                                                                                                                                                                                                                                                              | 50%  | 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전통적인 오프라인 도·소매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시장 진출\* 등 비대면 판로 확대 지원 강화
  - \* 온라인 플랫폼 바꾸쳐 부문 신규개설, 온라인 시장 진출 교육, 배송인력 인건비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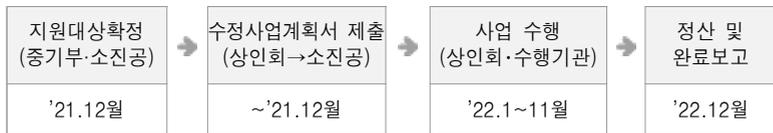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시장 선진화, 상인 조직화, 화재안전, 타당성, 효과성 등

지원조건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인회등록증 등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절차



지원규모

- 350곳 내외 전통시장·상점가('21년도 예산 141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35, 7637, 7638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044)204-7893, 7896

5-4

### 온누리상품권 발행

전국 1,700여 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법정상품권으로, 전국 19.6만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상품권구매처** ● 지류상품권 : 16개 금융기관

-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하나은행·수협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 전자상품권 : BC카드 및 6개 금융기관(21년 말 기준)

- BC카드, 우리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

● 모바일상품권 : 10개 금융기관 및 12개 간편결제사 앱(APP)

- 신한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농협상호금융·우체국·체크페이·비플제로페이·머니트리·010pay·페이코·핀트·제로페이온·핀크·티머니페이·syrup wallet·유비페이·택시제로페이

**상품권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 및 상권활성화구역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가맹점은 전통시장통통(<https://www.sbiz.or.kr/sijangtong/nation.do>)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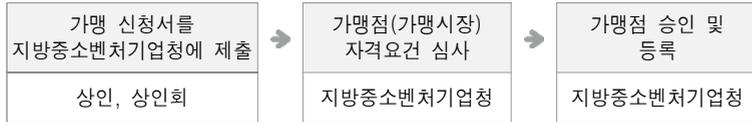
● 전자·모바일상품권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온라인 사용 가능

**온라인전통시장관**

- ▶ (전자·모바일 결제처)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팔도시장, e경남, 온누리굿데이, 인더마켓
- ▶ (모바일 결제처) 놀장, 가치샵시다 플랫폼, 장보다, 꿈지락배송, 장봄, 위메프오, 종량제닷컴, 배달올거제, 맛있는소리 팥동, 장바요, 달려라큰동해
- ▶ (전자 결제처) 우체국전통시장, 피쉬세일, 제주전통시장, 온누리장터, 온누리시장, G마켓, 옥션

● 가맹점 등록 신청

-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포함)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 신청 및 등록절차



\* 신청서는 '전통시장통통(<https://www.sbiz.or.kr/sijangtong/nation.do>) - 온누리상품권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맹점 제한업종**

- ▶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 ▶ 담배·주류·모피제품·도박기계·귀금속 도매업, 금융업, 보험, 골프장운영업, 부동산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5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제한업종

**지원내용**

- 상인(개별가맹점)
  - 상품권 판매, 회수수수료 국비 지원
- 상인회(환전대행가맹점)
  - 상품권 환전대행 시 수수료 지급

**상품권종류**

- 지류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 전자상품권 : 5만원권, 10만원권, 충전식(온누리멤버십)
- 모바일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발행규모**

- '22년 3.5조원 규모 발행계획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0번
- 제로페이 콜센터(모바일상품권 관련 문의) : 1670-058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 042-363-7641~5, 7650~52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95, 7899

5-5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육성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으로 특성화 역량이 충분한 시장
  - 상인조직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 또는 상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지원우대 사항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자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곳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상인정보통' 상인교육 50% 이상인 곳

신청 자격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25% 이상인 곳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각 80% 이상인 곳
  - \* 단, 첫걸음기반조성 사업에 한하여 각 60% 이상

**지원 제외**

- ▶ 접수 마감일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시장
-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개년 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내용**

-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징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
  -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 상인 조직화(협동조합 등)을 지원하여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성과 유지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지원
- **특성화시장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 : 디지털 전통시장 운영 조직 역량 강화, 상품 발굴, 입점지원, 인프라 구축, 공동마케팅 등 종합 프로젝트 지원
  - 온라인플랫폼 입점 이후 홍보, 고객관리, 상품 및 서비스 품질관리 등 지속 운영을 위한 상인 조직(조합) 설립 및 교육
  - 근거리 배달 및 전국 배송에 필요한 픽업·배송 인력 등 인적 지원, 배송센터, 공동장비 등 현장 인프라 구축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이벤트, 프로모션 등 고객 모집을 위한 마케팅 지원
-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수행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기초역량 강화
  - 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 상인조직 역량제고, 안전관리·화재예방

\* 첫걸음기반조성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도약

**신청·접수**

- 매년 6월경 다음년도 지원사업 공고 및 선정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주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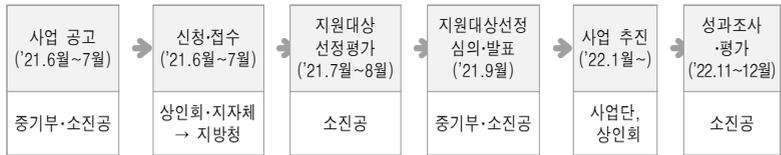
- 특성화 추진역량(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 지원
  - 3대 고객서비스 혁신과제

- ① 편리한 지불결제
  - ② 고객신회(가격·원산지 표기, 교환·환불·A/S, 친절맞이 인사 등)
  - ③ 위생 및 청결(고객선 준수, 상품진열, 공용공간 청소, 정리정돈 등)
- 2대 역량강화 과제
- ① 상인조직 역량(상인회 가입률, 회비 납부율, 정기이사회·총회 운영 등)
  - ②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1점포1소화기, 자율소방대 운영, 화재예방훈련 등)

**제출서류**

-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77호)에 따름

**사업절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105곳\* 내외
  - \* 예산 등에 따라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 2년간 시장 당 최대 10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10% 차등)
- 특성화시장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 : 2년간 시장 당 최대 6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1년차)~40%(2년차), 자부담 10%(2년차)
-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 1년간 시장 당 3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10% 차등)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9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042-363-7622, 762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게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곳은 우선 첫걸음 시장 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다음 단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단계 : 특성화 첫걸음시장 → 문화관광형시장육성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은 적 없는 경우에도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신청할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공고문의 지원대상 중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Q. 기존 글로벌명품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번 신청 가능한 사업이 있나요?**

A. 최상위 단계의 사업인 글로벌명품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졸업시장은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Q. 기존에 첫걸음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또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문화관광형시장육성 또는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존 문화관광형시장 및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시장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글로벌 명품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졸업 시장은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5-6

##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볼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복합청년몰 조성과 준비된 예비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 既지원 청년몰의 사후지원 및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 도약지원 등으로 젊은 고객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 지원대상

- (조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내 유휴공간(500㎡ 내외) 확보가 가능한 시장
- (활성화 및 확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 지원우대 사항(청년몰)

- (공통 우대사항)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모바일은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상인정보통' 상인교육 50% 이상 이수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 (개별사업 우대사항)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접수 마감일기준)
  - 화재공제 가입률에 따른 가점 차등 부여

- 공설시장, 지자체 소유부지,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
- 창업보육형 청년몰의 경우 우선 지원

**지원제외(청년몰)**

- ▶ 증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 시장 내 청년몰(국가, 지자체 모두 포함)이 이미 운영 중이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시장
- ▶ 최근 3년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 전통시장 안전점검 후속조치 미이행시장

**지원제외(청년상인)**

- ▶ 미성년자
- ▶ '15~'20년 정부지원(청년상인 창업, 청년몰)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에 중도 포기한 자
-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을 희망하는 자
- ▶ 대부, 유사금융 및 부동산 업종을 희망하는 자
- ▶ 청년상인 육성사업 세칙에 따라 청년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청년몰 조성(몰 당 2년 40억원) : 전통시장 내 일정구역 안에 청년상인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휴게실 등 공용공간 조성 등을 지원
  - 지원금액은 시장 여건 및 사업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15억 내외로 하되, 시장상황, 사업 규모 및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조정(국비 50%, 지방비 40%, 민간 10%)
- 청년상인 도약지원(1명 당 최대 10백만원) :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전문가 컨설팅 및 시작품 제작,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 등) 지원
- 청년몰 활성화(몰 당 5억원 이내) 지원 :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컨설팅, 교육, 조직화 지원 등 SW중심의 활성화 지원
- 청년몰 확장(몰 당 10억원 이내) 지원 :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고객편의 시설, 공용공간(휴게실 등), 진입환경(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지역민 소통 공간(공공어린이집, 공용카페 등) 조성 등 HW지원

**신청·접수**

- 신청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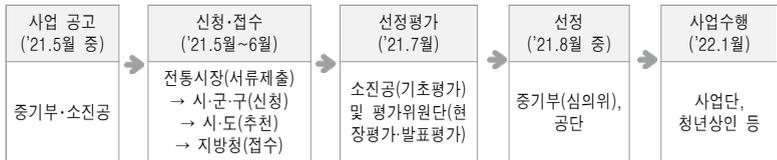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주요사항

- (청년몰 조성) 상권활성화 수준, 성장가능성, 시장이 보유한 인프라 및 상인 역량, 지자체(상인회)의 지원계획 등
- (청년몰 활성화·확장) 청년몰 운영성과, 발전가능성, 지자체·상인회의 지원노력 및 향후 계획, 청년상인 상생지수(협동, 단결력) 등
- (청년상인 도약지원) 아이템 전문성, 성장가능성, 영업실적, 파급효과 등

제출서류

-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참조

사업절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 복합청년몰 조성 5곳 내외(신규 2곳, 계속 3곳), 청년몰 활성화·확장지원 3곳 내외, 청년상인 도약지원 200명 내외(20억원)
  - \* '21년 지원현황 : (1차 모집) 조성2곳, 활성화·확장 3곳 (2차 모집) 조성1곳, 활성화1곳
  - \* '20년도 시장 : '19년 선정완료, '21년도 시장 : '20년 선정완료
- 청년몰 조성: 2년간 몰 당 40억원 이내(국비 50%, 지자체 40~50%)
- 청년몰 활성화: 몰 당 5억원 이내(국비 50%, 지자체 40~50%)
- 청년몰 확장: 몰 당 10억원 이내(국비 50%, 지자체 40~50%)
- 청년상인 도약지원: 1인당 최대 10백만원(국비 90%, 자부담 ~10%)
  - \* 사업비 편성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 지원)
  - \* 예산 등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81, 7785
- 청년상인육성재단 : 042-252-1414, 042-826-593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 참조

Q&A

**Q. 만39세를 초과하면 청년상인 창업을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네 청년상인의 나이기준은 전통시장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Q. 지원자금은 지원 대상자에게 입금 되나요?**

A. 아니오 사업단을 통해 집행되거나 용역수행업체에 지급됩니다.

5-7

##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해당 구역의 특색을 반영한 상권 단위 지원사업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활성화구역'에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요건 (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 ▶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 예정구역 내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신청요건

-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최종적으로 상권관리기구에서 사업 운영)
-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 (예시) 임대료 동결, 임대료 인상폭 5% 이하 제한 등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 구역경계는 사업신청시 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사업공고시)

#### 지원우대

- 해당 구역에서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연계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평가 시 가점 부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 50%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은 필수 조건이며, 그 이상 동의율에 대해 구간별 가점 부여

- 지원내용**
- 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구역을 조성하고, 쇼핑·커뮤니티·청년 창업, 힐링(문화·예술) 등이 이루어지는 상권 조성
    - \* 상권 자체의 핵심 역량(음식, 의류, 디자인 등) 및 지역 역사자원, 인물 등과 연계
  - 상권환경개선사업(H/W)과 상권활성화사업(S/W)을 추진
    -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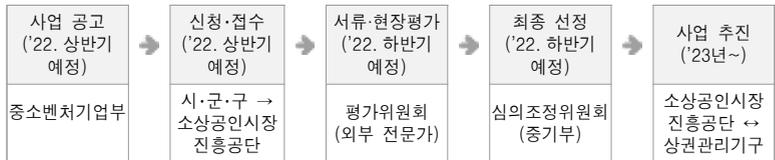
- 신청·접수**
- '22년 상반기 공고예정
    - \* 시·군·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로 송부

**평가 주요내용**

- 서류심사 : 상권활성화구역의 법적요건 충족 여부, 가·감점 등 검토
- 현장·발표평가 : 사업추진 적합성, 역량, 경제성, 향후 관리계획 등 평가

- 제출서류**
- 사업운영계획서, 지방비투자 요약서, 시·도 추천서, 상생협약서, 사업동의서(임차인·상인) 등
    -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 참조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상권활성화구역 당 5년간 총사업비 80억원 내외(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 '21년 선정현황 : 총 28곳('19년 9곳, '20년 8곳, '21년 5곳) 선정
    - \* (디지털)상권르네상스 3곳 선정 예정(~'22년)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67, 786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774, 777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상권 르네상스(상권 활성화) 사업의 민간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원 분담비율은 국비 50%, 지방비와 민간부담금을 포함해서 50%이며, 민간부담금(10% 이내)은 현금과 현물 모두 가능하고 지자체에서 분담 가능합니다.

**Q. 상권관리기구는 무엇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요?**

A. 상권관리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민법」에 따라 설치하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이며, 상권활성화사업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비 집행, 정산, 상권협의체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5-8

##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저렴한 비용의 공제료로 전통시장 화재 시 피해 보상

전통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순보험료로만 공제료가 산출된 저가의 보장성 공제사업을 도입, 가입자 납부 공제료로 재원을 조성하여 화재 피해 발생시 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

### 지원내용

-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
-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 상품안내

- 가입대상 :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등록, 인정)
- 가입단위 : 개별점포
- 가입목적물 :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② 재고자산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 (화재배상책임 특약)
- 가입기간 : 가입일(공제금 납입일)로부터 1,2,3년 선택(종료일의 16:00까지)
- 보상방식 : 가입한도(최대 건물3천만, 동산3천만) 내 실손보상
- 상품구성 : 기본상품(재물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화재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화재벌금, 시설소요·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점포휴업일당 특약
- 납입방법 : 연납
- 공 제 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 B)으로 차등

〈가입 금액 예시 (가입기간 1년)〉

| 구분  |                  | 2천 만원<br>(건물/동산 각 1천만원)                                                                                      | 4천 만원<br>(건물/동산 각 2천만원) | 6천 만원<br>(건물/동산 각 3천만원) |
|-----|------------------|--------------------------------------------------------------------------------------------------------------|-------------------------|-------------------------|
| 주계약 | 재물 손해 A급         | 66,000원                                                                                                      | 132,000원                | 198,000원                |
|     | B급               | 101,500원                                                                                                     | 203,000원                | 304,500원                |
| 특 약 | 화재배상 책임          |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br>-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                         |                         |
|     | 임차자 배상책임         | - 가입시 건물오일의 10% 할인 적용                                                                                        |                         |                         |
|     | 음식물 배상책임         | -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br>-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br>-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1년다윈)중 5천만원 한도<br>(자기부담금 30만원) |                         |                         |
|     | 화재별금 특약          | - 추가공제료 : 100원<br>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 보상(형법170조) 1.5천만원 / (형법171조)2천만원                                     |                         |                         |
|     | 시설소유·관리자배상 책임 특약 | - 추가공제료 : 26,600원<br>-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br>-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1년다윈) 중 1억원 한도<br>(자기부담금 10만원)    |                         |                         |
|     | 점포휴업일당 특약        | - 추가공제료 : 2,400원<br>- 1사고당 30일 한도(매 1년마다 총 60일 한도)<br>- 점포휴업 일당(3일 초과)=복구기간 내 휴업일수X1일당 가입금액(5만원)             |                         |                         |

- \* 건물구조급수(A/B급) : 건물의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의 건축 자재에 따라 나눈 등급
- \* 가입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건물/동산 각 3천만원)
- \* 주계약의 경우 100만원 단위로 가입가능

〈건물구조급수에 따른 등급구분〉

| 급별       | 주요구조부 | 기둥/보/바닥  | 지붕(틀)       | 외벽   |
|----------|-------|----------|-------------|------|
| A급(1~2급) |       | 내화구조     | 내화구조 / 불연재료 | 내화구조 |
| B급(3~4급) |       | 상기 이외의 것 |             |      |

**가입이 안되는 점포**

-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점포(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 ▶ 공제목적물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 지정된 위치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종료 시 공제목적물의 보관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점포

**신청·접수**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송부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건물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 작성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2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773, 7976
- 콜센터 : 042-363-7877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 [www.fma.semas.or.kr](http://www.fma.semas.or.kr)

## 5-9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주기적 안전점검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예방 강화

전통시장·상점가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상 3년 단위 주기적 점검(무등록 시장 포함)
  - 지자체 의결을 수렴(추천/제외)하여 예산 범위 내 점검대상 선정

**지원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공용부분·개별점포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화재 안전점검 및 개별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제공
  -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시설물 점검
  - 상인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설비 사용법 등 교육)
  -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별로 안전등급화하여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점검결과 공유

## 〈분야별 점검내용〉

| 구분 | 점 검 내 용                                                                                                                                                                                          | 비고                          |
|----|--------------------------------------------------------------------------------------------------------------------------------------------------------------------------------------------------|-----------------------------|
| 소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구간) 소방시설 관리 및 공용 소화기 비치 수량·상태, 아케이드 및 방화문 설치·유지, 시설 개·보수비용 산정 등</li> <li>• (개별점포) 소화기 비치여부 및 보급비용 산정, 자동확산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보유 및 관리상태 등</li> </ul> | 분야별 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시장별 안전 등급화 |
| 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구간) 아케이드 작동 전기설비, 주차장·쉼터·상인회 사무실 등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등</li> <li>• (개별점포) 절연,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옥내·외 배선, 접지 상태 등</li> </ul>                             |                             |
| 가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LPG 시설, 도시가스 시설 점검</li> <li>* 가스누출 점검, 감지기상태 점검, 가스용기 보관함 점검 등</li> </ul>                                                                  |                             |

**추천절차**



**지원규모**

- 599개 시장(상점가) 내외(예산 3,248백만원, 국비 100%)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2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82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Q&A**

**Q. 화재안전점검은 법정무점검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검인가요?**

A. 화재안전점검은 '19년2월15일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정무점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 상인 분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료점검이므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Q.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도 해 주나요?**

A. 공용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현대화사업예산으로 시설물 개·보수 지원이 가능하며, 개별점포는 점포주께서 자진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5-10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화재 초기 진화, 대형화재로의 확산 방지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을 지원하여 조기에 발화요인을 감지하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하여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

### 지원조건

- 점포당 총사업비 80만원 한도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 지방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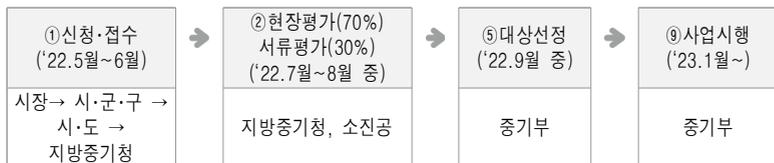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 영업점포의 30%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25%이상인 곳

### 지원내용

-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 부분 화재 감시용(방범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 \* 소방관련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화재감지시설 지원 불가
  - \*\*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공용부분에 감시 CCTV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및 감시 CCTV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추진절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 14,900개 점포 내외(78.4억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9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77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 지역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담당자

**Q&A**

**Q. 공용구간 CCTV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CCTV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신 후 잔여 예산을 활용한 화재감시용 CCTV설치가 가능합니다.**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3부  
보증지원 제도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제6장

# 보증지원 제도

|                                 |     |
|---------------------------------|-----|
| 6-1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     | 540 |
| 6-2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     | 543 |
| 6-3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 545 |
| 6-4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 547 |
| 6-5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 550 |
| 6-6 스마트 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 553 |
| 6-7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 556 |
| 6-8 온[溫, ON]택트 특례보증 .....       | 558 |
| 6-9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        | 560 |

6-1

##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신용보증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납세보증, 시설대여 보증 등
  - 보증한도

| 분 야  | 내 용                                                                                                                                                                                                                                                                                               | 보증한도   |
|------|---------------------------------------------------------------------------------------------------------------------------------------------------------------------------------------------------------------------------------------------------------------------------------------------------|--------|
| 운전자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한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li> <li>-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li> </ul> </li> <li>• 소액의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내</li> </ul> | 8억원 이내 |
| 시설자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li> </ul>                                                                                                                                                                                                                              |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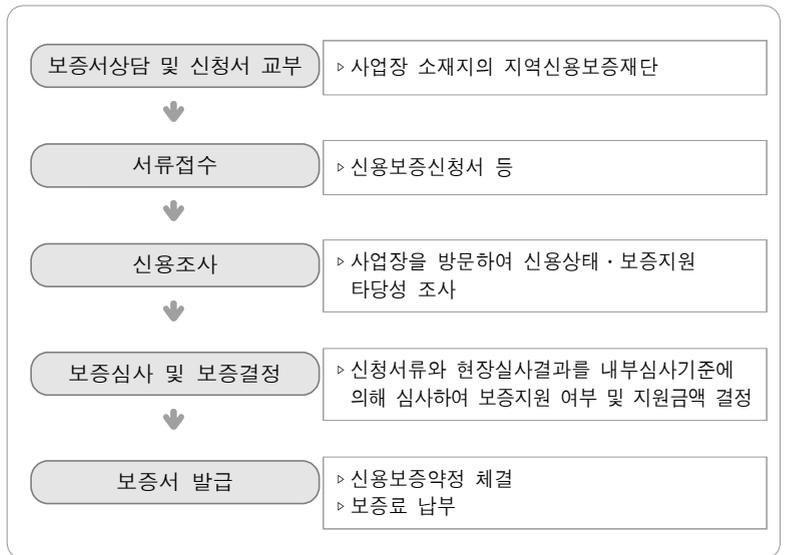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제출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           |                                                                                                                                                                                                                                      |
|-----------|--------------------------------------------------------------------------------------------------------------------------------------------------------------------------------------------------------------------------------------|
| 고객 제출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신용보증신청서</li> </ul>                                                                                                                                                     |
| 지역신보 직접수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 주민등록등본</li> <li>• 사업자등록증명원</li> <li>• 표준재무제표증명원</li> <li>• 금융거래확인서 등</li> <li>• 국세납세증명서</li> <li>•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li> <li>• 휴·폐업증명원</li> <l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ul> |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증잔액 45.9조원으로 운용

(단위 : 건/억원)

| 구 분  |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 10월   |
|------|-----|---------|---------|-----------|-----------|-----------|-----------|
| 보증공급 | 건 수 | 464,329 | 478,419 | 497,304   | 570,247   | 1,102,797 | 917,976   |
|      | 금 액 | 111,849 | 116,229 | 120,743   | 140,238   | 285,069   | 224,849   |
| 보증잔액 | 건 수 | 910,813 | 984,378 | 1,035,658 | 1,134,637 | 1,735,669 | 1,931,319 |
|      | 금 액 | 179,713 | 191,673 | 204,606   | 230,184   | 394,222   | 428,855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6-2

##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영세관광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응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1.5억원 이내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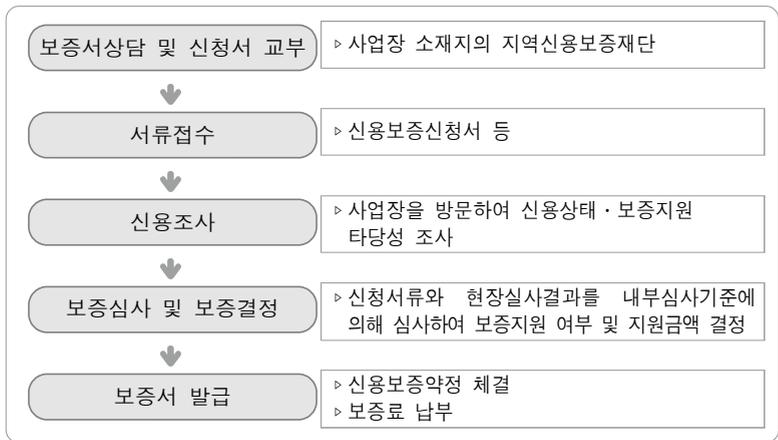
## 신청서류

-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         |                                                                                                                           |
|---------|---------------------------------------------------------------------------------------------------------------------------|
| 고객 제출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신용보증신청서</li> <li>• 문체부 응자지원 대상업종별 접수서류 등(업종별 상이)</li> </ul> |
|---------|---------------------------------------------------------------------------------------------------------------------------|

|           |                                                                                                                                                                                                                                       |
|-----------|---------------------------------------------------------------------------------------------------------------------------------------------------------------------------------------------------------------------------------------|
| 지역신보 직접수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 주민등록등본</li> <li>• 사업자등록증명원</li> <li>• 표준재무제표증명원</li> <li>• 금융거래확인서 등</li> <li>• 국세납세증명서</li> <li>•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li> <li>• 휴·폐업증명원</li> <l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ul> |
|-----------|---------------------------------------------------------------------------------------------------------------------------------------------------------------------------------------------------------------------------------------|

**처리절차**



**지원규모**

- 1,600억원
-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무엇인가요?**

A. 일반·국내·해외여행업, 관광·소형·의료관광 등 호텔업, 전문휴양업, 유원 시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 총 34개 업종이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6-3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재해 피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 ▶ 재해 발생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득한 기업
-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  
\* 단, 특별재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재해 발생일 이전으로서, 사업자등록증 취득 이전에 물품(용역) 거래계약(매입·매출) 등 사업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내용**
- 200백만원 또는 재해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중 적은 금액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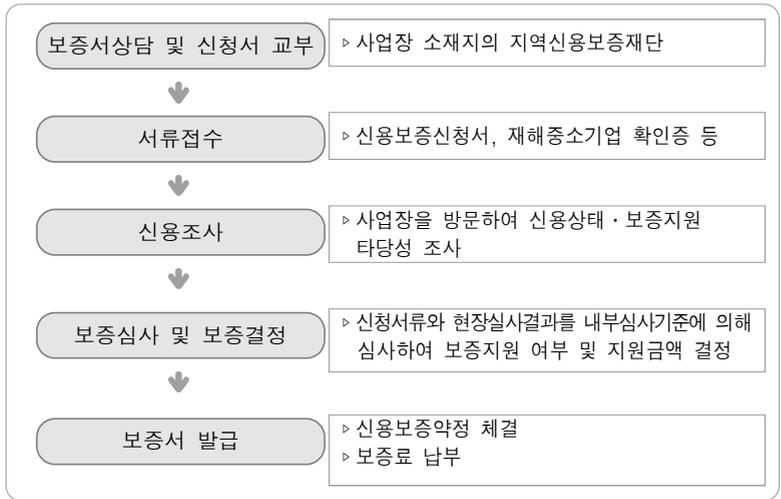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재해 피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           |                                                                                                                      |
|-----------|----------------------------------------------------------------------------------------------------------------------|
| 고객 제출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신용보증신청서</li> <li>•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li> </ul> |
| 지역신보 직접수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 주민등록등본</li> <li>• 사업자등록증명원</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재무제표증명원</li> <li>• 금융거래확인서 등</li> <li>• 국세납세증명서</li> <li>•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li> <li>• 휴·폐업증명원</li> <l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ul> |
|--|------------------------------------------------------------------------------------------------------------------------------------------------------------------------|

**처리절차**



**지원규모**

- 상시 지원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6-4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장애인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장애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 요건

-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           |                                                                                                                                                                                                                                      |
|-----------|--------------------------------------------------------------------------------------------------------------------------------------------------------------------------------------------------------------------------------------|
| 고객 제출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신용보증신청서</li> <li>• 장애인확인증</li> <li>• 고업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li> </ul>                                                                                                        |
| 지역신보 직접수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 주민등록등본</li> <li>• 사업자등록증명원</li> <li>• 표준재무제표증명원</li> <li>• 금융거래확인서 등</li> <li>• 국세납세증명서</li> <li>•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li> <li>• 휴·폐업증명원</li> <l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ul> |

**처리절차**



**지원규모**

- 상시 지원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Q&A

Q.“업력 6개월 이상”을 판단하는 업력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 업력 산정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연월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6-5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 조합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                                                               |
|-----------|---------------------------------------------------------------|
| 사회적기업     |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br>-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br>(※ 영리사업자에 한함)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br>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마을기업      |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영리사업자에 한함)                                |
| 자활기업      |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br>(※ 영리사업자에 한함)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br>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400백만원 이내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           |                                                                                                                                                                                                                                                                                                                          |                              |                        |         |                    |                 |                              |      |                   |      |            |
|-----------|--------------------------------------------------------------------------------------------------------------------------------------------------------------------------------------------------------------------------------------------------------------------------------------------------------------------------|------------------------------|------------------------|---------|--------------------|-----------------|------------------------------|------|-------------------|------|------------|
| 고객 제출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신용보증신청서</li> <li>• 각 지원대상별 증빙서류</li> </ul>                                                                                                                                                                                                                 |                              |                        |         |                    |                 |                              |      |                   |      |            |
|           | <table border="1"> <tr> <td>사회적기업</td> <td>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td> </tr> <tr> <td>예비사회적기업</td> <td>자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td> </tr> <tr> <td>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td> <td>조합설립신고필증(설립인가증) 사본, 출자지분표 사본</td> </tr> <tr> <td>마을기업</td> <td>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td> </tr> <tr> <td>자활기업</td> <td>지자체 인증서 사본</td> </tr> </table>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예비사회적기업 | 자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조합설립신고필증(설립인가증) 사본, 출자지분표 사본 | 마을기업 |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 자활기업 | 지자체 인증서 사본 |
|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         |                    |                 |                              |      |                   |      |            |
|           | 예비사회적기업                                                                                                                                                                                                                                                                                                                  | 자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         |                    |                 |                              |      |                   |      |            |
|           |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조합설립신고필증(설립인가증) 사본, 출자지분표 사본 |                        |         |                    |                 |                              |      |                   |      |            |
| 마을기업      |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                              |                        |         |                    |                 |                              |      |                   |      |            |
| 자활기업      | 지자체 인증서 사본                                                                                                                                                                                                                                                                                                               |                              |                        |         |                    |                 |                              |      |                   |      |            |
| 지역신보 직접수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 주민등록등본</li> <li>• 사업자등록증명원</li> <li>• 표준재무제표증명원</li> <li>• 금융거래확인서 등</li> <li>• 국세납세증명서</li> <li>•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li> <li>• 휴·폐업증명원</li> <l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ul>                                                                                     |                              |                        |         |                    |                 |                              |      |                   |      |            |

처리절차



지원규모

- 700억원

\* 취급 금융회사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은행·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6-6

## 스마트 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①스마트 소상공인과 ②혁신성장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①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이면서 아래의 1) 혹은 2)조건을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1)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거나 보유 중인 기업(스마트 소상공인)
  - \* i) 스마트오더, ii)사이니지·키오스크, iii)AI/IOT, iv)AR/VR/3D, v)기업은행 BOX POS등의 스마트 기술을 보유하거나 이용 중인 기업
- 2) 전자상거래업 영위기업(온라인 사업자)

#### ② 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이면서 아래의 1) 혹은 2) 조건을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1)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사업자
- 2) 고용 유지 또는 창출 사업자 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① 스마트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최대 70백만원 이내
- ② 혁신성장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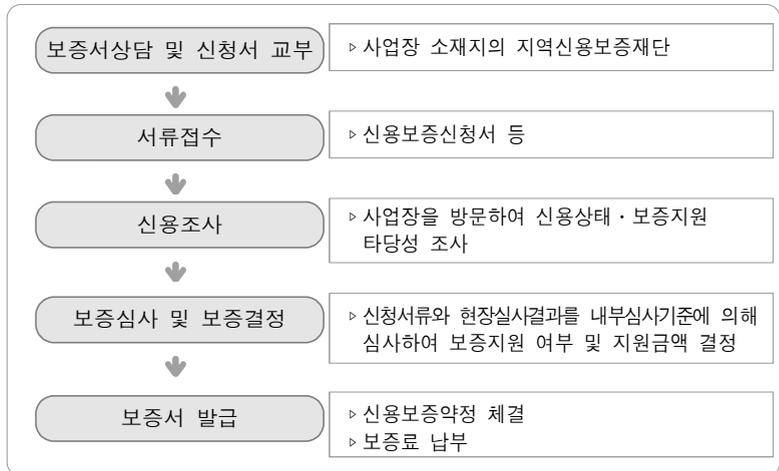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           |                                                                                                                                                                                                                                      |
|-----------|--------------------------------------------------------------------------------------------------------------------------------------------------------------------------------------------------------------------------------------|
| 고객 제출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신용보증신청서 등</li> </ul>                                                                                                                                                   |
| 지역신보 직접수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 주민등록등본</li> <li>• 사업자등록증명원</li> <li>• 표준재무제표증명원</li> <li>• 금융거래확인서 등</li> <li>• 국세납세증명서</li> <li>•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li> <li>• 휴·폐업증명원</li> <l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ul> |

**처리절차**



지원규모

- 스마트 소상공인(3,000억), 혁신성장 소상공인(2,000억)
  -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SC제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6-7

##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중·저신용 기업에 대한 대한 신용보증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도 악화로 금융애로를 겪는 중·저신용기업을 위한 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
  - 정부로부터「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기업(단,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및 지급유형별로 지원 조건 상이)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 신청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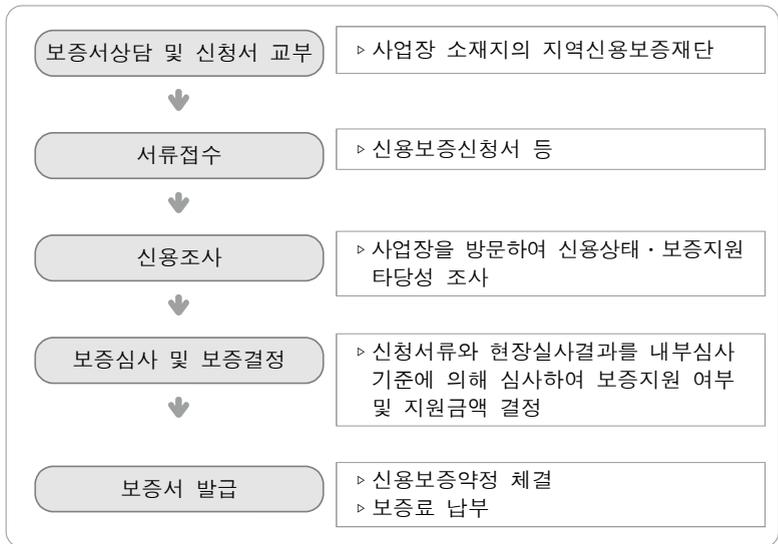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                                                                                                                                                                                                                                      |
|-----------|--------------------------------------------------------------------------------------------------------------------------------------------------------------------------------------------------------------------------------------|
| 지역신보 직접수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 주민등록등본</li> <li>• 사업자등록증명원</li> <li>• 표준재무제표증명원</li> <li>• 금융거래확인서 등</li> <li>• 국세납세증명서</li> <li>•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li> <li>• 휴·폐업증명원</li> <l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ul> |
|-----------|--------------------------------------------------------------------------------------------------------------------------------------------------------------------------------------------------------------------------------------|

**처리절차**



**지원규모**

- 1조원
-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SC제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6-8

## 온[溫, ON]택트 특례보증

비대면 문화에 대응한 모바일 기반의 보증

코로나19로 부상한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재단과 은행 방문없이 전 과정을 앱(APP)을 통해 처리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하여 가동(영업)중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법인기업, 2인 이상 공동대표로 등재된 개인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신청·접수

- 은행 모바일 App을 통한 비대면 신청

###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 고객의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직접수집

|                |                                                                                                                                                                                                                                                                                            |
|----------------|--------------------------------------------------------------------------------------------------------------------------------------------------------------------------------------------------------------------------------------------------------------------------------------------|
| 고객 제출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 </ul>                                                                                                                                                                                                                              |
| 은행 직접수집 (스크래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명</li> <li>• 소득금액증명(3개년)</li> <li>• 부가세과세표준증명(3개년)</li> <li>•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3개년)</li> <li>• 국세납세증명원</li> <li>• 지방세납세증명원</li> <li>•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li> <li>• 현금영수증 매출정보</li> <li>•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정보</li> <li>• 카드 매출정보</li> </ul> |

**처리절차**



**지원규모**

- 1조원
  - \* 취급 금융회사 : 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은행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6-9

##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채무보증

일반 영세기업,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 지원내용

| 구 분          | 햇살론(자영업자)                                                          |                                                                                      |      |
|--------------|--------------------------------------------------------------------|--------------------------------------------------------------------------------------|------|
| 지원목표         | 4조원('10.7.26 ~ )                                                   |                                                                                      |      |
| 대출기관         |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                                                                                      |      |
| 보증기관         |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                                                                                      |      |
| 금융회사<br>업무위탁 | ▶ 보증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                                                   |                                                                                      |      |
| 지원<br>대상     | 기본요건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      |
|              | 공통요건                                                               | ▶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br>▶ 저소득자(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인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
|              | 추가요건                                                               |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      |
| 지원<br>한도     | 운영자금                                                               | 창업자금                                                                                 | 대환자금 |
|              | 2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              |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20%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                                                                                      |      |

**심사·평가내용**

- 금융회사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서류**

|           |                                                                                                                                                                                                                                      |
|-----------|--------------------------------------------------------------------------------------------------------------------------------------------------------------------------------------------------------------------------------------|
| 고객 제출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신용보증신청서</li> <li>• 변제금납입확인서(회생지원 프로그램 성실히행)</li> <li>•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등(창업기업)</li> <li>• 대부업 채무정보 조회서(대환대출)</li> </ul>                                               |
| 지역신보 직접수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 주민등록등본</li> <li>• 사업자등록증명원</li> <li>• 표준재무제표증명원</li> <li>• 금융거래확인서 등</li> <li>• 국세납세증명서</li> <li>•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li> <li>• 휴·폐업증명원</li> <l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ul> |

**처리절차**

| 업무구분         | 업무처리 내용                                                                                                                                                          | 담당기관               |
|--------------|------------------------------------------------------------------------------------------------------------------------------------------------------------------|--------------------|
| 보증상담<br>신청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증 대상여부 및 보증금액 상담</li> <li>▪ 보증신청자 신용보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br/>-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li> </ul> | 서민금융사              |
| ↓            |                                                                                                                                                                  |                    |
| 보증심사<br>대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서류 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송부<br/>* 지역신용보증재단 전자보증서를 받고 대출</li> </ul>                                                              | 서민금융사<br>(위탁업무 수행) |
| ↓            |                                                                                                                                                                  |                    |
| 보증심사<br>대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영위사실 확인</li> <li>▪ 심사기준표에 의거 보증심사<br/>* 햇살론소상공인평가표에 따라 한도사정</li> <li>▪ 전자보증서 서민금융사에 송부</li> </ul>            | 지역신용<br>보증재단       |

## 지원규모

(단위 : 건/억원)

| 구 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10월 | 누계<br>(3개년치) |
|----------|----|---------|---------|-----------|--------------|
| 보증<br>공급 | 건수 | 33,544  | 22,596  | 14,654    | 70,794       |
|          | 금액 | 3,764   | 2,364   | 1,539     | 7,667        |
| 보증<br>잔액 | 건수 | 116,378 | 105,871 | 95,148    | 317,397      |
|          | 금액 | 8,319   | 6,959   | 5,723     | 21,001       |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부 록

참고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소상공인정책자금 상담 등) ... 564

참고 2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 569

## 참고 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소상공인정책자금 상담 등)

| 센터         | 전화<br>FAX                      | 주소                                    | 관할구역                        |
|------------|--------------------------------|---------------------------------------|-----------------------------|
| 서울강원지역본부   | (02)730-9361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br>태영데시앙루브 7층       | 서울특별시,강원도                   |
| (서울)중부센터   | (02)720-4711<br>(02)730-936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br>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 중구,종로구,용산구,<br>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
| (서울)동부센터   | (02)2215-0981<br>(02)2215-098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br>청양빌딩 4층          | 중랑구,광진구,강동구,<br>송파구,성동구     |
| (서울)서부센터   | (02)839-8321<br>(02)839-87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br>목동비즈타워 604호      | 강서구,양천구,구로구,<br>영등포구,금천구    |
| (서울)남부센터   | (02)585-8622<br>(02)585-862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br>훈민타워 4층        | 강남구,서초구,동작구,<br>관악구         |
| (서울)북부센터   | (02)990-9101<br>(02)990-9104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br>제이슨빌딩 5층         | 강북구,성북구,노원구,<br>도봉구,동대문구    |
| (강원)춘천센터   | (033)243-1950<br>(033)244-9164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br>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 춘천시,홍천군,양구군,<br>화천군,철원군     |
| (강원)강릉센터   | (033)645-1950<br>(033)645-3695 |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br>한상공회회소 3층        | 강릉시,평창군                     |
| (강원)원주센터   | (033)746-1950<br>(033)746-1990 |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br>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 원주시,횡성군,영월군                 |
| (강원)삼척센터   | (033)575-1950<br>(033)575-1953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br>삼척시청 1층            | 삼척시,동해시,태백시,<br>정선군         |
| (강원)속초센터   | (033)638-1950<br>(033)638-1951 |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br>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 속초시,양양군,고성군,<br>인제군         |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051)469-4680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br>부산우체국 12층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br>경상남도        |
| (부산)중부센터   | (051)469-1644<br>(051)469-3286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br>부산우체국 12층         | 중구,영도구,서구,<br>사하구,동구        |
| (부산)북부센터   | (051)341-8052<br>(051)342-8175 | 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12<br>이수타워 9층             | 북구,사상구,강서구                  |

| 센터       | 전화<br>FAX                      | 주소                                            | 관할구역                                              |
|----------|--------------------------------|-----------------------------------------------|---------------------------------------------------|
| (부산)남부센터 | (051)633-6562<br>(051)633-067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br>프라임시티 6층               | 부산진구, 연제구,<br>동래구, 금정구                            |
| (부산)동부센터 | (051)761-2561<br>(051)761-2564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91<br>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br>기장군                             |
| (울산)울산센터 | (052)260-6388<br>(052)260-2472 |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97<br>울산상공회의소 5층                 | 중구, 남구, 북구, 동구,<br>울주군                            |
| (경남)창원센터 | (055)275-3261<br>(055)275-3264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br>경남은행 창원영업부 3층         | 창원시<br>(구, 마산시, 진해시),<br>창녕군, 함안군                 |
| (경남)진주센터 | (055)758-6701<br>(055)758-7102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26<br>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br>의령군, 남해군, 하동군,<br>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 (경남)김해센터 | (055)323-4960<br>(055)323-4963 |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br>김해상공회의소 1층            | 김해시                                               |
| (경남)통영센터 | (055)648-2107<br>(055)648-2109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br>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 (경남)양산센터 | (055)367-7112<br>(055)367-7116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br>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 양산시, 밀양시                                          |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29-4633                  |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2<br>우리은행(동산동지점)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대구)남부센터 | (053)629-4200<br>(053)628-4314 |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2<br>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
| (대구)북부센터 | (053)341-1500<br>(053)341-3900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7길 14<br>리치프라자 2층               | 북구, 동구                                            |
| (대구)서부센터 | (053)639-3404<br>(053)639-341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5길 8<br>595b 4층                | 달서구, 달성군                                          |
| (경북)안동센터 | (054)854-3281<br>(054)854-3284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61<br>남부빌딩 2층                   |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br>청송군, 영양군,                       |
| (경북)구미센터 | (054)475-5682<br>(054)475-5681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br>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br>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
| (경북)포항센터 | (054)231-4363<br>(054)231-4364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br>신한은행 4층               |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br>울릉군                             |
| (경북)경주센터 | (054)776-8343<br>(054)776-8346 | 경상북도 경주시 북문로 125-5<br>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br>청도군                             |

### 제3편 소상공인, 전통시장

| 센터       | 전화<br>FAX                      | 주소                                     | 관할구역                                              |
|----------|--------------------------------|----------------------------------------|---------------------------------------------------|
| (경북)영주센터 | (054)634-6975<br>(054)634-6980 |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br>영주상공회의소 1층         |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br>예천군                             |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369-8754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8<br>KDB생명빌딩 21층       | 광주광역시, 전라도,<br>제주도                                |
| (광주)남부센터 | (062)366-2122<br>(062)366-2136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8<br>KDB생명빌딩 21층       | 서구, 남구                                            |
| (광주)서부센터 | (062)954-2084<br>(062)954-2085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br>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 광산구                                               |
| (광주)북부센터 | (062)525-2724<br>(062)525-2726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br>동광주빌딩 2층          | 동구, 북구                                            |
| (전남)목포센터 | (061)285-6347<br>(061)285-6349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br>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br>강진군, 영암군, 장흥군,<br>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
| (전남)순천센터 | (061)741-4153<br>(061)741-4159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br>5층              |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br>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
| (전남)여수센터 | (061)665-3600<br>(061)665-3607 |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br>여수상공회의소 3층     | 여수시                                               |
| (전남)나주센터 | (061)332-5302<br>(061)332-5309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br>비전타워 306호         |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br>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
| (제주)제주센터 | (064)751-2101<br>(064)751-210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br>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 제주도                                               |
| (전북)전주센터 | (063)231-8110<br>(063)231-8112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br>전주상공회의소 4층     |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br>무주군                             |
| (전북)익산센터 | (063)853-4411<br>(063)853-4413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br>상공회의소 3층           | 익산시                                               |
| (전북)정읍센터 | (063)533-1781<br>(063)533-1783 |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72<br>기업은행 3층             |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br>부안군                             |
| (전북)남원센터 | (063)626-0371<br>(063)626-0372 |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br>KT빌딩 1층             |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br>순창군                             |
| (전북)군산센터 | (063)445-6317<br>(063)445-6316 |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24<br>흥국생명빌딩 301호        | 군산시                                               |
| 경기인천지역본부 | (031)204-30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br>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 경기도, 인천광역시                                        |
| (경기)수원센터 | (031)244-5161<br>(031)244-5123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br>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 수원시, 용인시                                          |

| 센터             | 전화 FAX                           | 주소                                    | 관할구역                              |
|----------------|----------------------------------|---------------------------------------|-----------------------------------|
| (경기)평택센터       | (031)666-0260<br>(031)666-0270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br>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 평택시,안성시                           |
| (경기)화성센터       | (031)8015-5301<br>(031)8015-5304 |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br>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 화성시,오산시                           |
| (경기)광명센터       | (02)2066-6348<br>(02)2066-6347   |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br>송화빌딩 6층 601호      | 광명시,시흥시                           |
| (경기)성남센터       | (031)705-7341<br>(031)707-7345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br>우리은행 건물 4층    | 성남시,광주시,이천시,<br>여주시               |
| (경기)의정부센터      | (031)876-4384<br>(031)876-4386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희로 251<br>구성타워 14층          | 의정부시,동두천시,<br>포천시,<br>양주시,연천군,가평군 |
| (경기)부천센터       | (032)655-0381<br>(032)655-0383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br>부천상공회의소1층      | 부천시,김포시                           |
| (경기)고양센터       | (031)925-4266<br>(031)925-4269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br>보림빌딩 604호     | 고양시,파주시                           |
| (경기)안양센터       | (031)383-1002<br>(031)383-0550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br>신한은행 평촌지점 3층  | 안양시,군포시,의왕시,<br>과천시               |
| (경기)안산센터       | (031)482-2590<br>(031)482-2593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br>안산우체국 1층       | 안산시                               |
| (경기)하남센터       | (031)794-4383<br>(031)794-4390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br>미사강변블루 6층        | 하남시,구리시,<br>남양주시,양평군              |
| (인천)남부센터       | (032)437-3570<br>(032)437-357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br>삼원빌딩 2층        |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br>중구,동구,옹진군        |
| (인천)북부센터       | (032)514-4010<br>(032)514-4014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br>신한은행 5층          | 부평구,계양구,서구,<br>강화군                |
| 대전충청지역본부       | (042)864-1609                    |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br>동아생명빌딩 9층         | 전광역시,세종특별시,<br>충청남도, 충청북도         |
| (대전)북부센터       | (042)864-1602<br>(042)864-1606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br>96,102호             | 유성구,서구,대덕구                        |
| (대전)남부센터       | (042)223-5301<br>(042)223-0665   |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br>동아생명빌딩 1층         | 중구,동구                             |
| (세종)세종센터       | (044)868-4524<br>(044)868-4527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br>스마트허브1 3층 303호  | 세종시                               |
| (충남)천안아산<br>센터 | (041)567-5302<br>(041)567-5308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br>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 천안시,아산시,예산군                       |

| 센 터      | 전화<br>FAX                      | 주 소                                    | 관할구역                    |
|----------|--------------------------------|----------------------------------------|-------------------------|
| (충남)공주센터 | (041)852-1183<br>(041)852-1186 |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br>금성빌딩 3층            | 공주시,보령시,청양군             |
| (충남)논산센터 | (041)733-5064<br>(041)733-5067 |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br>문경빌딩 3층(구 황산빌딩) | 논산시,계룡시,부여군,<br>서천군,금산군 |
| (충남)서산센터 | (041)663-4981<br>(041)663-4980 |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br>서산시2청사 1동 3층       | 서산시,태안시,당진군,<br>홍성군     |
| (충북)청주센터 | (043)234-1095<br>(043)234-1091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br>1219번길 37 신한은행 3층 | 청주시                     |
| (충북)충주센터 | (043)854-3616<br>(043)854-3619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br>충주시청 11층            | 충주시                     |
| (충북)제천센터 | (043)652-1781<br>(043)652-1784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br>문화회관 2층          | 제천시,단양군                 |
| (충북)음성센터 | (043)873-1811<br>(043)873-1814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br>음성군청 정문 옆 별관1층 | 음성군,괴산군,증평군,<br>진천군     |
| (충북)옥천센터 | (043)731-0924<br>(043)731-0926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br>옥천읍사무소 3층       | 옥천군,보은군,영동군             |

## 참고 2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 재 단 명 | 전 화 번 호        | 홈페이지                  |
|-------|----------------|-----------------------|
| 강원재단  | (033) 260-0001 | www.gwsinbo.or.kr     |
| 경기재단  | 1577-5900      | www.gcgf.or.kr        |
| 경남재단  | 1644-2900      | www.gnsinbo.or.kr     |
| 경북재단  | (054) 474-7100 | www.gbsinbo.co.kr     |
| 광주재단  | (062) 950-0000 | www.gjsinbo.or.kr     |
| 대구재단  | (053) 560-6300 | www.ttg.co.kr         |
| 대전재단  | (042) 380-3800 | www.sinbo.or.kr       |
| 부산재단  | (051) 860-6600 | www.busansinbo.or.kr  |
| 서울재단  | 1577-6119      | www.seoulshinbo.co.kr |
| 울산재단  | (052) 289-2300 | www.ulsanshinbo.co.kr |
| 인천재단  | 1577-3790      | www.icsinbo.or.kr     |
| 전남재단  | (061) 729-0600 | www.jnsinbo.or.kr     |
| 전북재단  | (063) 230-3333 | www.jbcredit.or.kr    |
| 제주재단  | (064) 750-4800 | www.jcgf.or.kr        |
| 충남재단  | (041) 530-3800 | www.cnsinbo.co.kr     |
| 충북재단  | (043) 249-5700 | www.cbsinbo.or.kr     |
| 중앙회   | (042) 480-4201 | www.koreg.or.kr       |

## 〈유의사항〉

개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추가 공고될 예정입니다

- 사업 추진일정, 예산 및 지원규모 등의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 4 편

---

**공통사항**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1부  
기 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제1장

# 규제애로 개선·해결

|                          |     |
|--------------------------|-----|
| 1-1 중소기업 ombudsman ..... | 576 |
|--------------------------|-----|

## 1-1

## 중소기업 옴부즈만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결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등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는 옴부즈만지원단 소속의 전문위원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제기하는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규제 및 애로에 대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규제·애로를 처리
  -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필요시 소관기관에 규제애로 개선권고
-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 등이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권자에 그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 신고·접수

-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http://www.osmb.go.kr) ▶규제·애로 신고)를 통해 규제·애로 신고서 제출
- 이메일([bizhomin@korea.kr](mailto:bizhomin@korea.kr)), 팩스(044-204-7179, 02-2100-1279),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한 신고·접수
- 현장 간담회(SoS Talk, 소상공인 간담회, 수출기업 간담회 등)을 통한 규제애로 건의
- 지자체별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한 규제애로 신고·접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 신고서 양식)

**처리절차**



**기타사항**

- 규제 의견 수렴 :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를 통해 현행 규제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을 실시간 접수
- 규제개선 현황 제공 :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에서 변경되는 규제개선 사항을 수요자별(분야·업태 등)로 정리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

**문의처**

- 옴부즈만지원단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 4층 /  
(0304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층
- 옴부즈만지원단 : 대표전화 044-204-7172, 02-2100-1295
- 분야별 전문위원 연락처

| 부서명                | 전문분야       | 연락처          |
|--------------------|------------|--------------|
| 중소벤처기업부<br>옴부즈만지원단 | 환경, 입지, 기술 | 044-204-7151 |
|                    | 수출, 판로, 상생 | 02-2100-1276 |
|                    | 세제, 금융, 기타 | 02-2100-1278 |
|                    | 보건, 창업     | 044-204-7156 |
|                    | 인력, 안전,    | 044-204-7155 |
|                    | 규지스 관리     | 044-204-7174 |
|                    | 지방규제       | 044-204-7171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제2장

# 외부 전문가 노하우

|                       |     |
|-----------------------|-----|
| 2-1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 580 |
|-----------------------|-----|

## 2-1

##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

전문가가 기업의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 마케팅 등 각종 경영 애로를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전문가 상담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등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가 해결 (통상 3일, 최대 7일)

## 현장클리닉 지원 제한

## 〈 지원제외 업종 〉

-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7中), 주류(46331) 및 담배(46333)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 ▶ 소매업(47111~47999) (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 ▶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9)
- ▶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부동산업(68111~68223)
-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관계서비스업(71532),
- ▶ 수익업(73100), 보건업(86101~86909),
-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캐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 지원조건

- 상담은 무료, 현장클리닉은 1일당 35만원(기업부담금 20%)

**상담신청**

- 전 화 : 국번없이 1357
- 인터넷 : <http://www.smes.go.kr/bizlink>
- 방 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아래 참조)

**지원규모**

- (전문가 상담) 제한없음, (현장클리닉) 3,000개사 내외  
 \* '20년 지원현황 : (전문가 상담) 92천 건, (현장클리닉) 1,930개 업체

**문의처**

- 중소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실 : 044-204-7378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 전 화                                          | 주 소                                 |
|-------------|----------------------------------------------|-------------------------------------|
| 서울          | 02-2110-6351~3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 부산          | 051-831-135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 대구·경북       | 053-659-2270~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 경북북부사무소     | 054-859-8162                                 |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br>안동상공회의소2층      |
| 광주·전남       | 062-360-9137~9                               | 광주광역시 서구 경일로 17번길 12                |
| 전남동부사무소     | 061-727-5416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울촌산단4로 13              |
| 광주·전남 제주센터  | 064-723-2101~3                               | 제주도 제주시 월평9길 2-21                   |
| 경기          | 031-201-6805~7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 경기북부        | 031-820-9040~1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br>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06호 |
| 인천          | 032-450-1148~5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 대전·세종       | 042-865-6181~3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 충남          | 041-564-3862<br>041-415-0623<br>041-536-7852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
| 울산          | 052-210-0031~2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
| 강원          | 033-260-1625~6                               |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
| 강원영동사무소     | 033-655-4147                                 | 강원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1층              |
| 충북          | 043-230-5307~8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 전북          | 063-210-6436~9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 경남          | 055-268-2546~8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중소기업청24([www.smes.go.kr/bizlink](http://www.smes.go.kr/bizlink))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제3장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                    |     |
|--------------------|-----|
| 3-1 거래 공정화 .....   | 584 |
| 3-2 성과공유제 .....    | 588 |
| 3-3 협력이익공유제 .....  | 590 |
| 3-4 상생누리 플랫폼 ..... | 592 |
| 3-5 상생결제제도 .....   | 595 |

## 3-1

## 거래 공정화

## 불공정거래 상담 및 자문, 수·위탁분쟁조정

기업 간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법률상담, 신고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해결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분쟁조정, 법률상담·자문 :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등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조정협약이 필요한 수탁기업의 경우, 법률자문 지원
- 공정거래교육 : 불공정거래 피해방지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지원내용

- 분쟁조정 : 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 법률상담·자문 :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자문을 통한 법률적 피해구제 및 애로해소 지원
  - (상담)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상생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여부 및 하도급법 대상여부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
    - \* 재단내 상주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한 서면·방문·온라인 상담 지원
  - (자문) 피해사안이 복잡하여 심도있는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 지원
- 납품대금조정협약제도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약의 지원
  -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가능
- 공정거래교육 : 공정거래 준수, 불공정 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신청·접수**

- 법률상담 : 전국 불공정거래신고센터 70개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1357+내선9) 또는 전국 신고센터\*
    -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주요연락처 참조
-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유 선 : 대표번호 135+내선9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
- 공정거래교육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이메일 : pey@win-win.or.kr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 유 선 : 02-368-8463/ 이메일 : pey@win-win.or.kr



**Q.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 위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위탁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용품을 구매하거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 원재료의 구입은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위탁기업이 수탁기업보다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A. 수·위탁 거래는 하도급거래와 달리 위탁기업의 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의 매출액이 수탁기업보다 적더라도 수·위탁거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 될 수 없나요?**

A.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수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6조

**Q.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A. 수·위탁거래에는 판매위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조나 가공행위 없이 단순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I 불공정신고센터 주요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
| 중소벤처기업부<br>거래환경개선과 | 044-204-7946                  | 중소기업중앙회(KBIZ)               | 02-2124-3131 |
| 대·중소기업·<br>농어업협력재단 | 대표번호 1357+내선9,<br>02-368-8463 | 벤처기업협회                      | 02-6331-7004 |
| 서울지방<br>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41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br>(INNOBIZ)     | 031-628-9633 |
| 경기지방<br>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29                  |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br>(한국기계산업진흥회) | 032-680-3903 |
| 인천지방<br>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46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02-2188-6933 |
| 부산지방<br>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33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02-2132-0723 |
| 울산지방<br>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49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 02-761-2054  |
| 경남지방<br>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63                  | 대한전문건설협회                    | 02-3284-1087 |
| 대구·경북지방<br>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63                  | 한국전기공사협회                    | 02-3219-0516 |
| 광주·전남지방<br>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58                  | 한국의류산업협회                    | 02-528-0111  |
| 전북지방중소<br>벤처기업청    | 063-210-6446                  | 대한건설기계협회                    | 02-2055-3606 |
| 대전·세종지방<br>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16                  | 한국플라스틱공업<br>협동조합연합회         | 02-2280-8222 |
| 충북지방<br>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31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02-596-6381  |
| 강원지방<br>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28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 031-724-6142 |
| 충남지방<br>중소벤처기업청    | 041-415-0636                  |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br>협동조합         | 02-783-6952  |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 02-783-1711                   |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 02-597-9411  |
|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 02-813-1735                   | (사)한국포장기계협회                 | 02-6123-3051 |

|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
|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br>연합회   | 02-3481-9906   |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 032-423-9305  |
| 한국금속열처리공업<br>협동조합   | 02-712-1072    |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 02-710-0832   |
| 한국골판지포장산업<br>협동조합   | 02-3474-7124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041-411-2112  |
|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 02-3432-5301   | 대한영상콘텐츠제작<br>협동조합              | 02-556-0301   |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02-3488-6182   | 한국펄프공업협동조합                     | 070-5029-3714 |
|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 02-830-0233    | (사)한국제화산업협회                    | 02-2234-9131  |
|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 02-780-2611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6   |
|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 02-536-2141~2  |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 02-454-5114   |
|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 02-786-8291    | (사)서울의류협회(의류제조 소<br>상공인특화지원센터) | 02-865-9213   |
|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 02-711-0989    |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 02-855-5871   |
| 한국다이캐스트공업<br>협동조합   | 02-716-1611    | 한국PCB&반도체패키징협회                 | 031-431-7629  |
| 대 한기계설비건설협회         | 02-6240-1151~2 | (사)한국여성벤처협회                    | 02-3440-7460  |
|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 02-782-5611    | 한국소프트웨어개발<br>협동조합              | 053-756-6681  |
|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 051-264-0197   | (사)IT여성기업인협회                   | 02-6956-9952  |
|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 02-2025-3100   |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br>사업자협동조합         | 02-368-8470   |
| 한국신발산업협회            | 051-317-5202   | 쥬전국기아오토튜연협회                    | 02-2239-0700  |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02-587-0331    | 현대정비가맹점협동조합                    | 02-2038-2558  |
| 한국전등기구엘이디<br>산업협동조합 | 032-675-9742   | 한국베어링산업협회                      | 02-784-1705   |

3-2

## 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 공동의 노력으로 새롭게 창출한 혁신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협력 활동을 통해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 대기업 등 위탁기업이 협력사(수탁기업)와 사전에 합의를 통해 신제품 개발·판로개척·생산성 향상 등 공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계약모델

**추진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정한 배분)

**사업내용** ●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이 시행하는 협력활동을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을 통해 확인

- 성과공유제의 핵심 요건

① 협력활동 목표 합의

- \* (제안방식) 위탁기업 제안모집형(공모), 수탁기업 제안형
- \* (협력유형 협의 및 합의) 국산화개발, 신기술개발, 판로공동개척, 기술이전 등

② 사전 계약체결

- \* (계약체결 시기) 위·수탁기업이 과제 수행 전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계약체결
- \* (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 1)성과공유과제의 목표, 2)위·수탁기업의 공동노력, 3)성과의 공유방법 명시

③ 성과공유

- \* (성과공유 방법)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유
- \* (성과공유 방식) 현금보상, 물량매출 확대

- 성과공유제 참여절차

① 성과공유과제 등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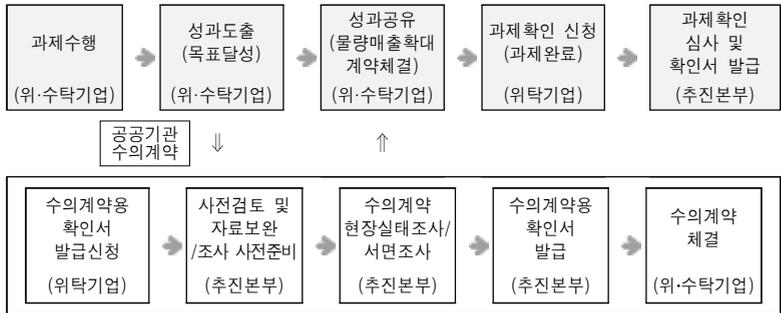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 (등록과제) 신청과제 중 성과공유 핵심요건을 갖춘 과제임을 승인 받은 과제

② 성과공유과제 확인 :

과제계약서, 사업계획서,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실적 등



\* (확인과제) 등록과제 중 목표달성,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실적을 확인 받은 과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22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 : 02-368-8942
-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www.benis.or.kr](http://www.benis.or.kr)

Q&A

Q.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성과공유제' 제도가 2종류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성과공유제는 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기업과 기업간' 협력 활동을 실시하고 발생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와 ②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홈페이지) [www.benis.or.kr](http://www.benis.or.kr) (문의처) 02-368-8793

②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공유제

(홈페이지) [sanhakin.mss.go.kr](http://sanhakin.mss.go.kr) (문의처) 055-751-9825

3-3

## 협력이익공유제

대·중소기업의 협력활동으로 창출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활동을 하여 발생시킨 재무적 성과를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 대기업·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위탁·수탁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 등의 협력이익을 사전에 상호 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사업내용** ●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의 협력활동을 협력이익공유제 종합정보시스템(www.winplus.or.kr)을 통해 확인

- 협력이익공유제의 요소

① 협력관계

\*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 간, 위·수탁기업간

② 상생협력

\*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

③ 공유방식

\* 상생협력 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성과를 등록기업의 재무적 성과(판매량, 영업이익 등) 또는 경영성과(경영전반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재무적으로 환산)와 연계하여 이익을 공유하되, 다수의 협력사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허용

- 공유범위는 프로젝트, 개별기업, 물품·부품 등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 선택

④ 사전계약

\* 수탁기업 등의 혁신노력을 유발할 수 있도록 사전계약을 필수로 포함

- 협력이익공유제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22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 : 02-368-8783, 8788, 8943, 8972
- 협력이익공유제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www.winplus.or.kr](http://www.winplus.or.kr)

3-4

### 상생누리 플랫폼

#### 상생협력 프로그램 서비스 플랫폼 “상생누리”

대기업·공공기관 상생협력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자사 협력사 뿐만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누리(winwinnuri.or.kr) 사이트 운영

#### 지원대상

- 국내 모든 중소기업 대상
  - 단, 프로그램 운영은 대기업·공공기관 정책에 따라 지원 가능범위가 상이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지원범위

- ▶ 협력사 지원 : 대기업·공공기관이 시스템 상 협력사로 승인한 기업만 해당 프로그램 조회·참여 가능
- ▶ 계열사 오픈 : 기존 협력사와 계열사 협력사까지 포함하여 프로그램 조회 및 참여
- ▶ 부분 오픈 : 기존협력사와 계열사 협력사 및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프로그램 조회 및 참여
- ▶ 전체 오픈 :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 프로그램 조회·참여 가능

#### 지원내용

- 대기업·공공기관의 노하우가 담긴 10가지 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제공
  - 각종 프로그램을 상생누리 시스템에서 상시 확인 및 신청 가능
  - \* 대기업 119개사 2,406개 프로그램, 공공기관 68개사 3,040개 프로그램

#### [상생누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원분야]



**이용절차**

- 상생누리(<https://www.winwinnuri.or.kr>)를 통해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단계별 세부사항**

- ▶ **회원가입**
  - \* 사용자별 아이디·비밀번호 부여, 소속 기업정보 등록 후 대기업·공공기관 협력사인 경우 주거래기업 등록 및 승인 필요
- ▶ **프로그램 검색 및 신청**
  - \* 기업명,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 상세 조건을 설정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 ▶ **선정결과 확인**
  - \* 대기업·공공기관이 프로그램 운영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 후 시스템에 결과 업데이트하고 중소기업은 동반성장 프로그램 탭 중 신청 및 참여이력을 통해 선정 결과 확인
- ▶ **프로그램 참여**
  - \* 대기업·공공기관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지원규모**

- 제한없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13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획운영부 : 02-368-8487
- 홈페이지 : 상생누리(<https://www.winwinnuri.or.kr>)



**Q. 프로그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기업 회원가입 후 동반성장 프로그램 탭에서 프로그램 검색을 클릭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업명 혹은 프로그램명으로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 기업 회원가입 시 주거래기업 신청 후 승인이 나면, 해당 기업의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회원은 예비창업자 및 취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한 기업 당 한 사람만 가입 가능한가요?**

- A. 아닙니다. 상생누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한 없이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 용어설명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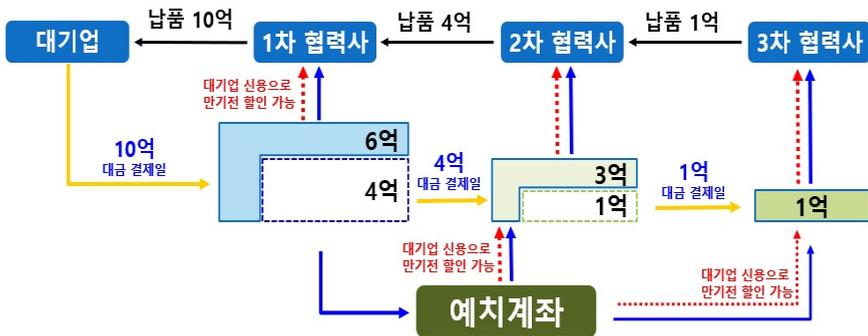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성의 모든 제도, 정책, 사업, 행사 등을 총칭합니다.

3-5

### 상생결제제도

중소기업의 결제환경 개선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대금결제 제도입니다.



제도장점

-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회수
  - 자금 유동성 개선
    -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고, 거래처에 미리지급 가능
  - 세액공제 혜택 및 금융수익 발생
    -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장려금·환출이자 수익 발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 지급 보증의무 면제
-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이용절차**

- 상생결제제도 약정체결
  - 구매기업이 약정한 금융기관과 약정체결
    - \* 구매기업의 상생결제 도입여부와 약정 금융기관 사전에 확인 필요
    - \*\* (도입 금융기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SC제일, 하나, 경남, 대구, 전북은행, 현대커머셜 총 11개 금융기관 운영 중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및 이용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후,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하위 거래처, 결제일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
    - \* 업무사이트는 은행별로 상이하며, 상생결제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현황 참고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정부·지자체에서 집행하는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받을 수 있음
- \* 상생협력법 제22조제6항('21.10.19)

**문의처**

-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Q&A**

**Q. 구매기업으로부터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하위 거래처에 구매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로 지급해야하나요?**

A.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거래처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화 규정을 준수바랍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Q. 상생결제로 하도급 거래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생결제제도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합니다.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장려금** : 하위 거래처에 대금을 보관하는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상생결제 이용기업에 분기별로 지급

**환출이자** : 하위 거래처가 조기 현금화 시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를 상생결제 이용기업에 지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제4장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활성화 지원

|                          |     |
|--------------------------|-----|
| 4-1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 | 600 |
|--------------------------|-----|

4-1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 활성화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여 원격근무 확산

**지원대상** ● 중소기업 1.5만개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주된 업종이 유희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인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에서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

\* 클라우드 등 ICT 기반의 온라인 업무추진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및 영업비밀 보호 등

● (지원금액) 1개사 당 400만원(자부담 30% 포함, 부가세 별도) 한도

※ 지원하는 서비스 분야 및 자부담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선정·지원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 및 선정

비대면 바우처 발급

비대면 서비스 구매

비대면 서비스 이용

**지원규모**

- 중소기업 1.5만개사 내외(예산 410억원)
- \* '21년 지원현황 : 중소기업 6만개사 내외(예산 2,160억원)

**문의처**

- 창업진흥원 비대면창업실 : 044-410-1984 ~ 9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Q&A**

**Q.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바우처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A. 선정이 되면 바우처 플랫폼에 접속하여 신청당시 선택한 결제수단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결제수단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서비스를 검색하여 공급기업에 거래상담을 요청합니다. 공급기업에서 거래를 수락하고 수요 기업에 결제를 요청하면 수요기업은 결제후 공급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자부담금(30%) 및 부가세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인데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이 공급하는 서비스 분야 이외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2부

**도움이 되는 제도**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제5장

# 알아두면 좋은 제도

|                                |     |
|--------------------------------|-----|
| 5-1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 | 606 |
| 5-2 벤처기업 확인제도 .....            | 607 |
| 5-3 이노비즈 확인제도 .....            | 610 |
| 5-4 메인비즈 확인제도 .....            | 613 |
| 5-5 명문(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      | 616 |
| 5-6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         | 619 |

## 5-1

##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 곳에 모아 적시 제공

- 시스템개요**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를 수집하여 적시 제공하는 정책정보 포털 사이트
- 이용대상** ●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사업담당자 등
- 주요기능** ● (정책정보 제공) 지원 분야별 최신 지원사업 공고, 정책뉴스 등을 웹사이트, 모바일 앱, E-mail 등 다양한 매체로 안내  
● (부가서비스) 교육·세미나·전시회 정보 및 기업업무서식(근로계약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2,700여종) 제공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 044-204-7477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주소  
- 웹사이트 : [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모바일웹 : [m.bizinfo.go.kr](http://m.bizinfo.go.kr)  
- 모바일앱 :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기업마당' 검색

## 활용사례

금속 용접 제조업체 대표 A 씨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위해 핵심 뿌리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나 자금, 인력 등의 문제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정부지원 기술개발 사업이 성공하면서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A 씨도 각종 포털을 검색하는 등 관련 정보를 찾아 보았지만, 다양한 기관에 정책정보가 흩어져 있고 내용이 복잡하여 회사에 맞는 정책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기업마당'이라는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기업마당을 통해 중앙정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 정보가 눈에 들어왔고, 2개월 간 동료들과 치밀히 준비한 결과 사업에 선정되어, 결국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5-2

## 벤처기업 확인제도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벤처기업 선별·육성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벤처기업의 정의

- 일반적으로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

### 벤처기업 요건

1. 중소기업일 것
2.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 요건)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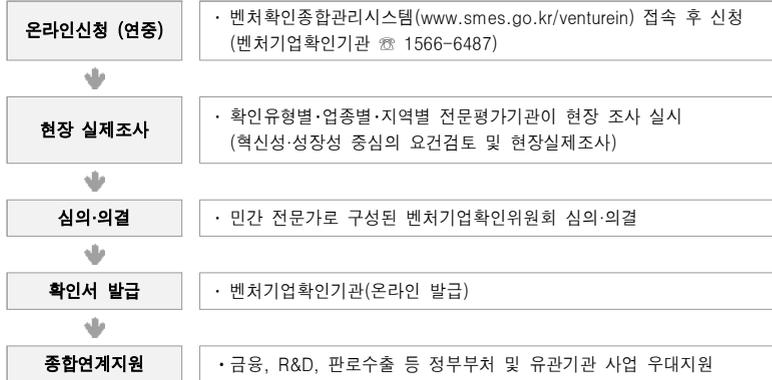
| 유형    | 확인 요건                                                                                                                                                                                                                                                                                             |
|-------|---------------------------------------------------------------------------------------------------------------------------------------------------------------------------------------------------------------------------------------------------------------------------------------------------|
| 벤처 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li> <li>○ 자본금 대비 투자금 10%(문화콘텐츠 7%) 이상</li> </ul>                                                                                                                                                                            |
| 연구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li> <li>○ 연구개발비 연간 5천만원 이상 및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li> </ul> </li> <li>○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li> </ul> |
| 혁신 성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창업자에게 부여하는 예비벤처는 별도 기준</li> </ul> </li> </ul>                                                                                                                |

### 벤처기업 제한 업종

| 업종                         | 분류코드    |
|----------------------------|---------|
| 1. 일반 유희 주점업               | 56211   |
| 2. 무도 유희 주점업               | 56212   |
| 3. 기타 주점업                  | 56219   |
|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증개업 | 63999-1 |
|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 6. 무도장 운영업                 | 91291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         |

**확인절차**

- 중소기업이면서 유형별 확인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이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의 현장실제조사 후 벤처기업 확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확인서 발급



**지원혜택**

| 분류  | 내 용                                                                                                                                                                                                                                          | 법적근거            |
|-----|----------------------------------------------------------------------------------------------------------------------------------------------------------------------------------------------------------------------------------------------|-----------------|
| 세제  |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50% 감면<br>*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조특법 §6②         |
|     | · 취득세 75% 감면<br>·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br>*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 지특법 §58의 3②     |
| 금융  |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br>* 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70억원                                                                                                                                                                      | 기보규정            |
|     |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br>*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br>*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br>*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br>*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br>*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①  |
| 임지  |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지특법 §58④        |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증가 적용 면제                                                                                                                                                               | 지특법 §58②        |
| M&A |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공정거래법 시행령 §3의2② |

| 분류 | 내 용                                                                                                                                                                                                      | 법적근거             |
|----|----------------------------------------------------------------------------------------------------------------------------------------------------------------------------------------------------------|------------------|
| 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li> <li>*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의 수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li> </ul>                       | 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li> <li>*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li> </ul>                                                                                          | 문산법 시행령 §26의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li> <li>*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li> </ul>                                                                 | 벤처법 §16의3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li> <li>*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li> </ul>                                                                                        | 벤처법 시행령 §11의3⑦   |
| 광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5억원(105억/3년) 한도</li> <li>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라디오 최대 70% 지원</li> <li>*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li> </ul> | kobaco 규정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044-204-7702
- 벤처기업확인기관 : 1566-6487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www.smes.go.kr/venturein](http://www.smes.go.kr/venturein)

## 5-3

## 이노비즈 확인제도

기술혁신활동 우수기업에 드리는 혜택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Inno-Biz)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 선정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3조 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

## 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평가 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이고 개별기술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신청·접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후,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기업 자체 실시) → 평가 결과 650점 이상이면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 진행

## 심사·평가내용

-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평가
  - \* R&D 활동, 혁신 기술 개발·생산화 능력, 기술경쟁력 변화 성과 등

## 신청절차

## 온라인신청 및 자가진단 (연중)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접속 후 기업등록
-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 650점(1,000점 만점)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 가능
-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00



##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평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 및 개별기술수준평가 B등급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 통과
- \* 기술보증기금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현장평가 실시
-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해당지역 평가센터 ☎ 1544-1120

|   |               |                                       |
|---|---------------|---------------------------------------|
| ↓ | <b>확인서 발급</b> | · 중소벤처기업부 (해당기업의 본사소재지 지방청에서 확인서 발급)  |
| ↓ | <b>종합연계지원</b> | · 금융, R&D, 판로수출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사업 우대지원 |

지원혜택

| 분야 | 지원내역             | 우대 사항                                                                                                                                                                                                                                                                                                                                                                |
|----|------------------|----------------------------------------------------------------------------------------------------------------------------------------------------------------------------------------------------------------------------------------------------------------------------------------------------------------------------------------------------------------------|
| 세제 | 수도권 취득세<br>증과 면제 | · (기존) 수도권 내 취득세 증과 3배 → (개선) 증과 면제<br>※ 단, 예외지역 존재 등으로 지자체 세무와 상담 필수                                                                                                                                                                                                                                                                                                |
|    | 정기조사 유예          | · 정기 세무조사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br>*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br>· 관세조사 1년간 유예                                                                                                                                                                                                                                                                                    |
|    | M&A              | · 이노비즈 기업 합병 및 지분취득 시 법인세 10% 공제<br>· M&A 절차 간소화 특례 : 벤처기업에게 적용하는 합병절차 특례를 이노비즈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    | 세금포인트<br>적립 우대   | ·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포인트 관련 적립 우대<br>납부세금 (기존) 10만원당 1점 → (우대) 10만원당 2점                                                                                                                                                                                                                                                                                                    |
| 금융 | 금융지원<br>협약보증     | · 이노비즈 전용 대출(농협은행) :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br>· 이노비즈 대출(하나은행) : 대출금리 최저 연 2.951%<br>· 기술평가보증으로 최대 100% 전액 보증 가능<br>* 협약 금융기관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br>·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최대 50억)<br>·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15% 할인<br>·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최고 30억) 우대 및 이행보증요율 우대(10%)<br>· 무역보증보험료 할인(20%) 및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br>·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 (최대 30억) |
|    | 코스닥 상장요<br>건 완화  | · 자기자본(30억 → 15억), 최근 당기순이익(20억 → 10억), 자기자본이익률(100분의10 → 100분의 5) 등                                                                                                                                                                                                                                                                                                 |
| 정책 | R&D              |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br>·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해외 원천기술 상용화 R&D,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중소기업R&D 기획역량 제고,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AI기반 고부가가치 신제품 기술개발, 현장 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 개발 등 R&D 사업참여 우대(가점 등)                                                                                                                    |

|                |                                                                                                                                                                                                                                                                                                                                                                  |
|----------------|------------------------------------------------------------------------------------------------------------------------------------------------------------------------------------------------------------------------------------------------------------------------------------------------------------------------------------------------------------------|
| <p>판로 및 수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포함</li> <li>•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우대</li> <li>• 수출비우치사업, 수출컨소시엄지원사업 가점</li> <li>•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가점(2.0점, 제조업 2.5점)</li> <li>•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가점(1.5점)</li> <li>•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EPC) 제도 지원 가점(1.0점)</li> <li>• 공영홍쇼핑(아임쇼핑) 우수제품 판매/홍보 시 우대</li> <li>•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 지원(최대 70% 할인)</li> </ul> |
| <p>인력 및 기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기능요원(제조/생산분야 가점 4점), 전문연구요원제도(연구/학문분야 가점 5점), 중소기업 R&amp;D기획역량제고사업 기술전문가 활용(가점 1점)</li> <li>•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분야 지원자격 우대</li> </ul>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4-204-7746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00
- 전용정보사이트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5-4

## 메인비즈 확인제도

경영혁신활동 우수기업에 드리는 혜택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문화산업 등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전 업종의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 선정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 영위기업
- ▶ 국제채납 및 신용도 취약기업(직전년도 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 등)

## 선정기준

- 경영혁신시스템평가 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 또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경영시스템평가 결과 PMS 3등급 이상 기업

## 신청·접수

-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 결과가 600점 이상이면 평가기관에서 현장평가 실시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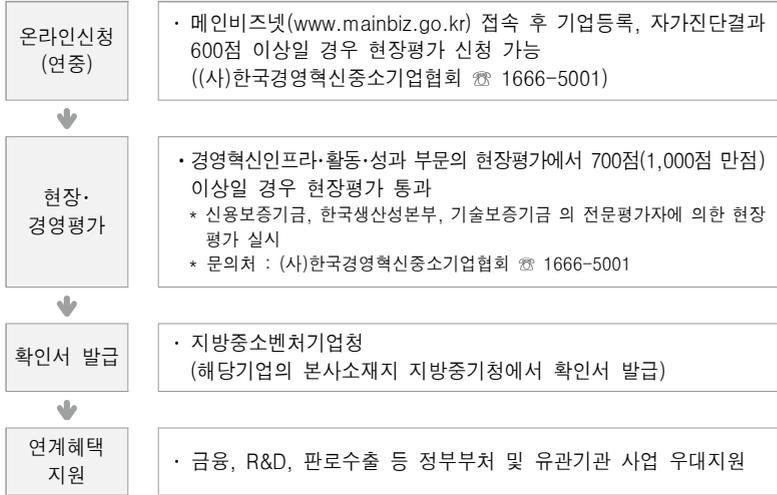
## 메인비즈 평가지표

- 기업의 업종\*에 따라 경영혁신인프라, 경영혁신활동, 경영혁신성과 평가
  -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일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으로 구분

## 제출서류

- 메인비즈넷에 접속해 기업정보, 주생산품, 서비스품목, 재무사항 등 입력
- 3년간 재무제표, 산업재해율확인서, 경영계획서 등 현장평가 시 제출

선정절차



\* 메인비즈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유예기간(3년)을 거쳐 자동 취소

지원혜택

| 분야 | 지원내역       | 우대 사항                                                                                                                                                                                                                                                                                                                                                                              |
|----|------------|------------------------------------------------------------------------------------------------------------------------------------------------------------------------------------------------------------------------------------------------------------------------------------------------------------------------------------------------------------------------------------|
| 세제 | 정기세무 조사유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 세무조사 유예 (수도권2년, 지방3년간 유예)</li> <li>* 단, 탈루혐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li> </ul>                                                                                                                                                                                                                                                               |
|    | 관세조사 유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간 관세조사 유예 (별도 신청없이 관세청이 확인 후 적용)</li> <li>* 단, 관세법 위반, 체납, 전년도 유예 기업은 제외</li> </ul>                                                                                                                                                                                                                                                       |
|    | 세금포인트 적립우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포인트 관련 적립 우대 (기존) 납부세금 10만원 당 1점 → (우대) 10만원당 2점</li> <li>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범위 내),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필요시 담보 면제에 세금포인트 사용</li> </ul>                                                                                                                                                                                                     |
| 금융 | 금융지원 협약보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차감(0.1%)</li> <li>* 금융기관 금융지원 협약을 통한 우대 : 부분보증비율 85%</li> <li>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보증료 우대</li> <li>*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우대 및 보증요율 10%할인</li> <li>NH농협 : 기업 대출시 금리우대 최대 1.65%p 차감</li> <li>한국은행 : 혁신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자금 *지역본부별 상이</li> <li>신한금융투자 : 기업공개(IPO) 및 코넥스 상장 컨설팅, 자금조달 컨설팅, M&amp;A 자문 및 인수금융 자금 지원, 부동산 PF 자문 및 금융 자문 등</li> </ul> |
| 정책 | 판로·수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li> <li>수출 인큐베이터 수출바우처 메인비즈 기업 가점</li> <li>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기준 완화, 해외규격 인증사업 가점</li> <li>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 지원(TV,라디오 70% 할인)</li> </ul>                                                                                                                                                                                 |
|    | 인력 및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기능 요원제도, 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연구인력 파견지원</li> <li>인쿠르트,사람인 취업포털사이트 홍보</li> </ul>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4-204-7746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고객지원센터 : 1666-5001
- 전용정보사이트 : 메인비즈넷 (www.mainbiz.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amp;A

## Q. 개인사업자도 업력이 3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 A. 물론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설립 후 3년이 지났다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도 신청 조건인 업력 3년에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합니다.

## 5-5

##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Role Model) 제시로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 선정대상**
- 중소·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기여·혁신 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

**제외업종**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제1항 등에 따라 아래 명기된 업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국표준사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부분, 그 외 업종은 중분류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 지원내용**
- 확인서 발급, 마크 활용, 기업 홍보, 사업참여 우대 등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제작·부착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방송 및 신문매체, SNS 등을 통한 기업 홍보
  - 중기부의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우대 및 가점 부여
  - 그 외 국가가 인정한 명예로서, 사회적 존경, 대외 인지도 상승, 우수 인력 유입촉진, 매출 증대 등 부수적 효과 기대

- 신청방식**
- 신청서류 및 관련서류를 접수마감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 \* 제출처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3층)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 \* 제출처 : (04151)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창회사회관) 회원지원팀(5층)

**심사·평가내용**

- 명문(40점) : 경제적 기여 + 사회적 기여 + 기업혁신역량
- 장수(60점) : 업력 45년 이상(55년 이상인 경우 60점 만점)
- 가점(6점) : 수출(3점) 및 일자리창출(3점) 기여 기업
  - ☞ 가점 포함 평가점수 8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서 평가점수, 지역평판, 공개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제출서류**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첨부서류

| 법인기업의 경우                                                                                                                                                               | 개인기업의 경우                                                                                                                                           |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br>2. 사업자등록증 1부<br>3. 최근 6개년도('14~'19년) 재무제표 1부<br>4. 최근 6년간('14~'19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 보상보험(중 택1)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br>5. 국세청 납세증명서 1부 | 1. 사업자등록증 1부<br>2. 최근 6개년도('14년~'19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br>3. 최근 6년간('15~'20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 보상보험(중 택1)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첨부서류 중 4번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대체 가능

**처리절차**



**선정규모**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중소·중견기업

문의처

- 신청·접수(중소기업 관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02-2124-3145, 3147)
- 신청·접수(중견기업 관리기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02-3275-2306, 1957)
- 정책문의(중소벤처기업부) : 일자리정책과(044-204-7444, 7448)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 중소기업연합회 홈페이지(<https://www.kbiz.or.kr/>)
-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홈페이지  
(<https://www.fomek.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5-6

##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자발적 기술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드리는 혜택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경영혁신 마일리지넷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정부지원 사업에 가점 등으로 활용 (상시 적립가능)

### 신청·접수

- 경영혁신마일리지넷(www.mileage.or.kr)을 통해 마일리지 상시적립 및 사용 가능

### 적립방법

- 교육마일리지 : 마일리지넷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대해 시간/대상별로 마일리지 적립

$$\text{총점} = \text{대상(CEO 10점, 임직원 5점)} \times \text{교육인원} \times \text{교육시간}$$

- 활동마일리지 : 기업에서 제출한 경영혁신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적립

$$\text{총점} = (\text{혁신활동 수} \times 300\text{점}) + \text{추가가점 (혁신성과 있을 시)}$$

- 혁신성과 : 적립기준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① 혁신형 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 : 140마일리지

\* 중복적립 불가, 최초 1회만 적립

② 정부사업 참여기업 : 건당 100마일리지

\* 성과보상기금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참여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산업계 주도 NCS 기업 활용 컨설팅사업

③ 경영혁신과 관련된 수상기업 : 건당 140마일리지

\* 혁신(경영, 기술)과 관련한 수상경력으로 중앙부처장(청장급 이상) 또는 광역지자체장 이상 수상 시 인정

④ 매출 또는 고용증가기업 : 건당 140마일리지

\* 전년대비 매출 또는 고용 30% 이상 증가기업(중복 허용)

**처리절차**

● 적립 절차에 따라 부여된 마일리지는 5년간 사용 가능

- 교육마일리지 적립



- 활동마일리지 적립



활용처

● 마일리지 활용가능 사업별 지원내용

| 구분 | 사업명          | 지원내용                                                 |
|----|--------------|------------------------------------------------------|
| 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신성장기반자금(운전자금) 대출한도 우대<br>500 마일리지 기준, 연간 대출한도 5억→10억 |
| 보증 | 신용보증         | 1,000 마일리지 기준 기업 보증료 0.2%p 우대                        |
|    | 기술보증         | 1,000 마일리지 기준 기업 보증료 0.1%p 우대                        |
| 수출 |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1점                             |
|    | 수출컨소시엄사업     |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5점, 최대 5점                             |
| 판로 | 정책매장 운영      |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3점                             |
|    | 온라인 시장진출     |                                                      |
|    | 중소기업 공동A/S지원 |                                                      |
| 인력 | 산업기능요원       |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3점                             |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술정책과 : 044-204-7746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00
- 마일리지 공식홈페이지 : 경영혁신마일리지넷(www.mileage.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사업신청을 했지만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면(탈락하면) 사용한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현장(서면)평가에 가점이 반영되었으나 지원 대상에서 탈락 시에는 사용한 마일리지는 반환처리 되지 않습니다. 단, 확인서 발급을 받았지만 변심으로 현장(서면)평가에 가점이 반영되기 전 상태에서만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부 록

|                            |     |
|----------------------------|-----|
|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 | 624 |
| 2. 중소기업 조세 지원 .....        | 627 |
|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     | 632 |

## 1

##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 1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2 중소기업 범위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등)

-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 규모기준 :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상한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을 만족할 것

####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 제조업<br>(6개업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br>1,500억원 이하 |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 가구 제조업                      | C32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 A    | 평균매출액등<br>1,000억원 이하 |
| 광업             |                             | B    |                      |
| 제조업<br>(12개업종) | 식품 제조업                      | C10  |                      |
|                | 담배 제조업                      | C12  |                      |
|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 C13  |                      |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 C16  |                      |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 C20  |                      |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C25  |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D         |                    |                    |
| 수도업                             |                              | E36       |                    |                    |
| 건설업                             |                              | F         |                    |                    |
| 도매 및 소매업                        |                              | G         |                    |                    |
| 제조업<br>(6개업종)                   | 음료 제조업                       | C11       |                    | 평균매출액등<br>800억원 이하 |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                                 |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                              | E(E36 제외) |                    |                    |
| 운수 및 창고업                        |                              | H         |                    |                    |
| 정보통신업                           |                              | J         |                    |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                              | C34       | 평균매출액등<br>600억원 이하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M         |                    |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 N(N76 제외) |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Q         |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R         |                    |                    |
|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S         |                    |                    |
| 숙박 및 음식점업                       |                              | I         | 평균매출액등<br>400억원 이하 |                    |
| 금융 및 보험업                        |                              | K         |                    |                    |
| 부동산업                            |                              | L         |                    |                    |
| 임대업                             |                              | N76       |                    |                    |
| 교육 서비스업                         |                              | P         |                    |                    |

-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 3 중소기업 여부 확인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 증빙자료 제출이 온라인으로 완료된 경우 신청서 작성·제출과 동시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출력 가능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각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 〉



## 2

## 중소기업 조세 지원

##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지원 대상
  - 창업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창업 후 4년 이내 에너지신기술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대상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에 열거된 업종
- 지원 내용
  - 법인세·소득세 감면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5년간 50% 감면(신성장 서비스업은 3년간 75%, 2년간 50%)
    - \* 청년(15~34세) 및 생계형(연매출 8,000만원 이하)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취득세 :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청년창업기업, 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간 75%)
    - \* 재산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대상 업종

-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 고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산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 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무형재산임대업,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사회교육시설·직원훈련기관·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임업,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임대업

- 지원 내용 :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 감면

| 구 분 | 수도권                                                                                                                                                                                                                                                    | 수도권 외                                                                                   |
|-----|--------------------------------------------------------------------------------------------------------------------------------------------------------------------------------------------------------------------------------------------------------|-----------------------------------------------------------------------------------------|
| 소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소매업, 의료업 10%</li> <li>•상기 업종 외 2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소매업, 의료업 10%</li> <li>•상기 업종 외 30%</li> </ul> |
| 중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기반산업 10%(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소매업, 의료업 5%</li> <li>•상기 업종 외 15%</li> </ul>  |

\* 장수 성실중소기업(10년이상 경영기업, 종합소득 1억원 이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경우 10% 추가 감면

\*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은 상기 비율에 50%를 곱한 비율 적용

### 3 창업·벤처기업 지원세제

-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 엔젤투자 세제지원
  -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소득공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
  - (비과세)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행사이익에 대해 5천만원 비과세 ('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 비과세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하거나, 일정요건 충족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과세이연) 선택 가능
    - \* 시가 이하 부여시에도 과세특례 적용('22.1.1. 이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
    - 시가 이하 발행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37.5%),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 중과세율 적용 배제

### 4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 차량 등은 제외) 및 지식재산(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 등)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일반 투자금액의 10%, 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금액의 12%)와 추가공제(직전 3년간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의 3%)를 더하여 세액공제

## 5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 지원 내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R&D비용의 30~40%를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R&D비용의 40~50%를 세액공제
  - \* 국가안보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R&D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또는 당해 연도 R&D비용의 25% 중에서 선택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 당해 과세연도 이전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 R&D비용이 소급 4년간 발생한 평균 R&D 비용 보다 적을 때는 당해연도 발생비용의 25% 공제

## 6 고용창출을 위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제도                      | 공제 대상                                                                | 공제규모                                                                                                               |
|-----------------------------|----------------------------------------------------------------------|--------------------------------------------------------------------------------------------------------------------|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br>증가인원당 일정액 세액 공제                         | 청년·장애인 등<br>- 수도권 1,100만원<br>- 수도권 외 1,200만원<br>(’21~’22 한시 1,300만원)<br>청년·장애인 등 외<br>- 수도권 700만원<br>- 수도권 외 770만원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전년대비 고용인원 증가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공제<br>(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청년·경력단절여성 100%<br>신성장서비스업 75%<br>기타 50%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                          | 70%(청년은 90%)<br>(150만원 한도)                                                                                         |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수(특수관계자 제외)                                            | 1인당 1천만원                                                                                                           |

## 7 기업상속 지원

- 기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후계자에게 사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기업 운영기간에 따라 기업상속재산의 100%(500억\* 한도)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 \* 20년 미만:200억원, 20년이상:300억원, 30년이상:500억원
-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에게 주식 등을 증여(100억원 한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 (30억원 초과 20%) 저율로 과세

## 8 기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의 일정액을 사업(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
    -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백만원, 4천만원~1억원 3백만원, 1억원 초과 2백만원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 자영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사업자(직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부가가치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연간 1천만원 한도,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기타 사업자 1.3%)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창출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입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만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

## 참고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 소속             | 연락처                                    | 주소                                              |
|----------------|----------------------------------------|-------------------------------------------------|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화) 02-2110-6350<br>(팩스) 02-2110-0661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br>정부과천청사 1동             |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화) 051-601-5111<br>(팩스) 051-338-5180 |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br>녹산산단 335로 8                |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화) 053-659-2211<br>(팩스) 053-624-3656 |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br>성서4차첨단로 122-11본관동 2층       |
| 경북북부사무소        | (전화) 054-859-8167<br>(팩스) 054-859-8169 | (36709) 경상북도 안동시<br>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2층         |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화) 062-360-9205<br>(팩스) 062-366-1922 | (61902) 광주광역시 서구<br>천변우하로 391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
| 전남동부사무소        | (전화) 061-727-5715<br>(팩스) 061-727-5418 | (58034) 전남 순천시 해룡면<br>울촌산단로4로 13 전남TP 지식산업센터 2층 |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화) 031-201-6911<br>(팩스) 031-201-6919 |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br>반달로 87                   |
| 경기북부사무소        | (전화) 031-820-9002<br>(팩스) 031-820-9019 |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br>지원센터 2층        |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화) 032-450-1126<br>(팩스) 032-818-8366 |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br>은봉로 82                     |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화) 042-865-6100<br>(팩스) 042-865-6189 |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br>가정북로 104                   |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화) 041-564-2286<br>(팩스) 041-415-2856 |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br>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화) 052-210-0009<br>(팩스) 052-283-0354 | (44248) 울산광역시 북구<br>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3층          |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화) 033-260-1618<br>(팩스) 033-260-1619 | (24427) 강원도 춘천시<br>안마산로 262                     |
| 강원영동사무소        | (전화) 033-655-4145<br>(팩스) 033-655-4149 | (25440) 강원도 강릉시<br>과학단지로 106-11                 |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화) 043-230-5300<br>(팩스) 043-235-2492 |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br>중심상업2로 48             |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화) 063-210-6400<br>(팩스) 063-210-6429 | (54966)전북 전주시 완산구<br>서원로 77                     |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화) 055-268-2511<br>(팩스) 055-285-5382 |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br>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

##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

발행일 : 2021년 12월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통계분석과

세종시 가림로 180 (어진동666)

전 화 : (044)204-7475

팩 스 : (044)204-7479

---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http://www.mss.go.kr)